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25년 12월



재정경제부

목 차

제1편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1
제1장 경영실적 평가개요	3
제1절 의의	5
제2절 평가절차	5
제2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7
제1절 평가유형 구분	9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1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9
제3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39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41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55
제3절 외부 평가·감사 결과 등의 연계·활용	66
제4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67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69
제2절 후속조치 등	71

**제2편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편람** 75

제1절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개요	77
제2절 평가지표 체계	79
제3절 평가지표별 평가기준·방법	81
제4절 평가결과의 종합	86
제5절 후속조치 등	87

**제3편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편람** 89

제1절 직무수행실적 평가개요	91
제2절 평가지표 체계	93
제3절 평가지표별 평가기준·방법	94
제4절 평가결과의 종합	97
제5절 후속조치 등	98

[별첨]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편람	99

제1절 공기업	101

< 상장 유형 >	103

1. 강원랜드(주)	106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20
3. 한국가스공사	132
4. 한국전력공사	152
5. 한국전력기술(주)	172
6. 한국지역난방공사	186
7. 한전KPS(주)	204

< SOC 유형 >	219

1. 인천국제공항공사	222
2. 한국공항공사	240
3. 한국도로공사	256
4. 한국수자원공사	272
5. 한국철도공사	288
6. 한국토지주택공사	304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20
8. 주식회사 에스알	334

< 에너지 유형 >	347

1. 한국석유공사	350
2. 한국광해광업공단	366
3. 한국남동발전(주)	382

4. 한국남부발전(주)	400
5. 한국동서발전(주)	418
6. 한국서부발전(주)	436
7. 한국수력원자력(주)	454
8. 한국중부발전(주)	472

< 산업진흥·서비스 유형 > 489

1. 주택도시보증공사	492
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506
3. 한국마사회	518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34
5. 한국부동산원	544
6. 한국조폐공사	558
7. 한전KDN(주)	572
8. 해양환경공단	584

제2절 준정부기관 599

< 기금관리형 > 601

1. 공무원연금공단	604
2. 국민연금공단	614
3. 국민체육진흥공단	624
4. 기술보증기금	636
5. 신용보증기금	648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58
7. 한국무역보험공사	668
8. 한국자산관리공사	678
9. 한국주택금융공사	690

< 위탁집행형 - SOC·안전 >	701
1. 국가철도공단	704
2. 국토안전관리원	714
3. 한국가스안전공사	728
4. 한국교통안전공단	738
5. 한국국토정보공사	750
6. 한국농어촌공사	760
7. 한국도로교통공단	770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78
9. 한국석유관리원	788
1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98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06
12. 한국전기안전공사	816
13. 한국전력거래소	826
1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38
 < 위탁집행형 - 산업진흥 >	 849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2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62
3. 우체국금융개발원	870
4. 우체국물류지원단	880
5. 한국관광공사	890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00
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10
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20
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932
10. 한국산업단지공단	942
11. 한국산업인력공단	952

12. 한국에너지공단	962
13. 한국연구재단	970
14. 한국인터넷진흥원	980
1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90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98
 < 위탁집행형 - 국민복리증진 >	1009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12
2. 국립공원공단	1022
3. 국립생태원	1032
4. 국민건강보험공단	1042
5. 근로복지공단	1052
6. 예금보험공사	1064
7. 축산물품질평가원	1076
8. 한국고용정보원	1088
9. 한국국제협력단	109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04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12
1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122
13. 한국소비자원	1130
1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140
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50
16. 한국장학재단	1158
17. 한국재정정보원	1168
18. 한국환경공단	1176

제 1 편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제 1 장

경영실적 평가개요

제1절 의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한다.

제2절 평가절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에 따라 2027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방법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각 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 중 계량지표 관련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계량 실적에 대해 법률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쟁점 조정 및 기관별·지표별 최종등급 결정을 위해 단장, 간사, 팀장 등이 참여하는 평정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관리를 위해 평가단에 회계사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하고, 평가검증단·재정경제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이 참여하는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공기업 평가단, 준정부기관 평가단, 기관장 평가단, 감사 평가단은 정기적으로 평가단 간 협의를 실시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제 2 장

경영실적 평가기준

제1절 평가유형 구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6년도 경영실적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공공기관 유형 구분 기준 및 산업별·기능별·규모별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유 형		유형구분 기준	
공기업	상장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기관	
	SOC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 (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에너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자원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산업진흥·서비스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 산업진흥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SOC·안전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SOC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산업진흥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특정 산업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국민복리증진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국민복리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가유형구분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 지정된 경우 평가 유형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유 형		기관명	
공기업 (31개)	상장 (7개)	<u>강원랜드(주)</u> , <u>그랜드코리아레저(주)</u> , <u>한국가스공사</u> , <u>한국전력공사</u> , <u>한국전력기술(주)</u> , <u>한국지역난방공사</u> , <u>한전KPS(주)</u>	
	SOC (8개)	<u>인천국제공항공사</u> , <u>한국공항공사</u> , <u>한국도로공사</u> , <u>한국수자원공사</u> , <u>한국철도공사</u> , <u>한국토지주택공사</u>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 (8개)	<u>한국석유공사</u> , <u>한국광해광업공단</u> , <u>한국남동발전(주)</u> , <u>한국남부발전(주)</u> , <u>한국동서발전(주)</u> , <u>한국서부발전(주)</u> , <u>한국수력원자력(주)</u> , <u>한국중부발전(주)</u>	
	산업진흥 ·서비스 (8개)	<u>주택도시보증공사</u>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u>한국마사회</u> , <u>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u> , <u>한국부동산원</u> , <u>한국조폐공사</u> , <u>한전KDN(주)</u> , <u>해양환경공단</u>	
준정부 기관 (57개)	기금관리형 (9개)	<u>공무원연금공단</u> , <u>국민연금공단</u> , <u>국민체육진흥공단</u> , <u>기술보증기금</u> , <u>신용보증기금</u> ,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u> , <u>한국무역보험공사</u> , <u>한국자산관리공사</u> , <u>한국주택금융공사</u>	
	위탁 집행형 (48개)	SOC· 안전 (14개)	<u>국가철도공단</u> , <u>국토안전관리원</u> , <u>한국가스안전공사</u> , <u>한국교통안전공단</u> , <u>한국국토정보공사</u> , <u>한국농어촌공사</u> , <u>한국도로교통공단</u> , <u>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u> , <u>한국석유관리원</u> , <u>한국승강기안전공단</u> , <u>한국원자력환경공단</u> , <u>한국전기안전공사</u> , <u>한국전력거래소</u> , <u>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u>
		산업 진흥 (16개)	<u>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u> , <u>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u> , <u>우체국금융개발원</u> , <u>우체국물류지원단</u> , <u>한국관광공사</u> , <u>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u> , <u>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u> , <u>한국산업기술진흥원</u> , <u>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u> , <u>한국산업단지공단</u> , <u>한국산업인력공단</u> , <u>한국에너지공단</u> , <u>한국연구재단</u> , <u>한국인터넷진흥원</u> , <u>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u> , <u>한국환경산업기술원</u>
		국민 복지 증진 (18개)	<u>건강보험심사평가원</u> , <u>국립공원공단</u> , <u>국립생태원</u> , <u>국민건강보험공단</u> , <u>근로복지공단</u> , <u>예금보험공사</u> , <u>축산물품질평가원</u> , <u>한국고용정보원</u> , <u>한국국제협력단</u> , <u>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u> , <u>한국사회보장정보원</u> , <u>한국산림복지진흥원</u> , <u>한국소비자원</u> , <u>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u> , <u>한국장애인고용공단</u> , <u>한국장학재단</u> , <u>한국재정정보원</u> , <u>한국환경공단</u>

* 밑줄 친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기관임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혁신프로젝트』의 3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경영관리	경영전략, 안전 및 책임경영, 재무성과관리, 조직 운영 및 관리
주요사업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혁신 프로젝트	상장공기업이 수립한 혁신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가범주는 단위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위 평가지표는 복수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할 수 있다.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2. 유형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① 공기업(상장)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2)	1. 경영전략	7.5	5.5	2
	- 전략기획	2	2	-
	- 윤리경영	2.5	1.5	1
	- 국민소통	1	-	1
	-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1	-
	- 이사회 구성	1	1	-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2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	3	2
	- 안전 및 재난관리	5	3	2
	- 친환경·탄소중립	3	2.5	0.5
	-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1.5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관리	15	4	11
	- 재무예산관리	4	4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	(1)	-
	(재정건전성확보)**	(1)	(1)	-
	- 재무예산성과	6	-	6
	- 효율성 관리	5	-	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8	3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5	-
	- 노사관계	2.5	2.5	-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 총인건비관리	3	-	3
	소 계	52	29.5	22.5
주요 사업 (4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0	21	19
	소 계	40	21	19
혁신 프로젝트(8)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
합 계		100	58.5	41.5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만 적용

** 재무위험기관에만 적용

② 공기업(SOC)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5.5	3.5	2
	- 전략기획	2	2	-
	- 윤리경영	2.5	1.5	1
	- 국민소통	1	-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2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	3	2
	- 안전 및 재난관리	5.5	3.5	2
	- 친환경·탄소중립	2.5	2	0.5
	-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1.5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관리	15	4	11
	- 재무예산관리	4	4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	(1)	-
	(재정건전성확보)**	(1)	(1)	-
	- 재무예산성과	6	-	6
	- 효율성 관리	5	-	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8	3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5	-
	- 노사관계	2.5	2.5	-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 총인건비관리	3	-	3
	소 계	50	27.5	22.5
주요 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6	24
	소 계	50	26	24
합 계		100	53.5	46.5
가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5	5	-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만 적용

** 재무위험기관에만 적용

③ 공기업(에너지)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5.5	3.5	2
	- 전략기획	2	2	-
	- 윤리경영	2.5	1.5	1
	- 국민소통	1	-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2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	3	2
	- 안전 및 재난관리	5	3	2
	- 친환경·탄소중립	3	2.5	0.5
	-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1.5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	2	2
	3. 재무성과관리	15	4	11
	-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4 (1) (1)	-
	- 재무예산성과	6	-	6
	- 효율성 관리	5	-	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8	3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5	-
	- 노사관계	2.5	2.5	-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 총인건비관리	3	-	3
	소 계	50	27.5	22.5
주요 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6	24
	소 계	50	26	24
합 계		100	53.5	46.5
가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5	5	-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만 적용

** 재무위험기관에만 적용

④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50)	1. 경영전략	5.5	3.5	2
	- 전략기획	2	2	-
	- 윤리경영	2.5	1.5	1
	- 국민소통	1	-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2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	3	2
	- 안전 및 재난관리	5	3	2
	- 친환경·탄소중립	2.5	2	0.5
	-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1.5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4	11
	- 재무예산관리	4	4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	(1)	-
	(재정건전성확보)**	(1)	(1)	-
	- 재무예산성과	6	-	6
	- 효율성 관리	5	-	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8	3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5	-
	- 노사관계	2.5	2.5	-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 총인건비관리	3	-	3
	소 계	50	27.5	22.5
주요 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6	24
	소 계	50	26	24
합 계		100	53.5	46.5
가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5	5	-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만 적용

** 재무위험기관에만 적용

⑤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0)	1. 경영전략	5.5	3.5	2
	- 전략기획	2	2	-
	- 윤리경영	2.5	1.5	1
	- 국민소통	1	-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9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1	2
	- 안전 및 재난관리	5	3	2
	- 친환경·탄소중립	2.5	2	0.5
	-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1.5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	1.5	2
	3. 재무성과관리	8	3	5
	-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3 (1)	-
	- 재무예산성과	3	-	3
	- 효율성 관리	2	-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8	3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5	-
	- 노사관계	2.5	2.5	-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 총인건비관리	3	-	3
	소 계	40	23.5	16.5
주요 사업 (6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60	29	31
	소 계	60	29	31
합 계		100	52.5	47.5
가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5	5	-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만 적용

⑥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경영전략	5.5	3.5	2
	- 전략기획	2	2	-
	- 윤리경영	2.5	1.5	1
	- 국민소통	1	-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9	6.5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1	2
	- 안전 및 재난관리	5	3	2
	- 친환경·탄소중립	2.5	2	0.5
	-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1.5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4	9
	-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4 (1)	-
	- 재무예산성과 (기금운용성과)	8 (6)	-	8 (6)
	- 효율성 관리	1	-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8	3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5	-
	- 노사관계	2.5	2.5	-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 총인건비관리	3	-	3
	소 계	45	24.5	20.5
주요 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9	26
	소 계	55	29	26
합 계		100	53.5	46.5
가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5	5	-

*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만 적용

7 유형별·기관별 평가지표 조정

-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범주 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금관리형은 '재무성과관리'의 평가 항목의 일부를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해당유형에 맞게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평가지표는 유형 내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주요 사업 범주의 평가지표는 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 계량지표 점수는 지표별, 기관 유형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고득점기관과 최저득점기관의 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표준화 여부 및 방법 등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이하 '혁신가점'). 혁신가점의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에 따른다.

제3절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경영관리 범주

① 경영전략

(1) 전략기획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전략기획	지표정의	기관의 설립목적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경영진과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 내용	① 기관의 설립목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비전·핵심가치·경영목표의 설정 및 이와 연계된 경영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핵심업무와의 연계성, 국정과제 반영, ESG 등을 고려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수립,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행안부),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비전·핵심가치 공유 ② 경영혁신 및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적극행정, 협업,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기업성장응답센터 활용 등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 *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혁신 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 및 성과

(2) 윤리경영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윤리경영	지표정의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평가표	세부평가내용	
윤리경영	세부평가 내용	① 자체감사기구 운영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 자체감사활동 심사(감사원) 결과 반영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행위 및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지표정의	• 경영활동시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상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5점
	세부평가 내용	①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식별,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윤리경영표준모델에 따른 윤리경영 노력 *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 등) 마련·운영 여부, 갑질근절방안 마련·이행, 비윤리적 행위 신고, 교육 실적, 중요 기록물 분류 체계 마련 등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연초 시행계획 작성 후 그 이행실적을 제출(기관별 비위행위 처리 모범사례 포함) * 회계담당자 교육·훈련 지원, 회계관계직원 우대채용 및 처우개선, 회계통제규정·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및 이행 등 회계 신뢰성 제고 및 책임강화 노력 ②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활동 * 고충처리제도 운영 등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종합청렴도 평가(권익위) 결과 반영 ※ 위(①, ②, ③)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 결과 임직원이 중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거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감점(최대 0점) 가능

(3) 국민소통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국민소통	지표정의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점검·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① 경영정보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 점검대상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통합공시항목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재경부) 결과 반영
	지표정의	•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의 수준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①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지수 ※ 평점은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지수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 고객만족도,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중 일부가 없는 경우 해당 점수는 결측치로 처리 ※ 고객만족도조사 및 국민인식도조사(재경부) 결과 반영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지표정의	• 소액 주주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활발한 소통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 비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① 주가(주식수익률 등) 및 배당(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 수준의 적정성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② 소액주주 보호 및 활발한 소통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정의	• 기업경영공시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 비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업경영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5) 이사회 구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이사회 구성	지표정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이사회 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상장)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이사회 의 성별·연령·분야별 비율 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② 이사회 의 독립성 및 실효성 있는 운영과 함께 경영 현안 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 * 분야별 전문가 회의 및 소위원회 등의 관리 체계와 운영 내용 등

② 안전 및 책임경영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정의	청년 미취업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실적 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청년미취업자고용실적(1.5점) ② 장애인 의무고용(0.3점),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1점),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0.1점)
	지표정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 비계량 3점, 준정부기관 비계량 1점 * 공기업은 총 배점 중 1점을, 준정부기관은 총 배점 중 0.3점을 ③항으로 평가
	세부평가내용	①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과 공정채용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및 조기채용, 청년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및 청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블라인드 채용 및 직무수행능력중심평가, 최종 탈락자에 대한 탈락 사유 피드백 제공, 고졸자·여성·무기계약직·별도직군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적절한 처우개선 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세부평가내용	②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사내벤처 활성화 등 혁신적 수단을 통한 직접적 민간의 일자리 창출과 금융지원, 컨설팅 등 간접적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③ 고졸자, 지역인재,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고졸자) 기관별 고졸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채용계획 수립·이행 실적 * (지역인재) 비수도권 및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비율 달성 노력 * (장애인) 장애인고용 컨설팅 이행사항 추진 등 장애인 채용 노력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채용 노력 *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 ④ 여성임원·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른 목표 및 이행계획 적정성, 목표대비 실적,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등 * 임원 : 본부직제상 기관장·이사·감사 관리자 : 본부직제상 부서장 임용이 가능한 직급 ⑤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여부 및 처우개선을 포함한 운영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노동부) 등

(2) 안전 및 재난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정의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재경부) ※ 안전관리등급 심사대상이 아닌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노동부) 반영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안전 및 재난관리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 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표정의	•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 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표정의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및 준정부기관: 비계량 15점 공기업(SOC):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비·대응·복구) 구축·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난·사고 발생 여부 및 피해 정도, 재난대비계획 수립·이행 실적, 관계자 교육, 재난대비 관련 예산·조직·인력 현황,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행안부) 등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 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중대재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개보위) 결과(0.4),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국정원) 결과(0.6) 반영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 위반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3) 친환경·탄소중립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친환경· 탄소중립	지표정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3) ※ 온실가스 감축 실적 평가(기후부), 에너지 절약 실적 평가(기후부) 결과 반영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0.2) ※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기후부) 결과 반영
	지표정의	친환경·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SOC, 산업진흥·서비스)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 공기업(상장, 에너지) : 비계량 2.5점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탄소중립 노력 및 성과 * 기관 자체의 친환경·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의 비계량적 노력과 성과를 확인(기관의 주요사업에 포함된 친환경·탄소중립 사업은 이 지표의 평가 대상이 아님) * 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기후부)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창업 및 경제 활성화	지표정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의 창업 및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민간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수출금융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해외사업 수주 시 국산기자재 활용, 외국 정부·국제(금융)기구·민간 등이 발주하는 해외사업(투자개발사업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동반수주하는 경우 등 ②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체계 구축, 협업데이터 공동생산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내 기관별 개방률 상향노력 및 별도의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개방노력 등 *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이터협업 과제 수요를 제출하여 선정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의 노력·성과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행안부) ③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중소기업기술마켓 참여기관의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구매 실적, 인증기업 대상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 정책금융 우대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실적 * 기술마켓 인증 기술·제품의 혁신 제품 지정 실적, 지정을 위한 노력, 구매 실적 ④ 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의 공유·이전 등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보유 미활용 특허 공유 실적 및 기술이전(지원) 실적, 경상기술료 계약 실적, 미활용 특허 이전기업 기술지도 실적 ⑤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세부평가내용 중 일부 항목을 선별하여 실적보고서에 서술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 본 지표를 평가할 수 있음

(5) 상생 · 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실적 * 중소기업제품(0.3), 창업기업제품(0.2), 기술개발제품(0.2),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0.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 여성기업제품(0.2), 장애인생산물(0.4),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물(0.2)
	지표정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SOC, 에너지) : 비계량 2점, -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 : 비계량 2.5점 - 준정부기관 :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및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상생결제 등 동반성장평가 결과(중기부) 반영, 혁신지향 공공조달(창업기업·기술개발제품구매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여부 등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협력사업 발굴 및 판로·금융지원 등 ② 기부·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인턴십·멘토링·장학금 지원 등 * 지자체·지역기업·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발굴 등 *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물 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 참여,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 ③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알리오플러스 예약 등 이용실적, 이용자 편의, 시설 개방 안내·홍보, 우수 개방시설 운영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주차장, 체육시설, 회의실, 강당, 예식장 용도 시설 등

③ 재무성과관리

(1) 재무예산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재무예산 관리	지표정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효율적 재무예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 비계량 4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비계량 3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비계량 4점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 총 배점 중 1점을 ④항으로 평가 * 재무위험기관: 총 배점 중 1점을 ⑤항으로 평가
	세부평가내용	①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 경영환경 변동성 확대 등 미래위험 예측 및 대응, 부채 및 유동성 관리, 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폴 예탁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재무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과 이행노력, 금융비용 관리 등 연간 자금조달·운용 계획 수립 및 이행 - 사업단위별 성과분석 등 구분회계 정착 및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자회사 진단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 -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배당수준의 적정성 - 기금관리유형의 경우,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기금관리와 운영기반 구축 노력 및 피드백 활동의 적정성 ② 사업선정 및 신규사업별 재무안정성·수익성 등 타당성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등)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재무성과의 전반적인 수준 및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무성과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재무성과 수준의 적정성 ④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1점) - 5개년 재무전망 수립 근거의 적합성 - 중장기 사업·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 -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요인 분석의 적정성 및 평가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평가년도 계획과 실적 간 차이 등 계획의 정합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재무예산 관리	세부평가내용	* 26년도 평가의 경우, '26~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26년 재무전망과 '26년 결산실적과의 차이 등 - 부채감축을 위한 수익확대, 경영효율화 등 재무관리 자구 노력의 적정성과 이행노력 ⑤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1점) *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총 13개사 - 기관의 경영·정책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자구노력 설정의 적극성 및 전년 계획 대비 추가목표 발굴 노력 - 지출재구조화,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수익확대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직·제도·모니터링 체계 등의 운영 노력 및 성과

(2) 재무예산성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재무예산 성과	지표정의	• 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경영성과 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 계량 6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계량 8점
	세부평가내용	① 재무성과 관련 세부평가지표를 통해 기관의 재무 안정성, 투자 및 집행 효율성, 경영성과 등을 평가, 세부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공기업 6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점) * 세부평가지표 예시 -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재무예산 성과	세부평가내용	-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 예산현액}}$ -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 세부평가지표가 결측이거나 기관의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측정이 가능한 타 세부평가지표를 통해 평가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운용성과를 평가(6점) -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분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효율성 관리	지표정의	• 노동·자본생산성 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 계량 5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세부평가지표는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노동·자본생산성, 사업수행 효율성, 부가가치율 등의 지표 중에서 각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 세부평가지표 예시 -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 사업수행 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효율성 관리	세부평가내용	-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 부가가치, 평균인원, 순사업비, 매출액 등은 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정의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 핵심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과 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경영전략 실행을 위한 조직·인력 배분, 기능조정 발굴 * 기관 특성에 맞는 인력 배분 및 관리, 정현원차 축소 등 인력운영 과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노력 및 성과 ② 합리적 조직·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수행능력중심평가의 도입 및 운영 성과 등 ③ 구성원의 역량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인사교류 특별승진 제도기반 구축, 보직관리(CDP) 및 전보관리 합리화, 기관 특성에 따른 개방형계약직제 및 전문직위제 운영 등 ④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 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중소·벤처기업 지원근무 실적 등), 복무·성과관리 등 인력관리의 적절성 등 운영 효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지표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0.5점
	세부평가내용	① 육아휴직 활용, 가족친화문화 형성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 * 자동육아휴직제,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률, 육아시간 특별휴가 도입 여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 가족친화인증 여부,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활용실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활용실적,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

(2) 노사관계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노사관계	지표정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5점
	세부평가내용	① 노사 간 협력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노사 간 협력체계,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동 법령에 따른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등 ②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노사협력을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3) 보수 및 복리후생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정의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2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보수 및 복리후생	세부평가내용	①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및 직무급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재경부) 결과 반영
	지표정의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내용	①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 예산운용지침에 위반한 성과급의 부당한 재배분 - 교육비, 의료비, 퇴직금, 고용세습 및 휴직·정직·징계자 보수 지급 관련 지침 준수여부 - 사내대출 관련 금리·대출 한도, 면적 기준 및 LTV 적용 여부 등 *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각 기관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및 외부점검단 확인 결과 활용 ②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이 경영 여건이나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하게 운용되는지 여부 ③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판례('24. 12.)의 영향을 총인건비 관리제도 내 최소화하는 등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규정 위반 및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0점 부여 가능

(4) 총인건비 관리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총인건비 관리	지표정의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3점
	세부평가내용	① 총인건비 인상률 * 총인건비 인상률 = $\frac{(\text{평가년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2. 주요사업 범주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 지표구성 의 적합성	지표정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 비계량 3점,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 비계량 5점, 준정부기관 : 비계량 6점 * 공기업(상장)은 총 배점 중 1.5점을,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는 총 배점 중 2.5점을, 준정부기관은 총 배점 중 3점을 각각 ①, ②항으로 평가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 기관의 설립목적 및 정책과 연계한 지표 선정을 통한 대표성 확보 - 기관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식의 적정성 확보 - 사업 대상이나 산식을 왜곡하지 않는 등 산출시 고려사항의 적정성 확보 - 투입(Input)·과정(Process) 지표보다 산출(Output)·성과(Outcome) 지표 등 결과지표 위주의 계량지표 구성 3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의 설계 및 유지 -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 - 글로벌 수준의 성과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설계 및 적정성 확보(상장공기업) ②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 β분포, 목표대실적 등 평가방식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일반적으로 “목표대실적”은 난이도가 낮은 평가방식에 해당) *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방식의 경우, 적용된 중장기목표 수준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 사업환경, 가용자원 등 대내외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난이도 차이 고려 (예: 해외사업의 경우, 대상국과의 외교여건 변화 등에 따라 난이도 차이 발생)

②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정의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과정 전반과 생산성 향상·서비스 질 제고·공공성 강화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 비계량 18점, -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 비계량 21점, - 준정부기관 : 비계량 23점
	세부평가내용	①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주요사업의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전략과의 부합성 및 대표성 -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 - 벤치마킹 전략의 적정성 및 경쟁 전략의 적정성 - 글로벌 기업 대상 벤치마킹 적정성 및 경쟁 전략의 적정성 (상장공기업) ②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의 적정성 -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 ③ 주요사업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계획대비 성과목표, 목표치 달성도 -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 경쟁기업 대비 성과목표 달성 수준 - 글로벌 경쟁기업 대비 성과목표 달성 수준(상장공기업) ④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세부평가내용	-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 *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3. 혁신 프로젝트 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혁신 프로젝트	지표정의	기관이 수립한 혁신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과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적용대상 (배점)	공기업(상장) : 비계량 8점
	세부평가내용	① 혁신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주요사업과의 연계·부합성 -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성과지표 개발·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당해연도 혁신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AI 도입 관련 목표의 타당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제도 준수요건의 반영 여부, AI 윤리 및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기획 수준, 데이터 거버넌스·품질·활용계획 등 데이터 전략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② 혁신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혁신 프로젝트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의 적정성 및 이행 수준 * AI 구축·도입·운영 과정에서 개발·운영 절차의 투명성, 보안·윤리·법적 기준에 대한 준수 및 관리 노력, 데이터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계획의 집행 적정성을 평가 ③ 혁신 프로젝트별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계획 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 성과가 기관의 경영목표 및 주요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AI 도입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서비스 품질 개선, 안전 향상 등 실질적인 혁신 성과가 창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성과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공공기관 혁신 가점	지표정의	국가발전, 경영·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 (배점)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 5점, 준정부기관 : 5점
	세부평가내용	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5점) - 사내외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강화, 지원 및 보호,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 강화 등 ② AI 활용을 통한 ‘기관 생산성’·‘대국민 공공서비스’·‘근로자 안전’ 혁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1.5점) -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업무효율 향상, 국민 생활편의 증진, 근로자 안전 제고 등 * 공기업의 경우 혁신 프로젝트 반영 ③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2점) -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적극 수행 및 대국민 홍보 * 물가 안정, 주거·교육·의료·금융 등 필수서비스 공급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 - 경제정책방향,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에 포함되어 목표 수립 및 주기적 집행관리를 받고 있는 신속투자집행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 노력 등 * 투자집행 점검 결과(재경부) 반영 -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 * '26년 총 신규채용 목표 설정의 적극성, 채용 확대 노력 * 청년 및 고졸 채용 확대 노력('25년 대비 '26년 채용인원 및 채용 비율 확대 등) * 장애인(정규직) 채용 확대 노력('25년 대비 '26년 채용인원 및 채용 비율 확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등) * '26년 청년인턴 채용목표 설정의 적극성, 채용 확대 실적 및 노력, 청년인턴 프로그램 우수성 등 - 업무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과제(재경부) 반영

제 3 장

경영실적 평가방법

제1절 지표별 평가방법

1.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

등 급	평 점
A ⁺	100
A ⁰	90
B ⁺	80
B ⁰	70
C	60
D ⁺	50
D ⁰	40
E ⁺	30
E ⁰	20

- 비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각 지표별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전년대비 개선도를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다만, 지표별 세부평가항목 등 일부항목에 대해 외부기관 등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개선노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중대한 도덕적 해이 또는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중대 사고 발생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0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계량지표 평가방법

- 계량지표는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평가하되, 목표부여(편차) 방법과 글로벌실적비교 방법 및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기관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계량지표 평가방법 〉

평가방법	평가방법 개요	비고 (적용대상 등)
목표부여 (편차)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목표부여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기준치에 일정 비율을 감안하여 설정	과거 실적치가 3년 미만이거나 과거 실적의 표준편차가 지나치게 큰 경우 등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글로벌실적 비교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치, 세계적 수준 등과의 격차, 비중 등을 활용하여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지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국제기준의 성과지표 또는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지표 등의 경우
중장기 목표부여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을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설정하되, 연도별 목표는 사업수행기간과 최종목표를 활용하여 단위목표를 산출하고 목표부여 방법 등을 준용하여 설정	주무부처 중기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거나 선진국 대비 하위수준인 공공서비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β분포	최상·최하·직전년도 실적치를 감안,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추세치	회귀분석을 활용, 표준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가 표준치로부터 어떤 확률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	
목표대 실적	편람에 목표수치를 제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중장기목표부여, β분포, 추세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① 목표부여 평가

가. 평가방법

- 목표부여 지표의 평가방법은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목표부여 방법은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기준치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목표부여(편차) 방법(기준치에 과거 일정기간의 표준편차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기준치는 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향지표는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으로 하고 하향지표는 최소값으로 한다. 단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2개년 실적치에 의한다.
-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80%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20%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인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120%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80%로 적용한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한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상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하고, 하향목표의

최고목표는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적용한다. 단, 동일한 회계 기준에 의한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에 의한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자료의 불연속으로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평가연도에 자료의 불연속이 발생하여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목표부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목표부여(편차) 방법의 평가 시 이용되는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표준편차 } S = \sqrt{\sum_{i=1}^n \frac{(Y_i - \bar{Y})^2}{n}}$$

Y_i : i연도의 Y값

$\bar{Y}$: Y의 평균값

n : 표본기간

- 총인건비인상률 지표와 사회적 책임 지표의 경우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되지만 기본득점 20점을 적용하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평가 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나. 표준편차 극단치의 처리방법

1) 표준편차의 계산

- 목표부여(편차)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표준편차의 값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표준편차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극단치 여부는 극단치 제외 후 4개년 편차가 극단치 제외 전 5개년 편차의 50%이하인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경영실적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목표부여(편차) 평가방법의 극단치 처리방법은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개년 실적치 중 연속하는 2개년도 또는 3개년도 평균을 하나의 실적치로 간주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20~'22년도 편람의 코로나19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측 또는 보정 처리를 받지 아니한 지표에 한함).

2) 기준치의 조정

- 상기 절차에 따라 극단치로 판명된 경우 극단치가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치를 조정한 후 득점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는 직전 4개년 실적치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극단치가 직전년도(t-1) 실적치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와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기준치를 계산하되, 직전년도 실적치의 계산 시 상향목표는 직전전년도(t-2) 실적치 + 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상한으로, 하향목표는 직전전년도(t-2) 실적치 - 2×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를 하한으로 하여 산출한다.

* 직전 3개년 실적치 중 어느 하나가 극단치인 경우 기준치의 계산

구분	기준치의 계산	
극단치가 (t-1)인 경우	상향 지표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min \left\{ \begin{array}{l}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 \\ (t-1)(t-2)(t-3) \text{ 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하향 지표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max \left\{ \begin{array}{l} (t-2) \text{ 실적치} - 2 \times \text{표준편차(과거4개년 : (t-2)(t-3)(t-4)(t-5))} \\ (t-1)(t-2)(t-3) \text{ 3개년 실적치 평균}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극단치가 (t-2)또는(t-3) 인 경우	상향 지표	$\max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하향 지표	$\min \left\{ \begin{array}{l} (t-1) \text{ 실적치} \\ (t-1)(t-2)(t-3)(t-4) \text{ 중 극단치를 제외한 3개년 실적치의 평균} \end{array} \right.$

② 글로벌 실적비교 평가

- 글로벌 실적비교의 평가방법은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평가·인증되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 수준과의 격차, 점유율 등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③ 중장기 목표부여 평가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중장기적 성과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목표치와 목표달성 연도를 정하여 장기 추세선을 설정하고 이를 1~3년간 이행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장기 추세선상의 기준치에 일정 수준을 고려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에 따라 득점구간을 설정하여 측정한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left[\left(\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right) \times a + \left(\frac{\text{실적(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 \right) \times (1-a) \right]$$

* a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1-a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반영 비중 (%)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은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산출값 상한과 하한은 각각 1과 0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당해연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목표구간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시 반영 비중은 50%:50%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업무 및 사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반영비중을 달리 적용한 경우(50%:50%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해당 반영비중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근 3년 평균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최초 도입 시 최근 3년간 실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장기 추세선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근 2년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할 수 있다.
- 장기 추세선은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수준(B) 및 목표달성기간(n)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3년 단위로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 주무기관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준목표, 중장기 목표수준 및 목표 달성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기준목표(A)는 평가지표의 최초 개발 시에는 활용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다만, 3년 단위로 장기 추세선을 조정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실적의 산술평균과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를 산술평균하여 기준목표를 조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목표(B)는 주무부처 중장기계획 또는 선진국 수준 등으로 설정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중장기 경영목표를 준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기준치는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t-1) 목표치로 하며 단위목표(a)는 기준목표(A)와 중장기 목표(B)간 차이를 목표달성기간(n)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목표달성기간(n)은 (중장기 목표 달성 예상연도 - 기준목표 연도)로 산출한다.

$$\text{단위목표}(a) = \left| \frac{\text{중장기 목표}(B) - \text{기준목표}(A)}{\text{목표달성기간}(n)} \right|$$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선형의 장기추세선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 기준목표, 단위목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중장기 목표부여 방법에서는 상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2×단위목표(a), 최저 목표는 기준치-2×단위목표(a)로 계산하고, 하향목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2×단위 목표(a), 최저목표는 기준치+2×단위목표(a)로 계산한다.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개별 지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값을 해당 공공기관의 편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하고, 단위목표(a)도 조정하여 평가한다.

$$\text{조정 단위목표}(\alpha') = \left| \frac{\text{중장기목표}(B) - (t-1)\text{실적치}(A')}{\text{잔여목표달성기간}(n')} \right|$$

-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의 수준, 정책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불가피하게 지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장기 목표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1×단위목표*로 하며, 하향지표인 경우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변경된 중장기목표), 최저목표는 최고목표+1×단위목표*로 한다.

* 단위목표 = |{(변경된 중장기목표-종전 중장기목표)/잔여기간}|

- 단, 전년도 실적이 중장기목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최고목표는 직전년도 실적(중장기목표)으로 하고, 단위목표는 최근 개선 추세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추세치 평가

가. 평가방법

- 추세치 지표의 평가방법은 과거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기준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 추세치 방법의 기본득점은 20점(100점 만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과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

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20\text{점} + 80\text{점} \times \text{추세치 방법으로 계산한 득점(백분율)}$$

- 추세치 방법에 따른 득점(백분율)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과거실적치인 X 와 Y 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기준치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추세선을 $\hat{Y} = a + bX$ 라 할 때

- 기준치 $Y_s = a + b X_p$

$$\text{- 표준편차 } S = \sqrt{\frac{\sum_{i=1}^n (Y_i - a - bX_i)^2}{n-2} \times \left\{ 1 + \frac{1}{n} + \frac{(X_p - \bar{X})^2}{\sum_{i=1}^n (X_i - \bar{X})^2} \right\}}$$

X_i = i 연도의 X 값, X_p = 평가연도의 X 값, $\bar{X}$ = X 의 평균값

Y_i = i 연도의 Y 값, $\hat{Y}$ = Y 의 추정치

a, b = 회귀분석결과에 의한 모수(parameter) 추정치

n = 회귀분석기간

- 과거실적을 기초로 하여 기준치와 표준편차를 산정한 다음 평가연도의 실적치(Y_p)가 표준정규분포상에서 어느 수준의 확률구간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한다.

평가연도의 실적치가 어느 확률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적치(Y_p)값을 z 값으로 표준화하여 z 값이 그 이상 나올 누적확률 $\{P(z \leq z_p)\}$ 로 결정한다. 표준정규분포의 표준화값(z)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z_p = \frac{Y_p - Y_s}{S}$$

Y_p = 평가연도의 Y 값, Y_s = Y 의 기준치

z_p = Y_p 에 대한 표준정규분포의 표준화값(z)

S = 표준편차

- <표 1>은 평점계산에 필요한 누적확률과 표준정규분포에 따른 표준화값(z)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누적확률과 표준화값

누적확률	P _{2.474}	P _{4.947}	P _{11.928}	P _{23.973}	P _{40.682}	P _{59.318}	P _{76.027}	P _{88.072}	P _{95.053}	P _{97.527}
표준화값 (Z)	-1.965	-1.650	-1.179	-0.707	-0.236	0.236	0.707	1.179	1.650	1.965

주 : 표준화값은 표준정규분포상 누적확률에 해당하는 점의 Z값이다.

- 확률구간 내에서의 평점(백분율) 계산은 <표 2>의 평점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 2〉 확률구간과 평점계산식

확률구간	평점 계산식 (백분율)
A ⁺	$88.89\% + 5.556 \times \frac{\text{실적치} - P_{95.053}}{P_{97.527} - P_{95.053}}$
A ⁰	$77.784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88.072}}{P_{95.053} - P_{88.072}}$
B ⁺	$66.672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76.027}}{P_{88.072} - P_{76.027}}$
B ⁰	$55.560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59.318}}{P_{76.027} - P_{59.318}}$
C	$44.448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40.682}}{P_{59.318} - P_{40.682}}$
D ⁺	$33.336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23.978}}{P_{40.682} - P_{23.978}}$
D ⁰	$22.224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11.928}}{P_{23.978} - P_{11.928}}$
E ⁺	$11.112 + 11.112 \times \frac{\text{실적치} - P_{4.947}}{P_{11.928} - P_{4.947}}$
E ⁰	$5.556 + 5.556 \times \frac{\text{실적치} - P_{2.474}}{P_{4.947} - P_{2.474}}$

- 주 : 1. P₀₀에는 Y가 00% 이상 누적확률일 때의 z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2. 평점(백분율)의 상한치 및 하한치는 각각 100%와 0%로 한다.
 3. 실적치는 평가연도의 실적치를 z값으로 표준화한 값이다.

나. 극단치 처리방법

- 추세치 평가시 통계상의 극단치(Outlier)는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더미(dummy)변수로 처리하여 감안한다. 극단치 여부는 대상년도의 실적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한 경우의 대상년도의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과거년도의 처리방법, 발생원인 등을 병행 검토하여 결정한다.

⑤ β분포 평가

- β분포 지표에 대한 평가의 경우 기준치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 기준치 } Y = \frac{Y_a + 4Y_m + Y_b}{6}$$

$$\text{- 표준편차 } S = \sqrt{\frac{(Y_b - Y_a)^2}{36}}$$

Y_a : 과거실적치중 최상위 실적치

Y_b : 과거실적치중 최하위 실적치

Y_m : 평가직전년도 실적치

- 기준치 및 표준편차의 계산을 제외한 평점계산의 일반적인 방법은 추세치 평가의 경우를 준용한다.

⑥ 목표대실적 평가

- 목표대실적 지표의 평가는 목표대실적의 비율인 목표달성도로 평가한다. 목표는 물량, 공정률,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표달성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목표달성도} = \frac{\text{실적}}{\text{목표}}$$

- 목표의 성격상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상향목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경우(하향목표)로 하여 목표달성도별 평점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만, 평점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100점, 2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begin{aligned} &\circ \text{상향목표} : 20 + 80 \times Y \\ &\circ \text{하향목표} : 20 + 80 \times \frac{1}{Y} \end{aligned}$$

주 : Y=평가년도의 목표달성도

7 기타 평가방법

- ‘충인건비관리’ 지표의 평가방법은 ‘목표부여’로 표시하되, 목표는 「‘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의 충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이며, ‘26년도 충인건비 인상률(3.5%)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인상한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초과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 다만, 일자리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충인건비 인상률의 5% 이하(3.675%)의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2점, 5%~10% 이하(3.85%)의 경우 1점, 10% 초과하는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주무부처가 평가하는 일부 지표의 계량항목은 주무부처가 사전에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해당부처에서 선정한 기관에 한한다.
- 공기업에 적용되는 ‘3. 재무성과관리’ 내 부채비율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부채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부채비율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기본득점	80점	60점	40점	20점

-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3. 재무성과관리' 내 부채/자산비율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부채/자산 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부채/자산 비율	90% 미만	90% 이상 ~ 120% 미만	120% 이상 ~ 150% 미만	150% 이상
기본득점	80점	60점	40점	20점

- 공기업에 적용되는 '3. 재무성과관리' 내 영업이익률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5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 상한과 하한은 각각 50점과 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 기본득점은 영업이익률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유형	50점	40점	30점	20점
SOC	25% 이상	10% 이상 ~ 25% 미만	0% 이상 ~ 10% 미만	0% 미만
에너지	15% 이상	5% 이상 ~ 15% 미만	0% 이상 ~ 5% 미만	0% 미만
산업진흥	25% 이상	15% 이상 ~ 25% 미만	0% 이상 ~ 15% 미만	0% 미만

- 공기업에 적용되는 '3. 재무성과관리' 내 EBITDA 대 매출액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5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 상한과 하한은 각각 50점과 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 기본득점은 EBITDA 대 매출액 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유형	50점	40점	30점	20점
SOC	35% 이상	20% 이상 ~ 35% 미만	10% 이상 ~ 20% 미만	10% 미만
에너지	35% 이상	20% 이상 ~ 35% 미만	5% 이상 ~ 20% 미만	5% 미만
산업진흥	30% 이상	15% 이상 ~ 30% 미만	5% 이상 ~ 15% 미만	5% 미만

- 공기업에 적용되는 '3. 재무성과관리' 내 이자보상비율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5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 상한과 하한은 각각 50점과 0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함.

- 기본득점은 이자보상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유형	50점	40점	30점	20점
SOC	10배 이상	5배 이상 ~ 10배 미만	2배 이상 ~ 5배 미만	2배 미만
에너지	5배 이상	2.5배 이상 ~ 5배 미만	1배 이상 ~ 2.5배 미만	1배 미만
산업진흥	15배 이상	10배 이상 ~ 15배 미만	5배 이상 ~ 10배 미만	5배 미만

-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3. 재무성과관리' 내 자체수입증가율 지표는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자체수입비율이 속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에 따른 자체수입비율

자체수입 비율	45% 이상	40% 이상 ~ 45% 미만	35% 이상 ~ 40% 미만	35% 미만
기본득점	80점	60점	40점	20점

제2절 계량지표에 대한 공통적용사항

- 다음에 제시된 공통적용사항은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예외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용어의 정의

(1) 부가가치

-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인건비 : 인건비의 정의를 참조하되, 계정과목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은 포함. 다만,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 순금융비용 :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 임차료 : 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 세금과공과 :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 감가상각비 : 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 다만,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편람에 부가가치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거나, 통제불능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 구성항목에 대하여 기관별 편람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 위의 공통산식이 아닌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 고려사항을 적용한다.

- 위 통제불능 사유의 특례로 공공요금 관련기관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손실분 혹은 원가하락요인으로 인한 매출과대계상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부가가치산정 시 가산 혹은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보전제도의 취지,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 기여도, 원가 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적용여부를 전년도와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공공요금 관련기관은 물가안정법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는 공공요금 관련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 통제불능사유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산정 시 가산한다.

- 통제불능사유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 = 적정매출액-실제매출액-정부지원액
- 적정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1+당해년도 원가상승률×(1-0.1)]
- * 정부지원액은 가격통제에 따른 손실보전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10%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기관이 부담한다.
- 당해년도 원가상승률 =
$$\frac{\text{당해년도 매출원가}^* - \text{전년도 매출원가}}{\text{전년도 매출원가}}$$
- *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자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반영된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통제불능사유 해소 등으로 인해 원가하락 요인으로 인한 매출액 과대계상분은 다음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 산정 시 차감한다.

- 통제불능사유 해소 등으로 인한 매출액 과대계상분 = 실제매출액 - 적정매출액 + 정부지원액
- 적정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1-당해년도 원가하락률×(1+0.1)]
- 당해년도 원가하락률 =
$$\frac{\text{전년도 매출원가}^* - \text{당해년도 매출원가}}{\text{전년도 매출원가}}$$
- *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자회사의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반영된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 통제불능사유로 매출액을 조정하는 경우 목표부여 방법의 기준치는 직전 연도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조정전 수치)중 최대값으로 하고 표준 편차는 과거 연도 실적치(조정후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 총자산 등

- 총자산, 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의 이자비용 등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자본생산성’, ‘총자산 회전률’, ‘ROA 글로벌 경쟁력’ 지표의 총자산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하되, 건설중인자산은 제외한다. 다만, 반기(분기)검토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초잔액, 반기(분기)말잔액,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할 수 있으며, 평균 처리원칙은 매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으로 인해 총자산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자본생산성, 총자산회전율 등의 비교가능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 지표나 ‘EBITDA 대 매출액’ 지표 등과 같이 영업이익을 평가하는 지표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 ‘부채비율’ 지표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은 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단, 자산보다 부채가 큰 기관, 자본금이 없는 기관, 금융성기관 등의 경우에는 부채/자본비율 대신 부채/자산비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채/자산비율을 사용할 경우, 부채는 당해연도말, 자산은 직전년도말 금액을 사용하되,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본의 증가(감소)는 자산의 증가(감소)로 처리할 수 있다.

(3) 순사업비

-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의 평가대상인 순사업비는 총수익에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총수익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사업수익)과 영업외수익(사업외수익)의 합계
- 인건비 :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인건비(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포함된 항목은 제외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4) 사업비

- ‘사업비집행률’ 지표의 평가대상인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와 자본예산의 합계로, 총세출예산(자본예산 포함)에서 인건비(일반관리비에 포함된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 경비 및 사업비성 경비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자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포함되며, 직접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그 인건비는 제외한다.
- 직접사업비는 사업비 예산집행액 중 기관의 고유목적사업과 정부 출연 또는 보조로 인한 특정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업활동의 산출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출하는 사업부서의 비용을 말한다. 또한, 사업비 예산집행액에서 사업비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와도 동일한 개념이다.
- 사업비 예산현액은 사업비 및 자본예산과 관련한 세출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사용액 + 예산의 전용 등 증감액 + 국가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지출액으로 하며,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은 낙찰차액 및 기관 내부 재원 조성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예산절감액은 제외한다.
- 사업비 집행액은 사업비예산현액 중 집행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세출예산서에 별도의 사업비 항목이 없고 인건비와 경비만이 있거나, 사업비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가 사업비성 경비에 해당되어 직접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체예산을 사업비로 본다.

(5) 자체수입

- ‘자체수입증가율’ 지표의 평가대상인 자체수입액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체수입액)」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민간이양 등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액은 감안하여 평가한다.

(6)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명세서(또는 이와 유사한 명세서)상의 경비 또는 준정부기관의 사업원가명세서상의 사업비성 경비 및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에서 다음 항목 등을 제외한다.
- 인건비 [단,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 인건비, 자산항목으로 대체된 비정규직 인건비 포함), 비상임이사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하되 이를 대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법인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표시된 계정과목 명칭이 다를 경우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무원 수준 내 집행하는 출산축하금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 감가상각비(제조원가, 사업비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에 한함)
- 교육훈련비
-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 세금과공과 [국세 · 지방세(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및 법령에 의한 부담금(벌과금 성격의 부담금은 제외)만 해당]
- 수선유지비 [공기업의 주요사업용자산(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 등) 및 준정부기관의 국가기반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의함)과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이 관리하는 국가시설물(국유재산)에 대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법령(기관 사규는 제외)에 의한 강제적인 수선유지비만 해당]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비용(정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소비자 물가 인상률 등의 기준에 따른 추가비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 사업비성 경비는 사업비 예산집행액 중 경영 또는 사업 지원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세금과공과, 통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홍보비), 관서운영비, 임차료, 대손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비정규직 인건비는 경영평가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에 포함한다.
- 청년인턴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비교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일반관리비 항목에의 포함여부는 계정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비교기간 중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7) 인건비

- 인건비는 건설중인 자산, 당기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혹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특별손실포함)에 포함된 임직원(일용잡급 포함)에 대한 급여, 임금, 제수당 등과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사실상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및 경영평가성과급 부분을 포함한다.
-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위한 총인건비의 정의는 「'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른다.
 -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휴일근무·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최초지정된 연도에 정부예산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한다.

- 해외근무수당 등은 총인건비에 포함하되, 공무원 수준 이내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환율변동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통화별 현지화표시 인건비지급액에 통화별 평가대상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통화별 원화표시 인건비 지급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원화표시 해외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청년인턴 인건비는 총인건비인상률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급별 인원변동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변동이 있는 해당 직급내의 실질 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통합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임금을 적용하여 증원소요인건비를 계산한다.

(8) 평균인원, 금액 등의 계산

- 평균인원, 평균재고자산, 평균운전자본 및 차입금 평균잔액 등은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군입대·육아휴직 대체 충원자와 휴직자가 중복될 경우, 한시적(3년, 육아휴직자는 5년)으로 대체 충원자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 평균인원은 정규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27호)’ 제2조 제2호에 의한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 ‘한시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 평균인원 산정시 유급휴직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청년인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노동생산성 등 지표의 점수 산출시) 비교가능성 등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기준치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노동생산성 지표의 평균인원 산출시 건설중인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에 대응되는 인원은 제외할 수 있다.
-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균인원 산정 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은 포함)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특성과 제외 사유를 기관별 편람에 명시한다.

2. 평가방법 적용요령

(1) 지표값

- 지표값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수수료,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이 가격결정이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격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일부 평가항목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불변화 지수로는 평가항목에 따라 국민총량지수와 기관개별지수로 구분하여 적용한 지수를 사용한다.
- 불변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가연도 실적치를 기준연도의 불변화지수로 나누어 불변 실적치로 구한다. 구체적인 불변화 방법은 각 기관별 평가편람에서 정한다.

(2) 통제불능성의 판단

- 통제불능성은 지속가능성, 예측성, 반복성,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예시) 임시거액의 투자자산처분 손익 등은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에 가감하여 평가하되, 동일사항에 대해 평가에 기반영된 사항은 실적치의 연속성, 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 중 동질성 유지

- 경영성과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수입·비용 및 인력 등의 변화, 예상치 않은 임시 대규모의 거래 및 정책사업, 정부정책 이행, 대외관계의 변화, 전염병, 상품·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경영환경의 극단적 변화와 혁신성장 추진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비용·수입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부정책에 따른 재정 조기집행, 공공부문 투자확대에 따라 부채증가 등 추가적인 경영부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계량평가시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 매출액, 자산, 부채, 금융비용, 평균인원 등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성과 영향을 조정하여 평가할 경우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 등 비교기간중 동질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시점에서 조정하지 않은 통제불능사유를 발생 이후 시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혹은 불리한 방향으로 이중조정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3) 목표부여지표의 경우, 목표설정 당시 근거로 한 향후 연도 실적 예상치 (기관측 제시)가 왜곡 제시되었음이 추후 평가시점에서 확인될 때에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당초 목표치 혹은 목표부여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최고목표 또는 최저목표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목표 또는 최저목표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4) 글로벌실적비교 평가방법은 기관이 작성·제출한 실적보고서상에 글로벌 경쟁기관 등의 최근 실적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의 당해 연도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관은 동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5) 추세치 평가와 β 분포 평가방법은 기관의 과거실적과 최종년도 실적의 예상치 (기관제시)에 근거하여 추세식의 통계적 유의성과 특점의 달성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추후 실적 평가시에 평가방법을 결정한 근거가 된 기관제시 실적이나 예상치가 현저히 왜곡 제시되어 기관에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는 경영평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편람상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수정 혹은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설립관련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사업의 불연속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표 평가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최고목표 또는 최저목표가 발생 불가능한 수준인 0미만이거나 1(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목표 또는 최저목표를 '0' 또는 '1(100%)'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6) 공정률 지표의 경우 경영평가의 목적이 특정연도의 경영실적 평가이므로 누적 공정률이 아닌 당해연도 공정률의 목표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으로 인해 실적치의 연속성·비교가능성·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계량평가방법 및 기준 적용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8)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동경기부(실업팀)를 창단하는 경우에는 창단 후 3년 동안 동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정규직 인건비, 경비 등을 평균 인원 등에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9) 경영실적의 연속성·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소송 관련 충당금 전입액 등은 확정판결시까지 유예하여 평가할 수 있다.

(10) 회계기준으로 IFRS(또는 국가회계기준)를 도입한 기관은 IFRS(또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되, 연결재무제표 대신 기존 개별재무제표와 유사하게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평가를 반영한 수정재무제표(평가용 IFRS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IFRS에 따른 회계원칙 중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평가시 조정방안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	○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연차수당과 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포상 등)는 발생주의가 아닌 과거 K-GAAP에서와 동일하게 현금주의(확정채무)로 평가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종업원 저리대여금	○ 종업원 저리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인식하는 '종업원급여'는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조정한다. - 단, 노동생산성 등 타 지표에서는 IFRS에 따른 발생주의로 평가한다.

(11) 신규로 추진되는 정부위탁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인력 등은 동 사업의 성과발생 이후(사업추진 2년 후, 3년차부터 반영)부터 평가할 수 있다.

(12) 관련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조직·인력운용상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외부 평가·감사 결과 등의 연계·활용

1. 필요성

-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 등을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정부평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2. 연계·활용방안

- 국가재정법에 의한 평가 중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비계량·계량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점수를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의 점수로 활용한다.

*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그밖에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결과 중 평가대상연도의 경영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기관간 형평성, 세부평가내용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타 법령등에 의한 평가·감사결과는 5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 4 장

평가결과 등 후속조치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다만, 일부 지표의 점수산출을 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경영관리 ‘안전 및 책임경영’의 세부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각 세부평가내용 중 일부 항목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세부평가지표 내 측정이 가능한 타 세부평가내용을 통해 지표의 점수를 산출한다.
- 기관의 평가결과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한다.

등 급	수 준 정 의
탁월 (S)	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A)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B)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C)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D)	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등급구간은 개별평가, 유형별 비교평가, 비교평가로 각각 구분한다.
- 개별평가 등급구간은 구간별로 일정한 점수 범위를 설정한다.
 - 유형별 비교평가 등급구간은 당해연도와 과거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대·내외 여건 등 유형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등급 구간별 기관 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 비교평가 등급구간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을 활용한다.

등급구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개별평가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유형별 비교평가	0~1개	1~3개	2~4개	1~3개	0~2개	0~1개
비교평가	당해연도 경영실적 평가점수 및 분포 등 활용					

-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시 공기업(상장)은 개별평가 등급구간에 따르고, 공기업(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은 유형별 비교평가 등급구간에 따르고, 준정부기관은 비교평가 등급구간에 따른다.

제2절 후속조치 등

1. 성과급 지급

-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고려할 수 있다.
- 당기순손실, 고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우수·부진기관 등에 대한 조치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 등에 대해서 경영개선계획을 당해연도 9월까지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단,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으로 기관장·상임이사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임기간에 따른 예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영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조치

-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귀책사유 및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련되는 지표의 하향조정(최대 0점)
 - 당초 결정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삭감
 - 해당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요청
-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귀책사유 및 책임 정도를 감안하여 윤리경영 지표를 하향조정(최대 0점)할 수 있다.

4.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사회공헌에 대한 조치

-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재난·사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공기관(임직원 포함)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평가위원과 개별 접촉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기관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 국가경제 기여, 공공복리 증진, 국가이미지 제고 등 공공기관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공헌 정도 및 기관 기여도 등을 고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상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준수한다.

5. 기능조정 미이행 기관에 대한 조치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기능조정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진 사유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6.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신설, 기관유형 변경 등에 따라 최초로 평가받는 기관에 대해 평가제도, 경영관리 등에 대한 기초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기관요구가 있을 경우 기관의 경영목표·전략, 재무·인사 등 경영기법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실적부진기관 및 다년간 실적부진 상태가 지속되는 기관에 해당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컨설팅 결과를 경영개선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평가단은 차년도 평가시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제 2 편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편람

제1절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개요

1. 의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장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이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이사회)와 기관장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기반으로 경영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성과목표와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의 평가 대상은 평가대상년도에 재직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며,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단,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률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라 기관장의 경영성과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편람을 작성한다.

2. 평가절차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 추진할 3년 단위 성과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년 단위 실행계획,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경영성과 계약서 작성양식 및 절차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률 제47조 등에 따라 2027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시기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장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공공기관장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장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6월 20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장 리더십-기관장 경영계약 이행 성과-기관 경영성과』의 3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평가의 목적 및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기관장 리더십	- 기관의 설립목적 구현 및 생산성 제고와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조직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 국정 과제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 안전경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 성과	- 기관장 성과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의 합리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문제해결의 합리성,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의 효율성, 성과 목표치 달성도 및 질적 우수성 등
기관 경영성과	- 기관평가 결과 반영 *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노사관계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계	비계량	계량
기관장 리더십	기관 설립목적 구현 및 생산성 제고와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	6	6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6	6	
	조직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	6	6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제 이행	6	6	
	안전경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6	6	
	소 계	30	30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 성과	기관장 성과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의 합리성	6	6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6	6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문제해결의 합리성	6	6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의 효율성	6	6	
	성과목표치 달성	26	13	13
	- 성과목표치 달성도	(13)		(13)
	- 성과목표치 달성의 질적 우수성	(13)	(13)	
	소 계	50	37	13
기관 경영성과	기관평가 결과 일부 반영 *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재무예산관리, 노사관계	20		20
	소 계	20		20
전체 합계		100	67	33

제3절 평가지표별 평가기준·방법

- 비계량 평가지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비계량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세부평가내용으로 평가한다.

① 기관장 리더십

평가지표	기관 설립목적 구현 및 생산성 제고와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비계량 6점)
지표정의	기관의 설립목적 구현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우선순위 조정 및 사업전략 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자율적 경영혁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③ 기관의 주요 현안 및 미래대응 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비계량 6점)
지표정의	이사회 기능 활성화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등을 활용한 이사회의 전략적 경영자문, 경영진 감시 및 리스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장 노력과 성과 ③ 비상임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조직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비계량 6점)
지표정의	조직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을 발휘하며, 협력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장의 소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조직구성원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및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와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제 이행(비계량 6점)
지표정의	정부가 수립한 국정과제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제 이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체계적인 전략 개발, 이행계획 마련·추진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안전경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비계량 6점)
지표정의	기관의 안전경영상 약점 및 위험요인을 극복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장이 중점 실시한 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기관의 안전경영상 약점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기관의 안전경영상 약점 및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활동 실적과 성과

②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 성과

평가지표	기관장 성과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의 합리성(비계량 6점)
지표정의	기관장이 임기 중 중점 추진할 3년 단위 성과목표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해당년도 실행계획이 적절하게 설정·수립되었는가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기관장 성과목표가 기관의 설립목적, 중장기 미션 및 비전, 핵심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기관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성과목표인가 여부 ② 기관장 경영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여부

평가지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비계량 6점)
지표정의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의 평가대상년도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기관장 경영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영성과목표별로 개발된 성과지표가 측정가능하며, 경영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대표성·중요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여부 ②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기관의 과거 관련 경영실적자료 분석, 중장기 경영전략의 전사 경영목표, 정부의 정책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여부

평가지표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문제해결의 합리성(비계량 6점)
지표정의	평가대상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기관장이 중점적으로 수행한 활동 실적이나 장애요인·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연차별 실행계획의 이행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장애요인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연차별 실행계획 이행의 효율성(비계량 6점)
지표정의	평가대상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절감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기관장 경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연차별 실행계획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의 역량 확충 및 외부자원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평가지표	성과목표치 달성도(계량 13점)
지표정의	평가대상년도 경영목표별 성과지표 중 계량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치 달성도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산식 = { $\sum$ 계량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도(%)} / 계량 성과지표 수 ② 각 계량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산정

평가지표	성과목표치 달성의 질적 우수성(비계량 13점)
지표정의	평가대상년도 경영목표별 성과지표 중 계량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달성 수준의 질적 우수성과 비계량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를 비계량적으로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계량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및 초과달성 수준, 성과지표별로 창출된 경영성과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목표 달성의 질적 우수성 ② 비계량 성과지표별 목표치 달성 수준 및 비계량적 성과의 우수성

③ 기관 경영성과

평가지표	기관 경영성과(계량 20점)
지표정의	기관장 리더십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평가지표 및 기관장 리더십 행사를 통해 창출된 기관의 경영성과를 선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평가지표의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세 부 평가내용	$\text{산식} = \sum(\text{전략기획(4점)} \times \text{기관평가결과(득점률)}) + (\text{윤리경영(계량지표 제외)(3점)} \times \text{기관평가결과(득점률)}) + (\text{상생·협력 및 지역발전(3점)} \times \text{기관평가결과(득점률)}) + (\text{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점)} \times \text{기관평가결과(득점률)}) + (\text{재무예산관리(3점)} \times \text{기관평가결과(득점률)}) + (\text{노사관계(3점)} \times \text{기관평가결과(득점률)})$

제4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의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기관장의 종합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등 급	수 준 정 의
우수 (80점이상)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기관장의 역할 및 노력이 발휘되어 우수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60점이상 ~8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기관장의 역할 및 노력이 발휘되어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50점이상 ~60점 미만)	일부 경영영역에서 기관장의 역할 및 노력이 발휘되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50점미만)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기관장의 역할 및 노력이 발휘되지 못하여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관장의 역할 및 노력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제5절 후속조치 등

-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 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표를 하향조정한다(최대 0점).

제 3 편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편람

제1절 직무수행실적 평가개요

1. 의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감사 직무수행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수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 동 제도의 평가 대상은 평가대상년도에 재직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이며,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감사원 평가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만, 평가대상연도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임감사·감사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편람을 작성한다.

2. 평가절차

- 상임감사·감사위원은 2027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시기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직무수행실적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감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직무수행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감사평가단장은 직무수행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감사·감사위원에 관련 자료(감사조서, 감사일지, 이사회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임감사·감사위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감사평가단장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감사조서, 이사회 회의록 등)를 기초로 하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감사평가단장은 설문지 조사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감사평가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6월 20일까지 평가대상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마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확정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기평가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시평가의 실시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절차,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무·책임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 ii)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상 직무기준*을 위반한 경우
 - * 감사의 독립성, 업무자세, 관계법령·기준 준수 의무 등의 의무·책임
 - iii) 기타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평가지표 체계

1. 기본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직무수행성과』의 2개 범주로 구성한다.

○ 각 범주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범주	주요 평가내용
감사역량	감사의 전문성 확보,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직무수행성과	내부통제 기능 강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평가결과 반영

2.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계	비계량	계량
감사역량	감사의 전문성 확보	25	25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25	25	
	소 계	50	50	
직무수행성과	내부통제 기능강화	20	20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반영)	25		25
	기관의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평가결과 반영)	5		5
	소 계	50	20	30
전체 합계		100	70	30

제3절 평가지표별 평가기준·방법

○ 비계량 평가지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비계량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세부평가내용으로 평가한다.

- 다만,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은 감사원에서 수행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반영하며, “기관의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한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체감도 및 부패실태 평가결과가 없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지표에 대한 배점은 제외하고 합계를 산출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한다. 다만, 감사원 혹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의 일환으로 해당연도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해당연도 평가결과로 간주한다.

평가지표	감사의 전문성 확보(비계량)
지표정의	감사의 전문성 확보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감사는 감사전문가를 확보하고 비상임감사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감사의 전문성 확보 및 노력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감사실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감사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 감사실의 감사전문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감사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노력이 있었는가? - 감사실의 전문성 확보 및 노력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지표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비계량)
지표정의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감사의 윤리기준 준수 노력은 적절한가? - 감사의 윤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어떠한가? - 감사부서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무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윤리기준 준수노력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감사의 활동과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윤리경영을 위한 조직의 독립적인 활동과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주기적인 보완 수정과 실질적인 교육 및 관련제도가 구체적으로 계획 시행되고 있는가? - 윤리경영 지원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감사의 독립성 확보 노력은 적절한가? -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독립성과 감사부서원의 인사 및 업무평가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 독립성 확보에 대해 적절한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을 통한 학습과 개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기관의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는 적절한가? - 채용비리, 양성평등위반,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조세포탈, 회계부정, 안전·환경 법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는가? -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직무해태 등 감사의 귀책은 없는가?

평가지표	내부통제 기능강화(비계량)
지표정의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의 적정성,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 활동에 관하여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① 감사계획과 예방적 내부통제 진단활동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감사업무의 조직적·제도적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이 적절히 선정되어 있고 중장기 감사계획 및 연간 감사계획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 기관의 중장기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에 대비하는 현안과제의 선정과 추진에 대한 감사의 노력이 적절한가? - 기관의 고유위험에 대한 분석 수준이 적절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내부통제구조의 설계, 운영 및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②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와 개선노력은 적절한가? -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중요 점검사항이 적절히 감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감사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어떠한가? -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여부에 대한 진단 결과와 개선사항의 도출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어떠한가? - 중장기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내부통제구조에 적절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감사의 경영자에 대한 견제 및 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졌는가? ③ 내부감사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활동은 적절한가? -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과는 어떠한가? ④ 방만경영 예방, 적발을 위한 감사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을 위한 관리시스템(정부 경영지침 준수 등을 포함한 목표 및 방법, 성과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가? - 방만경영 예방 및 적발 감사활동을 통한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성과는 어떠한가? - 방만경영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어떠한가?

제4절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이행 실적의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종합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이 6등급으로 구분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하여 평가결과 확정시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등 급	수 준 정 의
탁월 (S, 90점이상)	모든 감사활동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탁월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우수 (A, 80점이상 ~90점 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양호 (B, 70점이상 ~80점 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보통 (C, 60점이상 ~70점 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일반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활동 이루어지는 단계
미흡 (D, 50점이상 ~60점 미만)	일부 감사활동 영역에서 일반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아주미흡 (E, 50점미만)	대부분의 감사활동 영역에서 감사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감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제5절 후속조치 등

- 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결정 등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감사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 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표를 하향조정한다.(최대 0점)

[별 첨]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편람

제 1 절

공 기 업

상 장 형 유 형

1. 강원랜드(주)	106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20
3. 한국가스공사	132
4. 한국전력공사	152
5. 한국전력기술(주)	172
6. 한국지역난방공사	186
7. 한전KPS(주)	204

강원랜드(주)

강원랜드(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7.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5) 이사회 구성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영업이익률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9.5	22.5	52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카지노 운영사업			13
	(1) 내국인 카지노 사업 건전성 제고		2	
	(2) 게임기구 당 매출액(생산성)		4	
	(3) 카지노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복합리조트 운영사업			13
	(1) 리조트 매출액		3	
	(2) RevPAR(객실당 수익)		2	
	(3) 리조트 고객 안전 관리		2	
	(4) 복합리조트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11
	(1) 석탄산업 전환지역 생활인구 증대		1	
	(2) 석탄산업 전환지역 상생기여액		2	
	(3) 석탄산업 전환지역 경제활력 제고		3	
	(4)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3
	주요사업 합계	21	19	40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혁신 프로젝트 합계	8		8
전체 합계		58.5	41.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이사회 구성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카지노 운영사업 [13점]

사업정의	카지노 운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체계적 중독관리로 카지노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카지노 게임문화를 정착시키는 사업

(1) 내국인 카지노사업 건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시행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관리 현황 및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통해 내국인 카지노사업의 건전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상위 득점 기관 최저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하위 득점 기관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내국인 카지노사업 건전성 제고} = 20 + 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내국인 카지노사업 건전화 평가 득점}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2) 게임기구 당 매출액(생산성)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4점)

정의	카지노 게임기구당 발생한 매출액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여 기관의 수준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글로벌 Top5 카지노의 게임기구 당 최고 매출액 최저목표 : 글로벌 Top5 카지노의 게임기구 당 최저 매출액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게임기구 대수 당 매출액} = \text{머신기기 당 매출액 (1.6점)} + \text{테이블 게임기기 당 매출액 (2.4점)}$ $\text{※ 게임기구 당 매출액} = \frac{\text{게임기기 연간 매출액}}{\text{게임기기 대 수}}$ $\text{② 평가산식} = 20 + 80 \times \frac{\text{강원랜드 실적-최저목표}}{\text{최고목표-최저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 카지노 게임기구 매출액은 카지노 관리 시스템(CMS)의 매출액을 사용하고, 게임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카지노 영업 기구를 말한다. • 글로벌 비교 기업의 실적치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Annual Report 상 카지노 매출 실적과 운영 게임기구 수를 사용하고, 이때, 매출 실적은 당해연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게임기구당 매출액 산정시 글로벌 비교대상 기업(상장기업)과의 운영 형평성 확보를 위해 1시간당 게임기구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며, 비교시 1영업시간은 글로벌 비교대상 기업 24시간, 강원랜드 20시간(정부 운영 허가시간)으로 하고, 게임기구 수는 허가 받은 기구 중 1평균 운영 기구 수로 한다. • 글로벌 비교대상 기업(상장기업)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자료에 따른 세계 Top10 기업 중 사업의 유사성 및 데이터의 신뢰성(Annual Report)이 확보되는 기관 5개(MGM, Las Vegas Sands, Wynn Resorts Limited, 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imited, SJM Holdings)로 한다. • 글로벌 비교대상 기업(상장기업)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상장 폐지, 당해연도 미운영 등) 제외하고 실적을 비교함.

(3) 카지노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복합리조트 운영사업 [13점]

사업정의	차별화된 복합리조트 콘텐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중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리조트 운영을 통해 리조트 매출, 방문객 증대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 리조트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사계절 복합리조트 위상을 확립하고자 당사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및 레저 부문 등의 매출액 향상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평가실적 = 당해 연도 리조트 매출액 ② 리조트 매출액 : 총 매출액 중 카지노 매출액을 제외한 리조트 전체 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리조트 매출액은 기말연결감사보고서내 주석(영업부문)에 명기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2) RevPAR (객실당 수익)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RevPAR(Revenue Per Available Room) 실적을 글로벌 리조트를 운영하는 글로벌 상장기업의 실적과 비교하여 기관의 객실당 수익 성장률 수준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글로벌 Top5 복합리조트가 보유한 글로벌 체인 호텔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RevPAR 성장률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평균 값 최저목표 : 기준치의 최저 값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평가산식 $= 20 + 80 \times \frac{\text{강원랜드 RevPAR 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RevPAR(전년대비 성장률) 실적 $= \frac{\text{당해연도 RevPAR} - \text{전년도 RevPAR}}{\text{전년도 RevPAR}}$ ③ RevPAR = ADR(연평균 객실가격) × 투숙률(OCC) - $\text{ADR(₩)} = \frac{\text{당해연도 총 객실 매출}}{\text{당해연도 판매 객실 수}}$ - $\text{OCC(\%)} = \frac{\text{판매 객실 수}}{\text{전체 객실 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글로벌 비교대상 기업(상장기업)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자료에 따른 세계 Top10 기업 중 사업의 유사성 및 데이터의 신뢰성(Annual Report 내 RevPAR 확인)이 확보되는 5개(MGM, Las Vegas Sands, Wynn Resorts Limited, 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imited, SJM Holdings) 기업이 관리하는 글로벌(체인) 호텔 20개로 한다. <글로벌 Top5 기업의 글로벌(체인) 호텔> <table border="1"> <thead> <tr> <th>글로벌 Top5 복합리조트</th><th>글로벌 체인 호텔</th></tr> </thead> <tbody> <tr> <td>MGM</td><td>MGM Resorts International</td></tr> <tr> <td>Las Vegas Sands</td><td>Venetian, Londoner, Parisian, Plaza and four season, Sands Macao, Marina Bay</td></tr> <tr> <td>Wynn Resorts Limited</td><td>Palace, Macau, Las Vegas, Encore Boton Habor</td></tr> <tr> <td>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imited</td><td>Altira, City of Dreams, Studio City, City of dreams manila, City of dreams Mediterranean and other</td></tr> <tr> <td>SJM Holdings</td><td>Jai Alai, Sofitel at ponte 16, Grand lisboa palace resort, Grand lisboa</td></tr> </tbody> </table> - 글로벌 비교대상 기업(상장기업)의 실적치는 가장 최근 발표된 Annual report 실적 사용 - 글로벌 비교대상 기업(상장기업)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상장 폐지, 당해연도 미운영 등) 제외하고 실적을 비교함. - RevPAR 산정 시 리조트 관리시스템 (RMS) 내에서 확인되는 그랜드 호텔 객실 수 및 매출액을 사용한다. - 총 객실 매출은 객실 기타부분 매출을 제외한 순수 객실 판매 매출로 산정하고 가용 가능 객실 수는 정비 및 판매불가 객실 수를 제외한 실제 판매 가능한 객실로 산정한다.	글로벌 Top5 복합리조트	글로벌 체인 호텔	MGM	MGM Resorts International	Las Vegas Sands	Venetian, Londoner, Parisian, Plaza and four season, Sands Macao, Marina Bay	Wynn Resorts Limited	Palace, Macau, Las Vegas, Encore Boton Habor	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imited	Altira, City of Dreams, Studio City, City of dreams manila, City of dreams Mediterranean and other	SJM Holdings	Jai Alai, Sofitel at ponte 16, Grand lisboa palace resort, Grand lisboa
글로벌 Top5 복합리조트	글로벌 체인 호텔												
MGM	MGM Resorts International												
Las Vegas Sands	Venetian, Londoner, Parisian, Plaza and four season, Sands Macao, Marina Bay												
Wynn Resorts Limited	Palace, Macau, Las Vegas, Encore Boton Habor												
Melco Resorts & Entertainment Limited	Altira, City of Dreams, Studio City, City of dreams manila, City of dreams Mediterranean and other												
SJM Holdings	Jai Alai, Sofitel at ponte 16, Grand lisboa palace resort, Grand lisboa												

(3) 리조트 안전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리조트 이용고객 및 근로자 등의 재해율 감소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근로자 재해율 평점 × (0.4)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0.2) +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0.4)										
	② 근로자 재해율(%)=인명사고(근로자) /상시근로자수(기관임직원+비정규직 인원 수)										
	③ 발주공사 재해율(%)=인명사고(발주공사)/발주공사 근로자 수										
	※ 인명사고(근로자·발주공사 사고) 산출시 고려사항										
	- 인명사고는 사고 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한 사망+중대재해(중상)+일반재해(경상 및 기타) 사고의 합계로 산정함										
	1) 가중치 기준										
	<table><tr><td>구분</td><td>사망사고</td><td>중대재해(중상)</td><td>일반재해(경상)</td><td>기타</td></tr><tr><td>가중치</td><td>10</td><td>3</td><td>1</td><td>0.5</td></tr></table>	구분	사망사고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	기타	가중치	10	3	1	0.5
	구분	사망사고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	기타						
	가중치	10	3	1	0.5						
	2) 근로자 및 발주공사의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호'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④ 국민·시설재해율(%)=[인명사고(국민)+시설(설비)사고] /상시 근로자 수(기관 임직원+비정규직 인원 수)											
※ 인명사고(국민·시설사고) 산출시 고려사항											
- 인명사고는 사고 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한 사망+중대재해(중상)+일반재해(경상 및 기타) 사고의 합계로 산정함											
1) 국민사고의 가중치 기준											
<table><tr><td>구분</td><td>사망사고</td><td>중대재해(중상)</td><td>일반재해(경상)</td><td>기타</td></tr><tr><td>가중치</td><td>10</td><td>3</td><td>1</td><td>0.5</td></tr></table>	구분	사망사고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	기타	가중치	10	3	1	0.5	
구분	사망사고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	기타							
가중치	10	3	1	0.5							

측정 산식
및 변수

1-1) 보험 지급액에 따른 국민의 사망, 중상, 경상, 기타 항목의 가중치 적용 기준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1-2)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경우의 가중치 적용 기준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시설사고(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사고 건수)의 가중치 적용 기준

구분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중대재해(중상)가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일반재해(경상)가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가중치	10	5	3

$$⑤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⑥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기관의 근로자 (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국민·시설 재해율 산정을 위한 분모 인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임직원 및 비정규직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국민 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국민시설 재해율 지표의 주된 실적임을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대체하여 대국민 이용시설 관련 인자 1종을 분모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 발주공사 근로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하고,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4) 복합리조트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11점]

사업정의	석탄산업 전환지역 산업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생활환경,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1) 석탄산업 전환지역 생활인구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의	석탄산업 전환지역 인구소멸 대응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노력과 기여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하이원포인트 사용 지역가맹점 비율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평가실적 =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인구대비 기관이 창출한 생활인구 비율(0.5점) + 하이원포인트 실사용 지역가맹점 비율(0.5점) ②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인구대비 기관이 창출한 생활인구 비율 = $\frac{\text{기관이 창출한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활인구 수}}{\text{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인구 수}}$ ③ 하이원포인트 실사용 지역가맹점 비율 = $20+80 \times \frac{\text{하이원포인트 정산업체 수}}{\text{지역가맹점 등록업체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창출한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활인구 수는 기관의 노력을 통해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강원랜드/협력업체 근로자, 공사/용역 근로자, 하이원포인트 사용고객으로 한다. • 협력업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기관에 협력하는 자회사, 사회적기업 및 민간위탁 용역업체를 말한다. •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석탄산업 전환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진흥지구 시·군에 한함 • 하이원포인트 실사용 지역가맹점은 하이원포인트 지역가맹점 등록업체 중 정산거래가 월 1건 이상 있는 업체를 말한다.
(2) 석탄산업 전환지역 상생기여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석탄산업 전환지역 영세상인, 중·소업체의 경제력 제고 및 지역주민 생활향상을 위한 기여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석탄산업 전환지역 상생기여액 = 구매계약대금지급액 + 사회공헌사업비집행액 ② 구매계약대금지급액은 아래 항목의 합으로 한다. - 지역업체 구매·공사 집행금액(물품/공사) - 지역업체 아웃소싱 집행금액(용역) ③ 사회공헌사업비집행액은 수혜자가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 대상이거나 추진사업이 석탄산업 전환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에 소요된 당해연도 기부금의 집행액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석탄산업 전환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에 한함 • 지역업체는 주된 영업소가 상기 석탄산업 전환지역 내 소재한 업체를 말함

(3) 석탄산업 전환지역 경제활력 제고 (평가방식 : ① 목표대실적 ②, ③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유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영세식당의 매출 증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창업지원업체 생존율 ②, ③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100% ②, ③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창업지원업체 생존율(1점) + 영세식당 총 매출액(1점) + 사회통합형 일자리 고용자수(1점) ② 창업지원업체 생존율 = $20+80 \times \frac{\text{연초 생존업체 수} - \text{당해연도 폐업업체 수}}{\text{연초 생존업체 수}}$ ③ 영세식당 총 매출액 = 현재까지 기관이 지원한 영세식당의 당해연도 총 매출액 ④ 사회통합형일자리 고용자 수 = 취약계층 사회통합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당해연도에 창출된 일자리에 고용된 자 ⑤ 창업지원업체는 기관이 지원하여 창업한 사회적 경제업체를 말한다 ⑥ 영세식당은 기관이 석탄산업 전환지역 내 '작은식당 응원프로젝트, 정태영삼 맛캐다!' 지원사업을 통해 재개장한 식당을 말한다. ⑦ 사회통합형일자리 고용자 수는 석탄산업 전환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기관이 직접 창출한 지역사회의 공익적 일자리의 고용자 수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회통합형일자리 석탄산업 전환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의 대상기준은 아래와 같다. • (노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고령자로서 일자리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신체 활동이 가능한 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한 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자로서 석탄산업 전환지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4세 이하의 경력단절여성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강원도청년기본조례 제3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사회통합형일자리 고용자는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한다. (다만, 단기간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등 적용제외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한다.) • 석탄산업 전환지역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에 한함
(4)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혁신 프로젝트

- ①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7.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5) 이사회 구성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영업이익률		3.5	
	㉢ 부채비율		1	
	㉣ 이자보상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9.5	22.5	52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카지노 사업 미래경쟁력 강화			19
	(1) 카지노 사업 수익 창출		3	
	(2) 해외유치고객 게임 증대 노력		3	
	(3) 고객 서비스 향상		2	
	(4) 스마트 거래 전환율		2	
	(5) 카지노 사업 미래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관광산업 지원 활성화			10
	(1) 외래 관광객 유치 기여		3	
	(2) 융복합 관광 지원 성과		2	
	(3) 관광산업 지원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			8
	(1)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성과		2	
	(2) 카지노 안전관리 성과		2	
	(3)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3
	주요사업 합계	21	19	40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혁신 프로젝트 합계	8		8
전체 합계		58.5	41.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이사회 구성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㉔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5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카지노 사업 미래경쟁력 강화 [19점]

사업정의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경쟁력 확보

(1) 카지노 사업 수익 창출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의	기관의 고유사업인 카지노 사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게임기구 대수당 매출액 실적을 활용하여 국내 외국인 전용 TOP 5 카지노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TOP 5 카지노 실적의 평균실적 최저목표 : TOP 5 카지노 실적 중 최저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카지노 사업 수익 창출 = (테이블 게임 대수당 매출액 평점 × 0.9) + (슬롯머신 대수당 매출액 평점 × 0.1) ※ 게임기구 대수당 매출액 평점 = $\frac{\text{게임기기 연간 매출액}}{\text{게임기기 대수}}$ ② 평가산식 = $20 + 80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③ TOP 5 카지노 선정은 연도별 총 실적으로 산정하며, 법인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및 게임기구 수 산정은 매년 고시되는 문체부 자료(카지노 통계) 및 카지노협회 '업체별 매출액 현황'을 사용하며 TOP 5 카지노 선정 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3개(법인별) 중 기관은 제외하여 산정함.

(2) 해외유치고객 게임 증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해외 유치 고객의 게임 증대 노력을 카지노 이용금액 및 이용시간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유치고객 게임 증대 노력 = 해외유치고객 인당 카지노 이용 금액 평점 × 0.5 + 해외유치고객 인당 카지노 이용 시간 평점 × 0.5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해외유치고객 인당 카지노 이용 금액 평점은 ‘해외유치고객 드롭액/해외유치고객 수’를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계산한 평점을 의미한다. (상향지표) ③ 해외유치고객 인당 카지노 이용 시간 평점은 ‘해외유치고객 카지노 이용 시간/해외유치고객 수’를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계산한 평점을 의미한다. (상향지표) ④ 해외유치고객은 기관의 멤버십에 가입되고 해당 연도에 테이블 게임 실적이 발생한 고객 중 기관이 항공권을 지급하여 초청한 고객을 의미한다. ⑤ 해외유치고객 드롭액은 카지노 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0-23호) 제3조(정의) 15호 ‘드롭’ 기준에 따라 산정된 테이블 게임 드롭금액 중 해외유치고객의 드롭금액을 의미한다. ⑥ 해외유치고객 카지노 이용시간은 해외유치고객이 기관 사업장에 방문하여 테이블 게임에 참여한 시간을 의미한다. ⑦ 해외유치고객 수, 해외유치고객 드롭액, 해외유치고객 카지노 이용시간은 기관의 고객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 고객 서비스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양질의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고객 게임참여 일수당 게임중단 분쟁 발생 건수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객 서비스 향상 = $\frac{\text{게임중단 분쟁 발생 건수}}{\text{고객 게임참여 일수}}$ ② 게임중단 분쟁 발생 건수는 테이블 게임 진행 중 고객과의 분쟁으로 게임이 중단되고 서베일런스실 확인 결과 딜러 귀책으로 판단된 건수를 의미한다. ③ 게임중단 분쟁 발생 건수 실적 산출은 기관의 서베일런스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후 처리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④ 고객 게임참여 일수는 해당연도 테이블 게임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어 일수로 환산한 실적을 의미한다. ⑤ 테이블 게임시간은 기관의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테이블에서 게임에 참여한 시간을 의미하며, 기관의 고객관리시스템상 테이블 게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스마트 거래 전환율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스마트 거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운영 자동화 성과 노력을 카지노 테이블 게임의 스마트 거래 시스템 활용 드롭액 비율로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 거래 전환율 = $\frac{\text{테이블 게임 스마트 거래 드롭액}}{\text{테이블 게임 전체 드롭액}}$ ② 드롭액은 카지노 영업준칙 제3조(정의) 15호 '드롭'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③ 스마트 거래 드롭액은 스마트 거래 시스템(EZ TICKET)을 통해 발생 기록된 드롭액 실적을 의미하며, 기관 카지노 관리시스템(CMS)에 기록된 실적으로 산정한다. ④ 중장기 목표 : 2025년 실적을 기준목표로, 2030년 목표치(30% 전환율)를 달성목표로 하여 달성 기간이 5년인 장기추세선 상의 목표 ※ 테이블 게임 전체 드롭액 중 현물 카운팅이 필요없는 간접 거래액인 '신용카드 칩스 구매액'과 '크레딧 발행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함
(5) 카지노 사업 미래경쟁력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관광산업 지원 활성화 [10점]

사업정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내 관광 소비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생태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지원
(1) 외래 관광객 유치 기여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 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기여 노력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게임기구 수당 입장객 유치 실적을 활용하여 국내 외국인 전용 TOP 5 카지노의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TOP 5 카지노 실적의 최고실적 최저목표 : TOP 5 카지노 실적의 최저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외래 관광객 유치 기여 = $20 + 80 \times \frac{(\text{기관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실적 = $\frac{\text{카지노 입장객 수}}{\text{카지노 게임기구 수}}$ ③ TOP 5 카지노 선정은 연도별 총 실적으로 산정하며, 법인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입장객 수 및 게임기구 수(총 수량 기준) 산정은 매년 고시되는 문체부 자료(카지노 통계) 및 카지노협회 ‘업체별 매출액 현황’을 사용하며 TOP 5 카지노 선정 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3개(법인별) 중 기관은 제외하여 산정함.

(2) 융복합 관광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융복합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카지노 관광객의 관광 분야 콤프비용 사용 실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융복합관광 활성화 성과 = 관광 분야 콤프비용 사용 실적 ② 콤프비용이란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1조(콤프비용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기관의 고객관리시스템 상 콤프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관광 분야 콤프비용 사용 실적은 콤프비용 사용처 중 관광 소비 실적을 의미하며, 기관의 고객관리시스템 내 교통, 숙박, 쇼핑, 미식, 웰니스, 문화, 스포츠 부문 등 콤프칩스와 상품권 지급을 제외한 콤프비용 사용 금액으로 산출한다.

(3) 관광 산업 지원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3]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 [8점]

사업정의	공기업 카지노로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투명한 운영 및 안전 역할 강화

(1)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18조에 의거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당해연도 자금세탁방지 운영위험평가 최상위 기관 득점 최저목표 : 당해연도 자금세탁방지 운영위험평가 최하위 기관 득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성과 $= 20+80 \times \frac{\text{기관득점}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이행성과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운영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 운영위험평가 결과는 연 2회 발표되며, 각 평가별 평점을 계산하여 평균 값을 산출함

(2) 카지노 안전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강화 성과를 재해율로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frac{\text{근로자 재해율 평점} \times (0.4) + \text{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times (0.3)}{\text{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times (0.3)}$ ②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③ 발주공사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④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입장객+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중상 1인당 3, 일반재해·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국민·외국인입장객 사망, 중상, 경상, 기타 구분은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외국인입장객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⑥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⑦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기관입장객수는 카지노영업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23호) 제37조에 따라 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매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입장객 현황을 기준으로 산출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 발주공사 근로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연도말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적용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 (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혁신 프로젝트

①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가스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7.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5) 이사회 구성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영업이익률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9.5	22.5	52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천연가스의 도입, 판매 사업			13
	(1) LNG 도입단가 경쟁력 제고		2	
	(2) 친환경 에너지 수요개발 노력		2	
	(3) 권역별 수급 안정성 제고		3	
	(4) 천연가스의 도입, 판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2.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사업			17
	(1)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4	
	(2) 규정열량 관리		2	
	(3) 가스 송출 중단 예방 노력		0.5	
	(4) 가스 공급 중단 예방 노력		0.5	
	(5)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관리		1.5	
	(6)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5		
	3. 지속가능 성장 사업			7
	(1) 해외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		1	
	(2) 저탄소 지속가능사회 기반 구축		1	
	(3) 해외사업 재무실적 개선		1.5	
	(4) 지속가능 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3
	주요사업 합계	21	19	40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혁신 프로젝트 합계	8		8
전체 합계		58.5	41.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이사회 구성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중 원료비는 2004년의 LNG 도입 Cargo별 적용 유가 및 환율의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여 불변화함 (기준년도 : 2004년) • 민수용 원료비연동제 유보 회계처리 관련 미수금은 총자산 산출시 제외함
㉔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중 원료비는 2004년의 LNG 도입 Cargo별 적용 유가 및 환율의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여 불변화함 (기준년도 : 2004년)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종속회사 영업이익은 지분율만큼 가산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민수용 원료비연동제 유보 회계처리 관련 미수금은 총자산 산출시 제외함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천연가스의 도입, 판매 사업 [13점]

사업정의	체계적 수급관리를 바탕으로 천연가스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 및 판매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진 및 에너지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 한다.

(1) LNG 도입단가 경쟁력 제고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국제 LNG 도입단가 경쟁력을 측정하여,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기 준 치	• 글로벌 실적비교 기준치 ① 평가년도 국제유가(Brent) n월 평균가격* ② 평가년도 국제가스 현물가격(JKM)의 n월 평균가격** * 국제유가(Brent) 월 평균가격 : 한국석유공사 Petronet에 12월말 공개되는 전년도 10월부터 평가년도 9월까지 국제 유가(Brent)의 평균 ** 국제 가스 현물가격(JKM)의 월 평균가격 : S&P Global社 Platts의 아시아 LNG 스팟가격인 JKM의 인도월(1월~12월) 기준 평균가격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 득점 = 가중치(2점) × (㉑ + ㉒) • 평점산식 : - n월 상대비율 100% 이하인 경우, · 평점 = $\sum (100 \times [0.8 + 1 \times (1 - n\text{월 상대비율})]) \times \frac{n\text{월 도입물량(mmbtu)}}{\text{총 도입물량(mmbtu)}}$ - n월 상대비율 100% 초과인 경우, · 평점 = $\sum (100 \times [0.8 + 3 \times (1 - n\text{월 상대비율})]) \times \frac{n\text{월 도입물량(mmbtu)}}{\text{총 도입물량(mmbtu)}}$ ㉑ 기간계약(Term)물량 도입단가(FOB*) n월 상대비율 평점 × 기간계약(Term)물량 도입비중 - n월 상대비율 = n월 기간계약물량 도입단가 ÷ 기준치(①) · n월 기간계약물량 도입단가 = $\frac{n\text{월 기간계약(Term)물량 도입비용(FOB, \\$)}}{n\text{월 기간계약(Term)물량(mmbtu)}}$

측정 산식 및 변수	* LNG도입 총비용(LNG대금/수송비/보험료)에서 수송비/보험료 비율(8.47%)만큼 차감하여 FOB비용으로 환산 ** 국제유가(Brent) n월 평균가격 : 한국석유공사 Petronet에 12월말 공개되는 전년도 10월부터 평가년도 9월까지 국제 유가(Brent)의 n월 가격에 환산 계수(0.172bbl/MMBtu)를 적용한 열량당 가격(\$/MMBtu) ④ 스팟물량 도입단가 n월 상대비율 평점 × 스팟물량 도입비중 - n월 상대비율 = n월 스팟물량 도입단가 ÷ 기준치(②) · n월 스팟물량 도입단가 = $\frac{\text{n월 스팟물량 도입비용(\\$)}}{\text{n월 스팟물량(mmbtu)}}$ ※ 글로벌 자료출처 : 석유공사 Petronet 및 S&P Global社 발표의 Platts

(2) 친환경에너지 수요개발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 부응과 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가정용 천연가스 수요가구수, 분산형 전원용 판매량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도시가스사업편람상 가정용수요가구수 목표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친환경에너지수요개발노력 = (가정용 수요가구수 평점 × 55%) + (분산형 전원용 판매량 평점 × 45%) ② 가정용 수요가구수 평점 = 가정용수요가구수 실적 / 가정용수요가구수 목표 ※ 가정용 수요가구수는 매년 도시가스사별로 집계한 가정용 수요가구수의 합계 ③ 분산형 전원용 판매량은 매년 도시가스사별로 집계한 연료전지, 열병합, 자가용 열병합, 구역전기사업 판매량의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 ‘가정용 수요가구수’ 목표는 매년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당해년도 발표한 사업 편람의 5개년 가정용 보급률의 해당년도 전망치를 적용하고, 실적은 매년 12월 말 가구수 기준으로 하되,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발행하는 ‘도시가스 사업통계 12월 월보’의 가정용 수요가구수 활용 • ‘분산형 전원용 판매량’은 사내 통합 정보시스템(SAP) 상 데이터 활용

(3) 권역별 수급 안정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권역별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확보실적을 측정하여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권역별 수급 안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권역별 수급 안정성 제고 노력 - 평점 산식 = 수급위기 최소화 노력 평점 × 80% + 권역간 균형재고 유지 평점 × 20% * 세부 지표별 평점 = 20 + {(실적-최저목표) / (최고목표-최저목표)} × 80 (단, 세부 지표별 획득점수가 20점보다 작을 경우 20점으로 함) ② 수급위기 최소화 노력 = $\frac{\text{수급비상 발생일수}}{\text{연간 일수(365일)}}$ - 수급비상 발생일수 = 공사 일일 실제 재고량이 비축의무량 이하인 일수 - 수급위기 최소화 노력은 연간 일수 대비 수급비상 발생일수의 비율로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 비축의무량 : 상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초래되는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수준 (비축의무량은 최근 단기 및 동절기 수급계획에 따름) • 일일 실제재고량 : 도법 시행령 제 6조의 4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비축에 관한 고시에 의거 매일 24시 기준으로 산정한 천연가스 재고량 • 연간 일수가 366일인 경우 366일 적용 ③ 권역간 균형재고 유지 실적 = $\frac{\sum_{\text{일}=1}^{90} \text{일 권역간 재고율 차이} }{1,2,3\text{월 일수}(90\text{일})}$ - 일 권역간 재고율 차이 = $\left[\sum_{\text{평택, 인천}} \frac{\text{일일수도권기지별 재고율}}{1 + \text{일일수도권기지별 총출비}} \right] / 2$ $- \left[\sum_{\text{통영, 삼척}} \frac{\text{일일비수도권기지별 재고율}}{1 + \text{일일비수도권기지별 총출비}} \right] / 2$ • 권역간 균형재고란, 낮은 재고수준에서도 특정 권역이 과도하거나 과소한 재고를 가지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한정된 재고수준에서도 전 권역의 공급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재고 운영 방식 • 권역간 균형재고 유지 실적은 해당 년도 1, 2, 3월의 일일 수도권-비수도권 권역간 재고율 차이 절대값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평택·인천기지는 수도권, 통영·삼척기지는 비수도권으로 분류 • 기지별 재고율 : 해당일 각 기지별 공사 소유 저장설비의 최대운영재고 대비 실제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비율(최대운영재고는 LNG 저장탱크 운영기준에서 고시하는 공사 저장탱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양은 사내 계통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탱크재고량 실적 활용) • 기지별 송출비 : 해당일 공사 전체 천연가스 송출량 중 각 기지의 송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사내 계통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송출비 실적 활용) • 1, 2, 3월 일수가 91일인 경우 91일 적용
(4) 천연가스의 도입, 판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②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사업 [17점]

사업정의	천연가스 생산·공급 인프라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건설·운영하여 양질의 천연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에 이바지 한다.							
(1)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기관의 재해율 감소 성과와 재난관리 강화실적을 측정함으로써,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재해율 감소 성과(4점)							
	$\text{재해율}(\%) = \text{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 \times (\text{가중치}) + \text{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times (\text{가중치}) + \text{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times (\text{가중치})$							
	* 세부지표별 가중치 비중							
	<table><tr><td>근로자</td><td>발주공사</td><td>국민시설</td></tr><tr><td>30</td><td>50</td><td>20</td></tr></table>	근로자	발주공사	국민시설	30	50	20	
근로자	발주공사	국민시설						
30	50	20						
$\text{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1)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중대재해+일반재해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로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인명사고(근로자) 유형별 가중치

구 분	근로자		
유형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
가중치	10	3	1

$$\textcircled{2} \text{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인명사고(발주공사) 유형별 가중치

구 분	근로자		
유형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
가중치	10	3	1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1)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유형*	사망	중상	경상	기타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기준	사망	2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의사 최초 진단 기준 (치료일)	사망	3주 이상	5일 이상 3주 미만	5일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 기준을 적용하되, 없는 경우는 의사 진단 기준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 인명사고(국민) 유형별 가중치

구 분	국민			
유형	사망	중상	경상	기타
가중치	10	3	1	0.5

2)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설(설비)사고

• 시설(설비)사고별 가중치

유형	인명사고발생 시설(설비)사고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
가중치(건당)	10	5	3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에 적용하여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2) 규정열량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천연가스 열량관리 실적을 측정하여 천연가스 품질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규정열량 관리 = 일간 열량관리 실적(1점) + 월간 열량관리 실적(1점) ②-1 일간열량관리 실적 = 동절기(1~3, 10~12월) 일간 관리실적×60% + 하절기(4~9월) 일간 관리실적×40% ②-2 월간열량관리 실적 = 동절기(1~3, 10~12월) 월간 관리실적×60% + 하절기(4~9월) 월간 관리실적×40% * 규정열량 관리실적 = $\frac{\text{기준열량 미달 수급지점 수}}{\text{열량측정 총 수급지점 수}}$ ② 기준열량 미달 수급지점 수 : 각 수급지점에서 측정한 가스열량의 일간 및 월간 가중평균치가 모든 수급지점에서 측정하여 합산한 가스열량의 일간 및 월간 가중평균치 대비 ±1.7%(동절기 1~3, 10~12월), ±2%(하절기 4~9월) 초과하는 수급지점의 수 * 제주권역과 육지권역을 분리하여 기준열량 미달여부 판단 ③ 열량측정 총 수급지점 수 : 평가년도 동·하절기 일간 및 월간 열량오차를 측정한 수급지점 수의 총 합계

(3) 가스 송출 중단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기지 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설비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생산기지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생산기지별 득점의 합으로 함 ② 산식 = $\frac{\text{송출중단 시간(분)}}{\text{역일시간(분)}}$ ③ 송출중단 시간(분) = 계획정비를 제외한 생산기지의 송출중단 또는 송출량 감소 발생 이후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④ 역일시간(분) = 365일(1년) × 24(시간) × 60(분) * 연간 일수가 366일인 경우 366일 적용 ⑤ 실적 = 생산기지별 송출중단을 ⑥ 생산기지별 가중치 비중 = 생산기지별 비중 × 가중치(0.5점) - 생산기지별 비중 = $\frac{\text{생산기지별 기화송출능력}}{\sum \text{생산기지별 기화송출능력}}$

(4) 가스 공급 중단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적정 공급압력 유지 수준 및 공급중단 최소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여 기관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예방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급압력 미유지율 (0.25점) - 공급압력 미유지율 = $\frac{\sum(\text{도시가스 적정공급압력 미유지일수})}{\text{도시가스 공급 총일수}}$ - 도시가스 적정공급압력 미유지일수 = PALL알람 발생 일수 - 도시가스 공급 총일수 : 도시가스 공급지점별 공급일수의 총 합계 - PALL 알람 발생일수 : 도시가스공급 계량라인 후단의 압력기에서 발생한 PALL 알람이 발생한 일수로 산정 - PALL(Pressure Alarm Low Low): 공급압력 최저알람(공급중단 전단계 알람 신호) - PALL 발생일 중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발생한 알람과 천재지변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계통 차단으로 발생한 알람은 제외한다. ② 가스공급 중단지수 (0.25점) - 공급중단지수 = $\frac{\sum(\text{공급중단실적})}{\text{도시가스 공급 총일수}}$ - 공급중단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 수요처 공급중단 : 가스공사 사유로 도시가스사 및 발전사 등 가스공사의 수요처에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고건수 - 일시 공급중단 : 가스공사 사유로 공급관리소 내 일시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고건수(단, 수요처 가스공급은 유지) • 도시가스 공급 총일수 : 도시가스 공급지점별 공급일수의 총 합계
(5)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을 관리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손실을 관리 성과로 국민경제와 가스요금 안정에 기여하는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②에만 해당)
목 표	①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대비 당해연도 실적수준 최고목표 : 비교국가 중 최상위국 손실률 최저목표 : 비교국가 중 Top 3 국가 손실률 평균 ②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지수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관리의 평점은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대비 당해연도 실적수준과 목표부여(편차) 방식에 의한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지수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대비 당해연도 실적수준 • 평점산식 : $20 + 80 \times \frac{\text{공사손실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공사손실률 : 절대값 적용한 전년도 손실률 • 최고목표 : 비교국가 중 최상위국 손실률 • 최저목표 : 비교국가 중 Top 3 국가 손실률 ② 글로벌 천연가스 손실률 지수 • 평점산식 : $20 + 80 \times \frac{\text{공사지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공사지수 = $\frac{\text{천연가스손실률(공사)}}{\text{천연가스손실률(최상위국)}}$ ※ 최상위국 천연가스 손실률 : 비교대상 국가 중 절대값 기준 가장 낮은 천연가스 손실률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천연가스 손실률 : 천연가스 인입량 대비 미확인물량의 비율 $\text{손실률(\%)} = \left(\frac{\text{미확인물량}}{\text{인입량}} \right) \times 100\%$ - 미확인 물량(unaccounted for gas)은 고객에게 공급되기 전에 배관망·설비 운영·계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량오차, 자연손실 등의 가스량을 의미함 - 한국 실적치는 당해연도 실적으로 제3자 회계검증을 완료한 실적치 - 해외 실적치는 하기 비교대상국 실적의 출처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하는 'Gas Industry'의 최근자료를 사용함 <table border="1" data-bbox="459 728 1273 896"> <thead> <tr> <th>대상국</th><th>자료 출처</th></tr> </thead> <tbody> <tr> <td>미국</td><td>EIA(미국에너지정보청)</td></tr> <tr> <td>영국</td><td>DUKES(영국정부 홈페이지)</td></tr> <tr> <td>이탈리아</td><td>Snam(이탈리아 가스운행사 홈페이지)</td></tr> </tbody> </table>	대상국	자료 출처	미국	EIA(미국에너지정보청)	영국	DUKES(영국정부 홈페이지)	이탈리아	Snam(이탈리아 가스운행사 홈페이지)
대상국	자료 출처								
미국	EIA(미국에너지정보청)								
영국	DUKES(영국정부 홈페이지)								
이탈리아	Snam(이탈리아 가스운행사 홈페이지)								
(6) 천연가스의 생산, 공급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5점)									

[3] 지속가능 성장 사업 [7점]

사업정의	해외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운영을 내실 있게 수행하며 신사업으로서 수소사업과 천연가스 연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

(1) 해외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의	해외사업 장기 투자회수율 및 단기 달성도를 측정하여 기관의 해외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회수액 목표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120%, 최저목표 80%
측정 산식 및 변수	해외사업 투자 회수율(0.625점)+해외사업 회수 달성도(0.375점) ① 해외사업 투자 회수율(0.625점) = $\frac{\text{해외사업 회수금 (누적)}}{\text{해외사업 투자비 (누적)}}$

측정 산식 및 변수	- 해외사업 회수금 :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감자 포함), 출자금, 대여금에 대한 원금회수 및 이자, 직접투자 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로열티 등 현금 지출액을 제외한 순회수액의 누적 합계 (사업매각 시 매각액 포함) - 해외사업 투자비 : 해외사업에 투입된 누적투자비로 공사가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 대여한 금액의 총계 (기말 누적 투자비) - 해외사업 투자비 및 회수금은 외화(USD) 및 현금기준 적용 ② 해외사업 회수 달성도(0.375점) = $\frac{\text{당해연도 회수금 실적}}{\text{당해연도 회수금 목표}}$ - 당해연도 회수금 목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외사업 회수 목표의 최고 목표 120%, 최저목표 80%를 적용한다. - 해외사업 회수금 목표 및 실적은 외화(USD) 및 현금기준 적용

(2) 저탄소 지속가능사회 기반 구축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의	기관의 저탄소 지속가능사회 기반 구축 실적을 수소생산기지 설비가동률 향상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5개년 중기경영계획 상 평가연도의 수소생산기지별 가동률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수소생산기지 가동률(1점) 수소생산기지 가동률 평점 산식 $= \sum \text{수소생산기지별 가중치} \times \left(20 + 80 \times \frac{\text{가동률 실적}-\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right)$ * 가동률 = 수소생산기지 출하량 / 수소생산기지 설비규모 ※ 수소생산기지별 가중치 (’26~’27) 광주 28.6%, 창원 71.4% / (’28년~) 광주 13.8%, 창원 34.5%, 평택 51.7% * 설비규모에 따른 가중치 설정(광주 4톤/일, 창원 10톤/일, 평택 15톤/일) ※ 평택 수소생산기지 실적은 ’28년도 계량평가부터 적용함

(3) 해외사업 재무실적 개선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1.5점)

정의	글로벌 메이저기업의 해당 사업부문 영업이익률 평균과 공사 해외사업부문의 영업이익률 차이를 측정하여 공사의 해외사업 재무실적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5개년 실적의 평균값 중 낮은 값

측정 산식 및 변수	기업명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	영업이익
	Total Energies	Exploration & Production, Integrated LNG	Revenues from sales	Revenues from sales - Operating expenses - Depreciation, depletion and impairment of tangible assets and mineral interests + Net income (loss) from equity affiliates and other items
	BP	Gas & low carbon energy, Oil production & operations	Sales and other operating revenues	Profit before interest and tax
* 글로벌 메이저기업이 사업부문 재편 시 변경 필요				
(4) 지속가능 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 3.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혁신 프로젝트

①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7.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5) 이사회 구성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영업이익률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9.5	22.5	52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전력망 계획 및 건설사업			14
	(1) 국가 기간망 적기 확충 노력		4	
	(2)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결 노력		2	
	(3) 계통유연성 자원 구축 노력		1	
	(4) 전력망 계획 및 건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전력망 운영 사업			13
	(1) 글로벌 정전고장률 관리		2	
	(2)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관리		1.5	
	(3) 전력 부문 안전관리		4	
	(4)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이행률		0.5	
	(5) 전력망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전력판매 및 수요관리 사업			6
	(1) 글로벌 부하율 관리		1.5	
	(2) 전력원가 효율성 관리		0.5	
	(3)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수행 노력		0.5	
	(4) 전력판매 및 수요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5		
	4. 미래성장사업			4
	(1)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성		0.5	
	(2) R&D 성과 창출 노력도		0.5	
	(3) AMI 활용 신사업 육성		0.5	
	(4) 미래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5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3
	주요사업 합계	21	19	40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혁신 프로젝트 합계	8		8
전체 합계		58.5	41.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이사회 구성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전력망 계획 및 건설 사업 [14점]

사업정의	정부 에너지정책과 연계한 최적 전력망 계획 수립 및 적기 건설로 재생 에너지 대전환 및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1) 국가 기간망 적기 확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국가 기간망인 전력설비 적기 구축을 위한 주요 송·변전 건설사업 공정률 준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송·변전 건설사업의 연도별 목표공정률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00% 최저목표 : 기준치×5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가 기간망 적기 확충 노력 = ① 국가 기간망 적기 확충 노력 득점 - ② 당해연도 준공연도 미달성 시 감점 ① 국가 기간망 적기 확충 노력 득점 = 평가 대상사업의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공정률 평균 - 대상사업 : 최신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명시된 주요 송·변전 건설사업 중 표본공기에 따라 준공목표에 따라 착수된 사업 - 목표 공정률 :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송·변전 건설사업의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사업별 수립한 연도별 공정률의 평균 - 실적공정률 : 「송변전 공정관리 절차서」를 기준으로 표본공기에 공정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된 ERP 공정관리시스템 상 공정률의 평균 ② 당해연도 준공연도 미달성 시 감점 • 감점 : 감점률(10%) × $\left(\frac{\text{당해연도준공연도미달성사업건수}}{\text{전체평가대상사업건수}} \right)$ * 향후 3년 연도별 준공(예정)사업 : '26년 8개 / '27년 7개 / '28년 9개 ※ 산출시 고려사항 • 준공목표 연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표본공기를 반영한 준공목표를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함 • 아래와 같은 통제 불능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를 고려하여 목표공정률을 조정 및 재산정함 - 정부정책 및 관련 사업계획 변경, 고객·발전사·제조사 귀책 사유 - 전력거래소 휴전작업 불가 통보, 지자체 등 비협조 및 인허가 지연 - 화재·지진·폭설·폭염·호우 등 재난상황과 민원·소송에 의한 지연

(2)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결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기관의 재생에너지 계통연결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를 적용하되,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을 초과하지 않음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결 노력 =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②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실적은 재생에너지(사업용) 계통연결실적으로 한국 전력통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으로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립 ※ 산출시 고려사항 • 최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목표에 반영 • 전력망 확충이 완료되었으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미설치 등으로 6개월 이상 상업운전 개시가 지연되어, 기관과의 계통접속신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용량을 계통연결 실적으로 인정하여 가산함. 단, 해당 실적은 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해당 용량은 ‘장기미진행 분산전원 고객목록 관리시스템’으로 증빙)

(3) 계통유연성 자원 구축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계통 유연성 자원 적기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상 ESS 및 FACTS 구축 목표공정률 평균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계획·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0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계통 유연성 자원 구축 노력 = ① ESS 및 FACTS 구축 노력 득점 - ② 당해연도 준공목표 미달성 시 감점 ① ESS 및 FACTS 구축 노력 득점 = ESS 및 FACTS 구축사업의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공정률 평균

측정 산식 및 변수	- 대상사업 : 최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변전설비 확충기준에 따라 수립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의 ESS 및 FACTS 설비 계획 사업 - 공정률은 ESS 및 FACTS 구축사업의 표본공기에 따라 산정된 ERP 공정 관리 시스템의 목표공정률과 실적공정률 값을 적용함 ② 당해연도 준공목표 미달성 시 감점 - 감점 : 감점률(10%) × $\left(\frac{\text{당해연도준공목표미달성사업건수}}{\text{전체평가대상사업건수}} \right)$ * 향후 3년 연도별 준공(예정)사업 : '26년 7개 / '27년 8개 / '28년 3개 ※ 산출시 고려사항 • 계통유연성 자원 중 아래와 같은 통제 불능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를 고려하여 목표공정률을 조정 및 재산정함 - 정부정책 및 관련 사업계획 변경, 고객·발전사·제조사 귀책 사유 - 전력거래소 휴전작업 불가 통보, 지자체 등 비협조 및 인허가 지연 - 화재·지진·폭설·폭염·호우 등 재난상황과 민원·소송에 의한 지연
(4) 전력망 계획 및 건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전력망 운영 사업 [13점]

사업정의	발전원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설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고품질의 전력 안정적 공급으로 대국민 편익 및 경제 발전기여
(1) 글로벌 정전고장률 관리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과 전기품질 확보를 위해 정전고장 수준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②에만 해당)
목표	① 최고목표 : 비교국가 중 최상위국 호당정전시간(SAIDI) 최저목표 : 비교국가 호당정전시간(SAIDI)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정전고장률 관리(2점) = ① 글로벌 SAIDI 순위(1점) + 송변전 정전고장률(1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SAIDI 순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bullet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한국 호당정전시간(SAIDI)}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ast \text{SAIDI} = \frac{\text{연간 5분 이상 고객 정전시간의 총합계}}{\text{전체 고객호수}}$$

② 송변전 정전고장률

$$\text{송변전 정전고장률} = \frac{\sum(\text{건별 송변전 정전고장전력량} \times \text{정전시간(분)})}{\text{송변전설비량}(100\text{MVA}) \times 1,440(\text{분})}$$

· 송변전 정전고장전력량 : 한전 송변전설비로 인한 5분 이상 정전 고장 발생 전력량

· 송변전설비량(100MVA) = 변압기용량 + 송전설비용량

· 변압기용량 : 변전설비의 변압기용량 합계

· 송전설비용량 : 송전설비의 송전용량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 송변전 정전고장전력량 : 정전고장관리시스템의 정전전력량 적용
단,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외물접촉 등)는 제외함

· 송변전 정전시간 : 정전고장관리시스템의 정전시간 적용(발생일시부터 정전 복구일시까지의 소요시간)

· 변압기용량 : 한국전력통계 기준 적용(당해연도 한국전력통계 발행 이전일 경우 송변전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고장” 메뉴탭의 데이터 적용)

· 송전설비용량 : 송변전통합정보시스템의 설비용량 적용
(송변전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고장” 메뉴탭의 데이터와 동일함)

· SAIDI(호당정전시간)

- 한국 실적치는 평가대상연도의 한국전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료를 사용함
(평가대상연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이전일 경우 전년도 자료 사용)

- 해외 실적치는 하기 비교대상국 출처자료에서 발표한 최근자료를 사용함

- 대상국 :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상국	자료 출처
미 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Electric Power Annual
프랑스	EDF, Annual Results
독 일	Bundesnetzagentur.de 게시자료
이탈리아	ARERA, Annual Report

(2)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관리 (평가방식 : ① 글로벌 실적비교, ②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기관의 전력설비 운영효율 제고 노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비교국가 중 최상위국 손실률 최저목표 : 비교국가 중 Top 5 국가들의 손실률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관리의 평점은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순위와 목표부여(편차) 방식에 의한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지수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순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점 + 80점 \times \frac{\text{한국 송배전손실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 \text{글로벌 송배전손실률 지수} : \frac{\text{한국 송배전손실률}}{\text{최상위국 송배전손실률}}$ ※ 한국 송배전손실률 : $\frac{\text{송배전손실량(MWh)}}{\text{송전단 전력량(MWh)}}$ ※ 최상위국 송배전손실률 :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송배전손실률 실적 ※ 산출시 고려사항 • 한국 실적치는 한국전력통계자료를 사용함 • 해외 실적치는 하기 비교대상국 실적의 출처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한전 경영연구원(KEMRI)에서 발간하는 'KEMRI Review'의 최근 자료를 사용함 • 대상국 :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국</th><th>자료 출처*</th></tr> </thead> <tbody> <tr> <td>일 본</td><td>전기사업편람(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td></tr> <tr> <td>미 국</td><td>EI Statistical Yearbook</td></tr> <tr> <td>캐나다</td><td>Statistics Canada</td></tr> <tr> <td>중 국</td><td>중국전력통계연감(중국전력기업연합회)</td></tr> <tr> <td>프랑스</td><td>RTE_프랑스 전력 통계</td></tr> <tr> <td>독 일</td><td>United Nations Energy Statistics Yearbook</td></tr> <tr> <td>스웨덴</td><td>스웨덴 통계청</td></tr> <tr> <td>영 국</td><td>DUKES</td></tr> <tr> <td>이탈리아</td><td>Terna, Dati Statistici sull'energia elettrica in Italia</td></tr> </tbody> </table> * 일본 해외전력조사회의 '해외전기사업통계'에서 사용된 출처	대상국	자료 출처*	일 본	전기사업편람(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미 국	EI Statistical Yearbook	캐나다	Statistics Canada	중 국	중국전력통계연감(중국전력기업연합회)	프랑스	RTE_프랑스 전력 통계	독 일	United Nations Energy Statistics Yearbook	스웨덴	스웨덴 통계청	영 국	DUKES	이탈리아	Terna, Dati Statistici sull'energia elettrica in Italia
대상국	자료 출처*																				
일 본	전기사업편람(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미 국	EI Statistical Yearbook																				
캐나다	Statistics Canada																				
중 국	중국전력통계연감(중국전력기업연합회)																				
프랑스	RTE_프랑스 전력 통계																				
독 일	United Nations Energy Statistics Yearbook																				
스웨덴	스웨덴 통계청																				
영 국	DUKES																				
이탈리아	Terna, Dati Statistici sull'energia elettrica in Italia																				

(3) 전력 부문 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무재해 달성과 재난관리 강화 실적을 측정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재해율(4점) = ① 근로자 재해율(1.2점) + ② 발주공사 재해율(2점) + ③ 국민·시설 재해율(0.8점)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1인당 3, 일반재해 1인당 1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조 '출퇴근 재해'는 실정산정 시 제외 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인명사고(발주공사)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1인당 3, 일반재해 1인당 1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조 '출퇴근 재해'는 실정산정 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1인당 3,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textcircled{4}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 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 (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설비)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 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4)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이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0.5점)	
정 의	전력거래소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요청에 대한 한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이행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당해연도 전력거래소에서 요청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총 합산량(GWh)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00% 최저목표 : 기준치 × 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이행률 = 전력거래소에서 요청한 재생e 출력제어량에 대한 출력제어 이행량 ② 출력제어 이행량 : 한전이 이행한 재생e 출력제어량의 합(GWh) ③ 출력제어 요청량 : 전력거래소에서 요청한 재생e 출력제어량의 합(GWh)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재생e 정보공유시스템’을 기준으로 출력제어 요청 및 이행 실적 산출 • 출력제어 요청량은 전력거래소가 전일 계획하고 최종 지시한 출력제어량 반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력제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전력망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전력판매 및 수요관리 사업 [6점]

사업정의	원가 기반의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구현 및 고객센터·제도 혁신으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전력수요 관리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중립 도모

(1) 글로벌 부하율 관리
(평가방식 : ① 글로벌 실적비교, ②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기관을 수요관리 노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비교국가중 최상위국 부하율 최저목표 : 비교국가중 Top5 국가들의 부하율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부하율 관리의 평점은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부하율 순위와 목표부여(편차) 방식에 의한 글로벌 부하율 지수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글로벌 부하율 순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점 + 80점 \times \frac{\text{한국 부하율}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글로벌 부하율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 \text{글로벌 부하율 지수} = \frac{\text{한국 부하율}}{\text{최상위국 부하율}}$ ※ 한국 부하율 : $\frac{\text{평균전력(MW)}}{\text{최대전력(MW)}} \times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최상위국 부하율 :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부하율 실적

※ 산출시 고려사항

- 한국 실적치는 한국전력통계자료를 사용함
- 해외 실적치는 하기 비교대상국 실적의 출처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한전경영연구원(KEMRI)에서 발간하는 'KEMRI Review'의 최근 자료를 사용함
- 대상국 :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대상국	자료 출처*
일 본	전기사업편람(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미 국	EEl_Statistical Yearbook, NERC_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캐 나다	NERC_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호 주	Australian Energy Council _ Electricity Gas Australia
프랑스	RTE_ELECTRICITY REVIEW, RTE_프랑스 전력 통계
스웨덴	스웨덴 통계청, Svenska kraftnät
영 국	DUKES
이탈리아	Terna_Dati provvisori d'esercizio

* 일본 해외전력조사회의 '해외전기사업통계'에서 사용된 출처

(2) 전력원가 효율성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1kWh당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절감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경영혁신위원회에서 검증한 1kWh당 전력공급비용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0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력공급비용 관리 노력도 = $\frac{1\text{kWh당 전력공급비용}^* \text{ 실적}}{1\text{kWh당 전력공급비용 목표}}$ * 전력공급비용 : 감가상각비, 설비관리비, 인건비, 고객유지비, 일반관리비 ② 1kWh당 전력공급비용 = $\frac{\text{전력공급비용(원)}}{\text{전력판매량(kWh)}}$ ③ 1kWh당 전력공급비용 목표 :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경영혁신위원회에서 검증한 목표를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력판매량(kWh) : 한국전력통계 등 경영혁신위원회에서 검증한 자료로 산출 • 전력공급비용(원) : IFRS 별도 재무제표 등 경영혁신위원회에서 검증한 자료로 산출

(3)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수행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이 추진한 다양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통해 달성한 에너지 절감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에너지효율향상 노력도 = 에너지 절감량(MWh) ② 에너지 절감량 : 당해연도 소비자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인한 절감량(MWh) ※ 산출시 고려사항 • 에너지 절감량은 매년 한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된 수요 관리투자사업 실적보고서의 에너지 절감량으로 증빙함 • 한전 출자회사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절감량 포함* * 한전 및 출자사에서 심의·의결한 경영실적 보고서의 에너지 절감량

(4) 전력판매 및 수요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5점)

④ 미래성장사업 [4점]

사업정의	청정에너지 중심 해외사업 확대,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개발 및 확산을 통한 전력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1)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노력을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성(0.5점) = ①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비용량(0.4점) + ②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발전량(0.1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비용량 =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MW, 누적) - 설비용량(MW) : 수주, 착공, 준공(운영) 사업추진 단계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지분기준 설비용량 - 사업추진 단계별 가중치는 수주 30%, 착공 30%, 준공 40% 적용 · 수주 : 입찰 및 개발사업에서 해당사업의 수행권리를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단계로,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수주레터(Award Letter) 또는 전력판매계약(PPA) 등 본계약 체결로 증빙함 · 착공 : 건설 공사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단계로, 사업법인이 EPC사에 발급하는 착공지시서(Notice to Proceed)로 증빙함 · 준공 : 발전소의 정식 상업운전이 시작되는 단계로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상업운전(Commercial Operation Date) 달성 문서로 증빙함 -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신에너지 :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증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②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발전량 =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 발전량(GWh) -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 발전량은 상기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2) R&D 성과 창출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R&D 성과 창출 노력도(0.5점) = 특허 성과(0.25점) + 기술사업화 성과(0.25점)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 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 분류 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 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3) AMI 활용 신사업 육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AMI를 활용한 신사업·신서비스 개발, 실증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관의 AMI 기반 신사업 발굴·육성 노력을 평가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AMI 활용 신사업 육성 = ① 사업개발 성과(0.4점) + ② 대국민 데이터 활용 성과(0.1점) ① 사업개발 성과 = 사업개발·실증 완료 건수 - 사업개발·실증 완료 건수 : AMI 데이터 활용 과제 발굴 및 대내외 전문가 심사·선정, 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건수로, 국민편익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서비스 실증 실적과 사내외 사업화 모델 이전 실적을 포함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실적은 대내외 오픈 플랫폼*에 구현된 개발 산출물, 특허·인증실적, 실증 결과보고서, 협약서로 증빙함

* Web, App, 영업배전정보시스템, MDMS(전력량계 데이터 수집·검증·활용 시스템)

② 대국민 데이터 활용 성과 = 데이터 활용 지수

- 데이터 활용 지수 : 전력데이터 활용 대국민 채널인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자 수, 데이터 제공 플랫폼**의 활용 건수를 기반으로 기준년도('23년) 대비 데이터 활용 실적의 성장률을 산정한 지수

* 전력데이터를 외부의 유출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는 보안 공간

** 전력수요관리(DR), 신재생e 감시 등 서비스·제품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Web 기반의 전력정보 제공 플랫폼

$$\begin{aligned} \text{데이터 활용 지수} = & \frac{\text{당해연도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수}}{\text{기준년도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수}} \times 50 \\ & + \frac{\text{당해연도 데이터 플랫폼 활용 건수}}{\text{기준년도 데이터 플랫폼 활용 건수}} \times 50 \end{aligned}$$

※ 데이터안심구역 최초 지정년도인 2023년을 '기준년도'로 설정

데이터 활용 지수 항목	측정 방법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수	데이터안심구역에 방문하여 이용한 횟수
데이터 플랫폼 활용 건수	데이터 서비스 사업자가 호출한 API* 건수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프로그램 간 데이터나 기능을 주고 받는 연계 접점으로, 요청(request)과 응답(response)의 형태로 정보를 교환

(4) 미래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2.5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혁신 프로젝트

①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력기술(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7.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5) 이사회 구성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영업이익률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9.5	22.5	52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원자력 엔지니어링 사업			19
	(1) 원전 안전성 강화 사업 확대		2	
	(2) 원전 건설사업 품질 제고		2	
	(3) 미래성장사업(원자력) 확대		2	
	(4) 해외 원전사업 이행 노력		2	
	(5) 미래성장사업(원자력) 이행 노력		2	
	(6) 원자력 엔지니어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탄소저감 엔지니어링 사업			9
	(1) LNG 복합발전사업 확대		2	
	(2) 미래성장사업(탄소저감) 확대		2	
	(3) 탄소저감 엔지니어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시장 확대 및 전력기술 개발사업			9
	(1) 해외사업 확대		3	
	(2)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성과		2	
	(3) 시장 확대 및 전력기술 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3
	주요사업 합계	21	19	40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혁신 프로젝트 합계	8		8
	전체 합계	58.5	41.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이사회 구성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원자력 엔지니어링 사업 [19점]

사업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건설 및 운영, 미래 원전 기술 확보 및 사업화 등 안정적 전력수급과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원전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1) 원전 안전성 강화 사업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국내 가동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원전 안전 강화 사업 매출액 성장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원전 안전성 강화 사업 매출 = 당해연도 국내 가동원전 안전성 강화 사업 매출액 ② 원전 안전성 강화 사업 - 가동 중 원전의 내진 강화, 사고 및 극한재해 대처, 안전설비 개선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행되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사업

(2) 원전 건설사업 품질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국내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기관으로서, 신규 건설 사업품질 제고 수준을 현장 엔지니어링 지원율, 설계 공정률 달성률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현장 엔지니어링 지원율(1점) $= 20 + 80 \times \frac{\text{검토 완료율}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검토 완료율 : 당해연도 현장 설계검토요청서 완료건수 / 전체 접수건수 · 현장 설계검토요청서 : 건설 원전 현장에서 안전성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설계검토, 평가승인 및 처리 요청서 · 완료기준 : 요청서를 정해진 기한(7일) 내에 처리하여 회신한 경우 - 실적추출(근거) : 한전기술 설계관리 전산시스템

측정 산식
및 변수

- 평가대상사업 : 새울 3,4(舊 신고리5,6) / 신한울 3,4

※ 산출시 고려사항

- 한전기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기한 내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및 완료 건수에서 제외함(증빙자료 제출)

② 원전 설계공정률 달성률(1점)

$$= 20 + 80 \times \frac{\text{공정률 달성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공정률 달성률 = $\Sigma[(\text{공정률 실적} / \text{공정률 목표})] \times \text{용량가중치}$

- 공정률 실적 : 평가대상 당해연도 설계공정률 실적
- 공정률 목표 : 평가대상 공정계획상 당해연도 설계공정률 목표
- 용량 가중치 : 설계 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따른 가중치 부여

- 평가대상사업 : 새울 3,4(舊 신고리5,6) / 신한울 3,4

- 분야별 가중치 배분 : 종합설계 50%, 계통설계 50%
- 공정계획에 따른 주요 설계 결과물(향후 3개년)

구분	'26년	'27년	'28년
새울 3,4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사고관리계획서 개정본	-	-
신한울 3,4	·소내전력계통분석 보고서 ·원자로내부구조물 설계시범서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RCS 운전요건서	·HRA 보고서 ·원자로내부구조물 설치시범서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정률은 설계공정관리 전산시스템(PMS)과 문서관리시스템(DDMS)의 사업진도 측정 자료로,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종합설계), 두산에너지빌리티(계통설계)의 최종 확인을 받은 수치를 적용함
- 발전소 건설계획 상 기간연장, 추가역무 등 발주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의해 공정률 목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수치를 적용함
- 연도별 주요 설계 결과물 미달성 시, 최종 평점 5점을 추가 감점함
- 평가대상 중 당해 연도 이전 종료된 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함

(3) 미래성장사업(원자력)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한국형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담당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부문 신사업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기준치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래성장사업(원자력) 매출 = 당해 연도 국내 원자력부문 미래성장사업 매출액 ② 미래성장사업 - 차세대 원전 사업 : SMR, 4세대 원자로, 핵융합(ITER사업 등) - 디지털, 산업간 융·복합 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 · 디지털 신사업 : 스마트 플랜트, 원전/플랜트 Digitalization, 사이버발전소, 형상관리, 사이버보안 사업 등 · 산업간 융·복합 신사업 : 해양원자력, 원전 연계 수소생산								
(4) 해외 원전사업 이행 노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2점)									
정 의	체코 원전 사업에서 예정 설계 공정 달성을 통해, ‘On Time, On Budget 성공적 원전 건설’ 성과 지속 달성을 위한 해외 원전사업 이행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체코 원전 건설사업 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공정률								
목 표	최고목표 : 100% (호기별 건설계획 상 설계공정 100% 완료) 최저목표 : 60% (최초 유럽 원전 건설, FOAK 고려 건설계획 상 설계공정 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평가산식 = $20 + 80 \times \frac{\text{공정률 달성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공정률 달성률 = (공정률 실적 / 공정률 목표) - 공정률 실적 : 평가대상 당해연도 설계공정률 실적 - 공정률 목표 : 평가대상 공정계획상 당해연도 설계공정률 목표 ③ 평가대상 : 체코 원전 건설사업(Dukovany 5, 6호기) 종합 및 계통설계 - 분야별 가중치 : 종합설계 50%, 계통설계 50% - 공정계획에 따른 주요 설계 결과물(향후 3개년) <table><tr><th>구분</th><th>'26년</th><th>'27년</th><th>'28년</th></tr><tr><td>내 용</td><td>·일반설계기준서 ·계통설계 기준 및 요건서</td><td>·일반기기배치도 ·NSSS 설계요건서</td><td>·토건시공규격서 ·배관계장도, 기능적 논리도면</td></tr></table>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정률은 설계공정관리 전산시스템(PMS)과 문서관리시스템(DDMS)의 사업진도 측정 자료로,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종합설계), 두산에너지빌리티(계통설계)의 최종 확인을 받은 수치를 적용함 · 발전소 건설계획 상 공기연장, 추가역무 등 발주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의해 공정률 목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수치를 적용함 · 연도별 주요 설계 결과물 미달성 시, 최종 평점 5점을 추가 감점함 · 평가대상 중 당해 연도 이전 종료된 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함	구분	'26년	'27년	'28년	내 용	·일반설계기준서 ·계통설계 기준 및 요건서	·일반기기배치도 ·NSSS 설계요건서	·토건시공규격서 ·배관계장도, 기능적 논리도면
구분	'26년	'27년	'28년						
내 용	·일반설계기준서 ·계통설계 기준 및 요건서	·일반기기배치도 ·NSSS 설계요건서	·토건시공규격서 ·배관계장도, 기능적 논리도면						

(5) 미래성장사업(원자력) 이행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원전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원전 기술 확보성과를 한국형 소형모듈형원자로 ‘혁신형 SMR’ 개발 진척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기 준 치	혁신형 SMR 개발 종합 및 계통설계 과제 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공정률								
목 표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평가산식 $= 20 + 80 \times \frac{\text{공정률 달성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공정률 달성률 = (공정률 실적 / 공정률 목표) - 공정률 실적 : 평가대상 당해연도 설계공정률 실적 - 공정률 목표 : 평가대상 공정계획상 당해연도 설계공정률 목표 ③ 평가대상 : 혁신형 SMR 개발 종합 및 계통설계 - 분야별 가중치 : 종합설계 50%, 계통설계 50% - 공정계획에 따른 주요 설계 결과물(향후 3개년) <table><tr><th>구분</th><th>'26년</th><th>'27년</th><th>'28년</th></tr><tr><td>내용</td><td>내진해석보고서</td><td>CRDM 성능검증 예비시험 요건서</td><td>혁신형 SMR 성능평가보고서</td></tr></table>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정률은 설계공정관리 전산시스템(PMS)과 문서관리시스템(DDMS)의 사업진도 측정 자료로, 발주처인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의 최종 확인을 받은 수치를 적용함 • 정부 개발계획 상 기간연장, 추가역무 등 발주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의해 공정률 목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수치를 적용함 • 연도별 주요 설계 결과물 미달성 시, 최종 평점 5점을 추가 감점함 • 평가대상 중 당해 연도 이전 종료된 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함	구분	'26년	'27년	'28년	내용	내진해석보고서	CRDM 성능검증 예비시험 요건서	혁신형 SMR 성능평가보고서
구분	'26년	'27년	'28년						
내용	내진해석보고서	CRDM 성능검증 예비시험 요건서	혁신형 SMR 성능평가보고서						

(6) 원자력 엔지니어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탄소저감 엔지니어링 사업 [9점]

사업정의	화력 발전 탄소저감 및 신재생, 수소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합리적 에너지 믹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1) LNG 복합발전사업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과정에서의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LNG 복합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기관 설립목적 달성 및 정책 이행 기여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LNG 복합발전 설계사업 매출 = 당해연도 국내 LNG 복합발전 설계사업 매출액 ② LNG 복합발전 설계사업 매출액 - 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 전체 LNG 복합발전사업 중 건설공사 사업, EPC 사업을 제외한 설계사업 매출액

(2) 미래성장사업(탄소저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 엔지니어링 전문역량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및 기관 경쟁력 제고 차원의 사업 다각화 노력과 성과를 해당사업의 성장성 측정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래성장사업(탄소저감) 매출 = 당해 연도 국내 비원전 탄소저감 부문 미래성장사업 매출액 ② 미래성장사업(탄소저감) - IGCC,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 무탄소(암모니아·수소) 연료 혼소 엔지니어링 - 에너지사용 최적화 사업(ESS, EMS, 유연운전)

(3) 탄소저감 엔지니어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시장 확대 및 전력기술 개발사업 [9점]

사업정의	기관의 지속성장과 에너지·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사업 및 기술 개발·고도화 사업
(1) 해외사업 확대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의	글로벌 선진 경쟁사 추격을 위한 기관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사업 확보 노력을 해외사업 매출액을 통해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사업 매출 = 당해 연도 해외사업 매출액 ② 중장기 목표 - 기준목표 : 2025년 실적치 - 달성목표 : 원전 설계 글로벌 Top 5 수준 (USD 87.1 Million) - 달성기간 : 5년 (2030년까지 달성) ※ 산출시 고려사항 • 美 엔지니어링 전문지, Engineering News-Record(ENR)가 발표하는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 Nuclear Plants’의 최신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Sargent & Lundy(4위, USD 96.1 Million)와 Tractebel(5위, USD 78 Million)을 벤치마크 대상으로 선정하여 양 사의 실적 평균값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함 • 원화(KRW), 외화(USD)를 환산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해당연도 연 평균 환율을 적용함
(2)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특허 등록 및 기술사업화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의 전력기술 개발 및 기술활용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성과 = (특허 성과 × 50%) + (기술사업화 성과 × 50%)

측정 산식
및 변수

-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 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 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3) 시장확대 및 전력기술 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혁신 프로젝트

- ①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7.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5) 이사회 구성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영업이익률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9.5	22.5	52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집단에너지 개발·건설 사업			13
	(1) 집단에너지 보급 노력		2	
	(2) 저탄소, 무탄소 열에너지 확대 노력		3	
	(3) 저탄소, 무탄소 전기에너지 확대 노력		1	
	(4) 집단에너지 개발·건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집단에너지 생산·운영 사업			11
	(1) 생산부문 에너지 절약		2	
	(2) 글로벌 CHP 고장정지율 최소화		2	
	(3) 기후·대기환경 개선 노력		1	
	(4)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		1	
	(5) 집단에너지 생산·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집단에너지 수송·분배 사업			13
	(1) 글로벌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1	
	(2) 에너지공급 중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1	
	(3) 수요측 에너지 효율향상 달성도		1	
	(4)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 노력		4	
	(5) 집단에너지 수송·분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3
	주요사업 합계	21	19	40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혁신 프로젝트 합계	8		8
전체 합계		58.5	41.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이사회 구성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열요금 연료비 정산금과 관련한 미수금은 총자산 산출시 제외함
㉔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㉓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열요금 연료비 정산금과 관련한 미수금은 총자산 산출시 제외함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집단에너지 개발·건설 사업 [13점]

사업정의	저탄소·무탄소 사업 개발, 활용 및 건설을 통해 친환경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집단에너지 보급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집단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집단에너지 보급노력(100%) = 집단에너지 허가 세대수(주택용, 30%) + 집단에너지 공급 세대수 (주택용, 40%) + 집단에너지 보급 열부하(업무용·공공용, 30%) ② 집단에너지 허가 세대수는 지역난방 사업장별 허가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집단에너지 공급 세대수는 지역난방 공급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집단에너지 보급 열부하는 지역난방 공급중인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의 연결열부하 합계를 기준으로 함 ③ 실적은 집단에너지 허가세대수, 공급 세대수, 집단에너지 보급 열부하를 각각 산출하며, 최종 득점은 각각의 득점에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값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 집단에너지 공급 세대수 및 보급 열부하는 열공급개시일부터 산입함 • 신규사업 참여제한 지침(기후부) 존속 시까지, 기관의 집단에너지 공급 세대수 최대목표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기후부)상 지역난방 연도별 공급 계획 세대수(누적 실적+기후부 계획)의 50%를 초과할 경우, 최고 목표는 연도별 공급 계획 세대수의 50%로 한다

(2) 저탄소, 무탄소 열에너지 확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저탄소, 무탄소 열에너지 활용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저탄소, 무탄소 열에너지 확대 노력 =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허가 용량(50%) +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공급 용량(50%) ②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허가 용량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나 신고를 득한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 용량 합계 [Gcal/h] ③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공급 용량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나 신고를 득한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설비 중에서 열생산을 개시한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 용량 합계[Gcal/h] ※ 미활용 및 재생 열에너지 설비 : 미활용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미활용에너지는 인간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지만 경제적 가치나 이용 방법의 한계로 인해 버려지거나 방출되는 에너지 - 미활용 열에너지 : 산업폐열(반도체 폐열 등), 도시폐열(하수처리수열 등), 냉각수열(데이터센터, 기기냉각수열 등), 폐기물 소각열(SRF, 소각로 등), 타사 굴뚝폐열, 연료전지 발전폐열 등 • 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산출시 고려사항 • 설비 용량 확인은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증, 혹은 열수급계약서나 타사 공문으로 증빙 • 열생산 개시시점은 기관의 KIOC시스템 운영실적현황 자료를 활용하거나, 열수급계약서 혹은 타사 공문으로 증빙 • 정부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향후 저탄소, 무탄소 열에너지의 정부(주무부처) 목표치가 제시되는 경우 정부목표치를 기준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한다.

(3) 저탄소, 무탄소 전기에너지 확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저탄소, 무탄소 전기에너지 활용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저탄소, 무탄소 전기에너지 확대 노력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50%) + 재생에너지 발전량(50%)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Σ(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용량 합계 •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③ 재생에너지 발전량 = Σ(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상기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 연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 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ESS 발전량은 당해연도에 전력계통으로의 방전량을 계산함
(4) 집단에너지 개발·건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집단에너지 생산·운영 사업 [11점]

사업정의	최적 설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집단 에너지 생산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생산부문 에너지절약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에너지 절약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달성도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를 적용하되, 기관 최신·최대용량 복합발전설비 모드별 설계효율을 초과하지 않음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를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에너지효율지수 달성도 = $\frac{\text{자체CHP 에너지 생산량}}{\text{자체CHP 연료투입량}}$ ② 자체CHP 에너지 생산량(Gcal) = 자체CHP 열생산량+(자체CHP 전기생산량×0.86) ③ 자체CHP 연료투입량(Gcal) = 자체CHP 연료투입량×연료별 발열량 ④ 실적은 발전기 운전모드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기 운전모드별 실적에 가중치를 곱한 득점의 합으로 함 ⑤ 발전기 운전모드별 가중치= $\frac{\text{발전기 운전 모드별 생산량}}{\sum \text{에너지 생산량}}$ ※ 산출시 고려사항 • 연료투입량 및 에너지 생산량은 KIOC시스템 운영실적 현황 자료 활용 • 전기 → 열 환산계수는 0.86을 적용 • 연료별 발열량 적용 - 천연가스 :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 공급실적 자료적용 - 유류, 우드칩, 바이오가스 : 연료별 공인인증기관의 성분분석 실적자료 적용 • 모드별 설계 효율(동탄 CHP Heat Balance 기준) - Mode 1, 4(열부하추종운전 -12℃기준) : 81.74%, Mode 3(전력부하 추종운전, 32℃기준) : 53.01%, Mode 5, 6(열전기 혼합운전, 15℃기준) : 75.7%	

(2) 글로벌 CHP 고장정지율 최소화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CHP 고장정지율 관리를 통한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발전형식별 기관 실적)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발전형식별 기관 실적))× 발전기별 노후도 Factor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CHP 고장정지율 = $\frac{\text{정지시간}}{\text{역일시간}}$																		
	② 정지시간 = 불시정지 + 과급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③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④ 실적은 발전기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기별 득점의 합으로 함																		
	⑤ 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발전기별 비중 × 지표 가중치(2점) - $\Sigma(\text{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text{지표 가중치}(2\text{점})$ - 발전기별 비중 = $\frac{\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Sigma(\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																		
	⑥ 노후도 Factor(준공일 및 평가년도 말 기준 내구연수 적용)																		
	<table><tr><td>내구 연도</td><td>5년 미만</td><td>10년 미만</td><td>15년 미만</td><td>20년 미만</td><td>25년 미만</td><td>30년 미만</td><td>35년 미만</td><td>35년 이상</td></tr><tr><td>Factor</td><td>3.0</td><td>1.9</td><td>1.9</td><td>1.8</td><td>1.0</td><td>1.7</td><td>3.1</td><td>4.2</td></tr></table>	내구 연도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5년 미만	30년 미만	35년 미만	35년 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내구 연도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20년 미만	25년 미만	30년 미만	35년 미만	35년 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⑦ 글로벌 지수 = $\frac{\text{기관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text{NERC 실적(고장정지율)}} \times \frac{\text{NERC 발전형식별 운전율}}{\text{기관 발전형식별 운전율}}$																		
⑧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⑨ 기본득점은 고장정지율 글로벌 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able><tr><td>글로벌 지수</td><td>1% 미만</td><td>1% 이상~2% 미만</td><td>2% 이상</td></tr><tr><td>기본득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r></table>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 산출 시 고려사항																			
• 정지시간은 전력거래소에 통보되는 통계자료로 함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국가 및 기관 R&D 시제품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NERC 실적은 NERC(북미 전력신뢰도 위원회) Generating Availability Data System(Fossil, All Fuel Types, All MW Sizes)의 최근 공표실적을 발전형식별로 적용(가스 : Combined Cycle, 유류 : Fossil Oil Primary All Sizes)															
(3) 기후·대기환경 개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전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온실가스 : 배출허용총량 (기후부 목표치) 대기오염물질 : 배출허용총량(기후부 목표치) × 80%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후·대기환경 개선 노력 = ① NDC 이행 탄소감축 노력(50%) +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 (50%)															
	① NDC 이행 탄소감축 노력 실적은 당해연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대비 배출량으로 하며, 온실가스 기준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4차 계획기간 이행연도별 배출허용총량과 기관의 기준연도 에너지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부에서 부여한 당해연도 배출허용총량으로 함.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 실적은 당해연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배출량으로 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 특성,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인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80%로 함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															
	<table><tr><td>구 분</td><td>2026</td><td>2027</td><td>2028</td><td>2029</td></tr><tr><td>배출허용총량</td><td>1,815,007</td><td>1,835,161</td><td>1,832,973</td><td>1,829,104</td></tr><tr><td>감축 기준치</td><td>1,452,006</td><td>1,468,129</td><td>1,466,378</td><td>1,463,283</td></tr></table>	구 분	2026	2027	2028	2029	배출허용총량	1,815,007	1,835,161	1,832,973	1,829,104	감축 기준치	1,452,006	1,468,129	1,466,378	1,463,283
구 분	2026	2027	2028	2029												
배출허용총량	1,815,007	1,835,161	1,832,973	1,829,104												
감축 기준치	1,452,006	1,468,129	1,466,378	1,463,283												
	*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량·이월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익년도 2월에 기후부에서 확정															
	※ 산출시 고려사항															
	1. NDC 이행 탄소감축 노력															
	• 계획기간 시작 전 사전할당량이 부여된 시설에 한해 평가															
	• 기관 배출량은 외부검증 수검 후 다음연도 3월에 기후부에 제출하는 명세서 활용															
	• 명세서와 시설별 할당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부가 운영 및 검증하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배출허용총량은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이루어지며, 할당배출권은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을 통해, 상쇄배출권은 상쇄등록부시스템(ORS)을 통해 확인 - 배출량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GMS)을 통해 확인. 2. 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 - 기준치(목표치)는 기후부에서 연도별, 설비별로 산정·부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가할당량·이월량 등을 반영한 총량) 80%임 - 먼지 항목은 '18년부터 할당시행(고체 및 액체연료 사용시설) - 배출량과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은 기후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가 할당 시설의 가 할당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가 할당 시설의 배출량 포함

(4)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1점)

정 의	국가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배출 원단위 : EU Taxonomy 기준 (270gCO ₂ e/kWh)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 탄소 배출원단위는 다음 산식으로 산출함 $\text{배출원단위 (gCO}_2\text{e/kWh)} = \frac{\text{열, 전기 직접생산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gCO}_2\text{e)}}{\text{열 생산량(kWh)} + \text{전기 생산량(kWh)}}$ ※ 산출 시 고려사항 - 배출량은 기후부가 지정한 검증기관의 외부검증 수검 후 다음연도 3월에 기후부에 제출하는 명세서를 활용하며,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NGMS)을 통해 확인 - 열 및 전기생산량은 통합운영시스템(KIOC) 운영실적 자료로 확인하며, 냉수 생산량 및 미활용열(외부수열) 활용량을 포함한다. 단, 태양광 시설의 전기 생산량은 제외 - 당해 기관실적이 최고목표 이상일 경우 차년도 기준치 1%씩 하향 조정

(5) 집단에너지 생산·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집단에너지 수송·분배 사업 [13점]

사업정의	집단에너지의 안정적, 효율적 수송·분배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고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글로벌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1점)

정 의	수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약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비교국가 중 최상위국 손실률 최저목표 : 비교국가 Top 3 국가들의 손실률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글로벌 열수송 손실 관리 = ① 글로벌 열수송 손실률 순위(80%) + ② 글로벌 열수송 손실률 지수(20%) ① 글로벌 열수송 손실률 순위 $= 20 + 80 \times \frac{\text{기관실적(열수송 손실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열수송 손실률(%) = 열손실량/열생산량 - 열손실량 = 열생산량 - 열판매량 ② 글로벌 열수송 손실률 지수 = $\frac{\text{기관 열수송 손실률}}{\text{최상위국 열수송 손실률}}$ ※ 비교국가: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실적은 통합운영시스템(KIOC) 열손실률 실적 활용 • 해외실적 중 열손실률 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관과 동일한 산식으로 계산 • 해외 실적치는 평가 기간내 확보가능한 각국 최근 발표자료를 활용함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국</th><th>자료출처</th></tr> </thead> <tbody> <tr> <td>독일</td><td>독일지역난방협회(AGFW) 홈페이지(www.agfw.de)의 zahlen & statistiken 내 agfw-hauptbericht 자료의 연도별 손실률</td></tr> <tr> <td>스웨덴</td><td>스웨덴 통계청(SCB) 홈페이지(www.scb.se)의 statistics database 내 Energy 중 Annual energy statistics(electricity, gas and district heating) 자료 (생산량: Total production+Received, 판매량: Total deliveries)</td></tr> <tr> <td>핀란드</td><td>핀란드 지역난방협회(Energiateollisuus) 홈페이지(energia.fi)의 District heating system 내 자료 (생산량: Total supply, 판매량: DH consumption)</td></tr> <tr> <td>노르웨이</td><td>노르웨이 통계청(SSB, Statics Norway) 홈페이지(www.ssb.no)의 Statbank 내 Energy and manufacturing 중 Energy의 District heating 자료 (생산량: Gross production, 손실량: Losses in the distribution net)</td></tr> </tbody> </table>	대상국	자료출처	독일	독일지역난방협회(AGFW) 홈페이지(www.agfw.de)의 zahlen & statistiken 내 agfw-hauptbericht 자료의 연도별 손실률	스웨덴	스웨덴 통계청(SCB) 홈페이지(www.scb.se)의 statistics database 내 Energy 중 Annual energy statistics(electricity, gas and district heating) 자료 (생산량: Total production+Received, 판매량: Total deliveries)	핀란드	핀란드 지역난방협회(Energiateollisuus) 홈페이지(energia.fi)의 District heating system 내 자료 (생산량: Total supply, 판매량: DH consumption)	노르웨이	노르웨이 통계청(SSB, Statics Norway) 홈페이지(www.ssb.no)의 Statbank 내 Energy and manufacturing 중 Energy의 District heating 자료 (생산량: Gross production, 손실량: Losses in the distribution net)
대상국	자료출처										
독일	독일지역난방협회(AGFW) 홈페이지(www.agfw.de)의 zahlen & statistiken 내 agfw-hauptbericht 자료의 연도별 손실률										
스웨덴	스웨덴 통계청(SCB) 홈페이지(www.scb.se)의 statistics database 내 Energy 중 Annual energy statistics(electricity, gas and district heating) 자료 (생산량: Total production+Received, 판매량: Total deliveries)										
핀란드	핀란드 지역난방협회(Energiateollisuus) 홈페이지(energia.fi)의 District heating system 내 자료 (생산량: Total supply, 판매량: DH consumption)										
노르웨이	노르웨이 통계청(SSB, Statics Norway) 홈페이지(www.ssb.no)의 Statbank 내 Energy and manufacturing 중 Energy의 District heating 자료 (생산량: Gross production, 손실량: Losses in the distribution net)										

측정 산식 및 변수	대상국	자료출처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 에너지 규제청(URE) 홈페이지(www.ure.gov.pl)의 Heat 내 Thermal energy in number의 연도별 자료 (생산량: Ciepło oddane do sieci, 판매량: Ciepło dostarczone do odbiorców przyłączonych do sieci)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통계청(SURS, Statistical Office of the Republic of Slovenia)의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SiStat 홈페이지(pxweb.stat.si)의 Energy 자료 중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의 Heat 자료 (생산량: Gross production, 손실량: distribution Losses)
(2) 에너지공급 중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1점)		
정 의	에너지공급시설의 최적관리를 통해 동절기 난방중단 및 정전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①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Min(과거3개년 글로벌 최상위 3개국 사용자별 정전시간 실적) 최저목표 : Avg(과거3개년 글로벌 최상위 3개국 사용자별 정전시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에너지공급중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60%)+글로벌 전기 공급 중단율(40%) ①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 = $\frac{\text{동절기 열공급 중단 세대시간}}{\text{동절기 총 세대시간}} \times 100$ - 동절기 열공급 중단 세대시간 = $\sum(\text{동절기 열공급 중단세대수} \times \text{중단시간})$ - 동절기 총 세대시간 = 총 열공급세대수×동절기일수×24시간 ② 글로벌 전기 공급 중단율 = 연 정전호수의 정전시간÷전체 고객호수 - 연 정전호수의 정전시간 = $\sum \text{구역전기사업지구(삼송, 동남권, 상암2지구)의 정전호수} \times \text{정전시간}$ - 전체 고객호수 = 구역전기사업지구(삼송, 동남권, 상암2지구) 전체 고객호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총 열공급세대수, 전체 고객호수는 해당연도 연말 기준 • 동절기일수 : 해당연도 1.1 - 3.31, 11.1 - 12.31. •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천재지변, 타기관에 의한 배관 파손,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에너지공급 중단은 제외 • 총 열공급세대수(전체 고객호수)는 ERP시스템 영업매출총괄표(전기영업) 자료 활용	

측정 산식 및 변수	• 동절기 열공급 중단 및 정전시간은 계획예방정비(결과)보고서, 고장상보 및 상급기관 상황보고 결과보고서(기후부 등) 활용 • 사용자별 정전시간(SAIDI(System Average Interruption Duration Index))은 IEA(국제 에너지기구) 회원국 및 준회원국(협력국) 상위권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한국) 실적을 적용 • 해외 통계자료는 각국의 통계발표, IEA 리포트 등 평가기간내 최근 발표 수치를 적용 <table border="1" data-bbox="443 607 1377 1025"> <thead> <tr> <th>대상국</th><th>자료출처</th></tr> </thead> <tbody> <tr> <td>미국</td><td>에너지 정보관리국 홈페이지(www.eia.gov)의 전기분야 분석 및 전망탭 보고서 실적</td></tr> <tr> <td>독일</td><td>독일 연방 네트워크청 홈페이지(www.bundesnetzagentur.de)의 전력지표 실적</td></tr> <tr> <td>일본</td><td>일본 전력 광역계통운영기관 홈페이지(www.occto.or.jp)의 보고서탭의 전력품질보고서 실적</td></tr> <tr> <td>한국</td><td>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online.kepco.co.kr)의 전력서비스현장 이행실적</td></tr> <tr> <td>싱가포르</td><td>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홈페이지(www.ema.gov.sg)의 자료 탭의 SAIDI실적</td></tr> </tbody> </table>	대상국	자료출처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국 홈페이지(www.eia.gov)의 전기분야 분석 및 전망탭 보고서 실적	독일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 홈페이지(www.bundesnetzagentur.de)의 전력지표 실적	일본	일본 전력 광역계통운영기관 홈페이지(www.occto.or.jp)의 보고서탭의 전력품질보고서 실적	한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online.kepco.co.kr)의 전력서비스현장 이행실적	싱가포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홈페이지(www.ema.gov.sg)의 자료 탭의 SAIDI실적
대상국	자료출처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국 홈페이지(www.eia.gov)의 전기분야 분석 및 전망탭 보고서 실적												
독일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 홈페이지(www.bundesnetzagentur.de)의 전력지표 실적												
일본	일본 전력 광역계통운영기관 홈페이지(www.occto.or.jp)의 보고서탭의 전력품질보고서 실적												
한국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www.online.kepco.co.kr)의 전력서비스현장 이행실적												
싱가포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홈페이지(www.ema.gov.sg)의 자료 탭의 SAIDI실적												
(3) 수요측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점)													
정 의	수요측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목표 달성도 (기후부 목표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요 측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도 =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실적/목표 = 에너지절감량/에너지절감 의무목표량 **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량(Gcal)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Gcal)×목표비율(%) ② 에너지절감량은 수요 측 효율향상 사업(에너지절감수단)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1. 에너지절감량은 외부검증 수검 후 다음연도 2월에 기후부에 제출하는 ‘EERS 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활용함. • 에너지절감량은 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문가 그룹(수요관리 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이행수단별 에너지절감량 산출방법 준용 2. 당해연도 목표는 기후부에서 부여하는 ‘연도별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 비율(기후부 고시)’에 근거한 에너지절감량임. • 당해연도 목표 = 연도별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 • 전전년도 연간 에너지판매량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게시자료 활용												

(4)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에너지 공급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에너지 공급 전 과정에서 사고발생 축소 노력으로 재해율 감소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재해율 = 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 × 30%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50% + 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20% • 산업재해 (근로자, 발주공사) 가중치 = (사망×10) + (중대재해×3) + (일반재해×1) - 인명 사고 가중치는 사고당 감점이 아닌 인원당 감점으로 적용 -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자료에 따라 선정함 - 사망 :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시민재해 (일반 국민)

$$\text{가중치} = (\text{사망} \times 10) + (\text{중상} \times 3) + (\text{경상} \times 1) + (\text{기타} \times 0.5)$$

- 인명 사고 가중치는 사고당 감점이 아닌 인원당 감점으로 적용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재해 (시설사고)

- 시설은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이 해당

$$\begin{aligned} \text{가중치} &= \text{사망이 발생한 시설사고(건)} \times 10 \\ &+ \text{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사고(건)} \times 5 \\ &+ \text{일반재해·경상·기타가 발생한 시설사고(건)} \times 3 \end{aligned}$$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시설(설비)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textcircled{4}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 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5) 집단에너지 수송·분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혁신 프로젝트

①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전KPS(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7.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		
	(5) 이사회 구성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영업이익률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9.5	22.5	52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화력발전·송전설비 정비사업			12
	(1) 화력발전소 정비수행 실적		1	
	(2) 화력발전설비 정비사업 확대 성과		3	
	(3) 송전설비 고장 최소화		2	
	(4) 화력발전·송전설비 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2. 원자력·양수발전설비 정비사업			8
	(1) 원자력·양수발전소 정비수행 실적		1	
	(2) 원자력·양수발전설비 정비사업 확대 성과		3	
	(3) 원자력·양수발전설비 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3. 안전관리 사업			8
	(1) 안전관리 성과		4	
	(2) 안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재생에너지·연관사업 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			9
	(1)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		2	
	(2) 연관사업 확대 성과		2	
	(3) 기술력 확보 성과		1	
	(4) 재생에너지·연관사업 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4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		3
	주요사업 합계	21	19	40
혁신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		8
	혁신 프로젝트 합계	8		8
전체 합계		58.5	41.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공시 정확도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이사회 구성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㉞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㉟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화력발전·송전설비 정비사업 [12점]

사업정의	(화력발전) 국내 화력발전소 대상 건설 및 운전과정에서 경상, 계획예방정비 등을 수행하여 전력설비 유지·관리 (송전설비) 송전설비의 고장예방 및 신속 복구를 위해 가공송전선로 유지정비, 초고압 활선정비 등 송변전 토털 정비서비스 제공

(1) 화력발전소 정비수행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의	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발전소 고장정지 최소화를 통한 기관 설립 목적 달성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화력발전소 정비수행 실적 : 기관 귀책 고장발생건수 - 대상설비 :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SPC, 민자발전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한전KPS 경상사업소 발전설비 - 자료출처 : 발주사(본사)가 발행하는 확인문서 * 산출시 고려사항 • (귀책 고장 판단기준) 설계·제작 결함, 경년열화, 오동작 등 기관의 관리·정비책임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를 제외한, 기관의 정비미흡 및 인적실수로 발생한 고장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 (실적 확인방법) 기관 귀책 고장발생건수 확인은 발주사가 운영하는 발전소로부터 실적(기초자료)을 회신받아, 발주사 본사의 최종 확인을 통해 실적 확정 ※ '2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지표 고도화 추진

(2) 화력발전설비 정비사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의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화력발전설비 정비사업 매출의 성장성과를 해외 유사기관의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2 \times$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2 \times$ 단위목표
평가 방법	$20\text{점} + 80\text{점} \times \left[\left(\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right) \times 0.5 \right. \\ \left. + \left(\frac{\text{실적(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 \right) \times 0.5 \right]$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장기 목표 : '25년 매출실적을 기준목표, 해외 유사기관의 최근 3년간('22~'24년) 연평균 성장률(CAGR)을 반영한 매출액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기간이 5년인 장기추세선상의 목표 ② 글로벌기업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 : 6.181%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CAGR(\text{연평균 성장률}) = \left(\frac{\text{End Value}}{\text{Begin Value}} \right)^{\frac{1}{\text{End of year} - \text{Begin of year}}} - 1$ - (비교대상) 글로벌 전력산업 분야의 기업과 유사한 사업범위 및 시장 환경에서 활동하는 3社 선정(Day&Zimmermann, GE Vernova, Ethos Energy) -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발행한 'TOP 400 Contractors' 보고서 상에 Day&Zimmermann 3개년('22~'24년) 전력설비(Power) 분야 매출, 연례 보고서 및 재무제표 공개자료 등 공식 발표자료의 GE Vernova(전력설비/Power분야), Ethos Energy(총매출액) 3개년('22~'24년)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③ 매출액 : 국내 및 해외 화력발전설비 정비사업 매출액 - 자료출처 : 기관 재무제표, ERP 매출대장,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발행하는 'TOP 400 Contractors' 보고서, GE Vernova, Ethos Energy 연례 보고서 및 재무제표 공개자료 등 공식 발표자료
(3) 송전설비 고장 최소화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송전설비 고장 수준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송전설비 고장 건수 0건
측정 산식 및 변수	○ 평가산식 = [100 - (외물접촉 및 기타 고장건수 × 1.0 + 기자재 시공 고장건수 × 1.5 + 화재 및 인적실수 고장건수 × 2.0)] × 배점 ※ 산출시 고려사항 • 고장건수는 가공송전선로의 고장에 한함(배전, 변전, 지중송전설비 제외) • 고장은 한전이 발행하는 “가공송전설비 고장 현황”문서(매년 2월 발표)에서 정의하는 주요고장을 의미함. • 고장건수 중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낙뢰, 빙설해, 풍우, 염진해, 산불) 제외
(4) 화력발전 · 송전설비 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② 원자력·양수발전설비 정비사업 [8점]

사업정의	국내 원자력 및 양수발전소 대상 건설 및 운전과정에서 경상, 계획예방정비 등을 수행하여 전력설비 유지·관리

(1) 원자력·양수발전소 정비수행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의	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발전소 고장정지 최소화를 통한 기관 설립 목표 달성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원자력·양수발전소 정비수행 실적 = 기관 귀책 고장발생건수 - 대상설비 :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자력 및 양수발전소 중 한전KPS 경상사업소 발전설비 - 자료출처 : 발주사(본사)가 발행하는 확인문서 * 산출시 고려사항 • (귀책 고장 판단기준) 설계·제작 결함, 경년열화, 오동작 등 기관의 관리·정비책임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를 제외한, 기관의 정비미흡 및 인적실수로 발생한 고장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 (실적 확인방법) 기관 귀책 고장발생건수 확인은 발주사가 운영하는 발전소로부터 실적(기초자료)을 회신받아, 발주사 본사의 최종 확인을 통해 실적 확정 ※ '2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지표 고도화 추진

(2) 원자력·양수발전설비 정비사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의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 원자력·양수발전설비 정비사업 매출의 성장성과를 해외 유사기관의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 $+2 \times$ 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 $-2 \times$ 단위목표
평가 방법	$20\text{점} + 80\text{점} \times \left[\left(\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right) \times 0.5 \right. \\ \left. + \left(\frac{\text{실적(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최근3년평균)} - \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 \right) \times 0.5 \right]$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장기 목표 : '25년 매출실적을 기준목표, 해외 유사기관의 최근 3년간('22~'24년) 연평균 성장률(CAGR)을 반영한 매출액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기간이 5년인 장기추세선상의 목표 ② 글로벌기업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 : 6.181%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CAGR(\text{연평균 성장률}) = \left(\frac{\text{End Value}}{\text{Begin Value}} \right)^{\frac{1}{\text{End of year} - \text{Begin of year}}} - 1$ - (비교대상) 글로벌 전력산업 분야의 기업과 유사한 사업범위 및 시장 환경에서 활동하는 3社 선정(Day&Zimmermann, GE Vernova, Ethos Energy) -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발행한 'TOP 400 Contractors' 보고서 상에 Day&Zimmermann 3개년('22~'24년) 전력설비(Power) 분야 매출, 연례 보고서 및 재무제표 공개자료 등 공식 발표자료의 GE Vernova(전력설비/Power분야), Ethos Energy(총매출액) 3개년('22~'24년)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③ 매출액 : 국내 및 해외 원자력, 양수·수력발전설비 정비사업 매출액 - 자료출처 : 기관 재무제표, ERP 매출대장,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발행하는 'TOP 400 Contractors' 보고서, GE Vernova, Ethos Energy 연례 보고서 및 재무제표 공개자료 등 공식 발표자료
(3) 원자력·양수발전설비 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③ 안전관리 사업 [8점]

사업정의	고위험 작업환경 속에서 현장 안전관리 활동 및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
(1) 안전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기관의 재해예방 활동에 따른 사고 건수 저감 실적을 측정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재해율 = 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 × 50%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30%
+ 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20%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③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가중치 : 사망사고 1인당 10,
중대 재해, 중상 1인당 3,
일반 재해,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사고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시 제외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시설(설비)사고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중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 (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설비)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2) 안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 4점)

④ 재생에너지·연관사업 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 [9점]

사업정의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 설비 및 계통안정화 자원관련 설비의 EPC, O&M, 지분투자 등을 수행 (연관사업) 한국전력, 한수원, 발전5사 등 10개 전력그룹사를 제외한 고객사가 발주한 발전설비 정비사업 및 해외 발전설비 대상 건설·운전과정에서 경상, 계획예방정비 등을 수행 (기술력 강화) 발전설비 안정성 제고를 위한 특화 정비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활용 민간기업 지원

(1)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및 계통안정화 사업 실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전환과 2035 NDC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 = 재생에너지사업 매출액 + 계통안정화사업 매출액 ① 재생에너지사업 :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위 ② 계통안정화사업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단·장주기 ESS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 재생에너지사업 및 계통안정화 사업 직접매출액, 지분투자매출액 (지분회사 매출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자료출처 : 기관 재무제표 및 ERP 매출대장

(2) 연관사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핵심사업(발전설비 정비)과 관련된 연관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력 그룹사 의존율을 저감하고 기관 자생력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연관사업 확대성과 = ① 국내연관사업 매출액 + ② 해외연관사업 매출액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내연관사업 매출액 : 국내사업 매출액 전체 - 전력그룹사* 대상 매출액 ② 해외연관사업 매출액 : 해외사업 매출액 전체(전력그룹사* 대상 매출액 및 기관 자회사 매출액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력그룹사 : 당사 주력사업 대상설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10개 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 매출액 : 기관 재무제표 및 ERP 매출대장을 근거로 산출하며 임대료 수입 및 시설관리용역업 매출액은 실적에서 제외함
(3) 기술력 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특허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력 확보 성과 = (특허 성과 × 50%) + (기술사업화 성과 × 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 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4) 재생에너지·연관사업 확대 및 기술역량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 4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혁신 프로젝트

① 혁신 프로젝트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8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SOC 유형

1. 인천국제공항공사	222
2. 한국공항공사	240
3. 한국도로공사	256
4. 한국수자원공사	272
5. 한국철도공사	288
6. 한국토지주택공사	304
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20
8. 주식회사 에스알	33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	
	㉡ 자본생산성		2	
	㉢ ROA 글로벌 경쟁력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여객서비스 사업			16
	(1) 공항서비스 글로벌경쟁지수		5	
	(2) 스마트공항 구현		1	
	(3) 신속한공항 구현		1	
	(4) 공항보안관리		2	
	(5) 여객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공항인프라 개발사업			14
	(1) 국제항공운송실적		2	
	(2) 공항안전관리		5	
	(3) 공항인프라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미래성장 사업			15
	(1) 허브화경쟁력		2	
	(2) 노선경쟁력		1	
	(3) 지방네트워크 활성화		1	
	(4) 글로벌 미래성장 경쟁력		2.5	
	(5) 저탄소·친환경 공항구현		1.5	
	(6) 미래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연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최고목표·최저목표 설정에 사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총자산 산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인하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㉔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연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최고목표·최저목표 설정에 사용함.

(3) 효율성 관리 [5점]

㉕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연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최고목표·최저목표 설정에 사용함.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연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최고목표·최저목표 설정에 사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총자산 산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인하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투자 금액은 제외한다.

㉡ ROA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영업이익률) 수준을 글로벌 TOP6공항의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비교대상공항의 최근년도 실적치 평균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비교대상공항의 최근년도 ROA 실적치 중 최고치 최저목표 : 비교대상공항의 최근년도 ROA 실적치 중 최저치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ROA}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산}}$ ② 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연도말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으로 함 ③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실적치는 비교 대상 공항의 가장 최근 발표된 Annual report상 실적을 사용 • 비교대상공항(글로벌 TOP6 공항) :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독일 프랑크푸르트, 홍콩 첵랍콕, 싱가포르 창이, 일본 도쿄 나리타 • 총자산 산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인하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투자 금액은 제외한다.

□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여객서비스 사업 [16점]

사업정의	편리한 여객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최상의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공항서비스 글로벌경쟁지수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의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주관하는 ASQ 평가 결과의 수준 및 개선실적을 활용하여 공항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서비스 글로벌경쟁지수의 평점은 ACI(국제공항협의회)에서 실시하는 ASQ평가결과를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지수로 산출 ② 글로벌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최고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 Best In Class 1위의 득점평균 최저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에 속한 글로벌 공항의 득점평균 * Segment란 ASQ평가 결과 상 여객처리 규모(size)별 구분에 따름 ③ ASQ(세계공항서비스평가)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평가 항목</th></tr> </thead> <tbody> <tr><td>1</td><td>공항에서의 경험만족도(Overall experience with this airport)</td></tr> <tr><td>2</td><td>공항에서 보낸 경험: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Safe Secure)</td></tr> <tr><td>3</td><td>공항에서 보낸 경험: 행복하다(Happy)</td></tr> <tr><td>4</td><td>공항에서 보낸 경험: 신이난다(Excited)</td></tr> <tr><td>5</td><td>공항에서 보낸 경험: 신뢰한다(Confident)</td></tr> <tr><td>6</td><td>공항에서 보낸 경험: 편안하다(Relaxed)</td></tr> <tr><td>7</td><td>공항의 접근 용이성(Ease of getting to the airport)</td></tr> <tr><td>8</td><td>터미널 접근을 위한 표지판(Signage to access terminal)</td></tr> <tr><td>9</td><td>교통수단의 요금대비 만족도(Value for money of Transport)</td></tr> <tr><td>10</td><td>탑승구역(체크인) 길찾기의 편의성(Ease of finding check-in area)</td></tr> <tr><td>11</td><td>탑승수속 대기시간(Waiting time at check-in area)</td></tr> <tr><td>12</td><td>탑승수속 구역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check-in area staff)</td></tr> <tr><td>13</td><td>보안검색 이용의 편의성(Ease of going Through security screening)</td></tr> <tr><td>14</td><td>보안검색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security screening)</td></tr> <tr><td>15</td><td>보안검색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creening staff)</td></tr> <tr><td>16</td><td>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passport control)</td></tr> <tr><td>17</td><td>국경/여권 심사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passport control)</td></tr> <tr><td>18</td><td>레스토랑/바/카페(Restaurants/bars/cafes)</td></tr> <tr><td>19</td><td>가격대비 레스토랑/바/카페 만족도(Value for money of Restaurants/bars/cafes)</td></tr> <tr><td>20</td><td>상점(Shops)</td></tr> <tr><td>21</td><td>가격대비 상점 만족도(Value for money of shops)</td></tr> <tr><td>22</td><td>쇼핑 및 식당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dining staff)</td></tr> <tr><td>23</td><td>게이트구역 대기 편리성(Comfort of waiting at the gate areas)</td></tr> <tr><td>24</td><td>게이트구역 좌석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seats at the gate areas)</td></tr> <tr><td>25</td><td>길찾기의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td></tr> <tr><td>26</td><td>항공편 정보 안내의 이용편의(Availability of flight information)</td></tr> <tr><td>27</td><td>터미널 내 이동 편의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td></tr> <tr><td>28</td><td>환승 길찾기 편의성(Ease of making connection with other flights)</td></tr> <tr><td>29</td><td>공항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airport staff)</td></tr> <tr><td>30</td><td>Wi-Fi 서비스 품질(Wi-Fi service quality)</td></tr> <tr><td>31</td><td>휴대용 기기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Availability of charging stations)</td></tr> <tr><td>32</td><td>오락 및 여가시설(Entertainment and leisure options)</td></tr> <tr><td>33</td><td>화장실 이용편의(Availability of washrooms/toilets)</td></tr> <tr><td>34</td><td>화장실 청결성(Cleanliness of washrooms/toilets)</td></tr> <tr><td>35</td><td>건강관련 안전성(Health safety)</td></tr> <tr><td>36</td><td>청결도(Cleanliness)</td></tr> <tr><td>37</td><td>분위기(Ambience)</td></tr> <tr><td>38</td><td>공항의 전반적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with this airport)</td></tr> </tbody> </table>	연번	평가 항목	1	공항에서의 경험만족도(Overall experience with this airport)	2	공항에서 보낸 경험: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Safe Secure)	3	공항에서 보낸 경험: 행복하다(Happy)	4	공항에서 보낸 경험: 신이난다(Excited)	5	공항에서 보낸 경험: 신뢰한다(Confident)	6	공항에서 보낸 경험: 편안하다(Relaxed)	7	공항의 접근 용이성(Ease of getting to the airport)	8	터미널 접근을 위한 표지판(Signage to access terminal)	9	교통수단의 요금대비 만족도(Value for money of Transport)	10	탑승구역(체크인) 길찾기의 편의성(Ease of finding check-in area)	11	탑승수속 대기시간(Waiting time at check-in area)	12	탑승수속 구역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check-in area staff)	13	보안검색 이용의 편의성(Ease of going Through security screening)	14	보안검색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security screening)	15	보안검색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creening staff)	16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passport control)	17	국경/여권 심사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passport control)	18	레스토랑/바/카페(Restaurants/bars/cafes)	19	가격대비 레스토랑/바/카페 만족도(Value for money of Restaurants/bars/cafes)	20	상점(Shops)	21	가격대비 상점 만족도(Value for money of shops)	22	쇼핑 및 식당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dining staff)	23	게이트구역 대기 편리성(Comfort of waiting at the gate areas)	24	게이트구역 좌석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seats at the gate areas)	25	길찾기의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	26	항공편 정보 안내의 이용편의(Availability of flight information)	27	터미널 내 이동 편의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	28	환승 길찾기 편의성(Ease of making connection with other flights)	29	공항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airport staff)	30	Wi-Fi 서비스 품질(Wi-Fi service quality)	31	휴대용 기기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Availability of charging stations)	32	오락 및 여가시설(Entertainment and leisure options)	33	화장실 이용편의(Availability of washrooms/toilets)	34	화장실 청결성(Cleanliness of washrooms/toilets)	35	건강관련 안전성(Health safety)	36	청결도(Cleanliness)	37	분위기(Ambience)	38	공항의 전반적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with this airport)
연번	평가 항목																																																																														
1	공항에서의 경험만족도(Overall experience with this airport)																																																																														
2	공항에서 보낸 경험: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Safe Secure)																																																																														
3	공항에서 보낸 경험: 행복하다(Happy)																																																																														
4	공항에서 보낸 경험: 신이난다(Excited)																																																																														
5	공항에서 보낸 경험: 신뢰한다(Confident)																																																																														
6	공항에서 보낸 경험: 편안하다(Relaxed)																																																																														
7	공항의 접근 용이성(Ease of getting to the airport)																																																																														
8	터미널 접근을 위한 표지판(Signage to access terminal)																																																																														
9	교통수단의 요금대비 만족도(Value for money of Transport)																																																																														
10	탑승구역(체크인) 길찾기의 편의성(Ease of finding check-in area)																																																																														
11	탑승수속 대기시간(Waiting time at check-in area)																																																																														
12	탑승수속 구역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check-in area staff)																																																																														
13	보안검색 이용의 편의성(Ease of going Through security screening)																																																																														
14	보안검색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security screening)																																																																														
15	보안검색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creening staff)																																																																														
16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passport control)																																																																														
17	국경/여권 심사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passport control)																																																																														
18	레스토랑/바/카페(Restaurants/bars/cafes)																																																																														
19	가격대비 레스토랑/바/카페 만족도(Value for money of Restaurants/bars/cafes)																																																																														
20	상점(Shops)																																																																														
21	가격대비 상점 만족도(Value for money of shops)																																																																														
22	쇼핑 및 식당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dining staff)																																																																														
23	게이트구역 대기 편리성(Comfort of waiting at the gate areas)																																																																														
24	게이트구역 좌석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f seats at the gate areas)																																																																														
25	길찾기의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																																																																														
26	항공편 정보 안내의 이용편의(Availability of flight information)																																																																														
27	터미널 내 이동 편의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																																																																														
28	환승 길찾기 편의성(Ease of making connection with other flights)																																																																														
29	공항 직원의 친절과 도움(Courtesy and helpfulness of airport staff)																																																																														
30	Wi-Fi 서비스 품질(Wi-Fi service quality)																																																																														
31	휴대용 기기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Availability of charging stations)																																																																														
32	오락 및 여가시설(Entertainment and leisure options)																																																																														
33	화장실 이용편의(Availability of washrooms/toilets)																																																																														
34	화장실 청결성(Cleanliness of washrooms/toilets)																																																																														
35	건강관련 안전성(Health safety)																																																																														
36	청결도(Cleanliness)																																																																														
37	분위기(Ambience)																																																																														
38	공항의 전반적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with this airport)																																																																														

(2) 스마트공항 구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 스마트공항시설 이용률 확대 노력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항 구현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공항시설이용률 = 스마트공항시설 이용객 ÷ 국제선 여객수 ② 스마트공항시설 이용객은 국토교통부 「스마트공항종합계획」 중 스마트 프로세스(체크인, 수하물위탁, 보안검색, 출국심사, 보딩)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용가능한 자동화 시설 이용객수로 산정 ③ 셀프체크인 이용객은 셀프체크인기기 및 웹·모바일체크인 사용 출국여객과 향후 도입될 생체정보 인증기반 이동형 셀프체크인 이용객을 합산하여 산정함 ④ 셀프백드랍 이용객은 셀프백드랍기기 및 공항 외 수하물 위탁(이지드랍) 사용 출국여객과 향후 도입될 드라이브-스루 백드랍 이용객을 합산하여 산정함 ⑤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객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한 여객으로 산정함 ⑥ 스마트패스 이용객은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출국장을 통과한 여객수로 산정함 ⑦ 국제선 여객수 : 해당 평가기간 동안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여객 수 (환승객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셀프체크인·셀프백드랍, 공항 외 수하물위탁(이지드랍) 이용객은 사용료 산정 실적치, 웹·모바일체크인은 항공사 제공 사용객,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객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연간통계치, 스마트패스는 스마트패스운영관리시스템 통계치를 이용함

(3) 신속한 공항구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여객의 출·입국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여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상 출·입국 기준시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MAX(기준치 × 120%, 최대기준시간*) *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상 출·입국 최대기준시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침두기간 및 비침두기간의 출·입국 프로세스별 소요시간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다. - 출국 : 체크인, 보안검색, 출국심사 소요시간 - 입국 : 입국심사, 세관심사 및 수하물 수취 소요시간 ② 침두기간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반영되는 기간으로 하며 비침두기간은 침두기간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③ 실적은 95% 백분위 여객의 소요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다. ※산출시 고려사항 • 조사시간 등 측정 세부사항은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매뉴얼에 따르며 출·입국 소요시간은 기관 빅데이터플랫폼상 수치로 한다.

(4) 공항보안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외부검사 시정지시건수,항공보안법상 벌금 및 과태료 부과건수를 측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 예방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① 벌칙(벌금,과태료) 부과건수 0건 ② 외부검사 보안지적건수 0건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보안관리 = 100점 - ∑감점 - (감점)유형별 감점 점수 적용			
	감점유형	벌칙 부과건수		외부검사 보안지적건수
		벌금	과태료	
	감점점수	20점	15점	10점
	② 벌칙 부과건수 :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또는 제51조(과태료)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귀책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로 산출함			
	③ 외부검사 보안지적건수 :국토교통부 예규 제 61호 “국가항공보안 수준 관리 지침”에 의한 인천국제공항의 정기 보안점검 지적(시정지시)건수로 산출함			

(5) 여객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공항인프라 개발사업 [14점]

사업정의	항공수요를 증대하고 미래 수요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국제항공운송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국제선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을 종합평가함으로써, 항공수요 증대를 통한 허브경쟁력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WLU 실적 : 국제여객수(명) + 국제화물량(톤)×10 ② WLU : 공항분야 국제 통계기준 WLU(Work Load Unit) ※ 산출시 고려사항 •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치 및 표준편차 산정에서는 코로나19 기간('20~'22년) 실적을 제외함.

(2) 공항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근로자, 발주공사, 국민·시설 재해율을 통해 기관의 공항안전 확보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재해율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근로자 재해율 평점×(1점) +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1.5점) +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2.5점) ②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③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④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총여객수(십만명)}}$ -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인명사고(발주공사)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경상 + 기타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중상 1인당 3, 일반재해,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시설(설비)사고 :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되고 관리되고 있는 공항 안전과 관련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지상안전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누출사고, 화재사고가 공항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건) × 10
 - 항공기사고(사망, 중대재해, 중상,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 제외)(건) × 10
 - 중대재해, 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건) × 5
 -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건) × 3
 - 항공기준사고(사망, 중대재해, 중상,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 제외)(건) × 3
 - 지상안전사고(사망, 중대재해, 중상,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 제외)(건) × 1
-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 발주공사 근로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연도말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총여객수는 국내선 여객수와 국제선 여객수를 합계하여 계산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적용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설비)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지상안전사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 유관부처에 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시설(설비) 사고로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측정 산식 및 변수	국민·시설 재해율의 분모 수치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내로 하며, 초과 시 단위를 조정하여 평가함.

(3) 공항인프라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미래성장 사업 [15점]

사업정의	항공수요를 증대하고 미래 수요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허브화경쟁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인천공항의 허브화경쟁력을 세계적인 허브공항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허브화경쟁력 = 국제선 직항 운항편수 × 환승객 수 ② 국제선 직항 운항편수 : 인천공항에서 연결 가능한 항공편을 측정함으로써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평가하는 지표로, 천편 기준으로 산정 ③ 환승객 수 : 인천공항의 중심성(Centrality)을 평가하는 지표로, 백만명 기준으로 산정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년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목표치(과거 5개년 실적을 토대로 산정) 설정에 사용함.

(2) 노선경쟁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인천공항의 노선공급 다양성 성과를 측정하여 공항의 네트워크 확장과 연결성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선경쟁력은 ASK 실적으로 평가한다. ② ASK실적 = 공급좌석 수(석) × 운항거리(km) * ASK(Available Seat Kilometer, 유상좌석운항거리) ※ 산출시 고려사항 - ASK실적은 빅데이터 플랫폼 상 ASK수치를 활용함. -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치 및 표준편차 산정에서는 코로나19 기간('20~'22년) 실적을 제외함.
(3) 지방 네트워크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지방 네트워크 활성화 실적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된 국내선 운항실적(내항기 포함)으로 평가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치 및 표준편차 산정에서는 코로나19 기간('20~'22년) 실적을 제외함.
(4) 글로벌 미래성장 경쟁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① 공항 주변지역 개발, ② 해외사업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①, ② 각각 해당)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①, ② 각각 해당
측정 산식 및 변수	공항주변지역 개발 노력, 해외사업 확대 노력을 각각 60 : 4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① 공항주변지역 개발 노력은 국제업무지역, 공항물류단지, 복합리조트, MRO 등 공항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수익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상 토지임대료로 측정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해외사업 확대는 재무제표상 해외사업 관련 사업수익, 배당수익, 글로벌 교육수익,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을 누적합산하여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한다. • 해외사업 관련 사업수익, 배당수익 및 글로벌 교육수익은 별도 손익계산서상 해당 계정과목 금액으로 하며 현지법인 매출은 현지통화 매출액을 당해연도 평균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저탄소·친환경 공항구현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부여, 가중치 : 1.5점)

정 의	①친환경에너지 발전, ②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관의 친환경 공항 구현 노력을 평가한다.(①상향지표, ②하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목표치(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치)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9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친환경에너지 발전 및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50 : 5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① 친환경에너지 발전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명시된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의 기관 자체 발전량을 MWh 단위로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함 ②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평가대상연도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으로 함 - 온실가스 할당량은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계획 기간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대상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규모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할당량이며, 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명세서 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계획기간 시작 전 사전할당량이 부여된 시설에 한해 평가한다. • 할당량은 유상할당 및 무상할당을 포함한다. • 배출량은 외부검증 수검 후 차년도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는 명세서상 수치로 한다. • 배출량 및 할당량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GMS)을 통해 확인한다.

(6) 미래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항공공사

한국항공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영업이익률		3.5	
	㉢ 부채비율		1	
	㉣ 이자보상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공항 활성화 사업			13
	(1) 항공수송성과		5	
	(2) 지방공항 활성화		3	
	(3) 공항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2. 공항 안전·보안 사업			11
	(1) 공항안전 및 재난관리		5	
	(2) 공항보안관리		1	
	(3) 공항 안전·보안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공항 편의성 제고 사업			13
	(1) 공항서비스글로벌경쟁지수		4	
	(2) 신속한 공항 구현		1	
	(3) 스마트공항 구현		2	
	(4) 공항 편의성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항공산업 육성·지원 및 지속가능성장 사업			8
	(1) 신성장사업 성장률		1.5	
	(2) 저탄소·친환경 공항 구현		1.5	
	(3) 항공산업 육성·지원 및 지속가능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항시설사용료는 가산함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5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항시설사용료는 가산함 • 영업이익 산출시 정부에 의한 코로나 기간 임대료 감면 방침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영업이익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항시설사용료는 가산함. • 영업이익 산출시 정부에 의한 코로나 기간 임대료 감면 방침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음.

(3) 효율성 관리 [5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연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최고목표·최저목표 설정에 사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항시설사용료는 가산함 •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에 의한 코로나 기간 임대료 감면 방침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음.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연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최고목표·최저목표 설정에 사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항시설사용료는 가산함 • 부가가치 산출시 정부에 의한 코로나 기간 임대료 감면 방침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공항 활성화 사업 [13점]

사업정의	
항공운송 증대 및 노선 확대 등 공항활성화를 통한 항공교통 편익 제고	
(1) 항공수송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수송실적 증대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항공 수요증대를 위한 기관의 공항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항공수송성과는 국제선 성과(4점)와 국내선 성과(1점) 각각 계산 후 합산 ① 국제선 성과 = 국제선 여객수+인바운드 실적 ② 국내선 성과 = 국내선 여객수 ③ 기관의 여객수는 해당 평가기간 동안 국내·국제선 이용객 실적치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글로벌국제여객증감률은 ACI(세계공항협회)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함 • 인바운드 실적은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수를 합산함 • 국제선 성과 산정 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치 및 표준편차 산정에서는 코로나19 기간('20~'22년) 실적을 제외함
(2) 지방공항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여객수, 수익, 운항횟수 향상수준 평가를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①, ②, ③ 각각 해당)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①, ②, ③ 각각 해당
측정 산식 및 변수	지방공항 활성화 = 여객수 (1점), 수익 (1점), 운항횟수 (1점) 각각 계산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① 여객수 :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국제선 및 국내선 여객수를 합산하여 산정 ② 수익 :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개별 손익계산서 매출액 항목 중 공항수익, 시설이용수익, 임대수익, 기타수익을 합산하여 산정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운항횟수 :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횟수를 합산하여 산정

(3) 공항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② 공항 안전·보안 사업 [11점]

사업정의	공항 안전·재난 및 항공보안 관리 강화로 안전한 공항 구현

(1) 공항안전 및 재난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근로자, 발주공사, 국민·시설 재해율을 통해 기관의 공항안전 확보노력을 평가한다. (① 하향지표, ②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근로자 재해율 평점×(1점) +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1.5점) +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2.5점) ②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③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④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시설(설비) 사고}}{\text{총여객수(십만명)}}$ -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인명사고(발주공사)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중상 1인당 3, 일반재해,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사고 :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되고 관리되고 있는 공항 안전과 관련된 항공기사고, 준사고, 지상안전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누출사고, 화재사고가 공항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항공기사고(사망, 중대재해, 중상,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 제외)(건) × 10
 - 중대재해, 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 항공기준사고(사망, 중대재해, 중상,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 제외)(건) × 3
 - 지상안전사고(사망, 중대재해, 중상,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 제외)(건) × 1
-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 발주공사 근로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연도말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총여객수는 국내선 여객수와 국제선 여객수를 합계하여 계산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적용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 (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설비)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지상안전사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 유관부처에 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시설(설비) 사고로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국민·시설 재해율의 분모 수치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내로 하며, 초과 시 단위를 조정하여 평가함.
(2) 공항보안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점)	
정 의	외부검사 시정지시건수, 항공보안법상 벌금 및 과태료 부과건수를 측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보안 예방 및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공항보안 달성(벌금·과태료·지적 0건)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안관리노력 = 100점-실적 감점 합계

구 분	벌금	과태료	지적
감 점	20	15	10

- 벌금 및 과태료 건수 :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또는 제51조(과태료)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귀책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
- 외부검사 보안 지적건수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 61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의한 정기 보안점검 지적(시정지시) 건수로 산출함.
- 감점은 여객수를 기준으로 14개 공항 실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3) 공항 안전·보안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공항 편의성 제고 사업 [13점]

사업정의	공항서비스 개발·확대 및 공항시설 개선, 데이터 기반 공항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공항 구현 등 공항 이용객 편의성 제고

(1) 공항서비스글로벌경쟁지수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4점)

정의	ACI(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국제공항협회)에서 주관하는 ASQ*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동일규모군 글로벌 공항과의 수준비교를 통해 공항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항서비스글로벌경쟁지수의 평점은 ACI(국제공항협회)에서 실시하는 ASQ평가결과를 글로벌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지수로 평가함 ② 글로벌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최고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 Best In Class 1위의 득점평균 최저목표 : ACI 발표 평가항목별 Segment에 속한 글로벌 공항의 득점평균 기관실적 : ACI 발표 평가항목별 기관의 득점평균 ③ 공항서비스 산출시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table> <tr><td>1. 전반적인 경험(Overall Experience)</td></tr> <tr><td>2. 안전·보안 수준(Safe and Secure)</td></tr> <tr><td>3. 공항 이용 시 느낀 행복감(Happy)</td></tr> <tr><td>4. 여행에 대한 기대감·설렘(Excited)</td></tr> <tr><td>5. 이용 과정에 대한 신뢰감(Confident)</td></tr> <tr><td>6. 공항 이용 시 편안함(Relaxed)</td></tr> <tr><td>7. 공항 접근의 용이성(Ease of getting to the airport)</td></tr> <tr><td>8. 터미널 안내표지의 분명함(Signage to access the terminal)</td></tr> <tr><td>9. 선택한 교통수단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the selected mode of transport)</td></tr> <tr><td>10. 체크인 구역 찾기 용이성(Ease of finding your check-in area)</td></tr> <tr><td>11. 체크인 및 수하물 위탁 대기시간(Waiting time at check-in, including baggage drop)</td></tr> <tr><td>12. 체크인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taff in the check-in area)</td></tr> <tr><td>13. 보안검색 절차의 용이성(Ease of going through security screening)</td></tr> <tr><td>14. 보안검색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security screening)</td></tr> <tr><td>15. 보안검색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creening staff)</td></tr> <tr><td>16.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Waiting time at border/passport control)</td></tr> <tr><td>17. 출입국 심사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border/passport control staff)</td></tr> <tr><td>18. 식음시설(레스토랑·바·카페)(Restaurants/bars/cafés)</td></tr> <tr><td>19. 식음시설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restaurant/bars/cafés)</td></tr> <tr><td>20. 쇼핑시설(Shops)</td></tr> <tr><td>21. 쇼핑시설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shops)</td></tr> <tr><td>22. 쇼핑·식음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hopping and dining staff)</td></tr> <tr><td>23. 대기장소 공간의 편안함(Comfort of waiting at the gate areas)</td></tr> <tr><td>24. 대기장소 공간 좌석의 충분성(Availability of seats at the gate areas)</td></tr> <tr><td>25. 공항 안 길찾기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td></tr> <tr><td>26. 항공편 정보(게이트·시간) 제공의 충분성(Availability of flight information(gate and time))</td></tr> <tr><td>27. 터미널 안 이동 편리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td></tr> <tr><td>28. 공항직원 친절성(Courtesy and helpfulness of airport staff)</td></tr> <tr><td>29. 인터넷/Wi-Fi 시설 품질(Wi-Fi service quality)</td></tr> <tr><td>30. 충전시설 편리성(Availability of charging stations)</td></tr> <tr><td>31. 즐길거리 및 여가활동(Entertainment and leisure options)</td></tr> <tr><td>32. 화장실 접근성(Availability of washrooms/toilets)</td></tr> <tr><td>33. 화장실 청결도(Cleanliness of washrooms/toilets)</td></tr> <tr><td>34. 보건안전성(Health safety)</td></tr> <tr><td>35. 청결도(Cleanliness)</td></tr> <tr><td>36. 공항분위기(Ambience)</td></tr> <tr><td>37. 종합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td></tr> </table>	1. 전반적인 경험(Overall Experience)	2. 안전·보안 수준(Safe and Secure)	3. 공항 이용 시 느낀 행복감(Happy)	4. 여행에 대한 기대감·설렘(Excited)	5. 이용 과정에 대한 신뢰감(Confident)	6. 공항 이용 시 편안함(Relaxed)	7. 공항 접근의 용이성(Ease of getting to the airport)	8. 터미널 안내표지의 분명함(Signage to access the terminal)	9. 선택한 교통수단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the selected mode of transport)	10. 체크인 구역 찾기 용이성(Ease of finding your check-in area)	11. 체크인 및 수하물 위탁 대기시간(Waiting time at check-in, including baggage drop)	12. 체크인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taff in the check-in area)	13. 보안검색 절차의 용이성(Ease of going through security screening)	14. 보안검색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security screening)	15. 보안검색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creening staff)	16.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Waiting time at border/passport control)	17. 출입국 심사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border/passport control staff)	18. 식음시설(레스토랑·바·카페)(Restaurants/bars/cafés)	19. 식음시설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restaurant/bars/cafés)	20. 쇼핑시설(Shops)	21. 쇼핑시설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shops)	22. 쇼핑·식음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hopping and dining staff)	23. 대기장소 공간의 편안함(Comfort of waiting at the gate areas)	24. 대기장소 공간 좌석의 충분성(Availability of seats at the gate areas)	25. 공항 안 길찾기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	26. 항공편 정보(게이트·시간) 제공의 충분성(Availability of flight information(gate and time))	27. 터미널 안 이동 편리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	28. 공항직원 친절성(Courtesy and helpfulness of airport staff)	29. 인터넷/Wi-Fi 시설 품질(Wi-Fi service quality)	30. 충전시설 편리성(Availability of charging stations)	31. 즐길거리 및 여가활동(Entertainment and leisure options)	32. 화장실 접근성(Availability of washrooms/toilets)	33. 화장실 청결도(Cleanliness of washrooms/toilets)	34. 보건안전성(Health safety)	35. 청결도(Cleanliness)	36. 공항분위기(Ambience)	37. 종합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1. 전반적인 경험(Overall Experience)																																						
2. 안전·보안 수준(Safe and Secure)																																						
3. 공항 이용 시 느낀 행복감(Happy)																																						
4. 여행에 대한 기대감·설렘(Excited)																																						
5. 이용 과정에 대한 신뢰감(Confident)																																						
6. 공항 이용 시 편안함(Relaxed)																																						
7. 공항 접근의 용이성(Ease of getting to the airport)																																						
8. 터미널 안내표지의 분명함(Signage to access the terminal)																																						
9. 선택한 교통수단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the selected mode of transport)																																						
10. 체크인 구역 찾기 용이성(Ease of finding your check-in area)																																						
11. 체크인 및 수하물 위탁 대기시간(Waiting time at check-in, including baggage drop)																																						
12. 체크인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taff in the check-in area)																																						
13. 보안검색 절차의 용이성(Ease of going through security screening)																																						
14. 보안검색 대기시간(Waiting time at the security screening)																																						
15. 보안검색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ecurity screening staff)																																						
16. 출입국 심사 대기시간(Waiting time at border/passport control)																																						
17. 출입국 심사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border/passport control staff)																																						
18. 식음시설(레스토랑·바·카페)(Restaurants/bars/cafés)																																						
19. 식음시설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restaurant/bars/cafés)																																						
20. 쇼핑시설(Shops)																																						
21. 쇼핑시설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of shops)																																						
22. 쇼핑·식음 직원의 친절·도움 정도(Courtesy and helpfulness of shopping and dining staff)																																						
23. 대기장소 공간의 편안함(Comfort of waiting at the gate areas)																																						
24. 대기장소 공간 좌석의 충분성(Availability of seats at the gate areas)																																						
25. 공항 안 길찾기 편리성(Ease of finding your way)																																						
26. 항공편 정보(게이트·시간) 제공의 충분성(Availability of flight information(gate and time))																																						
27. 터미널 안 이동 편리성(Walking distance inside the terminal)																																						
28. 공항직원 친절성(Courtesy and helpfulness of airport staff)																																						
29. 인터넷/Wi-Fi 시설 품질(Wi-Fi service quality)																																						
30. 충전시설 편리성(Availability of charging stations)																																						
31. 즐길거리 및 여가활동(Entertainment and leisure options)																																						
32. 화장실 접근성(Availability of washrooms/toilets)																																						
33. 화장실 청결도(Cleanliness of washrooms/toilets)																																						
34. 보건안전성(Health safety)																																						
35. 청결도(Cleanliness)																																						
36. 공항분위기(Ambience)																																						
37. 종합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2) 신속한 공항 구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여객의 출·입국/출·도착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여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상 출·입국/출·도착 기준시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Max (기준치×120%, 최대기준시간*) *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상 출·입국/출·도착 최대기준시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공항의 침두기간 및 비침두기간의 출·입국/출·도착 프로세스별 소요시간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다. - 국제선 : 체크인, 보안검색, 출입국심사, 세관검사 및 수하물 수취 소요시간 - 국내선 : 체크인, 보안검색 및 수하물 수취 소요시간 ② 침두기간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반영되는 기간으로 하며 비침두기간은 침두기간을 제외한 평월로 한다. ③ 실적은 95% 백분위 여객의 소요시간을 초 단위로 환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조사시간 등 측정 세부사항은 국토부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매뉴얼에 따르며 출·입국/출·도착 소요시간은 통합데이터플랫폼(기관 시스템) 상의 수치로 한다.

(3) 스마트공항 구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추진으로 ICT신기술 도입 등 스마트공항을 구현하고 여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공항 구현 평점은 국제선 성과와 국내선 성과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함 - 국제선 성과 = $\frac{\text{국제선 스마트공항 시설 이용여객}}{\text{국제선 총 여객수}}$ - 국내선 성과 = $\frac{\text{국내선 스마트공항 시설 이용여객}}{\text{국내선 총 여객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스마트공항 시설 이용여객은 국토교통부 「스마트공항종합계획」중 스마트 프로세스(체크인, 수화물위탁, 보안검색, 출국심사, 보딩)와 관련하여 한국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자동화 시설로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셀프체크인, 웹·모바일체크인(원패스), 생체인식(바이오) 인증(원아이디), 셀프백드롭, 스마트탑승권, AI X-ray 판독시스템 이용건수 ③ 총 여객수는 국토부 승인통계인 항공통계 상 국내선·국제선의 여객의 합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셀프체크인, 웹·모바일체크인(원패스), 생체인식(바이오) 인증(원아이디), 셀프백드롭은 항공사 데이터로 산정, 스마트탑승권은 PASS앱 데이터로 산정, AI X-ray는 기기 데이터로 산정 • 향후 국토교통부 「스마트공항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도입 스마트공항 시설 중 스마트프로세스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은 해당 실적에 합산한다.

(4) 공항 편의성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항공산업 육성·지원 및 지속가능성장 사업 [8점]

사업정의	항공산업 육성·지원 및 공항 개발을 통한 항공산업의 지속성장 동력 창출

(1) 신성장사업 성장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신성장사업 추진, R&D 개발기술 활용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신성장사업성장률 = 신성장사업성장성(2/3) + R&D개발기술도입성과(1/3) - 신성장사업성장성 = $\sum$[신성장사업 누적 매출액] • 신성장사업은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에서 명시한 사업 중 관할 국내 공항의 관리·운영사업, 공항시설 관리·운영사업,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제외한 글로벌사업, 항공산업지원사업, 항공조종인력양성사업, BIM 사업, 미래도심항공교통(UAM)사업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글로벌사업매출액은 해외공항사업, 항행장비연구 및 판매사업 매출액을 합산 • 항공산업지원사업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사 운항지원을 위한 필요업무, 훈련기 등 항공유 공급업 사업 매출액을 합산 - R&D개발기술도입성과 = R&D개발기술 활용·구매실적 • R&D 개발기술 활용·구매실적은 기존 제품을 정부 및 자체 개발한 R&D 성과품으로 대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한 금액, 국가 R&D 과제로 선정된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산출(공공기관의 기술마켓 등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신성장사업 매출액 누적 실적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2) 저탄소·친환경 공항 구현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부여, 가중치 : 1.5점)	
정 의	① 친환경에너지 발전과 ②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관의 친환경 공항 구현 노력을 평가한다. (① 상향지표 / ② 하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목표치(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①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고목표 : 기준치×90% ②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친환경에너지 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50:50 비중으로 합산하여 평가 ① 친환경에너지 발전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명시된 태양열,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의 기관 자체 발전량을 MWh 단위로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함 ②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평가대상연도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으로 함 - 온실가스 할당량은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대상업체의 기준연도 배출량 규모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할당량이며, 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된 명세서 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계획기간 시작 전 사전할당량이 부여된 시설에 한해 평가한다. • 할당량은 유상할당 및 무상할당을 모두 포함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관 배출량은 외부검증 수검 후 차년도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는 명세서 상 수치로 한다. • 배출량 및 할당량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NGMS)을 통해 확인한다.
(3) 항공산업 육성·지원 및 지속가능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도로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고품질의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8
	(1) 고속도로 구축연장		3	
	(2) 고속도로 품질성능 향상		1	
	(3) 건설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2.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선진화			16
	(1) 고속도로 주행시간관리		4	
	(2) 고속도로 안전관리		5	
	(3) 교통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유지관리 최적화로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			11
	(1) 포장품질 향상성과		3	
	(2) 시설물 안전관리		3	
	(3) 유지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고객중심 영업운영 및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			10
	(1) 스마트톨링 구축률		2	
	(2) 휴게시설 서비스 향상		3	
	(3) 영업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㉔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통행료는 가산 함 • 총자산(건설중인자산은 제외) 산출시 유류도로관리권(최초발생분부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함 • 총자산 산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인하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투자 금액은 제외한다.
㉔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및 EBITDA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통행료는 가산 함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영업이익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통행료는 가산 함

(3) 효율성 관리 [5점]

㉓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통행료는 가산 함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통행료는 가산 함 • 총자산(건설중인자산은 제외) 산출시 유료도로관리권(최초발생분부터)의 상 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함 • 총자산 산출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인하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고품질의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 [8점]

사업정의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네트워크형 교통망 효율화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도로·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고속도로 구축연장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지역 균형발전, 물류지원 등 국가성장 지원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고속도로 네트워크 확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속도로 구축연장 = 재정고속도로 구축연장(km) - 고속도로 구축연장은 국정과제 '10×10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주요 11개 노선 중 기관이 시행하는 신설 고속도로 10개 노선의 누적개통연장을 의미하며 - 누적개통연장은 '24년부터 기관이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사용 개시공고로 공용 개시된 고속도로 연장으로 함 - 중장기 목표는 '24년 실적을 기준목표, 국정과제 주요 10개 간선도로를 포함한 약 480km를 '30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달성 목표로 하여 달성기간이 6년인 장기추세선 상의 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 연도 개통예정 노선 미개통시 산출된 평점에서 노선당 20점을 감함 (단, 정부 결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외) • 당해 연도 개통예정 노선은 도로구역결정 고시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바에 따름

(2) 고속도로 품질성능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유도를 통해 기관의 품질성능 향상성과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속도로 품질성능 향상 = $\frac{\Sigma[\text{건설현장(공구) 품질성능 측정 결과(점수)}]}{\text{건설현장(공구) 수}}$ - 건설현장(공구)은 시공중인 모든 건설사업단을 대상으로 함 - 품질성능은 국가 표준시방서(KCS) 및 고속도로 전문시방서(EXCS)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품질성능은 국토교통부 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서와건설시공사·품질관리부서의 현장 품질시험 및 정량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 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성적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 • 품질성능 측정결과는 기관의 도로정보통합플랫폼에 등록된 수치로 함

(3) 건설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②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선진화 [16점]

사업정의	고속도로 정체개선과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국민의식 개선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고속도로 주행시간관리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통한 고속도로 평균통행시간의 단축성과를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미국 TTI 지수 TOP 10 도시들의 평균 최저목표 : 미국 TTI 지수 전체 도시들의 평균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행시간 관리 =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기관TTI}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TTI(Travel Time Index, 통행시간지수) : 교통혼잡의 총 양과 관련된 지표로서 평균통행시간*을 자유통행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통행속도를 의미

측정 산식 및 변수	* 평균통행시간 : VDS, AVC 장비로 측정 한 구간별 평균통행시간 * 자유통행시간 : 거리를 구간별 제한속도로 나눈 이상적인 통행시간 * 교통량 조사장비 1) AVC (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 자동 차종분류 조사 2) VDS (Vehicle Detection System) : 차량의 주행속도, 교통량 검지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실적치는 미국교통통계국(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에서 발행하는 「국가교통통계」의 TTI 지수를 활용 • 기관실적치는 기관의 『교통분석 지원포털』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TTI 지수를 활용
(2) 고속도로 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국민 인명사고·근로자 인명사고·시설물사고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고속도로 안전관리 = ① 근로자 재해율(1.5점) + ② 발주공사 재해율(2.5점) + ③ 국민·시설 재해율(1점) ① 근로자 재해율(1.5점)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② 발주공사 재해율(2.5점)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인명사고(근로자, 발주공사) = 사망 + 중대재해(중상) + 일반재해(경상)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중상 1인당 3, 일반재해·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사망,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는 기관이 관리하는 작업장·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의 부상자 수를 의미(기관 임직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사고분류기준 • 사 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대재해, 중상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 재해자 수 중 사망자 수 제외
- 일반재해, 경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재해자 수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1점)}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총주행거리(억km)}}$$

- 국민 인명사고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중상 1인당 3,
일반재해·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기타 부상자 수는 기관의 관리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기타 부상자 수를 의미

· 총 주행거리는 전국 고속도로망을 이용한 모든 차량의 총 운행거리

- 시설물 사고

· 대상 시설물 : 터널, 교량, 비탈면, 옹벽, 건축물*

*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건축물(청사, 영업소, 직영 휴게시설 등) 일체(임대 휴게시설 제외)

※ 시설물 사고 가중치 기준(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분류)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 또는 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 또는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 붕괴사고 A급(붕괴사고로 인해 일방향 8시간 이상 또는 양방향 4시간 이상 전면통제)(건) × 5
- 붕괴사고 B급(붕괴사고로 인해 일방향 4시간 이상 또는 양방향 2시간 이상 전면통제)(건) × 3
- 붕괴사고 C급(붕괴사고로 인해 일방향 4시간 미만 또는 양방향 2시간 미만 전면통제)(건) × 1

※ 다음 기준이상의 강우·지진이 발생할 경우, 평가제외

- (강우) 설계 강우강도 이상의 집중호우 또는 도로구역 외 토석류 발생시
- (지진) 설계기준 이상 지진발생시 (예. 구조물 6.3 초과 지진발생)
- (기타) 산불, 테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시설물 사고

※ 교통사고 및 시설물 사고의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기타 부상자 분류기준은 경찰청 기준 적용

- (사망자)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상자) 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자) 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기 타) 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text{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함.
- 발주공사 근로자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붕괴사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 유관부처에 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시설(설비) 사고로 판단하며, 붕괴로 인해 도로의 전면통제가 이뤄질 경우, 통제 시간에 따라 사고의 경중을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 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국민·시설 재해율의 분모 수치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내로 하며, 초과 시 단위를 조정하여 평가함.

(3) 교통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유지관리 최적화로 쾌적한 주행환경 조성 [11점]

사업정의	고속도로 시설물(포장, 교량, 터널, 비탈면 등)의 효율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포장품질 향상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고속도로 포장상태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포장품질 향상성과 = $\frac{\text{품질개선 표면손상연장(km)}}{\text{불량 표면손상연장(km)}}$ ② 품질개선 표면손상 연장은 관리연장 중 품질이 개선되어 DI* 4등급 이상의 등급을 판정받은 연장의 합, 불량 표면손상 연장은 관리 연장 중 품질이 불량하여 DI 5등급 이하의 등급을 판정받은 연장의 합으로 함 ※ Durability Index(고속도로 포장 내구성 지수로 포장면적 중 손상면적과 임시 보수면적의 비율) ③ 연장은 고속도로 전노선의 포장 연장으로 하며 1차로로 환산하여 계산함

(2)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주요 시설물(절토사면, 교량, 터널, 건축물, 옹벽)의 안전성 향상 및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년 초과 전체 시설물 중 B등급 이상 시설물 비율 95%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별 목표달성도-감점(D등급 이하 시설물 개수×10점) ② 시설물별 목표달성도 = 절토사면 목표달성도×50% +교량·터널·건축물·옹벽 목표달성도×50% ③ 관리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로기관이 관리하는 절토사면, 교량, 터널, 건축물, 옹벽임 ④ 안전등급 판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천재지변 등 기관이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은 대상시설에서 제외

(3) 유지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고객중심 영업운영 및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 [10점]

사업정의	고객중심의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과 통행료 수납정책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고속도로 이용경험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스마트톨링 구축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스마트톨링의 운영 효율성 및 고객 불편 방지에 필요한 영상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톨링구축률 = $\frac{\text{스마트톨링 차로 수}}{\text{전체 차로 수}} \times 100$ * 차로 수의 경우 차로에 설치된 시설 기준으로 함 ② '스마트톨링 차로 수'는 하이패스와 전·후면 영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차로의 수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전체 차로 수'는 전체 통행료 수납 차로(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를 기준으로 함 - 단, 복수차로의 경우 실질적으로 한 개 차로로 활용되고 있어 한 개의 차로로 산정하며, 혼용차로의 경우 하이패스와 TCS설비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 두 개 차로로 산정함 • 복수차로 : 기기 이상 발생 시 점검 상황을 대비하여 한 차로에 2개의 TCS 부스설비를 배치 • 혼용차로 : 한 차로에 하이패스와 TCS 두 개의 시스템 구축 * TCS : Toll Collection Systems - 민자고속도로의 차로수는 '스마트톨링 차로 수' 및 '전체차로 수' 산정 시 제외한다
(2) 휴게시설 서비스 향상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 ② 목표부여, ③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① 휴게소 음식가격 안정화(하향지표) 노력, ② 유가 인하 선도(하향지표) 및 ③ 친환경자동차(전기차) 에너지 충전인프라 확대(상향지표)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③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휴게소 음식가격 안정화 최고목표 : 전년대비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80% 최저목표 : 전년대비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120% ② 유류비 부담 완화노력 최고목표 : (전국 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전국주유소 상표별 연평균 판매가격 중 최저가)×직전년도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최저목표 : (전국 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전국주유소 4대 정유사 연평균 판매가격 중 최저가)×직전년도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③ 친환경에너지 충전인프라 확대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휴게소 음식가격 안정화(1점) + ② 유류비부담완화 노력(1점) + ③ 친환경에너지충전인프라 확대(1점) ① 휴게소 음식가격 안정화 = 전년대비 휴게소 물가지수 상승률 - 휴게소 물가지수는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지수를 매출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측정 산식
및 변수

- 외식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외식지수(39개)’ 중 휴게소 품목과 동일·유사한 9개 품목의 지수를 매출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 ※ 외식 물가지수의 기준연도¹⁾와 각 품목(39개)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 가중치²⁾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상 최신의 지수 기준연도 및 가중치 기준연도를 적용함
 - 1) 현재 지 수 기준연도 : 2025년(5년주기 개편)
 - 2) 현재 가중치 기준연도 : 2025년(2-3년주기 개편, 끝자리 0,2,5,7자 연도)
 -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은 기관의 휴게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식음 관련 매출에 한함(편의점, 의류, 잡화, 기타서비스 등 제외)
 - 휴게소 물가지수의 지수 및 가중치 기준연도는 외식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기준을 따름
- ② 유류비 부담 완화노력 = (전국 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알뜰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알뜰주유소 공급물량
- ※ 산출시 고려사항
 - 알뜰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 및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은 ex-oil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산출함
 - 판매가격은 휘발유, 경유의 판매량을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산출함
 - 판매가격은 오픈넷 유가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http://www.opinet.co.kr>)
 - 유종별 판매량 산정 시 알뜰주유소는 기관 ‘휴게시설정보시스템’ 유류판매량의 유종별 비율을, 전국 주유소는 ‘페트로넷(석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제품별 소비량의 유종별 비율을 기준으로 함(<http://www.petronet.co.kr>)
- ③ 친환경에너지 충전인프라 확대 = Σ (전기차 충전시설용량 × 전기차 충전기 수)
- 당해연도 실적은 연도말 현재 기관이 임대·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용량에 충전기 수를 곱한 수치의 합으로 함(누적합계)
 - ※ 전기차 충전시설 용량과 충전기 수는 기관의 휴게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

(3) 영업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수도 서비스 사업			19
	(1) 단수사고 예방 노력		3	
	(2) 글로벌 수질 안전 제고		3	
	(3) 유수율 제고 노력		3	
	(4) 수도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수자원 서비스 사업			16
	(1) 홍수 예방 노력		2	
	(2) 가뭄 예방 노력		2	
	(3) 안전관리율		5	
	(4) 수자원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융합 서비스 사업			10
	(1)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1	
	(2) 물산업 육성 노력도		1	
	(3)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2	
	(4)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	
	(5) 융합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4대강 수공 부채 지원방안(15.9)에 의한 회계적 손실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분을 감안하여 평가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총자산 산출시 정상가동률(75%)에 도달하지 않은 신규시설('95년 이후)은 당해연도 실적가동률만큼 자산에 산입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수도 서비스 사업 [19점]

사업정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수도물 생산과 중단 없는 공급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단수사고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단수사고 예방 노력(하향지표)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단수사고 예방 노력 =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50%+(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50% ①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50%) ○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예방노력 = $\frac{\Sigma(\text{단수인구} \times \text{단수시간})}{\text{총 관로연장(km)}}$ - 총 관로연장은 당해연도 기관에서 관리중인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연장을 말함 - 단수인구 및 단수시간은 KRM(K-water Risk Management)에 등록된 사고완료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함(단수인구는 중블럭 이상 단수 시 적용함) ②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50%) ○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당 연평균 단수시간 = $\frac{\Sigma(\text{단수인구} \times \text{단수시간})}{\text{급수인구}}$ - 기관에서 수탁·운영중인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를 대상으로 실적을 산출함 - 신규수탁 시설은 수탁 후 1년이 경과한 시설부터 익년도 평가에 포함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 단수시간은 KRM(K-water Risk Management)에 등록된 사고완료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함(300가구이상)

측정 산식 및 변수	- 단수인구는 단수지역 급수전수에 해당 지자체의 급수전당 평균 급수인구를 곱하여 산출함 - 급수전수는 사고로 인해 실제 단수가 발생된 지역의 급수전의 총합으로 산출함(비상연계공급을 통해 단수가 미발생한 급수전은 제외) - 급수인구는 해당 지자체의 급수인구수를 의미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도 통계'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천재지변, 타기관에 의한 수도관 파손)에 의한 물공급 중단사고는 제외한다.

(2) 글로벌 수질 안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이 생산한 수돗물의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를 적용하되, 100%를 초과하지 않음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글로벌 수질안전 달성률} = \frac{\text{달성 정수장수}}{\text{전체 정수장수}}$ - 전체 정수장 수 : 전체 정수장 수 × 검사월 수 - 달성 정수장 수 : 글로벌 수질기준 항목을 모두 달성한 정수장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지방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시설은 가동개시 또는 수탁 후 1년이 경과한 시설부터 익년도 평가에 포함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의한 60개 항목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한 조류독소(Microcystins) 및 냄새물질(Geosmin, 2-MIB의 2가지 항목) 및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의 3가지 항목)을 말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 횟수는 동 고시 및 규칙에 따름 • 글로벌 수질기준은 WHO 및 선진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말함 - 선진국 : 대륙별 OECD 대표국가(EU 공통 수질기준, 미국, 호주, 일본, 이스라엘) - 가장 엄격한 기준 :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항목에 대해 선진국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달성하기 어려운) 기준

(3) 우수율 제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및 지자체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의 우수율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향 상 도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달 성 도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광역·지방)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를 적용, 100%를 초과하지 않음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를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광역상수도 우수율 달성도×10%+ ○ 물공급 효율성 = (지방상수도 우수율 향상도×평가비중+지방상수도 우수율 달성도×평가비중)×90% * 우수율 = 우수수량(㎥)/총급수량(㎥) ① 우수율 달성도는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로 구분하여 각각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율 향상도는 지방상수도에 한해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한다. ② 광역상수도 우수율 - 우수수량은 수용가 계량기 검침량으로 함 - 총급수량은 정수장 유출 계량기 검침량으로 하며, 원수를 공급하는 시설은 취수장 유출 계량기 검침량으로 함 - 수질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량인 역세척수(배출수), 송수관세척수 물량 제외 - 광역상수도 달성도는 시설별 목표(100%) 대비 우수율 실적에 우수수량 비중을 고려한 달성률을 산정 후 합산 ③ 지방상수도 우수율 - 우수수량은 각 수용가의 계량기 검침량(조정량) 기준으로 하되 각 지자체 협의 물량으로 함 - 총급수량은 지자체 정수장의 유출유량(광역급수지역의 경우, 광역분기 공급량 포함)기준으로 각 지자체의 협의 물량으로 함 - 신규수탁 시설은 수탁 후 1년이 경과한 시설부터 익년도 평가에 포함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측정 산식 및 변수	- 지방상수도 향상도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비중은 전년도 우수율을 기준으로 향상도 및 달성도 대상 사업장의 우수수량 비중으로 구분 * 향상도 = 지자체와의 협약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 달성도 = 지자체와의 협약목표를 달성한 사업장 - 지방상수도 달성도는 지자체별 목표(협약목표, 직전년도 3개년 우수율 평균 중 최대값) 대비 우수율 실적에 우수수량 비중을 고려한 달성률을 산정 후 합산

(4) 수도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수자원 서비스 사업 [16점]

사업정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운영·관리,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홍수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홍수대응 결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재해피해액으로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홍수 예방 노력 = 재해피해액 100% - 재해피해액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댐방류로 인한 침수피해액을 기준으로 기관이 배상한 금액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공통)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댐 상·하류 홍수특보 등)으로 인한 영향은 제외 • 재해피해액은 당해연도 결산 재무제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정부가 공식 발표한 댐방류로 인한 침수피해액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및 법원 소송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가뭄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연중 다목적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물 이용 안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가뭄 예방 노력 = $\text{한강유역 "가뭄대응노력"} + \text{금강유역 "가뭄대응노력"} + \text{영섬유역 "가뭄대응노력"} + \text{낙동강유역 "가뭄대응노력"}$ * 권역별 가중치는 전체 저수용량 대비 권역별 저수용량 비중으로 설정 $\text{* 가뭄대응노력} = \frac{\text{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정상~관심단계) 일 수}}{365\text{일}} \times \text{각 댐 저수용량 비중}$ - 각 댐별 주의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정상~관심 단계)일수는 해당 댐의 저수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서 설정된 '주의 단계 기준저수량' 이상인 일수를 뜻함 - 각 댐 저수용량 비중은 전체 평가대상 댐 저수용량 중 해당 댐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대상 댐은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댐으로 함
(3) 안전관리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재난·안전 관련 감점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안전관리율 = 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 × (30%)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50%) + 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20%) -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textcircled{1} \text{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textcircled{2} \text{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인명사고(발주공사)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인명사고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중상 1인당 3, 일반재해,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측정 산식
및 변수

- ※ 근로자 및 발주공사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댐붕괴사고는 KRM(K-water Risk Management)에 등록된 시설(설비)사고를 기준으로 산출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4) 수자원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융합 서비스 사업 [10점]

사업정의	물·에너지·도시의 융합을 통한 물에너지 확산 및 수변도시 조성, 자원의 공유를 통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내실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수변사업 생산성 및 건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및 사업 건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① 수변공간 조성성과 40% + ②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60% ① 수변공간 조성성과 = $\frac{\text{수변공간 조성면적}}{\text{수변공간 조성사업비}}$ - 수변공간 조성면적 · 조성면적은 개발대상면적 중 당해연도 개발실적으로 하며 공사 기성률을 기준으로 함 · 개발대상면적은 사업승인된 면적의 합으로 하며, 대상사업은 송산그린시티, 구미 하이테크, 부산에코델타시티로 함 -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는 대상사업의 당해연도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으로 함 ② 수변공간 조성사업 건전성 = $\frac{\text{대금회수금액}}{\text{수변공간 조성사업비}}$ - 대금회수금액은 당해연도 토지 대금회수 실적으로 하며, 대상 사업은 송산그린시티, 구미 하이테크, 부산에코델타시티로 함 - 수변공간 조성사업비는 대상사업의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금액의 3개년 (당해년도 포함) 평균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대금회수금액 중 수납 약정연도가 차기년도 이후인 금액은 당해연도가 아닌 약정연도에 회수된 것으로 산정

(2) 물산업 육성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중소·벤처기업의 국내 진출지원 확대 및 기관의 해외사업 개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물산업 육성 노력도 = ① 국내시장 매출액(50%) + ② 해외사업 개발노력(50%) - 국내시장 매출액 :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이 창출한 매출액(계약금액)으로 평가하며,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로 증빙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중기부 법령에 따라 기관이 수행중인 제도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 등) - 해외사업 개발노력 :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 100% ※ 산출 시 고려사항 • 중소기업 지원제도 과제 및 매출액은 기관의 ERP시스템(K-물산업지원포털, 계약시스템)으로 증빙 • 해외사업 매출액은 기관의 직접 매출과 해외 SPC 매출액(지분율 환산)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직접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해외 매출액을, SPC 매출액은 지분비율을 환산한 금액으로 평가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해외사업 매출액을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3)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당해연도 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하며 건설사업은 준공률 실적, Unit(호기) 구분사업은 Unit 단위 실적산정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산출시 고려사항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4)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발전량으로 측정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발전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kWh]})$ - 기관이 생산 중인 태양광, 조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하며, 수력발전은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5) 융합 서비스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철도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편리한 철도			20
	(1) 고속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3	
	(2) 일반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3	
	(3) 광역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2	
	(4) 철도이용 편의제고		1	
	(5) 글로벌 정시율 관리		3	
	(6) 편리한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종합물류 철도			5
	(1) 물류사업 경쟁력 제고		2	
	(2) 종합물류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3		
	3. 안전한 철도			16
	(1) 재난·안전관리율		8	
	(2) 안전한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지속성장 철도			4
	(1) 신성장사업		2	
	(2) 지속성장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2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㉔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산출 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익서비스비용(PSO)의 보상차액은 가산한다.
㉔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text{ 대 매출액} = \frac{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text{영업이익} + \text{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산출 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익서비스비용(PSO)의 보상차액은 가산한다.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20년도, '21년도, '22년도) 결측 처리된 지표의 경우 결측연도의 원실적치를 기준치 및 최고목표·최저목표 설정에 사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영업이익 산출 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익서비스비용(PSO)의 보상차액은 가산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 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익서비스비용(PSO)의 보상차액은 가산한다.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 시 법률 및 정부정책에 의해 감면되는 공익서비스비용(PSO)의 보상차액은 가산한다.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편리한 철도 [20점]

사업정의	신속·정확하며 편리한 철도운송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및 교통복지 실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고속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속철도 수혜 확대 및 중장거리 운송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속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 고속철도 연인거리 ② 고속철도 연인거리 : 고속열차 이용객의 이동거리를 합하여 산출

(2) 일반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벽지노선의 지속적 운영과 도시 권역 간 연결, 이동시간 단축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일반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 일반철도 연인거리(1.5점) + 일반철도 평균운행속도(1.5점) ② 일반철도 연인거리 = 일반철도 이용객의 이동거리를 합하여 산출 ③ 일반철도 평균운행속도 = 일반철도 열차운행km ÷ 일반철도 운행시간 * 열차운행km : 일반철도 정기열차의 주행거리를 합하여 산출 * 운행시간 : 일반철도 정기열차의 운행시간을 합하여 산출하며 역에서의 정차시분은 제외 *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운행하는 교외선(대곡~의정부), 경원선(청량리~백마고지)은 평균운행속도 산출 시 제외

(3) 광역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광역철도 운행을 확대하여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광역철도 수송서비스 증대 = 열차운행km ② 열차운행 km : 광역철도 운행열차당 주행거리를 합하여 산출

(4) 철도이용 편의제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스마트 승차권 확대 등 국민의 예매편의 향상 노력, 철도 접근성 제고 노력, 대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철도 중심 연계서비스 활성화 등 국민의 철도이용 편의 향상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이용 편의제고 = 스마트 발권서비스(0.2점) + 철도연계서비스 활성화(0.3점) + 철도이용 접근성 제고(0.2점) + 대국민 교통비 절감(0.3점) ② 스마트 발권서비스 : 스마트 승차권 이용객수 - 스마트 승차권 이용객수 : 코레일톡, 홈페이지, 자동발매기 등 비대면 매체에서 발매한 승차권 발매 수 산정 ③ 철도연계서비스 활성화 : 코레일톡 내 렌터카, 짐배송, 숙박, 공항버스, 주차장 사전정산 등 철도연계서비스 이용건수 ④ 철도이용 접근성 제고 : 일반철도 운행열차 역별 정차횟수의 합계 * 지자체와의 별도 협약에 의해 운행하는 교외선(대곡~의정부), 경원선(청량리~백마고지)은 실적 산출 시 제외 ⑤ 대국민 교통비 절감 = $\frac{\text{공공할인 이용객수}}{\text{전체 이용객수}} \times 100$ - 공공할인 이용객수 : 공공할인을 적용받은 이용객의 총합 <고속철도, 일반철도, ITX-청춘> *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목적 할인 : 어린이할인, 동반유아 할인, 경로할인, 중증 장애인 할인, 경증장애인 할인, 장애인보호자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국가유공자 보호자할인, 인도견 할인 * 국가기관 협약 등에 따른 공공목적 할인 : 군 장병(전환복무자 포함)할인 및 후급할인 * 국가정책에 따라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할인상품 : 임신부 할인(맘편한코레일), 다자녀 할인(다자녀행복), 기초생활할인(기차누리), N카드(횡수차감형 할인승차권)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측정 산식 및 변수	<광역전철> *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목적 할인 : 어린이할인, 청소년할인, 경로할인, 장애인 할인, 유공자할인 * 국가정책에 따라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할인 : 정기권할인, 환승(재개표)할인, 조조할인 ※ 산출시 고려사항 • 상기 기준(관계법령, 국가기관 협약, 국가정책)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목적의 할인은 포함하여 계산함
(5) 글로벌 정시율 관리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정시운행률 관리노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하고(상향지표), 한국철도 정시율 관리를 통해 고객의 시간가치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UIC 발표 최상위국 정시율 최저목표 : UIC 발표 정시율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평가방법	글로벌 정시율 관리의 평점은 글로벌 평가방법에 의한 글로벌 정시율 순위와 목표부여(편차) 방식에 의한 한국철도정시율을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정시율 순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글로벌 비교 정시율}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text{글로벌 비교 정시율} = \frac{\text{글로벌 기준 정시운행 열차수}}{\text{총운행열차수}} \times 100$ ② 한국철도 정시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 $\text{한국철도 정시율} = \frac{\text{고객현장 및 글로벌 기준 정시운행 열차수}}{\text{총운행열차수}} \times 100$ - 최상위국 정시율 : UIC 발표 최상위국 정시율 - 정시운행열차수, 총운행열차수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합산(임시열차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한국 실적치는 한국철도공사 정시율 실적통계자료를 사용 • 글로벌 정시율 순위 산정시 글로벌 기준 정시운행 열차수는 UIC 기준에 의해 15분 이내(15분 00초까지)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를 말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한국철도 정시율 산정시 고객현장 및 글로벌 기준 정시운행 열차수는 고객현장 기준에 의해 고속 5분 이내(05분 00초까지) 또는 일반 10분 이내(10분 00초까지)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수와, 고속 5분~15분 이내(05분 01초~15분 00초까지) 또는 일반 10분~15분 이내(10분 01초~15분 00초까지)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수의 1/2를 합한 열차수를 말함 • 해외 실적치는 UIC(세계철도연맹)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연감 자료를 사용 • UIC 통계연감 중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합산된 장거리열차(합계) 실적을 사용 • (주)SR에서 운영하는 열차의 사고, 장애, 지연 등에 의해 한국철도공사의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 • 정시운행열차는 국민에게 고시한 종착역의 도착예정시간보다 15분(15분 00초까지) 이하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를 말함 • 한국철도정시율 산정시 안전확보를 위해 관제지시에 의한 긴급 서행 및 운전 명령에 의한 선로안정화 서행 지연시분은 제외
(6) 편리한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종합물류 철도 [5점]

사업정의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물류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물류사업 경쟁력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철도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의 증대 및 효율성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물류사업 경쟁력 제고 = 철도화물수송량 증대(1.2점) + 종합물류사업 매출액(0.4점) + 생활물류서비스 매출액(0.4점) ① 철도화물수송량 증대 : 수송톤거리/화차수 - 수송톤거리 : 수송한 화물(ton)에 운반한 거리(km)를 곱한 것에 누계, $\Sigma[\text{수송화물 톤수} \times \text{운행거리(km)}]$ - 화차 수 :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보유 화차의 수 * 화차 수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초와 매월 말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종합물류사업 매출액 :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중 물류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 ‘생활물류서비스 매출액’ 실적은 제외 ③ 생활물류서비스 매출액 : KTX특송, 짐배송, 생활물류트레인, 레일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해당하는 매출액 * ‘수송톤거리’, ‘종합물류사업 매출액’, ‘생활물류서비스 매출액’ 실적은 ‘XROIS’, ‘화차 수’는 ‘KOVIS’ 자료를 활용한다

(2) 종합물류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③ 안전한 철도 [16점]

사업정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재난·안전관리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근로자, 국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난·안전관리율 = 근로자 재해율(40%) + 발주공사 재해율(20%) + 국민·시설 재해율(40%) ②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 환산건수}}{\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③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 환산건수}}{\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④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철도·시설(설비)사고 환산건수}}{\text{이용객수}}$ ⑤ 인명사고(근로자, 발주공사, 국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산건수를 적용한다. - 인명사고(근로자, 발주공사) 유형 :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로 구분하고 아래 기준을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인명사고(국민) : 배상책임보험 지급에 따른 사망, 중상, 경상, 기타 및 공중사상사고로 구분하고 아래 기준을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공중사상사고 :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상 규정에 따른 사상사고

단, 당해연도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인명사고 경중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중상 1인당 3, 일반재해·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단, 철도안전법에 의한 공중사상사고의 경우 사망 10, 부상자 2를 적용

- 인명사고(근로자)의 경우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인명사고(발주공사)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⑥ 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 수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주공사 근로자 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⑦ 철도·시설(설비)사고 환산건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 및 철도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운행장애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 철도사고 유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위험물사고, 건널목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 사고 경중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철도·시설사고 10,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철도·시설사고 5,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철도·시설사고 3
- 운행장애 유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장애를 말하며, 이를 지연시간에 따라 유형별(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120분 미만, 120분 이상)로 구분
- 운행장애피해 경중 가중치 : 운행장애 중 120분 이상 1.5, 90분 이상 1.25, 60분 이상 1, 40분 이상 0.75, 20분 이상 0.5(운행장애 중 관제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의 경우 0.5 가중치 적용)

⑧ 이용객수는 당해연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수송인원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값이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산하여 적용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⑨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⑩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철도사고환산건수와 운행장애환산건수 산정시 한국철도공사 실적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철도사고·운행장애·사상자 중 철도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재난), 외부기관 관리원인(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시공상 하자, 차량제작사 책임 등), 점검 등 시험열차, 안전확보를 위한 열차운행 조정, 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위반, 자살자의 경우는 제외함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철도사고는 조사 종결 년도 평가에 반영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국민·시설 재해율의 분모 수치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내로 하며, 초과 시 단위를 조정하여 평가함.

(2) 안전한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지속성장 철도 [4점]

사업정의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新사업 및 다양한 개발모델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신성장사업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자산개발 및 활용 등 다원사업개발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①에만 해당)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신성장사업 = 자산활용사업 성장률(50%) + 글로벌사업 성장률(40%) + 철도교통카드사업 성장률(10%) - 자산활용사업 성장률 = 자산개발사업 매출액 + 자산활용사업 매출액 · 자산활용사업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다원사업 매출액 중 해외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의미함(별도기준) - 글로벌사업 성장률 = 글로벌철도사업 누적 매출액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해외사업 매출액을 2021년도부터 합산하여 산출 · 글로벌철도사업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다원사업 매출액 중 해외사업 수익(재화 판매 수익은 제외)을 의미(별도기준) - 철도교통카드사업 성장률 = 철도교통카드사업 매출액 · 철도교통카드사업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다원사업 매출액 중 카드 정산 수수료와 철도교통카드판매수입을 의미(별도기준)

(2) 지속성장 철도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2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주거복지사업			15
	(1) 주거취약계층 지원노력		3	
	(2) 유지보수서비스 개선노력		2	
	(3) 글로벌 수준의 공가율 관리		2	
	(4) 주거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공공주택사업			11
	(1) 공공주택사업성과		5	
	(2) 고성능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노력		1	
	(3) 공공주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도시조성사업			10
	(1) 안정적 택지조성 노력		3	
	(2) 지역균형발전 지원 노력		1	
	(3) 스마트시티 고도화 노력		1	
	(4) 도시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건설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9
	(1) 재해율 감소성과		5	
	(2) 건설품질 관리노력		1	
	(3) 건설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반영한 임대료환산액을 매출액에 가산
㉔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반영한 임대료환산액을 EBITDA 및 매출액에 가산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반영한 임대료환산액을 영업이익에 가산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 임대보증금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에 전월세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료환산액을 부가가치에 가산 - 전월세환산율은 주택법 제86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의 평균을 말하며, 기준치, 실적치, 편차 산정시 당해연도 전월세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는 노동생산성 지표상의 부가가치를 사용함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주거복지사업 [15점]

사업정의	국민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유지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으로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1) 주거취약계층 지원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의	정부의 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공급계획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00% 최저목표 : 기준치× 4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거취약계층 지원노력 = 매입·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실적 ② 매입임대주택은 신규 매입호수를, 전세임대주택은 당해연도 신규 계약 체결 호수를, 공공리모델링주택은 당해연도 건축허가 또는 약정체결 호수를 실적으로 함 ③ 매입·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공급실적에 대한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그 비중은 1분기와 2분기는 각 30%, 3분기와 4분기는 각 20%로 함 * 당분기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미달분은 차분기 공급계획으로 이월하여 합산하고, 전기 실적이 목표를 초과한 경우 초과실적은 차분기 실적으로 인정 ※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공급계획은 매년 부여되는 국토교통부의 분기별 매입·전세임대·공공리모델링주택 공급승인호수의 합으로 함

(2) 유지보수서비스 개선노력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 ②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입주자 만족도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①하향지표/②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긴급보수처리기간 단축노력(1점) = $\frac{7\text{일 초과건수}}{\text{전체 긴급보수건수}}$
	② 일상보수처리기간 단축노력(1점) = $\frac{15\text{일 초과건수}}{\text{전체 일상보수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평가대상주택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 전환되는 주택은 제외함
	④ 보수처리기간은 보수신청 접수일로부터 보수처리 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⑤ 보수건수는 당해연도 중 임대주택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불편사항으로 접수·처리가 완료된 건수의 합계로 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하자 처리건수는 제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긴급보수 및 일상보수는 「자산관리부문 유지보수공사 업무지침」 상의 기준을 적용하되, 최초보수(매입임대주택에 한함) 및 퇴거세대에 대한 보수는 제외

(3) 글로벌 수준의 공가율 관리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 노력을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목 표	① 최고목표 : 글로벌 공공임대주택물량 TOP 5 국가들의 공가율 평균 ② 최저목표 : 글로벌 공공임대주택물량 TOP 5 중 최하위 및 차하위 국가의 공가율 평균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수준의 공가율 관리노력 = $20+80 \times \frac{\text{임대주택공가율}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임대주택공가율은 당해연도말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운영호수 대비 공가호수의 비율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최고목표는 OECD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당해연도말 LH가 운영하는 물량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보유하는 국가들 중 공공임대(사회)주택 공가율이 낮은 순으로 Top 5 국가의 평균 공가율로 산출하며, 최저목표는 Top 5 국가중 최하위 및 차하위 국가의 평균 공가율로 산출함		
	•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사회)주택 물량 이상의 대상국가는 변경될수 있으며, 연말기준 이용가능한 최신의 신뢰할수 있는 공가율 자료를 적용함		
	• 국가별 공가율 통계 출처는 다음과 같음		
	순위	국가	실적발표기관
1	영국	주택자치부	「Live tables on dwelling stock including vacants」 (2024)
2	프랑스	생태전환·영토통합부	「국가데이터 지역, 부서, EPCI 및 지방자치단체 - FPLS」 (2024)
3	네덜란드	통계청	「주택 재고; 부동산, 임대인 유형, 거주지, 지역」 (2024)
4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Agency Priority Goal Action Plan」 - 「Current Value」 (2024)
5	일본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 「공가호수 및 비율」 (2024)

(4) 주거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공공주택사업 [11점]

사업정의	국민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건설하고, 공동주택 성능개선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정책을 이행하는 사업

(1) 공공주택사업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의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설주택 공급계획(승인, 착공, 준공)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승인, 착공, 준공계획
목표	최고목표: 기준치×100% 최저목표: 기준치× 4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공주택사업 성과 = 공공주택 승인 실적 ×0.10 + 공공주택 착공 실적 ×0.60 + 공공주택 준공 실적 ×0.30 ② 공공주택 승인(착공, 준공)실적은 공사가 신규건설 승인(착공, 준공)을 득한 호수로 함 ③ 공공주택사업 달성도에 대한 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그 비중은 1분기와 2분기는 각 30%, 3분기와 4분기는 각 20%로 함 * 당분기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미달분은 차분기 계획으로 이월하여 합산하고, 전기 실적이 목표를 초과한 경우 초과실적은 차분기 실적으로 인정 ※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승인, 착공, 준공계획은 매년 부여되는 국토교통부의 분기별 공공주택 승인, 착공, 준공 계획호수로 함

(2) 고성능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 지속적 성능 개선을 위해 법적 의무수준을 초과하는 고등급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26년)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②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27년 이후)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성능 제로에너지주택 확대노력 = $\frac{\text{당해연도 착공 세대수 중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인증 세대수}}{\text{당해연도 착공 세대수}}$ ② 제로에너지주택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당해연도 신규 (예비)인증된 공동주택 ③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 제로에너지 인증서 상 표기된 지구별 인증등급 ※ 인증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익년 2월까지 인증된 세대는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하고, 익년 3월 이후 인증된 세대는 익년도 실적으로 이월한다.

(3) 공공주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도시조성사업 [10점]

사업정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안정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는 개발·조성 사업

(1) 안정적 택지조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안정적 택지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LH 공공주택지구의 대지조성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정적 택지조성 노력 = $\frac{\text{공공주택지구 대지조성 개발면적}}{\text{공공주택지구 대지조성 대상면적}}$ ② 대지조성 개발면적은 당해연도 공공주택지구의 대지조성 공정률에 대지조성 대상면적을 곱하여 산출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대지조성 대상면적은 조성공사 진행(착공기준) 중인 공공주택 지구 전체 대지조성 면적의 합으로 하며, 회계준공이후에는 다음연도부터 대상에서 제외함(단계별 준공할 경우, 해당 단계별 준공계획에 대한 대지조성 면적을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정률은 대지조성공사비에 대한 기성실적(금액기준)으로 산정하되, 공사비가 변동되는 경우 과거 실적은 소급하지 않고 당해연도 실적 산정 시부터 적용 • '19년부터 조성공사 착공된 공공주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산정
(2) 지역균형발전 지원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낙후된 기초지자체의 지역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로 쇠퇴도시에 활력을 제공하는 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지원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균형발전노력(0.5점)+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노력(0.5점) ① 균형발전노력(0.5점) = $\frac{\text{중하위 지자체 균형발전사업 지구 수}}{\text{균형발전 중하위 지자체 수}}$ * 단, 하위 지자체 균형발전사업 지구수의 가중치는 중위 지자체 균형발전사업 지구수의 1.5배로 한다. ② 균형발전 중하위 지자체 수는 연도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중위 및 하위 지자체 수 * 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측정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국가균형위가 개발한 지표로, NABIS(국가균형발전정보 시스템)에 발표 ③ 균형발전사업 지구 수는 중하위 지자체 내에 당해 연도 후보지선정*된 지역개발사업·농산어촌주거플랫폼·산업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지구수의 합으로 함 * 후보지선정은 후보지 경영투자심의 기준(단, 주거플랫폼은 건축허가 또는 매입약정 완료 기준)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노력(0.5점) = $\frac{\text{LH 사업참여 지구수}}{\text{정부 지정 지구수}}$ ⑤ 정부 지정 지구수는 정부(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국비지원 대상 도시재생사업, 진행지구수의 합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⑥ LH 사업참여 지구수는 정부가 지정한 지구 중 공사가 사업시행 또는 사업수탁하여 참여 중인 지구수의 합으로 함 - 사업시행은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참여 또는 AMC(리츠)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지정일 또는 영업인가일(리츠)로 함 - 사업수탁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지자체와 사업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준일은 사업시행(수탁)협약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3) 스마트시티 고도화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LH 사업지구에서 주민과 지자체 등이 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확대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스마트시티 고도화 노력} = \frac{\text{사업지구 적용서비스 수} \times \text{가중치}}{\text{사업지구 인구}}$ ※ 산출시 고려사항 • 인구는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LH 개발사업 진행지구 계획인구의 합으로 함 • 적용서비스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 진행 지구에 적용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건수의 합으로 함 • 적용서비스 산출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도시서비스 분류체계 및 예시(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6)의 “단위서비스”를 기준으로 함. * 스마트도시계획(지자체 수립) 및 스마트도시 실시계획(LH 수립 후 지자체 승인)에 반영된 서비스 포함 • 진행지구는 당해연도 스마트시티 실시설계 또는 통신공사, 구축용역을 추진 중인 지구로 함 • 기존 ‘도시정보화’ 및 ‘U-CITY’로 추진된 것을 포함하여 산정 • 가중치는 2016~2020년 준공 사업지구 대상으로 사전에 주민·지자체·전문가가 원하는 서비스를 조사하여 마련한 척도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및 가중치 산정(가중치 : 서비스 분야별 중요도 비중×각 서비스별 필요성) * 신규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가중치는 기 조사된 분야별 서비스 가중치의 평균값을 적용

(4) 도시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건설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9점]

사업정의	건전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품질·안전·공정·상생을 기반으로 건설산업 전단계의 혁신을 견인하는 사업

(1) 재해율 감소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건설 안전사고 및 대국민 안전사고 감소 노력을 측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도 평균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재해율(5점) = 근로자 재해율 평점×30% +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50%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20%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③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임대주택 관리호수(전호)}}$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임대주택 관리호수는 공사가 유지관리하는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총 관리호수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1) 인명사고(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사망사고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 산정시 제외
- 2) 인명사고(국민)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대국민 접점 사업장(사옥, 에너지사업장 등) 인명사고 및 임대주택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시설사고(붕괴, 폭발, 누출, 전도, 화재 등)에 따른 인명사고는 배상책임보험 지급 건을 대상으로 하고, 중상, 경상, 기타는 보험금 지급금액에 따라 구분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 단,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 시설사고 : 임대주택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시설(설비)에 의한 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붕괴, 폭발, 누출, 화재 및 이에 준하는 전도 사고
 - 시설사고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 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 4)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5)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호수 및 하자건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제외 * 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한함
(3) 건설산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영업이익률		3.5	
	㉢ 부채비율		1	
	㉣ 이자보상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국제자유도시 신성장 산업 육성			19
	(1) 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성과		3	
	(2)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성과		2.5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성과		2.5	
	(4)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무사고 달성 노력		2	
	(5) 국제자유도시 신성장 산업 육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지역특화 글로벌 인프라 조성			15
	(1)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성과		3	
	(2) 신화역사공원 일자리 창출 성과		3	
	(3)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투자 실적		2	
	(4) 지역특화 글로벌 인프라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지정면세점 운영사업			11
	(1) 면세사업 활성화 성과		3	
	(2) 온라인 면세점 운영 성과		1	
	(3) 면세점 국산품 구매 확대 성과		2	
	(4)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5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㉓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국제자유도시 신성장 산업 육성 [19점]

사업정의	신성장 산업기반을 조성해 국제자유도시의 산업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함

(1) 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성장 지원과 혁신성장센터 기업유치 및 지원을 통해 달성한 고용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목표부여 : (최고목표 : 기준치×120%/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매출 향상 성과(1.5점)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혁신성장센터 고용 창출 성과(1.5점) ② 세부산식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매출액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혁신성장센터 내 일자리 창출 유지 인원수 / 총 지원액(백만 원) ③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사항인 지원사업예산을 활용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④ 수혜기업은 입주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가기업을 의미하며 입주기업 지원사업 결과 증빙자료(문서 등)에 따름 ⑤ 수혜기업 매출액은 외부기관이 실시한 당해연도 입주기업 현황조사 결과,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신용평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경영평가 실적 증빙 전 확보 가능한 자료로 함(자료 미제공 입주기업은 제외함) ⑥ 일자리 창출 유지 인원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원수 합계로 함 ⑦ 일자리 창출 유지 인원수는 국가승인통계(제399003호)인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를 기준으로 하며 각 해당연도의 3/4분기 통계자료(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를 활용해 산출함 ⑧ 총 지원액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에 당해연도 투입된 위탁운영사업비로 함

(2)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의료서비스센터 임대율 달성도(2.5점) ② 의료서비스센터 임대율은 임대 가능 면적 대비 임대계약 체결 면적(전용) 비율을 의미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최고목표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로 목표를 설정함 • '22년부터 실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26년 평가의 목표는 과거 4개년 실적을 적용함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기반 확보를 위한 첨단 신산업의 발굴 및 육성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각 사업별 점수합 - 사업별 점수(건별) 평가항목(완료 기준)															
	<table><tr><th>항목</th><th>점수</th><th>세부내용</th></tr><tr><td>개발착수(L1)</td><td>1점</td><td>기본구상, 사전타당성분석, 법정계획 반영</td></tr><tr><td>개발추진(L2)</td><td>2점</td><td>MOA, 사업계획</td></tr><tr><td>사업결정(L3)</td><td>3점</td><td>합작·투자계약, 기본설계, 인·허가</td></tr><tr><td>사업시행(L4)</td><td>4점</td><td>개발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착공</td></tr></table>	항목	점수	세부내용	개발착수(L1)	1점	기본구상, 사전타당성분석, 법정계획 반영	개발추진(L2)	2점	MOA, 사업계획	사업결정(L3)	3점	합작·투자계약, 기본설계, 인·허가	사업시행(L4)	4점	개발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착공
	항목	점수	세부내용													
	개발착수(L1)	1점	기본구상, 사전타당성분석, 법정계획 반영													
	개발추진(L2)	2점	MOA, 사업계획													
사업결정(L3)	3점	합작·투자계약, 기본설계, 인·허가														
사업시행(L4)	4점	개발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착공														
② 각 사업별 점수합은 위 표의 진행단계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구함. 단 이때 MOA, 합작·투자계약은 앞 단계의 사유로 인하여 점수를 인정받은 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점수를 차감한 잔여점수만을 합산 대상에 포함																
③ 당해연도 내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실적 인정은 최종단계의 실적만 인정하고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음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 시 고려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3차 시행계획(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에 포함된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첨단산업 기업유치 및 육성, 스마트혁신도시, 제주신항만 개발, 혁신물류단지 등 관련 실적으로 하고, 과거 실적의 경우 사업추진(2021년~) 이후 실적으로 산정함 • 해당실적의 증빙은 중앙부처의 장 및 지자체장의 승인·고시문, 계약서, 협약서,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로 한다.
(4)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무사고 달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무사고 달성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재해율 = 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 × 0.2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0.3 + 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0.5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의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의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 재해 + 일반 재해, 사망사고 1인당 10, 중대 재해 1인당 3, 일반 재해 1인당 1 가중치 적용 • 사망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2} \text{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인명사고(발주공사) = 사망 + 중대 재해 + 일반 재해, 사망사고 1인당 10, 중대 재해(중상) 1인당 3, 일반 재해(경상) 1인당 1 가중치 적용
 - 사망 : 근로자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사망사고 1인당 10, 중상 1인당 3,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가중치 적용
 - 사망: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시설사고 :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설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 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 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측정 산식
및 변수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의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

④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5) 국제자유도시 신성장 산업 육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지역특화 글로벌 인프라 조성 [15점]

사업정의	글로벌 수준의 지역특화 인프라를 조성해 국제자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교류거점을 구축함

(1)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충원을 목표대실적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목표대실적 :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학생 충원을 실적 / 학생 충원을 목표 ②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학생충원을 = (가)+(나)+(다)+(라) (가) NLCS 재학생 수 / NLCS 정원 수 × 정원 가중치 (나) KIS 재학생 수 / KIS 정원 수 × 정원 가중치 (다) BHA 재학생 수 / BHA 정원 수 × 정원 가중치 (라) SJA 재학생 수 / SJA 정원 수 × 정원 가중치 ※ 정원 가중치 = 학교별 정원 수/4개 학교 정원 수 * 가중치(3점) ③ 국제학교의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승인한 연도별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당해연도 재학생수는 학기시작일 기준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며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의 학생수를 학교에서 문서로 증빙하는 경우에 한함 ④ 학생충원을 목표는 각 학교별 운영방식, 국제학교의 공공성, 학교 경영을 위한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한 100%로 함 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노스런던컬리지에이트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aint Johnsbury Academy Jeju), 한국국제학교(KIS High School) 등 4개교임

(2) 신화역사공원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한 신화역사공원 내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신화역사공원 내 도민 고용률 ② 세부산식 = (도민 고용 인원)/(전체 고용 인원) ③ 도민 고용률 실적은 기초시점과 매월말 도민 고용률의 합을 13으로 나눈 평균 값으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창출하는 전체 고용 인원 수에서 도민 고용 인원 수의 비율로 함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공표하는 “개발사업장 및 투자진흥지구 사업장별 추진상황” 중 2019년부터 신화역사공원의 고용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각 해당년도 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3)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투자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민자유치 금액 + JDC 직접투자 금액 ②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2022~2031)에 포함된 모든 사업 및 민자유치 사업을 대상으로 함. ③ 투자실적은 연도말 기준 민자유치, JDC 직접투자 금액의 합계이며, 2021년 이후의 실적으로 산출함 ④ 투자실적은 JDC 투자실적 관리 시스템상의 결과 및 관련 기관에서 증명하는 문서로써 증빙함

(4) 지역특화 글로벌 인프라 조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지정 면세점 운영사업 [11점]

사업정의	지정 면세점 운영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자원을 확보함

(1) 면세사업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면세점 수익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가. 전년 대비 이용률 향상 성과(1.5점) 나. 고객 1인당 매출액 증대 성과(1.5점) ② 세부산식 가. $[(\text{당해연도 이용률} - \text{전년도 이용률}) / \text{전년도 이용률}] \times 100$ * $\text{이용률} = (\text{이용객수} / \text{출도객수}) \times 100$ 나. 총매출액/이용객수 ③ 이용객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완료한 구매고객을 의미하며 이용객수는 관세청(보세물품관리), 한국공항공사(매출영업료관리), JDC 등이 관리하는 면세점영업관리시스템인 면세점통합관리시스템에 따름 ④ 출도객은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항공기, 선박 등에 의해 출항하는 내외국인을 의미하며 출도객수는 관세청(보세물품관리), 한국공항공사(매출영업료관리), JDC 등이 관리하는 면세점영업관리시스템인 면세점통합관리시스템에 따름 ⑤ 총매출액은 면세점 매출액을 의미하며 관세청(보세물품관리), 한국공항공사(매출영업료관리), JDC 등이 관리하는 면세점영업관리시스템인 면세점통합관리시스템에 따름 ※ 산출 시 고려사항 : 가.의 전년 대비 이용률이 (+)로 전환할 경우 대체지표로 변경을 고려함

(2) 온라인 면세사업 운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온라인 면세점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5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온라인 면세점 회원수 ② 온라인 면세점 회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모바일 포함)를 통해 가입한 연도말 누적 회원수를 의미하며, 온라인 면세점 운영관리 시스템 내 관련 데이터로 확인함

(3) 면세점 국산품 구매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에 입점한 기관의 면세점 국산품 매출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면세점 국산품 비중 ② 세부산식 = 국산품 매출액 / 총매출액 ③ 국산품 매출액은 국산으로 분류되는 제품의 매출액을 의미하며 관세청(보세물품관리), 한국공항공사(매출영업료관리), JDC 등이 관리하는 면세점영업관리시스템인 면세점통합관리시스템에 따름 ④ 총매출액은 면세점 매출액을 의미하며 관세청(보세물품관리), 한국공항공사(매출영업료관리), JDC 등이 관리하는 면세점영업관리시스템인 면세점통합관리시스템에 따름

(4)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의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식회사 에스알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5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영업이익률		2	
	㉢ 부채비율		2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운송사업			26
	(1) 수송실적 증대		7	
	(2) 정시운행률 관리		8	
	(3) 운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2. 안전관리 사업			16
	(1) 재난·안전관리율		8	
	(2) 안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서비스 증진 및 지속성장 사업			3
	(1) 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도		1	
	(2) 서비스 증진 및 지속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운송사업 [26점]

사업정의	수요기반 정확하고 편리한 철도운송 서비스 제공관리를 통해 국민의 철도이용과 만족도 증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수송실적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기관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고객이용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간수송실적 달성도 - 실적 : 연인거리 $\text{연간 수송실적 달성도} = 20\text{점} + \left(80\text{점}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right)$ * 연인거리 : SRT 연간 이용객의 이동거리를 합하여 산출

(2) 정시운행률 관리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및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정시운행률 관리노력을 글로벌 수준과 고객체감 관점에서 평가한다. (상향지표 및 하향지표 혼합)
목 표	① 최고목표 : UIC 발표 고속열차 최상위국 정시율 최저목표 : UIC 발표 고속열차 정시율 평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5개년 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5개년 표준편차
평가방법	① 세계 최고 정시운행률 유지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5.6점) - 세계 최고 정시운행률 유지 평점 $= 20\text{점} + \left(80\text{점} \times \frac{\text{글로벌비교정시운행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right)$ ② SRT 정시운행률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2.4점) - SRT 정시운행률 평점 $= 20\text{점} + \left(80\text{점} \times \frac{\text{SRT정시운행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right)$

평가방법	※ 산출시 고려사항 • 글로벌 비교 정시운행률, SRT 정시운행률 = $\frac{\text{정시운행 열차 수}}{\text{총 운행열차 수}} \times 100$ - 글로벌 비교 정시운행률의 정시운행열차 수는 국민에게 고시한 종착역의 도착예정시간 보다 15분 미만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 수를 뜻함 - SRT 정시운행률의 정시운행열차 수는 국민에게 고시한 종착역의 도착예정시간 보다 5분 미만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 수와 5분 이상~15분 미만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 수의 1/2을 합한 수를 뜻함 - 정차역별 지연시간은 시·종착역 및 중간역에서의 도착예정시간 보다 지연된 시간을 초단위로 산출 • 총 운행열차는 국민에게 고시한 시·종착역 구간을 운행한 SRT 열차를 말함 • SRT 정시운행률 실적치는 (주)SR의 정시율 실적통계자료를 사용 • 해외 실적치는 UIC(세계철도연맹)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연감 자료 사용 * 세계 최고 정시운행률 유지 평점 : UIC 통계연감 중 고속철도 실적 사용 * (주)SR은 현재 UIC(국제철도연맹) 미가입, 해외 실적치는 평가를 위한 지표로 사용가능 • 코레일, GTX 열차에 의한 지연(사고, 장애, 지연 등) 및 외부기관 관리원인(선로장애, 신호장애, 공사 등), 자연재해 등에 의한 열차 지연 제외
(3) 운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② 안전관리 사업 [18점]

사업정의	철도 안전사고 및 고장 예방과 재난안전관리를 통해 국민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운행·차량·시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재난·안전관리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사고, 운행장애, 사상자(근로자, 국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재해율 = ①근로자 재해율(3.2점) + ②발주공사 재해율(1.6점) + ③국민·시설 재해율(3.2점)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환산건수}}{\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근로자) 환산건수 : 인명사고 유형별 건수 × 인명사고 경중 가중치의 합 - 인명사고(근로자) 유형 :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 - 인명사고(근로자) 경중 가중치 : 사망사고 10, 중대재해 3, 일반재해 1 • 사망사고 : 근로자가 직무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2} \text{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환산건수}}{\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인명사고(발주공사)환산건수 : 인명사고 유형별 건수 × 인명사고 경중 가중치의 합
- 인명사고(발주공사) 유형 :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
- 인명사고(발주공사) 경중 가중치 : 사망사고 10, 중대재해 3, 일반재해 1
 - 사망사고 : 근로자가 직무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발주공사 근로자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환산건수} + \text{시설(설비)사고 환산건수} + \text{철도사고환산건수} + \text{운행장애환산건수}}{\text{열차이용객수(십만명)}}$$

- 인명사고(국민)환산건수 : 인명사고 유형별 건수 × 인명사고 경중 가중치의 합
- 인명사고(국민) 유형 : 사망사고, 중상, 경상, 기타
- 인명사고(국민) 경중 가중치 : 사망사고 10, 중상 3, 경상 1, 기타 0.5
- 인명사고(국민) 중 사망사고 외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 지급건을 대상으로 중상, 경상, 기타로 나누며 치료비에 한정된 보험금 지급금액에 따라 구분

단, 당해연도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최초진단 결과에 따라 산정함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기준 200만원 이상(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기준 100만원 미만(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

측정 산식
및 변수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사고환산건수 : 시설(설비)사고 유형별 건수×해당 시설(설비)사고 경중 가중치
- 시설(설비)사고 유형 :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의 붕괴·폭발·누출·화재 사고(단, 철도사고유형에 포함되는 사고는 제외)
- 시설(설비)사고 경중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10,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5, 일반재해가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건)×3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 (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철도사고환산건수 : 철도사고 유형별 건수×해당 철도사고 경중 가중치의 합
- 철도사고 유형 :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위험물사고, 건널목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 철도사고 경중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철도사고 10, 중대재해(중상)가 발생한 철도사고 5, 일반재해(경상)가 발생한 철도사고 3, 사망,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가 발생하지 않은 철도사고 중 충돌사고 5, 탈선사고 5, 열차화재사고 5, 철도화재사고 3, 철도시설파손사고 2, 위험물사고 2, 건널목사고 1로 한다. 단, 가중치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며, 철도시설파손사고, 위험물사고, 건널목 사고의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함
- 운행장애환산건수 : 운행장애 유형별 건수×해당 고객피해 경중 가중치
- 운행장애 유형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상 규정된 장애를 말하며, 이를 지연시간에 따라 유형별(20분 이상 40분미만, 40분 이상 60분미만, 60분 이상 90분미만, 90분 이상 120분미만, 120분 이상)로 구분

측정 산식
및 변수

- 운행장애피해 경중 가중치 : 운행장애 중 120분 이상 1.5, 90분 이상 120분미만 1.25, 60분 이상 90분미만 1, 40분 이상 60분미만 0.75, 20분 이상 40분미만 0.5 (운행장애 중 관제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의 경우 0.5 가중치 적용)

- 단, 운행장애건수 중 자연재해(재난), 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시공상 하자, 점검 등 시험열차, 신규제작차량의 차량제작사 책임 등 에스알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함

$$\textcircled{4}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 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철도사고환산건수와 운행장애환산건수 산정시 (주)SR 실적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이용객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수송인원의 합계로 산출함.
- 철도사고·운행장애·사상자 중 (주)SR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재난), 외부 기관 관리원인(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시공상 하자, 차량제작사 책임 등), 점검 등 시험열차, 안전확보를 위한 열차운행 조정, 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위반, 자살자의 경우는 제외함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철도사고는 조사종결 년도 평가에 반영)
- 국민·시설 재해율의 분모 수치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내로 하며, 초과 시 단위를 조정하여 평가함.

(2) 안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서비스 증진 및 지속성장 사업 [3점]

사업정의	철도 공공서비스 확대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SR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최대값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평가방법	$\text{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도} =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 = $\frac{\text{공공할인 이용객수}}{\text{전체 이용객수}} \times 100$ ② 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도 =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철도 공공성 확대 노력}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③ 공공할인 이용객 수 : 공공할인을 적용받은 이용객의 총합 - 관계법령에 의한 공공목적 할인 : 어린이할인, 동반유아 할인, 경로할인, 중증장애인 할인, 경증장애인 할인, 장애인보호자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국가유공자 보호자할인, 인도견 할인 - 국가기관 협약 등에 따른 공공목적 할인 : 군 장병(전환복무자 포함) 및 후급할인 - 국가정책에 따라 SR에서 운영하는 공공할인상품 : 임신부 할인, 다자녀 할인, 기초생활할인, 청소년할인, 3세대 동반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 산출시 고려사항 - 상기 기준(관계법령, 국가기관 협약, 국가정책)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목적의 할인은 포함하여 계산함

(2) 서비스 증진 및 지속성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2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에너지 유형

1. 한국석유공사	350
2. 한국광해광업공단	366
3. 한국남동발전(주)	382
4. 한국남부발전(주)	400
5. 한국동서발전(주)	418
6. 한국서부발전(주)	436
7. 한국수력원자력(주)	454
8. 한국중부발전(주)	472

한 국 석 유 공 사

한국석유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석유개발사업			23
	(1) 자원안보 기여도		2	
	(2) 글로벌 탐사시추 성공률		2	
	(3) 효율적 생산량 증대		4	
	(4) 해외사업 투자효율성 제고		4	
	(5) 석유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2. 석유비축사업			17
	(1) 효율적 비축목표 달성 노력		3	
	(2) 비축자산 활용 노력		2	
	(3) 비축기지 안전관리		5	
	(4) 석유비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			5
	(1) 알뜰주유소 국민편익 증대		2	
	(2)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산출 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에 해외석유개발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의 매출액을 지분율만큼 가산함

㉞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및 EBITDA 산출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및 EBITDA에 해외석유개발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의 매출액 및 EBITDA를 지분율만큼 가산함

㉟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산 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㊱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영업이익 산출 시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에 해외석유개발 종속회사 및 지분법 적용회사의 영업이익을 지분율만큼 가산함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석유개발사업 [23점]

사업정의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석유자원의 효율적 생산 및 가치증대,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및 신규성장동력 확보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자원안보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자원안보 역량 및 위기 대응력을 ① 신규 물량 확보 노력도, ② 비상시 도입 가능률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장기추세선 상의 목표치보다 직전년도 실적치가 높은 경우 직전년도 실적치로 함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자원안보 기여도 = ① (신규 물량 확보 노력도 × 1점) + ② (비상시 도입가능률 × 1점) ① 신규 물량 확보 노력도 = $\frac{3\text{년간의 신규 사업 승인완료 건수}}{3\text{년간의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수}}$ - “신규사업”은 공사(자회사 포함)가 “석유개발 투자의사 결정 절차서”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해외사업으로서 생산단계 사업은 제외 - “3년간의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수”는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실시한 기술평가 완료 사업수로 함 - “3년간의 신규 사업 승인완료 건수”는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사업 참여 승인완료 건수를 의미함 - 3년간의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수는 기술평가보고서를 증빙으로 함 - 3년간의 신규사업 승인 기준은 본사 또는 자회사 이사회에 부의되어 승인 완료된 사업으로 하며, 승인 완료 여부 판단은 이사회 의결 결과 문서를 증빙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비상시 도입 가능률 = $\frac{\text{당해연도 비상시 도입가능 물량}}{\text{당해연도 생산량}}$ - “중장기 목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공사 ‘26~’30년 중장기 경영목표상에 반영된 2030년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
(2) 글로벌 탐사시추 성공률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탐사시추 성공률을 5대 메이저 석유기업의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최근 3개년 탐사시추 성공률 1위 메이저사 실적 최저목표 : 최근 3개년 탐사시추 성공률 5위 메이저사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탐사시추 성공률 = $\frac{\text{3년간의 상업적 성공한 탐사시추공 수}}{\text{3년간의 탐사시추공 수}}$ ② 3년간의 탐사시추공 수 : 새로운 석유가스 발견을 위하여 공사(자회사 포함)가 굴착한 유정으로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실시한 탐사시추공 수를 의미하며, 시추 종료 시점 기준 및 공사(자회사) 참여 지분을 반영(Net)하여 집계한다. ③ 3년간의 상업적 성공한 탐사시추공 수 : ②의 “3년간의 탐사시추공 수” 중 개발/생산 가능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한 석유가스 발견 유정으로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상업적으로 성공한 시추공을 의미하며, 공사(자회사)가 시추 종료한 시점 기준 및 참여 지분을 반영(Net)하여 집계한다. ④ 메이저사 : 에너지정보기업(IHS Herold)에서 선정한 석유개발, 정제, 수송/판매 등을 장악하고 있는 5대 글로벌 석유회사(ExxonMobil, BP, Chevron, Total, Shell)를 의미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3년간의 탐사시추공 수는 시추 종료 문서를 증빙으로 한다. • 3년간의 상업적 성공한 탐사시추공 수는 상업적 성공이 인정되는 문서(경제성 평가결과(NPV>0), 개발계획, 생산개시)중 하나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 각 연도별 상업적 성공 실적 집계 시, 상업적 성공 판단 시점에 해당 탐사시추공 종료연도 실적으로 반영한다. • 최고목표(최근 3개년 탐사시추 성공률 1위 메이저사 실적) : 상기 5대 메이저사 중 Wood Mackenzie사 자료 기준 최근 3년간의 탐사시추 성공률(net)이 가장 높은 기업의 실적을 의미하며, 공사와 동일한 산식으로 산정한다. • 최저목표(최근 3개년 탐사시추 성공률 5위 메이저사 실적) : 상기 5대 메이저사 중 Wood Mackenzie사 자료 기준 최근 3년간의 탐사시추 성공률(net)이 가장 낮은 기업의 실적을 의미하며, 공사와 동일한 산식으로 산정한다.

(3) 효율적 생산량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석유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유가스전 갯수 당 생산량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가스전 당 생산량 = $\frac{\text{연간 총 생산량}}{\text{연도말 유가스전 수}}$ ② 생산량이란 광구에서 생산된 석유의 양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보고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③ 유가스전이란 생산광구내에 탄화수소가 부존되어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단위 매장 구조(field)를 의미함

(4) 해외사업 투자효율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투자비 회수노력을 ① 투자회수율, ② 당해연도 회수 실적으로 평가한다.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의 당해연도 회수액 목표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해외사업 투자효율성 제고 = ① (투자회수율 × 2.5점) + ② (당해연도 회수 실적 × 1.5점) ① 투자회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 (상향지표) $\text{투자회수율} = \frac{\text{회수총액}}{\text{투자총액}}$ - 투자총액 및 회수총액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보고한 투자총액과 회수총액을 기준으로 함 - 금액은 현금기준이며, 석유개발사업 전체기간에 대한 누적 금액임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당해연도 회수 실적 = 당해연도 회수액 - “당해연도 회수액”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보고한 당해연도 회수액을 의미함 - “당해연도 회수 실적”의 기준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에 반영된 회수목표를 적용한다.

(5) 석유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② 석유비축사업 [17점]

사업정의	석유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석유비축계획 달성 및 석유 안보체계 강화, 비축자산 활용을 통한 사업효율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효율적 비축목표 달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① 연도별 신규 비축유 물량 확보(상향지표),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② 비축원유 경제적 구입(하향지표), 비축유 품질관리를 위한 ③ 비축유 품질관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준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80%, 최저목표 : 120% ③ 비축유 품질관리 목표 달성(부적합 탱크(공동) 0기)
측정 산식 및 변수	효율적 비축목표 달성 노력 = ① (연도별 신규 비축유 물량 확보×1.1점) + ② (비축원유 경제적 구입×1.5점) + ③ (비축유 품질관리 목표 달성도×0.4점) ① 연도별 신규 비축유 물량 확보 = 당해연도 신규 비축유 구입실적 / 연도별 신규 비축유 확보 목표 - 신규 비축유 구입실적은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공사 각각의 재원별로 구입한 비축량이며, 구입 후 유종교체를 위한 일시적인 물량조정분은 제외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연도별 비축목표는 석유비축계획(세부시행계획 포함)에 의하며, 정부에 의한 비축계획 조정시*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정부 비축계획 조정, 비축유 구입 관련 정부 고시 사항, 정부 보고·승인사항 등 ② 비축원유 경제적 구입(상대비율) $= \text{기관 도입단가(CIF)} / \text{연평균 국내도입 유가(CIF)}$ - 비축원유 경제적 구입은 공사가 도입유종의 연평균 국내 도입가격(CIF)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입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평점산식 • 상대비율 100% 이하인 경우, $\text{득점} = 100 \times [0.8 + 1 \times (1 - \text{상대비율})]$ • 상대비율 100% 초과인 경우, $\text{득점} = 100 \times [0.8 + 3 \times (1 - \text{상대비율})]$ - 기관 도입단가 : 기관의 구입유종의 총 구입비(CIF조건)를 총 구입물량(배럴)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US\$) - 연평균 국내도입 유가 : 기관이 구입한 유종의 국내정유사 연평균 도입가격(CIF 조건)으로 산정함(US\$) * 국내정유사의 도입유종 연평균 도입가격은 석유수급정보시스템(PEDSIS)의 자료를 이용함 ③ 비축유 품질관리 목표 달성도 $= 100\text{점} - \sum \text{저장 중인 비축유 품질분석 결과 부적합 점수(탱크(공동)당 2점)}$ - 한국석유공사 유종별 검사항목 및 취급기준(비축제품 품질기준 포함)을 적용하여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 - 비축유를 보관하고 있는 원유/제품/LPG 저장시설의 유종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분석 결과 적용
(2) 비축자산 활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자산 활용 노력(상향지표)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비축자산 활용 노력 = 트레이딩(1점) + 공동비축·물류사업(1점) * 트레이딩 = $\frac{\text{트레이딩 활용물량}}{\text{트레이딩 가능물량}}$ * 공동비축·물류사업 = $\frac{\text{공동비축+물류사업 활용물량}}{\text{비축설비 활용 가능용량}}$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비축자산 활용 노력은 공사의 트레이딩 가능물량 대비 트레이딩 활용 물량과 비축설비 활용 가능용량 대비 공동비축, 물류사업 활용물량을 평가 * 트레이딩 활용물량 : 전략비축유 중 자율활용범위 내에서 시황을 활용하여 비축유를 대여·상환하는 트레이딩 등 비축자산(비축유 및 저장시설)을 연계한 트레이딩 계약물량 • 단, 트레이딩 활용물량은 트레이딩 가능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 트레이딩 가능물량은 전년도말 누적비축량에 규정상 활용가능 범위를 곱해서 산출한다. • 트레이딩 가능물량 산출 시 트레이딩 중단 및 재개는 해당하는 월부터 월할 계산 * 공동비축 활용물량 : 산유국 NOC, 메이저, 트레이더 등에 공사 저장시설을 대여·석유를 저장하게 하는 공동비축 사업의 월평균 계약물량의 연평균 물량 * 물류사업 활용물량 : 국내정유사에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공사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의 월평균 계약물량의 연평균 물량 • 각 사업의 활용물량은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활용 * 비축설비 활용 가능용량은 공동비축과 물류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비축가능 설비용량에 전년도말 누적비축량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 비축가능 설비용량은 공사가 확보한 비축시설(순 비축가능 설비용량) 중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비축시설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매월말을 기준으로 연평균으로 산정 ※ 불가항력적인 원인: 정부정책, 비축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법정 설비점검, 자연재해 및 기타 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인한 설비고장 등

(3) 비축기지 안전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재해율(하향지표)을 측정함으로써, 안전한 비축기지 운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재해율(5점)} = \text{① 근로자 재해율} \times 40\% + \text{② 발주공사 재해율} \times 30\% + \text{③ 국민·시설 재해율} \times 30\%$ $\text{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text{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 근로자)}}{\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및 해양오염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인명사고(근로자 및 발주공사 근로자) = 사망사고 + 중대재해 + 일반재해

구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
인당 점수	10점	3점	1점

- 인명사고(국민) = 사망사고 + 중상 + 경상 + 기타

구분	사망사고	중상	경상	기타
인당 점수	10점	3점	1점	0.5점

* 근로자 및 발주공사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사고 :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시 제외

* 국민 사망사고,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사고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 및 해양오염사고 = 해양오염 및 붕괴·폭발·누출·화재 사고 점수

구분	사망사고(건)	중대재해(건)	일반재해(건)	해양오염(건)
점수	10점	5점	3점	1점

* 해양오염 :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에 의거 해양경찰청에서 산정한 오염물질 배출사고(사망사고,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설비)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해양오염사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 유관부처에 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시설(설비) 사고로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4) 석유비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 [5점]

사업정의	국민 편익 증진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석유정보사업을 통한 정부·기업·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알뜰주유소사업을 통한 국내 석유제품 시장 안정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1) 알뜰주유소 국민편익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알뜰주유소를 통한 국민편익 증대노력을 알뜰주유소의 ①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② 석유거래 투명성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전국주유소 연평균판매가격-전국주유소 상표별(4정유사, 3대 알뜰, 자가상표) 연평균판매가격 중 최저가)×직전년도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최저목표 : (전국주유소 연평균판매가격-전국주유소 상표별(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연평균판매가격 중 최저가)×직전년도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알뜰주유소 국민편익 증대 =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12점) + 석유거래 투명성(08점) ①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 $\frac{(\text{전국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 - \text{알뜰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text{알뜰주유소 공급물량}}$ - 알뜰주유소 연평균 판매가격 및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은 자영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산출함 ② 석유거래 투명성 = $\frac{\text{전산수급보고 가입 자영알뜰주유소 수}}{\text{전체 자영알뜰주유소 수}}$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주유소 수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 판매가격은 휘발유, 경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픈넷 유가정보서비스에서 공개하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http://www.opinet.co.kr)
(2) 석유유통구조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광해광업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영업이익률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자원안보 강화사업			17
	(1) 자원안보 기여도		2	
	(2) 투자사업 회수율		2	
	(3) 회소금속 비축확대 목표 달성도		2	
	(4) 정밀조사 확보광량		2	
	(5) 자원안보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광해관리 사업			19
	(1) 수질오염 저감		5	
	(2) 토양오염 저감		4	
	(3) 광해복구 완료율		1	
	(4) 재난·안전 관리		2	
	(5) 광해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광산 및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9
	(1)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1	
	(2) 융자금 회수관리		2	
	(3) 현대화광산 생산성		1	
	(4) 광산 및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탐사, 개발단계(시험생산포함) 자산」과 「비축광물 재고자산」을 제외함 단, 암바토비 니켈광산 생산사업 관련 자산은 아래와 같이 별도 산정 - 기말 기준 공사 투자자산 중 상각비 상당 누계액 (투자자산×투자회사의 상각비 누계액/투자회사의 상각대상자산 총액) •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탐사, 개발단계(시험생산포함) 자산」과 「비축광물 재고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부가가치 산정시 제외함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자원안보 강화사업 [17점]

사업정의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핵심광물 비축 등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자원안보 기여도 (평가방식 : ①②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자원안보 확보의 성과를 우리나라 연간수요량(수입물량) 대비 공단이 기여한 자원확보물량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①②)
목 표	①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자원안보 기여도(2점) = ① 전략광종 기여도(1점) + ② 핵심광물 기여도(1점) ① 전략광종 기여도(%) = $\frac{\Sigma \text{광종별(공단기여 확보물량/수입물량)}}{\text{전략광종 수}}$ ② 핵심광물 기여도(%) = $\frac{\Sigma \text{광종별(공단기여 확보물량/수입물량)}}{\text{핵심광물 수}}$ - 공단기여 확보물량 : 공단 투자사업 또는 기술지원(기술컨설팅 등)한 민간사업에서 발생한 자원확보물량(지분생산량 또는 Off-take 확보량) - 수입물량 : 당해연도의 전략광종 및 핵심광물별 수입물량(수출입 무역 통계 자료 인용)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략광종 : 국내 수입액이 크고, 수요량이 높은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핵심광물 : 33종 핵심광물 중,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2) 투자사업 회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성과를 “투자에 기인한 회수성과”로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투자사업 회수율(2점) - 투자사업 회수율(%) = $\frac{\text{누적회수액}}{\text{누적투자액}}$ - 누적회수액(US\$) 및 누적투자액(US\$) :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해외사업의 한국전소사업 투자액과 회수액으로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KOREDIS)에 보고한 실적

(3) 희소금속 비축확대 목표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비축확대 광종별 목표 비축일수 대비 누적비축일수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 최고목표는 정부의 광종별 목표 비축일수를 초과하지 않음.
측정 산식 및 변수	☐ 희소금속 비축확대 목표 달성도(2점) - 희소금속 비축확대 목표 달성도 = $\frac{\text{비축확대 광종 누적비축일수}}{\text{비축확대 광종수}}$ - 비축확대 광종수 : 정부정책에 따라 비축량이 확대되는 희소금속 광종수 - 비축확대 광종 누적비축일수 : 비축확대 대상 광종별 누적비축일수의 합 * 비축확대 광종 누적비축일수 = $\sum \text{광종별} \left(\frac{\text{누적비축량}}{\text{전략비축 목표량}} \times \text{목표 비축일수} \right)$ - 누적비축량 : 평가년도까지 구매한 희소금속 광종별 누적비축량으로 구매 기준은 계약체결을 기준으로 함 * 수급위기 발생 등에 따라 방출된 물량은 누적비축량에서 제외하여 재산정 - 전략비축 목표량 : 비축확대 광종별로 달리 산출되며, 예산 및 수급변동에 의한 물량변동시 목표량을 조정하여 산정 - 목표 비축일수 :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된 광종별 목표 비축일수

(4) 정밀조사 확보광량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정밀조사사업을 통해 확보한 금속광 및 비금속광 광량의 누계량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정밀조사 확보광량(2점) - 정밀조사 확보광량(톤) = 직전년도 확보광량 누계 + 당해연도 신규 확보광량 - 직전년도 정밀조사 확보광량 누계(톤) : 정밀조사 사업을 통해 평가 직전 년도까지 확보된 누계 광량(확정+추정) - 당해연도 정밀조사 신규 확보광량(톤) : 평가년도의 정밀조사 사업을 통해 신규로 확보된 광량(확정+추정) - 중장기 목표 : 누계 206억톤(제4차 광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2030년 목표치)

(5) 자원안보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광해관리 사업 [19점]

사업정의	광산피해의 오염확산 방지 및 적정 관리를 통한 국민 안전과 광산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수질오염 저감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된 광산의 수질오염 관리 성과를 글로벌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달성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수질오염 저감(5점)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률 = $\frac{\text{글로벌 수질기준 달성 횟수}}{\text{광산지역 수질분석 횟수}}$ - 글로벌 수질기준 달성 횟수 = 광산지역 수질분석 횟수 - 글로벌 수질 기준 초과(미달성 횟수) - 광산지역 수질분석 횟수 = 수질오염분석항목원소수 × 수질정화시설 수 × 연간검사 횟수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글로벌 수질기준은 한국과 선진국의 수질기준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말함																										
	– 선진국 : 광산지역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미국, 캐나다, 국제기구 EHS, 일본, EU)																										
	– 가장 엄격한 기준 :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3개 검사원소에 대하여 한국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과 선진국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달성하기 어려운) 기준																										
	• 공단이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한 광산을 대상으로 평가																										
	• 수질오염분석항목 원소수(13개) : CN, Fe, Mn, Al, As, Cd, Cr, Cu, Pb, Zn, Hg, F, Ni																										
	[글로벌 수질기준]																										
	(단위 : mg/L)																										
	<table><tr><td>Fe</td><td>Mn</td><td>Al</td><td>As</td><td>Cd</td><td>Cr</td><td>Cu</td><td>Pb</td><td>Zn</td><td>Hg</td><td>F</td><td>Ni</td><td>CN</td></tr><tr><td>2.0</td><td>2.0</td><td>2.0</td><td>0.05</td><td>0.02</td><td>0.1</td><td>0.3</td><td>0.1</td><td>0.5</td><td>0.001</td><td>3.0</td><td>0.1</td><td>0.2</td></tr></table>	Fe	Mn	Al	As	Cd	Cr	Cu	Pb	Zn	Hg	F	Ni	CN	2.0	2.0	2.0	0.05	0.02	0.1	0.3	0.1	0.5	0.001	3.0	0.1	0.2
Fe	Mn	Al	As	Cd	Cr	Cu	Pb	Zn	Hg	F	Ni	CN															
2.0	2.0	2.0	0.05	0.02	0.1	0.3	0.1	0.5	0.001	3.0	0.1	0.2															
(2) 토양오염 저감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토양복원사업의 추진성과를 토양검사횟수 대비 법정기준치 달성횟수 실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 최고목표는 달성 가능한 최대치를 한도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토양오염 저감(4점) = 토양복원사업의 법정기준치 달성실적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 법정기준치 달성실적(%) = 50% 이하 달성횟수 토양검사횟수 ×100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50% 이하 달성횟수 = 토양검사횟수 - 토양오염우려기준 50% 초과(미달성) 횟수 - 토양검사횟수 = 토양분석항목 원소수 × 토양복원필지별 시료채취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지표 실적 산출과 관련된 활동은 기관 지침(휴폐광산지역 오염토양처리 시행세칙)에 명시된 바를 따름 • 토양분석항목 원소(6개) : As, Cd, Cu, Pb, Zn, Ni																										

측정 산식 및 변수	•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unit : mg/kg)																					
	<table><tr><td>구 분</td><td>As</td><td>Cd</td><td>Cu</td><td>Pb</td><td>Zn</td><td>Ni</td></tr><tr><td>1지역 기준</td><td>25</td><td>4</td><td>150</td><td>200</td><td>300</td><td>100</td></tr><tr><td>50%</td><td>12.5</td><td>2</td><td>75</td><td>100</td><td>150</td><td>50</td></tr></table>	구 분	As	Cd	Cu	Pb	Zn	Ni	1지역 기준	25	4	150	200	300	100	50%	12.5	2	75	100	150	50
	구 분	As	Cd	Cu	Pb	Zn	Ni															
1지역 기준	25	4	150	200	300	100																
50%	12.5	2	75	100	150	50																
* 1지역 :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지)·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3) 광해복구 완료율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총 광해발생 개소수 대비 당해연도까지 복구 완료한 누적 개소수의 비율(%)을 통해 광해복구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광해복구 완료율(1점) - 광해복구 완료율(%) = $\frac{\text{복구 완료 개소수}}{\text{총 광해발생 개소수}}$ - 복구 완료 개소수 : 직전년도 복구 개소수 완료실적(누계) + 당해연도 추가복구 개소수 - 총 광해발생 개소수 : 광해실태조사(‘21)를 통해 확인된 휴·폐광산 광해(7,181개소) 및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가행광산 복구 개소수의 총합 - 중장기 목표 : 32%(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 중장기 경영목표(‘26~’30) 상 2030 목표치)

(4) 재난·안전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난·안전 관련 근로자 및 일반 국민 등의 인명 사고, 시설(설비) 사고 감점실적을 측정함으로써 안전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재해율(2점) = 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 × 0.6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1.0 + 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0.4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1} \text{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가중치 : 사망사고 1인당 10, 중대 재해 (중상) 1인당 3, 일반 재해 (경상 및 기타) 1인당 1

※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사고 : 근로자,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마'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중상, 경상, 기타 구분의 경우 의사 최초 진단 결과 기준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 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textcircled{2} \text{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시설(설비) 사고별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중대재해(중상)가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일반재해(경상 및 기타)가 발생한 시설 설비사고(건) × 3

$$\textcircled{4}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 (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발주공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5) 광해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광산 및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9점]

사업정의	광산지역 균형발전과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일자리 창출성과를 평가한다.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최대값(①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 최고목표는 달성 가능한 최대치를 한도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square \text{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1점)} = \text{① 신규고용 창출} \times 0.6 + \text{② 고용유지율} \times 0.4$ ① 신규고용 창출(0.6점) $= \text{신규 고용인원} \div \text{폐광지역진흥사업집행액}$ - 신규 고용인원 : 성과측정 기업이 신규로 고용한 인원 - 폐광지역진흥사업 : 기관 정관 상 “폐광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이며, 대체산업융자지원, 출자회사 관리, 기타 폐광지역진흥사업을 의미 - 사업 집행액 실적치는 상기 정의된 사업비 총집행액이며 기관 결산 내역 등을 따름 ② 고용유지율(0.4점) $= \text{전년도 대체산업융자 지원기업의 당해연도 고용유지율의 평균}$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율은 대체산업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측정 • 대체산업융자 지원기업별 고용유지율의 가중평균으로 함 • 고용유지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음
(2) 융자금 회수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국내광업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자금의 관리효율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체비율 = $\frac{(\text{고정이하 연체액} + \text{대손상각액})}{(\text{총대출액} + \text{대손상각액})}$ ② ‘고정이하 연체액’의 산정은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90일 이상 연체액 ③ ‘총대출액’은 국내 용자금 및 대체산업용자금을 뜻하며 광업자금, 석재산업자금, 갯도굴진자금, 대체산업용자금의 재무상태표상 기말대출금잔액으로 하되 공단의 대부투자금은 제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최고목표치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의 기업은행, 산업은행(이하 국책은행)의 기업여신 연체비율을 목표부여(편차)에 따라 산출한 최고목표치보다 낮은 경우, 최고목표는 국책은행 기업여신 연체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총대출액과 고정이하 연체액에서 소급하여 제외함 - 법정관리, 화의신청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나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 사정 등으로 2월 이상 보상이 지체된 경우
(3) 현대화광산 생산성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1점)	
정 의	광산현대화 사업을 통한 광산의 인당 생산성 향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현대화광산 생산성(1점) - 현대화광산 생산성 = $\frac{\text{생산량(톤)}}{\text{인원}}$ - 생산량(톤) : 평가년도 동안 현대화 개발광산의 갯내 생산량 - 인원 : 평가년도 동안 현대화 개발광산의 갯내 광산의 작업인원 (갯내인원+갯외인원+관리직의 1/2) - 중장기 목표 : 24.2천톤/인(제4차 광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2030년 목표치)

(4) 광산 및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남동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3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에너지전환 사업			11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3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2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
	(1) 고장정지 저감실적		3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2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1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5	
	(5)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혁신성장사업			6
	(1) 기술개발 활성화		2	
	(2) 해외사업개발 성과		1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㉒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㉓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점]

사업정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주력사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 및 기후 위기 해소에 기여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용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발전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전원별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ESS 발전량은 당해연도에 전력계통으로의 방전량을 계산함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에너지전환 사업 [11점]

사업정의	저탄소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행 및 국민 모두의 행복실현에 기여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연도별 기관의 LNG 대체 건설공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주무부처와 기관간 합의한 LNG대체 건설 연도별 목표공정
목 표	최고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달성 최저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미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 LNG대체 건설 공정 달성도

$$\text{산식} = 20 + 80 \times \frac{\sum(\text{연간 LNG대체건설 사업별 공정 달성률}^*)}{\text{연간 LNG 대체건설 사업건수}}$$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의된 발전사별 연간 목표 공정 이행률

- 당해연도 목표공정 미달시 지표 득점률에서 20%p 차감

- 득점률 산정방식은 기관별 연간 LNG대체 사업별 목표공정 실적의 산술평균

※ 산출시 고려사항

- 천재지변, 코로나 19 등 기관이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건설공정진행이 곤란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연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공정단계, 각 단계별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건설공정단계	인정기준	증빙자료(대외공문 등)
1. 전력수급계획	전기본 반영	전력수급계획 공고문 (기후부)
2. 사업허가	사업허가 취득	사업허가증 (기후부)
3. 기재부예타	KDI예타 완료	예타결과 통보문(KDI)
4. 건설기본계획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품의서
5. 환경 초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초안 제출 공문 (기후부)
6. 설계용역	설계기술용역 계약	용역 계약서
7. 주기기발주	주기기 발주	입찰공고문
8. 주기기계약	주기기 계약	구매 계약서
9. 환경 본안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본안 제출 공문 (기후부)
10. 환경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협의완료 통보문(기후부)
11.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2. 공사계획인가	공사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3. 착공	착공	착공 신고서(지자체)
14. 본관 기초공사	본관 기초공사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측정 산식
및 변수

건설공정단계	인정기준	증빙자료(대외공문 등)
15. 본관 철골설치	본관 철골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6.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7. HRSG 설치	HRSG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8. 가스터빈 설치	G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9. 증기터빈 설치	S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20. 수전	수전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1. 수압시험	수압시험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2. 최초점화	점화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3. 증기터빈발전개시	발전개시 완료	사용전 검사 필증(전안공)
24. 상업운전	상업운전	상업운전개시 확인서(KPX)

※ 사업별 상황에 따라 일부 공정이 변경될 수 있음
(예시: 주기기계약-한평본안 → 한평본안- 주기기계약)

※ 기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전안공 : 전기안전공사 /
KPX : 전력거래소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발전5사 협업지표), 가중치 : 2점)

정 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석탄발전분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의 전환 지원 노력(발전5사 공동수행)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발전5개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인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00% 최저목표 : 기준치 × 60%
측정 산식 및 변수	○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2점) $\text{산식} = \frac{\text{평가년도 전환 인원}^*}{\text{발전5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 인원}^{**}}$ * (전환인원) 재배치 및 재취업 인원으로 산정하며 재배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동일·유사 업무 수행 조직으로의 재배치 2) 이동 후 고용 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 유지 ** (대상인원) 발전5사 호기별 폐지계획에 따른 평가년도 전환대상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전환 대상 인원 산출 시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전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모수에서 제외 • 정년퇴직·장기 휴직자 : 전환 연도에 정년퇴직 예정인 자, 장기 휴직(육아 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전환 연도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 • 자발적 전환 미희망자 : 전환·재취업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 • 평가년도 득점은 발전5사 동일부여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발전설비 운영사업 [15점]

사업정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발전5사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최고 실적 ※ 발전5사 실적 :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의 연 산술평균값																										
목 표	최고목표 : 0.000%(무고장)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 발전기별 노후도 Factor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기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기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frac{\text{정지시간}}{\text{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기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발전기별 비중×지표 가중치(3점) - $\Sigma(\text{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text{지표 가중치}(3\text{점})$ - 발전기별 비중 = $\frac{\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Sigma(\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 ⑦ 노후도 Factor는 준공일 및 평가년도 말 기준 내구년수를 적용한다. <table><tr><th>내구년도</th><th>5년미만</th><th>10년미만</th><th>15년미만</th><th>20년미만</th><th>25년미만</th><th>30년미만</th><th>35년미만</th><th>35년이상</th></tr><tr><td>Factor</td><td>3.0</td><td>1.9</td><td>1.9</td><td>1.8</td><td>1.0</td><td>1.7</td><td>3.1</td><td>4.2</td></tr></table> ⑧ 글로벌 지수 = $\frac{\text{기관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text{NERC 실적}}$ ⑨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⑩ 기본득점은 고장정지율 글로벌 지수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able><tr><th>글로벌 지수</th><th>1% 미만</th><th>1% 이상 2% 미만</th><th>2% 이상</th></tr><tr><td>기본득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r></table>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 NERC실적은 NERC(북미 전력신뢰도 위원회) Generating Availability Data System(Fossil, All Fuel Types, All MW Sizes)의 최근 공표실적을 발전형식 별로 적용(석탄 및 유동층 : Fossil Coal / All sizes, LNG - Fossil Gas Primary All sizes, 유류 - Fossil Oil Primary All sizes) •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연료 도입단가 경쟁 노력을 글로벌 지수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평가년도 발전5사 호주 Newcastle항 장기 용선 평균운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득점산식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②) - 최적도입발열량 미준수 감점(③)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실적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 평가년도 기관 평균운임 실적 - FOB 도입단가 = $\frac{\text{총 FOB 비용(US\\$)}}{\text{총 도입물량(Ton)}} \times \frac{6,000 \text{ NAR}}{\text{도입열량 평균(NAR)}}$ - 평균운임 실적 = $\frac{\sum(\text{도입물량(Ton)} \times \text{단가(US\\$)})}{\text{총 도입물량(Ton)}}$ - 감점 적용 전 도입단가 환산 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 감점 : 도입단가 경쟁실적 실득점 × $\left(\frac{\text{기준 발열량} - \text{기관 도입 발열량}}{\text{기준 발열량}} \right)$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와 총 운임도입비(US\$)를 총도입물량(Ton)으로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 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 CFR 조건 구매의 경우 운임을 당해년도 기관 해당 수출국 평균 운임으로 함 •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 운임기준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기관의 호주 Newcastle항 장기용선 평균 운임이 발전5사 평균을 초과하는 기관은 평균운임 실적(톤당 단가) 계산 시, 기관의 장기용선 운임실적(물량가중) 평균에서 초과분 차감 (현물용선 운임은 해당 사항 없음) • 기준치 산정시 연중 계약종료 선박의 경우, 계약종료월까지 유가를 적용하여 운임 산출 • 산출기준 및 달성실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5사가 운영중인 석탄 및 LNG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으로 하며, 대기오염 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함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 <table><tr><td>구분(단위 : kg)</td><td>2026</td><td>2027</td><td>2028</td><td>2029</td></tr><tr><td>남동발전</td><td>9,721,278</td><td>6,554,582</td><td>5,606,763</td><td>4,915,054</td></tr><tr><td>남부발전</td><td>7,045,709</td><td>6,335,214</td><td>4,413,748</td><td>3,351,383</td></tr><tr><td>동서발전</td><td>8,631,345</td><td>7,851,323</td><td>7,257,661</td><td>6,456,932</td></tr><tr><td>서부발전</td><td>7,253,907</td><td>6,633,798</td><td>6,013,694</td><td>4,646,910</td></tr><tr><td>중부발전</td><td>9,047,871</td><td>7,180,274</td><td>6,480,245</td><td>5,780,206</td></tr></table> *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량·이월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익년도 2월에 기후부에서 확정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기준치(목표치)는 기후부에서 연도별, 설비별로 산정·부여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총량(가할당량·이월량 등을 반영한 총량)으로 설정 • 배출량과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시설의 가할당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가할당 시설의 배출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판매량은 기관 할당량 산정시 미반영 • 전국 4개 대기권역에 미포함되는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26년 상반기 내 협의 후 '26년도 수정편람 반영)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등에 산업재해자 비율 감소 노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효과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재해율} = \text{①} \text{근로자 재해율 평점} \times 0.3 + \text{②} \text{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times 0.5 + \text{③} \text{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times 0.2$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③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textcircled{2} \text{ 인명사고} = (\text{사망사고} \times 10) + (\text{중대재해} \cdot \text{중상} \times 3) + (\text{일반재해} \cdot \text{경상} \times 1) + (\text{기타} \times 0.5)$$

※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인명사고(국 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구 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중상	일반재해, 경상	기타
가중치(인당)	10	3	1	0.5

※ 근로자 재해 산정기준

- 사망사고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국민 재해 산정기준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단,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textcircled{3} \text{ 시설(설비)사고} : \text{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times$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times$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times$ 3

$$\textcircled{4}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 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혁신성장사업 [6점]

사업정의	초혁신 경제구현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기반 신사업 및 해외에너지 사업 확대에 국가 신성장 사업 창출에 기여

(1) 기술개발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 활성화 = (특허 성과 × 50%) + (기술사업화 성과 × 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2) 해외사업개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노력을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액 향상 수준과 해외사업 개발 확대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Σ 해외사업 누적 지분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 해외사업 매출액은 LNG사업, 수력·신재생 사업, 운영·정비(O&M)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등 해외사업 관련 모든 매출액 포함(석탄발전 매출액 제외)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 등)으로 인식되는 사업은 제외 • 지분투자·운영 해외사업은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서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 • 해당국가별 외화 매년 연말기준 환율 적용,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남부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3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에너지전환 사업			11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3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2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
	(1) 고장정지 저감실적		3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2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1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5	
	(5)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혁신성장사업			6
	(1) 기술개발 활성화		2	
	(2) 해외사업개발 성과		1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㉒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㉓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3) 효율성 관리 [5점]

㉑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㉒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점]

사업정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주력사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 및 기후 위기 해소에 기여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용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발전량 = Σ(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전원별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ESS 발전량은 당해연도에 전력계통으로의 방전량을 계산함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에너지전환사업 [11점]

사업정의	저탄소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행 및 국민 모두의 행복실현에 기여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연도별 기관의 LNG 대체 건설공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주무부처와 기관간 합의한 LNG대체 건설 연도별 목표공정

목표

최고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달성

최저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미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 LNG대체 건설 공정 달성도

산식 = 20+80×

Σ(연간 LNG대체건설 사업별 공정 달성률*)

연간 LNG 대체건설 사업건수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의된 발전사별 연간 목표 공정 이행률

- 당해연도 목표공정 미달시 지표 득점률에서 20%p 차감

• 득점률 산정방식은 기관별 연간 LNG대체 사업별 목표공정 실적의 산술평균

※ 산출시 고려사항

• 천재지변, 코로나 19 등 기관이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건설공정진행이 곤란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연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공정단계, 각 단계별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건설공정단계	인정기준	증빙자료(대외공문 등)
1. 전력수급계획	전기본 반영	전력수급계획 공고문 (기후부)
2. 사업허가	사업허가 취득	사업허가증 (기후부)
3. 기재부예타	KDI예타 완료	예타결과 통보문(KDI)
4. 건설기본계획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품의서
5. 환경 초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초안 제출 공문 (기후부)
6. 설계용역	설계기술용역 계약	용역 계약서
7. 주기기발주	주기기 발주	입찰공고문
8. 주기기계약	주기기 계약	구매 계약서
9. 환경 본안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본안 제출 공문 (기후부)
10. 환경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협의완료 통보문(기후부)
11.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2. 공사계획인가	공사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3. 착공	착공	착공 신고서(지자체)
14. 본관 기초공사	본관 기초공사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5. 본관 철골설치	본관 철골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6.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7. HRSG 설치	HRSG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8. 가스터빈 설치	G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9. 증기터빈 설치	S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20. 수전	수전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1. 수압시험	수압시험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2. 최초점화	점화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3. 증기터빈발전개시	발전개시 완료	사용전 검사 필증(전안공)
24. 상업운전	상업운전	상업운전개시 확인서(KPX)

※ 사업별 상황에 따라 일부 공정이 변경될 수 있음

(예시: 주기기계약-환경본안 → 환경본안- 주기기계약)

※ 기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전안공 : 전기안전공사

/ KPX : 전력거래소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평가방식 : 목표부여(발전5사 협업지표), 가중치 : 2점)

정 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석탄발전분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의 전환 지원 노력(발전5사 공동수행)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발전5개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인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0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2점) $\text{산식} = \frac{\text{평가년도 전환 인원}^*}{\text{발전5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 인원}^{**}}$ * (전환인원) 재배치 및 재취업 인원으로 산정하며 재배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동일·유사 업무 수행 조직으로의 재배치 2) 이동 후 고용 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 유지 ** (대상인원) 발전5사 호기별 폐지계획에 따른 평가년도 전환대상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전환 대상 인원 산출 시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전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모수에서 제외 - 정년퇴직·장기 휴직자 : 전환 연도에 정년퇴직 예정인 자, 장기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전환 연도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 - 자발적 전환 미희망자 : 전환·재취업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 • 평가년도 득점은 발전5사 동일부여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점]

사업정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를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발전5사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최고 실적 ※ 발전5사 실적 :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의 연 산술평균값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연료 도입단가 경쟁 노력을 글로벌 지수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평가년도 발전5사 호주 Newcastle항 장기 용선 평균운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득점산식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②) - 최적도입발열량 미준수 감점(③)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실적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 평가년도 기관 평균운임 실적 - FOB 도입단가 = $\frac{\text{총 FOB 비용(US\\$)}}{\text{총 도입물량(Ton)}} \times \frac{6,000 \text{ NAR}}{\text{도입열량 평균(NAR)}}$ - 평균운임 실적 = $\frac{\sum(\text{도입물량(Ton)} \times \text{단가(US\\$)})}{\text{총 도입물량(Ton)}}$ - 감점 적용 전 도입단가 환산 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 감점 : 도입단가 경쟁실적 실득점 $\times \left(\frac{\text{기준 발열량} - \text{기관 도입 발열량}}{\text{기준 발열량}} \right)$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와 총 운임도입비(US\$)를 총도입물량(Ton)으로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 CFR 조건 구매의 경우 운임을 당해년도 기관 해당 수출국 평균 운임으로 함 •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 운임기준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기관의 호주 Newcastle항 장기용선 평균 운임이 발전5사 평균을 초과하는 기관은 평균운임 실적(톤당 단가) 계산 시, 기관의 장기용선 운임실적(물량가중) 평균에서 초과분 차감 (현물용선 운임은 해당 사항 없음) • 기준치 산정시 연중 계약종료 선박의 경우, 계약종료월까지 유가를 적용하여 운임 산출 • 산출기준 및 달성실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5사가 운영중인 석탄 및 LNG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으로 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함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량·이월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익년도 2월에 기후부에서 확정

※ 산출시 고려사항

- 기준치(목표치)는 기후부에서 연도별, 설비별로 산정·부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가할당량·이월량 등을 반영한 총량)으로 설정
- 배출량과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시설의 가할당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가할당 시설의 배출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판매량은 기관 할당량 산정시 미반영
- 전국 4개 대기권역에 미포함되는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26년 상반기 내 협의 후 '26년도 수정편람 반영)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등에 산업재해자 비율 감소 노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효과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국민 재해 산정기준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단,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④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4 혁신성장사업 [6점]

사업정의	초혁신 경제구현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기반 신사업 및 해외에너지 사업 확대에 국가 신성장 사업 창출에 기여

(1) 기술개발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 (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 활성화 = (특허 성과 $\times 50\%$) + (기술사업화 성과 $\times 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 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경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 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2) 해외사업개발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노력을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액 향상 수준과 해외사업 개발 확대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Σ 해외사업 누적 지분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 해외사업 매출액은 LNG사업, 수력·신재생 사업, 운영·정비(O&M)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등 해외사업 관련 모든 매출액 포함(석탄발전 매출액 제외)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 등)으로 인식되는 사업은 제외 • 지분투자·운영 해외사업은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서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 • 해당국가별 외화 매년 연말기준 환율 적용,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3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에너지전환 사업			11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3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2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
	(1) 고장정지 저감실적		3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2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1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5	
	(5)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혁신성장사업			6
	(1) 기술개발 활성화		2	
	(2) 해외사업개발 성과		1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점]

사업정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주력사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체계 및 기후 위기 해소에 기여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용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발전량 = Σ(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전원별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ESS 발전량은 당해연도에 전력계통으로의 방전량을 계산함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에너지전환사업 [11점]

사업정의	저탄소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행 및 국민 모두의 행복실현에 기여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연도별 기관의 LNG 대체 건설공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주무부처와 기관간 합의한 LNG대체 건설 연도별 목표공정

목표

최고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달성

최저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미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 LNG대체 건설 공정 달성도

산식 = 20+80×

Σ(연간 LNG대체건설 사업별 공정 달성률*)

연간 LNG 대체건설 사업건수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의된 발전사별 연간 목표 공정 이행률

- 당해년도 목표공정 미달시 지표 득점률에서 20%p 차감

• 득점률 산정방식은 기관별 연간 LNG대체 사업별 목표공정 실적의 산술평균

※ 산출시 고려사항

• 천재지변, 코로나 19 등 기관이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건설공정진행이 곤란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연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공정단계, 각 단계별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건설공정단계	인정기준	증빙자료(대외공문 등)
1. 전력수급계획	전기본 반영	전력수급계획 공고문 (기후부)
2. 사업허가	사업허가 취득	사업허가증 (기후부)
3. 기재부예타	KDI예타 완료	예타결과 통보문(KDI)
4. 건설기본계획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품의서
5. 환경 초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초안 제출 공문 (기후부)
6. 설계용역	설계기술용역 계약	용역 계약서
7. 주기기발주	주기기 발주	입찰공고문
8. 주기기계약	주기기 계약	구매 계약서
9. 환경 본안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본안 제출 공문 (기후부)
10. 환경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협의완료 통보문(기후부)
11.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2. 공사계획인가	공사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3. 착공	착공	착공 신고서(지자체)
14. 본관 기초공사	본관 기초공사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5. 본관 철골설치	본관 철골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6.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7. HRSG 설치	HRSG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8. 가스터빈 설치	G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9. 증기터빈 설치	S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20. 수전	수전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1. 수압시험	수압시험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2. 최초점화	점화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3. 증기터빈발전개시	발전개시 완료	사용전 검사 필증(전안공)
24. 상업운전	상업운전	상업운전개시 확인서(KPX)

※ 사업별 상황에 따라 일부 공정이 변경될 수 있음

(예시: 주기기계약-환경본안 → 환경본안- 주기기계약)

※ 기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전안공 : 전기안전공사 / KPX : 전력거래소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발전5사 협업지표), 가중치 : 2점)

정 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석탄발전분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의 전환 지원 노력(발전5사 공동수행)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발전5개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인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0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2점) $\text{산식} = \frac{\text{평가년도 전환 인원}^*}{\text{발전5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 인원}^{**}}$ * (전환인원) 재배치 및 재취업 인원으로 산정하며 재배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동일·유사 업무 수행 조직으로의 재배치 2) 이동 후 고용 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 유지 ** (대상인원) 발전5사 호기별 폐지계획에 따른 평가년도 전환대상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전환 대상 인원 산출 시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전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모수에서 제외 - 정년퇴직·장기 휴직자 : 전환 연도에 정년퇴직 예정인 자, 장기 휴직(육아 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전환 연도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 - 자발적 전환 미희망자 : 전환·재취업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 • 평가년도 득점은 발전5사 동일부여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점]

사업정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발전5사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최고 실적 ※ 발전5사 실적 :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의 연 산술평균값

목표	최고목표 : 0.000%(무고장)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 발전기별 노후도 Factor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기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기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frac{\text{정지시간}}{\text{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기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발전기별 비중×지표 가중치(3점) - $\Sigma(\text{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text{지표 가중치}(3\text{점})$ - 발전기별 비중 = $\frac{\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Sigma(\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																		
	⑦ 노후도 Factor는 준공일 및 평가년도 말 기준 내구년수를 적용한다.																		
	<table><tr><td>내구년도</td><td>5년미만</td><td>10년미만</td><td>15년미만</td><td>20년미만</td><td>25년미만</td><td>30년미만</td><td>35년미만</td><td>35년이상</td></tr><tr><td>Factor</td><td>3.0</td><td>1.9</td><td>1.9</td><td>1.8</td><td>1.0</td><td>1.7</td><td>3.1</td><td>4.2</td></tr></table>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⑧ 글로벌 지수 = $\frac{\text{기관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text{NERC 실적}}$																			
⑨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⑩ 기본득점은 고장정지율 글로벌 지수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able><tr><td>글로벌 지수</td><td>1% 미만</td><td>1% 이상~2% 미만</td><td>2% 이상</td></tr><tr><td>기본득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r></table>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 NERC실적은 NERC(북미 전력신뢰도 위원회) Generating Availability Data System(Fossil, All Fuel Types, All MW Sizes)의 최근 공표실적을 발전형식 별로 적용(석탄 및 유동층: Fossil Coal / All sizes, LNG - Fossil Gas Primary All sizes, 유류 - Fossil Oil Primary All sizes) •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연료 도입단가 경쟁 노력을 글로벌 지수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평가년도 발전5사 호주 Newcastle항 장기 용선 평균운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득점산식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②) - 최적도입발열량 미준수 감점(③)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실적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 평가년도 기관 평균운임 실적 - FOB 도입단가 = $\frac{\text{총 FOB 비용(US\\$)}}{\text{총 도입물량(Ton)}} \times \frac{6,000 \text{ NAR}}{\text{도입열량 평균(NAR)}}$ - 평균운임 실적 = $\frac{\sum(\text{도입물량(Ton)} \times \text{단가(US\\$)})}{\text{총 도입물량(Ton)}}$ - 감점 적용 전 도입단가 환산 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 감점 : 도입단가 경쟁실적 실득점 $\times \left(\frac{\text{기준 발열량} - \text{기관 도입 발열량}}{\text{기준 발열량}} \right)$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와 총 운임도입비(US\$)를 총도입물량(Ton)으로 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 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 CFR 조건 구매의 경우 운임을 당해년도 기관 해당 수출국 평균 운임으로 함 •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 운임기준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기관의 호주 Newcastle항 장기용선 평균 운임이 발전5사 평균을 초과하는 기관은 평균운임 실적(톤당 단가) 계산 시, 기관의 장기용선 운임실적(물량가중) 평균에서 초과분 차감 (현물용선 운임은 해당 사항 없음) • 기준치 산정시 연중 계약종료 선박의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유가를 적용하여 운임 산출 • 산출기준 및 달성실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5사가 운영중인 석탄 및 LNG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으로 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함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량·이월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익년도 2월에 기후부에서 확정

※ 산출시 고려사항

- 기준치(목표치)는 기후부에서 연도별, 설비별로 산정·부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가할당량·이월량 등을 반영한 총량)으로 설정
- 배출량과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시설의 가할당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가할당 시설의 배출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판매량은 기관 할당량 산정시 미반영
- 전국 4개 대기권역에 미포함되는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26년 상반기 내 협의 후 '26년도 수정편람 반영)

(4)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등에 산업재해자 비율 감소 노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효과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국민 재해 산정기준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단,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④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혁신성장사업 [6점]

사업정의	초혁신 경제구현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기반 신사업 및 해외에너지 사업 확대를 국가 신성장 사업 창출에 기여

(1) 기술개발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 (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 활성화 = (특허 성과 $\times 50\%$) + (기술사업화 성과 $\times 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기술사업화 건수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 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경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2) 해외사업개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노력을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액 향상 수준과 해외사업 개발 확대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Σ 해외사업 누적 지분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 해외사업 매출액은 LNG사업, 수력·신재생 사업, 운영·정비(O&M)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등 해외사업 관련 모든 매출액 포함(석탄발전 매출액 제외)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 등)으로 인식되는 사업은 제외 • 지분투자·운영 해외사업은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서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 • 해당국가별 외화 매년 연말기준 환율 적용,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서부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3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에너지전환 사업			11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3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2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
	(1) 고장정지 저감실적		3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2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1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5	
	(5)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혁신성장사업			6
	(1) 기술개발 활성화		2	
	(2) 해외사업개발 성과		1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㉔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text{ 대 매출액} = \frac{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text{영업이익} + \text{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3) 효율성 관리 [5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㉕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점]

사업정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주력사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 및 기후 위기 해소에 기여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용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발전량 = Σ(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전원별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ESS 발전량은 당해연도에 전력계통으로의 방전량을 계산함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에너지전환 사업 [11점]

사업정의	저탄소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행 및 국민 모두의 행복실현에 기여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연도별 기관의 LNG 대체 건설공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주무부처와 기관간 합의한 LNG대체 건설 연도별 목표공정

목표

최고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달성

최저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미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 LNG대체 건설 공정 달성도

산식 = 20+80×

Σ(연간 LNG대체건설 사업별 공정 달성률*)

연간 LNG 대체건설 사업건수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의된 발전사별 연간 목표 공정 이행률

- 당해년도 목표공정 미달시 지표 득점률에서 20%p 차감

• 득점률 산정방식은 기관별 연간 LNG대체 사업별 목표공정 실적의 산술평균

※ 산출시 고려사항

• 천재지변, 코로나 19 등 기관이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건설공정진행이 곤란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연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공정단계, 각 단계별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건설공정단계	인정기준	증빙자료(대외공문 등)
1. 전력수급계획	전기본 반영	전력수급계획 공고문 (기후부)
2. 사업허가	사업허가 취득	사업허가증 (기후부)
3. 기제부예타	KDI예타 완료	예타결과 통보문(KDI)
4. 건설기본계획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품의서
5. 환경 초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초안 제출 공문 (기후부)
6. 설계용역	설계기술용역 계약	용역 계약서
7. 주기기발주	주기기 발주	입찰공고문
8. 주기기계약	주기기 계약	구매 계약서
9. 환경 본안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본안 제출 공문 (기후부)
10. 환경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협의완료 통보문(기후부)
11.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2. 공사계획인가	공사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3. 착공	착공	착공 신고서(지자체)
14. 본관 기초공사	본관 기초공사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5. 본관 철골설치	본관 철골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6.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7. HRSG 설치	HRSG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8. 가스터빈 설치	G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9. 증기터빈 설치	S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20. 수전	수전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1. 수압시험	수압시험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2. 최초점화	점화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3. 증기터빈발전개시	발전개시 완료	사용전 검사 필증(전안공)
24. 상업운전	상업운전	상업운전개시 확인서(KPX)

※ 사업별 상황에 따라 일부 공정이 변경될 수 있음

(예시: 주기기계약-환경본안 → 환경본안- 주기기계약)

※ 기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전안공 : 전기안전공사 / KPX : 전력거래소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발전5사 협업지표), 가중치 : 2점)

정 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석탄발전분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의 전환 지원 노력(발전5사 공동수행)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발전5개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인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0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2점) $\text{산식} = \frac{\text{평가년도 전환 인원}^*}{\text{발전5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 인원}^{**}}$ * (전환인원) 재배치 및 재취업 인원으로 산정하며 재배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동일·유사 업무 수행 조직으로의 재배치 2) 이동 후 고용 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 유지 ** (대상인원) 발전5사 호기별 폐지계획에 따른 평가년도 전환대상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전환 대상 인원 산출 시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전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모수에서 제외 - 정년퇴직·장기 휴직자 : 전환 연도에 정년퇴직 예정인 자, 장기 휴직(육아 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전환 연도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 - 자발적 전환 미희망자 : 전환·재취업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 • 평가년도 득점은 발전5사 동일부여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점]

사업정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를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발전5사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최고 실적 ※ 발전5사 실적 :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의 연 산술평균값

목 표	최고목표 : 0.000%(무고장)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 발전기별 노후도 Factor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기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기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 석탄, 유동층,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frac{\text{정지시간}}{\text{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기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발전기별 비중×지표 가중치(3점) - Σ(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3점) - 발전기별 비중 = $\frac{\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Sigma(\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																		
	⑦ 노후도 Factor는 준공일 및 평가년도 말 기준 내구년수를 적용한다. <table><tr><td>내 구 년 도</td><td>5년미만</td><td>10년미만</td><td>15년미만</td><td>20년미만</td><td>25년미만</td><td>30년미만</td><td>35년미만</td><td>35년이상</td></tr><tr><td>Factor</td><td>3.0</td><td>1.9</td><td>1.9</td><td>1.8</td><td>1.0</td><td>1.7</td><td>3.1</td><td>4.2</td></tr></table>	내 구 년 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내 구 년 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⑧ 글로벌 지수 = $\frac{\text{기관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text{NERC 실적}}$																		
⑨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⑩ 기본득점은 고장정지율 글로벌 지수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able><tr><td>글로벌 지수</td><td>1% 미만</td><td>1% 이상~2% 미만</td><td>2% 이상</td></tr><tr><td>기본득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r></table>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 NERC실적은 NERC(북미 전력신뢰도 위원회) Generating Availability Data System(Fossil, All Fuel Types, All MW Sizes)의 최근 공표실적을 발전형식별로 적용(석탄 및 유동층 : Fossil Coal / All sizes, LNG - Fossil Gas Primary All sizes, 유류 - Fossil Oil Primary All sizes) •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연료 도입단가 경쟁 노력을 글로벌 지수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평가년도 발전5사 호주 Newcastle항 장기용선 평균운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득점산식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②) - 최적도입발열량 미준수 감점(③)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실적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 평가년도 기관 평균운임 실적 • FOB 도입단가 $= \frac{\text{총 FOB 비용(US\\$)}}{\text{총 도입물량(Ton)}} \times \frac{6,000 \text{ NAR}}{\text{도입열량 평균(NAR)}}$ • 평균운임 실적 $= \frac{\sum(\text{도입물량(Ton)} \times \text{단가(US\\$)})}{\text{총 도입물량(Ton)}}$ • 감점 적용 전 도입단가 환산 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 감점 : 도입단가 경쟁실적 실득점 $\times \left(\frac{\text{기준 발열량} - \text{기관 도입 발열량}}{\text{기준 발열량}} \right)$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와 총 운임도입비(US\$)를 총도입물량(Ton)으로 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 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 CFR 조건 구매의 경우 운임을 당해년도 기관 해당 수출국 평균 운임으로 함 •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当年 9월까지로 계산함 • 운임기준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기관의 호주 Newcastle항 장기용선 평균운임이 발전5사 평균을 초과하는 기관은 평균운임 실적(톤당 단가) 계산 시, 기관의 장기용선 운임실적(물량가중) 평균에서 초과분 차감 (현물용선 운임은 해당 사항 없음) • 기준치 산정시 연중 계약종료 선택의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유가를 적용하여 운임 산출 • 산출기준 및 달성실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5사가 운영중인 석탄 및 LNG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으로 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함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																														
	<table><tr><td>구분(단위 : kg)</td><td>2026</td><td>2027</td><td>2028</td><td>2029</td></tr><tr><td>남동발전</td><td>9,721,278</td><td>6,554,582</td><td>5,606,763</td><td>4,915,054</td></tr><tr><td>남부발전</td><td>7,045,709</td><td>6,335,214</td><td>4,413,748</td><td>3,351,383</td></tr><tr><td>동서발전</td><td>8,631,345</td><td>7,851,323</td><td>7,257,661</td><td>6,456,932</td></tr><tr><td>서부발전</td><td>7,253,907</td><td>6,633,798</td><td>6,013,694</td><td>4,646,910</td></tr><tr><td>중부발전</td><td>9,047,871</td><td>7,180,274</td><td>6,480,245</td><td>5,780,206</td></tr></table>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량·이월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익년도 2월에 기후부에서 확정																															
※ 산출시 고려사항																															
• 기준치(목표치)는 기후부에서 연도별, 설비별로 산정·부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가할당량·이월량 등을 반영한 총량)으로 설정																															
• 배출량과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시설의 가할당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가할당 시설의 배출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판매량은 기관 할당량 산정시 미반영																															
• 전국 4개 대기권역에 미포함되는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26년 상반기 내 협의 후 '26년도 수정편람 반영)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등에 산업재해자 비율 감소 노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효과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국민 재해 산정기준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단,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text{④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times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times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4 혁신성장사업 [6점]

사업정의	초혁신 경제구현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기반 신사업 및 해외에너지 사업 확대에 국가 신성장 사업 창출에 기여

(1) 기술개발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 (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 활성화 = (특허 성과 $\times 50\%$) + (기술사업화 성과 $\times 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경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2) 해외사업개발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노력을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액 향상 수준과 해외사업 개발 확대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Σ 해외사업 누적 지분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 해외사업 매출액은 LNG사업, 수력·신재생 사업, 운영·정비(O&M)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등 해외사업 관련 모든 매출액 포함(석탄발전 매출액 제외)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 등)으로 인식되는 사업은 제외 • 지분투자·운영 해외사업은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서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 • 해당국가별 외화 매년 연말기준 환율 적용,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력원자력(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안전한 에너지			21
	(1)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3	
	(2) 원전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1	
	(3) 방사선 안전관리 글로벌 경쟁력		1	
	(4) 원전안전 기후적응 강화노력		2	
	(5) 산업재해 예방 성과		5	
	(6) 안전한 에너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깨끗한 에너지			12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3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	
	(3) 해체사업·탄력운전 이행 및 SMR 등 연구 개발 성과		1	
	(4) 수력·양수발전 중대고장정지 저감 실적		1	
	(5) 깨끗한 에너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효율적인 에너지			12
	(1) 원전운영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		3	
	(2) 해외사업 개발 성과		2	
	(3) 효율적인 에너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복구추정자산은 총자산 산출 시 제외
㉞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영업이익 산정시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원전사후처리비용 조정액 발생분에서 당해연도 및 과거 5개년 실적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제외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 • 정부의 원전정책 변경에 따라 운영허가 만료로 원자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재가동 시점까지 이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㉟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채 산정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원전사후처리충당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함
㊱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영업이익 산정시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 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원전사후 처리비용 조정액 발생분에서 당해연도 및 과거 5개년 실적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제외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 • 정부의 원전정책 변경에 따라 운영허가 만료로 원자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재가동 시점까지 이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정시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원전사후처리비용 조정액 발생 분에서 당해연도 및 과거 5개년 실적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제외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 • 정부의 원전정책 변경에 따라 운영허가 만료로 원자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재가동 시점까지 이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복구추정자산은 총자산 산출시 제외 • 부가가치 산정시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원전사후처리비용 조정액 발생 분에서 당해년도 및 과거 5개년 실적에 해당하는 조정액을 제외한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함 (2011년 평가시부터 적용) • 정부의 원전정책 변경에 따라 운영허가 만료로 원자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재가동 시점까지 이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안전한 에너지 [21점]

사업정의	원전 설비·종사자 안전관리 및 공급망 유지를 통한 안전한 전력생산과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예방적 안전업무 수행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고목표는 100을 초과할 수 없음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성능지수 = 안전운영(50%) + 안전계통 신뢰도(10%) + 안전방벽(30%) + 소외방사선안전(10%) ② 성능지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성능지표 운영기준에 명시된 분야별(안전운영, 안전계통 신뢰도, 안전방벽, 소외방사선안전)로 계산함 ③ 분야별 성능지수 = $\frac{\text{가동중 원전의 분야별 종합안전성능률의 합}}{\text{분야별 세부 지표 수}}$ ※ 분야별 종합안전성능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성능지표 운영기준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름 (산정불가로 발표한 지표는 계산시 제외) * 분야별 성능지수 산출 시, 세부항목 중 안전주입계통, 비상발전기계통, 보조급수계통, 소내방사선안전은 제외하여 산출 ④ 가동원전수에 대한 정의 : 당해연도 가동중 원전호기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2) 원전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1점)

정 의	예방적 안전업무 수행에 따른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성과를 글로벌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Min(세계 원전 사업자 안전성과지표 평가연도 포함 5개년 실적) 최저목표 : Max(세계 원전 사업자 안전성과지표 평가연도 포함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고압안전주입계통 이용불능도(0.4점) + ②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0.3점) + ③비상교류전원계통 이용불능도(0.3점) ① 고압안전주입계통 이용불능도 = $\frac{\text{고압안전주입계통의 이용불능시간 합계}}{\text{이용요구시간} \times \text{계열수}}$ ②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 = $\frac{\text{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시간 합계}}{\text{이용요구시간} \times \text{계열수}}$ ③ 비상교류전원계통 이용불능도 = $\frac{\text{비상디젤발전기계통의 이용불능시간 합계}}{\text{이용요구시간} \times \text{계열수}}$ - 이용불능시간 = 계획 이용불능시간 + 비계획 이용불능시간 + 추정 이용불능시간 ※ 산출시 고려사항 • 자연재해(낙뢰포함), 송전계통, 해양생물유입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파급정지 및 출력감발은 평가에서 제외 • 세계 원전 사업자 실적 및 기관 실적은 WANO에서 제공하는 실적을 사용한다. • 세계 원전 사업자 중 한수원 가동 원전의 절반(12기)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실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방사선 안전관리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수행을 통한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을 글로벌 실적과 비교하여 평가한다.(하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Min(세계 원전사업자 호기당 피폭선량 평가연도 포함 5개년 실적) 최저목표 : Max(세계 원전사업자 호기당 피폭선량 평가연도 포함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방사선피폭선량 = $\frac{\text{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text{운전호기 수}}$ ② 피폭방사선량(단위 : man·Sv) : 상업운전 중인 원전의 전체 피폭방사선량의 합 ③ 운전호기 수 : 당해연도 말 상업운전중인 원전호기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세계 원전 사업자 실적은 WANO에서 제공하는 실적을 사용한다. • 세계 원전 사업자 중 한수원 가동 원전의 절반 미만(12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실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피폭방사선량은 관리구역에서 작업하는 모든 방사선작업 종사자(기관 임직원, 협력사 및 하도급 등)의 피폭선량을 합산한다. • 기관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보고)에서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판독한 데이터 실적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최종 WANO에 제출·확인 및 등록된 기관 실적을 사용한다.
(4) 원전안전 기후적응 강화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지진, 태풍, 대형 산불, 해수온도 상승 등에 대한 원전 안전성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연도별 이행과제 수행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해당연도까지 누적 이행과제 완료 목표 건수 최저목표 : 최고목표 × 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원전안전 기후적응 강화 노력 산식 $= 20 + 80 \times \frac{\text{해당연도까지 누적 이행과제 완료 실적(건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이행과제 완료 목표 : 아래 ㉠, ㉡, ㉢, ㉣의 연도별 이행과제 완료 목표의 합 ㉠ 정부의 “원전 내진 종합대책 통보” (원전산업관리과-81, 2017. 2. 2.)에 근거하여 정부와 합의된 “9.12 경주지진 후속 지진종합대책 연도별 계획 변경” [내진(내진)-5754, 2019. 8. 8.]의 연도별 조치계획 ㉡ 정부의 “태풍으로 인한 원전사건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 수립 요청” (원자력안전과-1400, 2020. 09. 28.)에 근거하여 정부와 합의된 “태풍영향 원전 고장관련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 제출” [관리(고리)-7156, 2020.10.15.]의 연도별 조치계획 ㉢ 정부의 “울진 산불에 따른 한울원전 물리적방호 특별점검 결과알림” (원자력안보팀-262, 2022. 03. 29.)에 근거하여 정부와 합의된 “울진산불 관련 한울본부 원안위 특별점검결과 후속 조치계획 제출” (정보(보)-3138, 2022. 05. 04.)의 연도별 조치계획 ㉣ 정부(원안위) 안전 보고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제2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5.8.14.)”에 근거하여 정부 보고된 “기후변화 대비 가동원전 안전운영 종합대책”(발전(분)-912, 2025.09.23.)의 연도별 이행 과제 ③ 이행과제 완료 실적 : 연도별로 정부에 보고된 이행과제 완료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행과제가 해당연도에 변경될 경우 그에 근거하여 정부와 재합의된 세부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목표 및 실적 산정

(5) 산업재해 예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등 산업재해 비율 감소 실적 측정을 통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재해율 = ①근로자 재해율 평점 × 1.5점 + ②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2.5점 + ③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1점 평점 = 기본득점 + (100점-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 수(기관 임직원 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상시근로자 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의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의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 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③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 수(기관 임직원 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중상 1인당 3, 일반재해·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측정 산식
및 변수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재해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재해'는실적 산정 시 제외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 방사성물질 방출사고 (사망,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 제외)(건) × 10(사고 등급은 원자력 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에 따름)

④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text{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방사성물질 방출사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건등급평가위원회에서 사고로 결정한 경우는 시설(설비) 사고로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충돌 수목 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6) 안전한 에너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깨끗한 에너지 [12점]

사업정의	국내·외 신재생, 수력·양수, 원전해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전력생산과 R&D를 통한 사업역량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용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 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sum(\text{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재생에너지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정부 정책(부채감축 등)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 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 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발전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정부 정책(부채감축 등)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 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재생에너지 발전량 산출기준은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판매량 기준을 적용함

(3) 해체사업·탄력운전 이행 및 SMR 등 연구개발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 ② 목표부여, ③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공정률, 원전 탄력운전 이행 및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③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보고(합의)된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종합공정률 당해연도 목표치 최저목표 : 최고목표 × 60% * 목표치 :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한 해체계획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종합공정률을 기준으로 정부 보고(합의)된 연도별 목표치(연도별 목표치는 정부의 정책(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최고목표 : 당해연도 전력거래소의 원전 출력감발 급전지시 총 횟수 최저목표 : 최고목표 × 80%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종합공정률 성과(0.4점) + ②탄력운전 이행성과(0.3점) + ③기술개발 활성화(0.3점) ①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종합공정률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text{평점} = 20 + 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종합공정률 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당해연도 종합공정률 실적치 = 당해연도 누적공정률 실적치 - 전년도 누적공정률 실적치 ② 탄력운전 이행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text{평점} = 20 + 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당해연도 실적치 = 전력거래소의 원전 출력감발 급전지시에 따른 시간과 용량으로 출력감발 이행 완료한 횟수 ③ 기술개발 활성화 = (특허 성과 × 50%) + (기술사업화 성과 × 50%) -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 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종합공정률’ 실적치는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 최종 보고된 실적치를 적용 • 정부에 보고된 ‘고리1호기 해체사업 추진 종합공정률’ 연도별 목표 중 평가 당해연도에 완료해야 하는 주요 마일스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도출 결과물 1건당 평점 20점 감점 • 해체사업 추진 중 아래와 같은 통제 불가한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를 고려하여 목표 공정률을 재산정 - 정부 정책 및 규제기관의 기준 변경 등 기관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단, 지연 - 재난상황,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 • 출력감발 급전지시 목표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제5장 전력계통운영 제3절 급전지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한 근거를 기준으로 산정 • 출력감발 이행 실적치는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출력감발 급전지시 이행 여부 확인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경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 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4) 수력·양수발전 중대고장정지 저감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수력·양수발전의 중대고장정지 최소화를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최고 실적 ※ 발전형식별(수력/양수) 실적으로 각 발전형식별 기준치 산정

목 표	최고목표 : 0.000%(무고장) 최저목표 :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 발전형식별 실적)} × 발전기별 노후도 Factor																		
측정 산식 및 변수	(수력발전)계통기여 성과(0.5점) + (양수발전)계통기여 성과(0.5점) ※ 수력, 양수발전 형식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각 득점 산출 ① 실적은 발전기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기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 수력, 양수 발전 ② 산식 = $\frac{\text{중대고장정지시간}}{\text{역일시간}}$ ③ 중대고장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중 120시간 이상 정지한 고장정지 건에 대한 고장시간 총합(전력시장운영규칙 상 중대고장) ④ 역일시간 = 365일(1년) × 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기별 중대고장정지율 ⑥ 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발전기별 비중 × 지표 가중치 - $\Sigma(\text{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text{지표 가중치}$ - 발전기별 비중 = $\frac{\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Sigma(\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 ⑦ 노후도 Factor는 준공일 및 평가년도 말 기준 내구년수를 적용한다. <table><tr><td>내구년도</td><td>5년미만</td><td>10년미만</td><td>15년미만</td><td>20년미만</td><td>25년미만</td><td>30년미만</td><td>35년미만</td><td>35년이상</td></tr><tr><td>Factor</td><td>3.0</td><td>1.9</td><td>1.9</td><td>1.8</td><td>1.0</td><td>1.7</td><td>3.1</td><td>4.2</td></tr></table> ⑧ 평점 = $20 + 80 \times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중대고장정지율 산출 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 설비용량은 평가 당해연도말 운영중인 발전소 설비용량 기준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5) 깨끗한 에너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효율적인 에너지 [12점]

사업정의	효율적인 원전운영·건설을 통한 전력생산과 해외 원전사업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원전운영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의	세계 원전사업자의 비계획손실률과 한수원의 실적 비교를 통해 운영효율성과 안정운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Min(세계 원전 사업자 비계획손실률 평가연도 포함 5개년 실적) 최저목표 : Max(세계 원전 사업자 비계획손실률 평가연도 포함 5개년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비계획 손실률 : 비계획손실량/발전가능량 ② 비계획 손실량 : FEL(unplanned Forced Energy Losses) ③ 발전가능량 : 기준 발전량(REG) - 계획 손실량(PEL) - 계획예방정비 연장에 의한 손실량(OEL) - 기준 발전량 : REG(Reference Energy Generation) - 계획 손실량 : PEL(Planned Energy Losses) - 계획예방정비 연장에 의한 손실량 : OEL(unplanned Outage Extension Energy Losses) ※ 산출시 고려사항 • 원전 설비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예방정비(10개월 전 계획 및 90일 이상 소요)와 상업운전 이후 1주기 계획예방정비, 자연재해(낙뢰 포함), 규제기관 공식 요청에 의한 정지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세계 원전 사업자 실적 및 기관 실적은 WANO에서 제공하는 실적을 사용한다. • 세계 원전 사업자 중 한수원 가동 원전의 절반(12기)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실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사업 개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해외사업 매출과 국내 협력업체 매출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해외사업 개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해외사업 개발 성과} = \sum [(\text{기관의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 \times 0.8 + (\text{국내 협력업체 누적 매출액}) \times 0.2]$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해외사업 매출액을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 해외사업 매출액은 해외 원전사업(UAE사업 제외), 해외 수력/신재생 사업, 운영·정비(O&M)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등 해외사업 관련 모든 매출액을 포함 • 매출액은 직접 매출액과 지분회사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직접사업은 IFRS 별도 재무제표상의 관련 매출액을, 지분투자 사업은 지분회사 매출액 중 지분비율을 환산한 금액을 말함) • 당해연도 해외사업 매출액 인식을 위해 환율 적용 시, 과거년도 매출인식에 적용했던 환율은 소급해서 변경하지 않음(누적매출액에 집계되는 과거년도 원화매출액은 변동되지 않음) • 국내 협력업체 누적 매출액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하며, 기관의 해외 사업 실적에 포함하는 사업에서 국내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 • 하도급 지급액은 SAP 구매자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실적으로 확인함

(3) 효율적인 에너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중부발전(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5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0.5	
	㉡ EBITDA 대 매출액		2	
	㉢ 부채비율		2.5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3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2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에너지전환 사업			11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3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2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
	(1) 고장정지 저감실적		3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2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1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5	
	(5)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혁신성장사업			6
	(1) 기술개발 활성화		2	
	(2) 해외사업개발 성과		1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㉔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3) 효율성 관리 [5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㉕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른 노후발전소 한시적 Shut-down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13점]

사업정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주력사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 및 기후 위기 해소에 기여

(1)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말 설비용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Sigma(\text{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MW]})$ - 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정의된 아래의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년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2)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수준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정부 부여 목표(매년 주무부처에서 제시하는 기관별 목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생에너지 당해연도 발전량 합계 - 사업범위 :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직접사업 및 SPC사업) - SPC 사업으로 개발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설비용량 및 발전량 산정시 지분비율 적용하여 산출 ② 재생에너지 발전량 = Σ(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MWh])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서 규정한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당해연도에 공급한 발전량임. •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 자원으로 정하고 있는 단·장주기 ESS 설비 포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 매각 또는 취소시 그에 대한 과거실적 및 당해연도 실적은 제외함 • 시범사업 기간 중인 시범보급사업 설비(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용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혼소설비, 부생가스 기력발전설비, 국책과제로 추진된 신재생사업설비는 평가에서 제외 • 재생에너지 전원별 목표는 주무부처와 합의된 기관별 목표 • ESS 발전량은 당해연도에 전력계통으로의 방전량을 계산함

(3)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에너지전환 사업 [11점]

사업정의	저탄소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행 및 국민 모두의 행복실현에 기여

(1) LNG 대체건설 공정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연도별 기관의 LNG 대체 건설공정에 따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주무부처와 기관간 합의한 LNG대체 건설 연도별 목표공정

목표

최고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달성

최저목표 : 당해년도 목표공정 전체 미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 LNG대체 건설 공정 달성도

산식 = 20+80×

Σ(연간 LNG대체건설 사업별 공정 달성률*)

연간 LNG 대체건설 사업건수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의된 발전사별 연간 목표 공정 이행률

- 당해연도 목표공정 미달시 지표 득점률에서 20%p 차감

• 득점률 산정방식은 기관별 연간 LNG대체 사업별 목표공정 실적의 산술평균

※ 산출시 고려사항

• 천재지변, 코로나 19 등 기관이 통제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건설공정진행이 곤란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연간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 건설공정단계, 각 단계별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건설공정단계	인정기준	증빙자료(대외공문 등)
1. 전력수급계획	전기본 반영	전력수급계획 공고문(기후부)
2. 사업허가	사업허가 취득	사업허가증(기후부)
3. 기재부예타	KDI예타 완료	예타결과 통보문(KDI)
4. 건설기본계획	건설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의결 품의서
5. 환경 초안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초안 제출 공문(기후부)
6. 설계용역	설계기술용역 계약	용역 계약서
7. 주기기발주	주기기 발주	입찰공고문
8. 주기기계약	주기기 계약	구매 계약서
9. 환경 본안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본안 제출 공문(기후부)
10. 환경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협의완료 통보문(기후부)
11.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2. 공사계획인가	공사계획인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3. 착공	착공	착공 신고서(지자체)
14. 본관 기초공사	본관 기초공사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5. 본관 철골설치	본관 철골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6.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취득	인허가 취득 공문(기후부)
17. HRSG 설치	HRSG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8. 가스터빈 설치	G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19. 증기터빈 설치	ST 설치 착수	KPX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or 증빙자료)
20. 수전	수전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1. 수압시험	수압시험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2. 최초점화	점화 완료	사용전 검사필증(전안공)
23. 증기터빈발전개시	발전개시 완료	사용전 검사 필증(전안공)
24. 상업운전	상업운전	상업운전개시 확인서(KPX)

※ 사업별 상황에 따라 일부 공정이 변경될 수 있음

(예시: 주기기계약-환경본안 → 환경본안- 주기기계약)

※ 기후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전안공 : 전기안전공사 / KPX : 전력거래소

(2)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발전5사 협업지표), 가중치 : 2점)

정 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석탄발전분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의 전환 지원 노력(발전5사 공동수행)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발전5개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인원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00% 최저목표 : 기준치×60%
측정 산식 및 변수	○ 정의로운 전환 이행률(2점) $\text{산식} = \frac{\text{평가년도 전환 인원}^*}{\text{발전5사 평가년도 전환 대상 인원}^{**}}$ * (전환인원) 재배치 및 재취업 인원으로 산정하며 재배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동일·유사 업무 수행 조직으로의 재배치 2) 이동 후 고용 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 유지 ** (대상인원) 발전5사 호기별 폐지계획에 따른 평가년도 전환대상인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전환 대상 인원 산출 시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전환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전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모수에서 제외 - 정년퇴직·장기 휴직자 : 전환 연도에 정년퇴직 예정인 자, 장기 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전환 연도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 - 자발적 전환 미희망자 : 전환·재취업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자 • 평가년도 득점은 발전5사 동일부여

(3) 에너지전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3] 발전설비 운영사업 [15점]

사업정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고장정지 저감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 의	고장정지 감소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 전기품질 향상 등의 고장정지율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발전5사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최고 실적 ※ 발전5사 실적 :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의 연 산술평균값

목표	최고목표 : 0.000%(무고장)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발전형식별 발전5사 실적)}×발전기별 노후도 Factor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은 발전기별로 산출하며, 득점은 발전기별 득점의 합으로 함 ※ 발전형식 : 석탄, 유동충, LNG, 중유(내연기관 포함)																		
	② 산식 = $\frac{\text{정지시간}}{\text{역일시간}}$																		
	③ 정지시간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④ 역일시간 = 365일(1년)×24(시간)																		
	⑤ 실적 = 기관의 발전기별 고장정지율																		
	⑥ 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발전기별 비중×지표 가중치(3점) - Σ(발전기별 가중치 비중) = 지표 가중치(3점) - 발전기별 비중 = $\frac{\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Sigma(\text{발전기별 운전율} \times \text{발전기별 설비용량})}$																		
	⑦ 노후도 Factor는 준공일 및 평가년도 말 기준 내구년수를 적용한다. <table><tr><td>내구년도</td><td>5년미만</td><td>10년미만</td><td>15년미만</td><td>20년미만</td><td>25년미만</td><td>30년미만</td><td>35년미만</td><td>35년이상</td></tr><tr><td>Factor</td><td>3.0</td><td>1.9</td><td>1.9</td><td>1.8</td><td>1.0</td><td>1.7</td><td>3.1</td><td>4.2</td></tr></table>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내구년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35년미만	35년이상										
	Factor	3.0	1.9	1.9	1.8	1.0	1.7	3.1	4.2										
	⑧ 글로벌 지수 = $\frac{\text{기관 발전형식별 고장정지율}}{\text{NERC 실적}}$																		
⑨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⑩ 기본득점은 고장정지율 글로벌 지수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table><tr><td>글로벌 지수</td><td>1% 미만</td><td>1% 이상~2% 미만</td><td>2% 이상</td></tr><tr><td>기본득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r></table>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글로벌 지수	1% 미만	1% 이상~2% 미만	2% 이상																
기본득점	40점	30점	20점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설비, 설비개조, 수명연장 발전기는 준공 후 2년간, 폐지발전기는 폐지 전 2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고장정지율 산출시 고장정지관리 기준은 전력거래소(KPX)의 기준을 적용
- NERC실적은 NERC(북미 전력신뢰도 위원회) Generating Availability Data System(Fossil, All Fuel Types, All MW Sizes)의 최근 공표실적을 발전형식 별로 적용(석탄 및 유동충 : Fossil Coal / All sizes, LNG - Fossil Gas Primary All sizes, 유류 - Fossil Oil Primary All sizes)
- 국가 및 발전사 R&D 시제품,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는 설치일로부터 2년간 평가에서 제외
 - 기술개발 인증제품(18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2) 연료 도입단가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연료 도입단가 경쟁 노력을 글로벌 지수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평가년도 gCI NEWC 평균가격 + 평가년도 발전5사 호주 Newcastle항 장기 용선 평균운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득점산식 =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②) - 최적도입발열량 미준수 감점(③) ② 유연탄 도입단가 경쟁실적 - 실적 = 평가년도 기관 FOB 도입단가 + 평가년도 기관 평균운임 실적 - FOB 도입단가 = $\frac{\text{총 FOB 비용(US\\$)}}{\text{총 도입물량(Ton)}} \times \frac{6,000 \text{ NAR}}{\text{도입열량 평균(NAR)}}$ - 평균운임 실적 = $\frac{\sum(\text{도입물량(Ton)} \times \text{단가(US\\$)})}{\text{총 도입물량(Ton)}}$ - 감점 적용 전 도입단가 환산 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최적 도입발열량 준수 노력 관련 감점 - 기준 발열량 : 선적항 송장 평균 발열량 5,600kcal/kg GAR - 감점 : 도입단가 경쟁실적 실득점 $\times \left(\frac{\text{기준 발열량} - \text{기관 도입 발열량}}{\text{기준 발열량}} \right)$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의 유연탄 도입단가는 기관의 유연탄 연간 총 FOB 도입비(US\$)와 총 운임도입비(US\$)를 총도입물량(Ton)으로 나누어서 산정함 (익년도 2.15 일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관자료이용, 개별소비세 제외) • CFR 조건 구매의 경우 운임을 당해년도 기관 해당 수출국 평균 운임으로 함 • gCI는 www.globalcoal.com에서 발표되는 국제석탄시장 대표 가격 (globalCOAL NEWC)을 활용하되 연 평균 gCI는 전년 10월부터 당년 9월까지로 계산함 • 운임기준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기관의 호주 Newcastle항 장기용선 평균 운임이 발전5사 평균을 초과하는 기관은 평균운임 실적(톤당 단가) 계산 시, 기관의 장기용선 운임실적(물량가중) 평균에서 초과분 차감 (현물용선 운임은 해당 사항 없음) • 기준치 산정시 연중 계약종료 선박의 경우, 계약종료월까지 유가를 적용하여 운임 산출 • 산출기준 및 달성실적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

(3)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발전5사가 운영중인 석탄 및 LNG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기후에너지환경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은 당해연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대비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으로 하며,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관별 설비특성,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차별 목표로 함																														
	<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																														
	<table><tr><td>구분(단위 : kg)</td><td>2026</td><td>2027</td><td>2028</td><td>2029</td></tr><tr><td>남동발전</td><td>9,721,278</td><td>6,554,582</td><td>5,606,763</td><td>4,915,054</td></tr><tr><td>남부발전</td><td>7,045,709</td><td>6,335,214</td><td>4,413,748</td><td>3,351,383</td></tr><tr><td>동서발전</td><td>8,631,345</td><td>7,851,323</td><td>7,257,661</td><td>6,456,932</td></tr><tr><td>서부발전</td><td>7,253,907</td><td>6,633,798</td><td>6,013,694</td><td>4,646,910</td></tr><tr><td>중부발전</td><td>9,047,871</td><td>7,180,274</td><td>6,480,245</td><td>5,780,206</td></tr></table>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구분(단위 : kg)	2026	2027	2028	2029																										
	남동발전	9,721,278	6,554,582	5,606,763	4,915,054																										
	남부발전	7,045,709	6,335,214	4,413,748	3,351,383																										
	동서발전	8,631,345	7,851,323	7,257,661	6,456,932																										
	서부발전	7,253,907	6,633,798	6,013,694	4,646,910																										
	중부발전	9,047,871	7,180,274	6,480,245	5,780,206																										
*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량·이월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익년도 2월에 기후부에서 확정																															
※ 산출시 고려사항																															
• 기준치(목표치)는 기후부에서 연도별, 설비별로 산정·부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가할당량·이월량 등을 반영한 총량)으로 설정																															
• 배출량과 배출허용총량(할당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활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가할당시설의 가할당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가할당 시설의 배출량 포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판매량은 기관 할당량 산정시 미반영																															
• 전국 4개 대기권역에 미포함되는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26년 상반기 내 협의 후 '26년도 수정편람 반영)																															

(4) 산업재해예방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발전소 운영 및 건설 등에 산업재해자 비율 감소 노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효과성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국민 재해 산정기준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단,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④ \text{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3) 발전설비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혁신성장사업 [6점]

사업정의	초혁신 경제구현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 기반 신사업 및 해외에너지 사업 확대로 국가 신성장 사업 창출에 기여

(1) 기술개발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 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 (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 활성화 = (특허 성과 $\times 50\%$) + (기술사업화 성과 $\times 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 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경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2) 해외사업개발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노력을 해외사업 부문의 매출액 향상 수준과 해외사업 개발 확대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Σ 해외사업 누적 지분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사업 누적 매출액은 2021년부터 합산하여 산출 • 해외사업 매출액은 LNG사업, 수력·신재생 사업, 운영·정비(O&M)사업 및 기술용역사업 등 해외사업 관련 모든 매출액 포함(석탄발전 매출액 제외)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증권 등)으로 인식되는 사업은 제외 • 지분투자·운영 해외사업은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서 지분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 • 해당국가별 외화 매년 연말기준 환율 적용, 원화로 환산하여 산출

(3) 혁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산업진흥·서비스 유형

1. 주택도시보증공사 492
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506
3. 한국마사회 518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34
5. 한국부동산원 544
6. 한국조폐공사 558
7. 한전KDN(주) 572
8. 해양환경공단 584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영업이익률		2	
	㉢ 부채비율		2	
	㉣ 이자보상비율		1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보증사업			17
	(1) 주거안정 향상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보증지원		5	
	(2) 보증사고 예방성과		4	
	(3) 보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보증관리사업			13
	(1) 보증이행서비스 강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주거보호		4	
	(2) 구상채권 회수율		1	
	(3)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2	
	(4) 보증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기금수탁사업			15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2)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1	
	(3)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		4	
	(4) 기금수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㉔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과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변화로부터 발생된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영업이익,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변화로부터 발생된 발생보증금비용, 발생사고부채조정,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제외한다.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변화로부터 발생된 발생보증금비용, 발생사고부채조정,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영업이익에서 제외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변화로부터 발생된 발생보증금비용, 발생사고부채조정,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부가가치에서 제외한다..
㉕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이 통제 할 수 없는 외부환경변화로부터 발생된 발생보증금비용, 발생사고부채조정,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부가가치에서 제외한다..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보증사업 [17점]

사업정의	기업·개인보증 지원으로 주택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달성하고, 보증 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

(1) 주거안정 향상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보증지원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주택보증시장에서 기관이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여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거안정 향상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보증지원 = 주거안정 지원 강화$\times 0.6$ + 주택공급 지원 강화$\times 0.4$ ② 주거안정 지원 강화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임대 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임대보증금보증(세대_사용검사후), 개인임대사업자임대보증금보증, 임대관리임대료보증, 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 전세임대사업임차료지급보증 (중장기 경영목표상 서민주거안정보증 공급액 관련 보증)의 총 보증금액 ③ 주택공급 지원 강화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감리비 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임대보증금보증(세대_사용검사전), PF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임대리츠PF보증, 도시재생PF보증,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보증,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지원자금특례보증, 리츠회사채보증, 도심주택특약보증, 모기지보증, 후분양대출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대출보증, 도심복합사업대출보증 (중장기 경영목표상 주택공급자보증 공급액 관련 보증)의 총 보증금액 ④ 중장기목표 : 25년 실적을 기준목표,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된 '26~'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제시된 2030년 목표치를 달성목표로 하여 달성기간이 5년인 장기추세선 상의 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 최고목표가 연말 평가 대상 보증상품의 실적과 해당 보증상품의 잔여보증한도를 더한 값보다 클 경우, 연말 실적에 잔여 보증한도를 더한 값을 최고목표로 한다.

(2) 보증사고 예방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보증 건전성 제고 및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고율 및 전세(임대) 보증 부채비율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보증사고율	재정경제부에서 승인한 당해연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보증사고율
	전세(임대)보증 부채비율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보증사고율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전세(임대)보증 부채비율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증사고 예방 성과 = 보증 사고율(3점) + 전세(임대)보증 부채비율(1점) ② 보증 사고율 (3점) - 산식 = $\text{보증사고액} / \text{보증잔액}$ - 보증잔액은 당해연도 기초보증잔액과 보증발급액의 총합으로 산출한다. - 보증사고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보증사고액의 총합으로 산출한다. ※ 보증잔액·보증사고액에 대한 세부 산출 기준(당해 출시한 신상품에 대한 산업 여부 등)은 당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목표 보증사고율이 산출된 기준에 따른다. - 기업보증, 개인보증 등 공사 모든 보증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전세(임대)보증 부채비율 (1점) - 산식 = $\text{평가연도 전세(임대)보증 평균 부채비율}$ - 부채비율 = $(\text{선순위 채권} + \text{보증금}) / \text{주택가격}$ - 전세(임대)보증 평균 부채비율은 평가연도 기말 보증잔액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세대 단위로 산출한다.	

(3) 보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보증관리사업 [13점]

사업정의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이행 서비스로 국민 주거자산을 보호하고,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

(1) 보증이행서비스 강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주거보호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이행서비스 강화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임차인의 주거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하향지표)		
기준치	분양보증 이행도	분양이행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환급이행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전세보증 이행도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분양보증 이행도	분양이행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환급이행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전세보증 이행도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거안정 및 주거보호 기여 = 분양보증 이행도×0.4+전세보증 이행도×0.6 ② 분양보증 이행도 = (분양이행의 신속성×0.5)+(환급이행의 신속성×0.5) - 분양이행의 신속성(= 예정입주소요기간 - 실제입주소요기간) : 예정입주소요기간은 당초 입주예정일에 보증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및 보증사고 시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소요공정기간을 합하여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단, 사용검사예정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로 산정 - 실제입주소요기간은 당초 입주예정일로 부터 실제 사용검사일(임시사용검사일을 포함한다)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 - 환급이행의 신속성(= 환급이행기준일 초과건수/환급이행건수) - 환급이행 기준일 초과건수는 약관에서 정한 1개월에 대해 10% 단축한 기일인 27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을 의미한다. - 환급이행 건수는 약관에 따라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에게 공사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건수를 의미하며, 평가연도에 보증이행을 완료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전세보증 이행도 = 이행심사 지체건수 / 이행심사 완료건수

※ 산출 시 고려사항

<공통사항>

1. 평가대상연도에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 이행도 중 보증이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이행도의 가중치에 동일한 비중으로 합산하여 평가
(예)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보증이행도에 1.6점 합산하여 평가
2. 평가대상 연도에 분양보증 이행도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분양보증이행의 가중치에 합산하여 평가
(예) 환급이행사업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이행도 중 분양이행의 가중치에 합산하여 평가

<분양보증 이행도>

• 분양이행의 신속성

- 입주단축 일수는 전체 공사이행사업장의 입주단축 일수를 합하여 산정 하되, 공사이행사업장의 보증금액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계산. 단, 보증 사고 발생 이전 입주한(사용검사 완료) 사업장, 보증사고 발생 이후 당초 시공자 등이 공사를 계속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 입주예정자의 민원 및 소송으로 인하여 사용검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을 입주단축 일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환급이행의 신속성

- 환급이행 시 보증채권자가 서류 제출 및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와 소송으로 인하여 환급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을 초과건수에서 제외한다.

※ 기준치, 목표 산정시 과거 실적치가 없는 경우, 결측년도를 제외한 실적이 있는 최근년도 실적을 사용한다.

<전세보증 이행도>

- 이행심사 완료건수는 보증채권자(임차인)의 이행청구에 따라 공사가 전세 반환보증 심사 완료한 건을 의미하며, 평가연도에 보증심사를 완료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보증이행청구시 임대인 이의제기, 소송, 업무질의로 지연된 건은 제외한다.
- 이행심사 지체건수는 보증채권자(임차인)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서류를 완비한 날로부터 전세보증금심사에정기간 목표일을 초과한 건을 의미한다.
- 전세보증금심사에정기간 목표일은 약관에서 정한 1개월에 대해 10% 단축한 기한인 27일로 한다.

(2) 구상채권 회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채권회수율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구상채권 회수율 = (기업보증 구상채권 회수율×0.2)+(개인보증 구상채권 회수율×0.8) ② 기업보증 구상채권 회수율 = $\frac{\text{당기 기업보증 구상채권 회수액}}{\text{기업보증 구상채권 기초 잔액}}$ ③ 개인보증 구상채권 회수율 = $\frac{\text{당기 개인보증 구상채권 회수액}}{\text{개인보증 구상채권 기초 잔액}}$ - 당기 기업보증 및 개인보증 구상채권 회수액은 기업보증 및 개인보증 구상채권 기초 잔액 중 '회수', '상각', '매각', '출자전환', '면제'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한다.

(3)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평가방식 : 목표 대 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공사가 보증상품 구상권을 통해 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서민들에게 임대주택공급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든든전세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주무부처(국토교통부)의 공급계획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위변제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안정 실적 = $\frac{\text{든든전세사업 주택공급 물량 확보실적}}{\text{든든전세사업 주택공급 계획}}$ ② 든든전세사업 주택 공급계획은 공사가 대위변제 이후 경매 진행 중인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매년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지정한 주택수로 한다. ③ 주택공급 물량 확보실적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수로 한다.

(4) 보증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기금수탁사업 [15점]

사업정의	주택도시기금 출·용자를 통한 서민 저리대출,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노후 도시환경을 개선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정부가 정하는 공공지원 임대리츠 출자목표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실적 ②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심사 및 승인된 세대수로 한다. ③ 정부가 정하는 공공지원 임대리츠 출자목표는 국토부가 기획예산처 및 국회 승인을 받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상 임대주택 리츠출자 예산액 및 호당 출자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부여한 공급 목표 세대수로 한다. 단, 평가연도 중 정책상 필요에 따라 목표를 확대, 추가 부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공급 목표 세대수로 한다.

(2)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의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주택도시기금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세대수 ② 기준치는 당해연도 국토교통부 성과계획서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실적(호)' 성과지표의 목표치로 설정한다.

(3)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쇠퇴도시에 활력을 주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 기금 건전성 제고, 사후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도시재생지원 사고율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실적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사업별 목표 금액 (당해 회계연도)
목 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실적	최고목표 : 기준치 x 100% 최저목표 : 기준치 x 80%
	도시재생지원 사고관리노력	최고목표 : 사고율 0%, 최저목표 : 과거 5개년 사고율 중 가장 높은 사고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도시재생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실적 × 0.75 + 도시재생지원 사고관리 노력 × 0.25 ②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실적 = ①도시재생지원(융자, 출자) 실적 + ②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실적 + ③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실적 + ④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실적 - 사업별(①, ②, ③, ④)가중치는 당해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평가대상 사업별 실적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당해연도에 출자 및 융자 실행된 금액의 합계로 한다. - 평가대상 사업별 기준치는 당해연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예산으로 설정된 금액으로 한다. - 평가대상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융자, 출자),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분 ※ 산출시 고려사항 기금운용계획(도시계정 예산, 상품)이 회계연도 중에 변경(수정)된 경우에는 변경(수정)된 최종 예산, 상품을 목표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도시재생지원 사고관리노력 - 사고율 = 용자사고액 / 용자잔액 - 용자사고액에는 용자 및 출자를 포함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 사고 금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 용자잔액은 당해연도 기말기준 용자 및 출자잔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용자, 출자 등 공사의 모든 도시재생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4) 기금수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영업이익률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가스플랜트 정비사업			28
	(1) 가스플랜트 책임정비 노력과 성과		8	
	(2) 미신고 굴착공사 감소		4	
	(3) 재해율		3	
	(4) 가스플랜트 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2. 가스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9
	(1)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매출		5	
	(2) 가스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3. 신성장사업			8
	(1) 신성장 기술 개발활용 성과		4	
	(2) 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일반관리비 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비율을 통해 일반관리비 절감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매출액 대비 일반관리비 = $\frac{\text{일반관리비}}{\text{매출액}}$ ② 매출액, 일반관리비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및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가스플랜트 정비사업 [28점]

사업정의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설비, 전국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안전관리로 천연가스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가스플랜트 책임정비 노력과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의	가스설비 고장 감소 노력(하향지표)과 정비기한 초과 최소화 노력(하향지표)을 통한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의 책임정비와 성과를 평가한다.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스플랜트 책임정비 노력과 성과 = (가스설비 중대고장 감소×0.3) + (정비기한 초과율×0.7) ② 가스설비 중대고장 감소 = $\frac{\text{중대고장 정비건수}}{\text{핵심설비수량}}$ ③ 정비기한 초과율 = $\frac{\text{정비기한 초과 건수}}{\text{정비 의뢰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중대고장 :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대 핵심설비에 해당되는 장애 발생시 한국가스공사에서 발행하는 정비의뢰(M2) 건 ※ 단, 단순고장(M1)과 기관 귀책으로 볼수 없는 통제불가능 고장 건 제외 - 통제불가능 고장 건 : 고장원인 코드 A01(폭우/폭설), A08(조작, 운전실수), A27(낙뢰)에 해당하는 건에 한함 • 정비대상 설비수량 : 생산 및 공급 10대 핵심설비 정비수량 - 핵심생산설비 : 하역설비, 저장설비, LNG 펌프, 기화설비, 증발가스압축설비 - 핵심공급설비 : 가스필터, 가스히터, 정압기, 계량설비, 안전밸브 • 중대고장 정비건수는 한국가스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SAP)을 통하여 발행된 건으로 기관의 ERP 시스템을 통하여 증빙함 • 정비기한 초과 건수는 한국가스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SAP) 정비 의뢰 건수 (고장정비·예방정비·계획정비 모두 포함) 기준 기관 귀책 건수에 한함

(2) 미신고 굴착공사 감소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기관의 천연가스배관 안전확보 실적(하향지표)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신고 굴착공사 감소 = 미신고 굴착공사 발생건수 ② 미신고 굴착공사 발생건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제30조의5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시행하는 굴착공사 중 가스배관의 영향범위(배관과의 이격거리 10m 이내) 내에서 진행되는 미신고 굴착공사 발견·조치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미신고 굴착공사 발생건수는 한국가스공사 보고자료와 ERP시스템을 통하여 증빙함
(3) 재해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재난·안전확보를 위한 성과를 재해율로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근로자재해율 × 0.4) + (발주공사 재해율 × 0.3) + (국민·시설 재해율 × 0.3) ②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 근로자 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③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④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사고}}{\text{상시 근로자 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1)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중상 1인당 3, 일반재해,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 망: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1항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 산정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국민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 망: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 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 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 타: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 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 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 타: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시설(설비)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사고

-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 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 경상 및 기타가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3) 평점 = 기본득점 + (100점-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4)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여,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3) 가스플랜트 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3점)

② 가스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9점]

사업정의	천연가스, 수소 등 가스플랜트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관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역량을 활용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매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의 성과를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내관련사업 매출 × 0.7) +(해외관련사업 매출 × 0.3) ② 국내관련사업 매출 :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국내 프로젝트 매출 (경상사업 매출 제외) ③ 해외관련사업 매출 :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해외 프로젝트 매출 ※ 산출시 고려사항 • 최종 득점은 ‘국내관련사업 매출’ 득점과 ‘해외관련사업 매출’ 득점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정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1항에 명기된 역무에 대한 사업(연구활동에 따른 매출 제외) • 경상사업 매출 :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천연가스설비 경상정비공사 및 관로검사용역」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재표(손익계산서), 부가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로 증빙

(2) 가스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③ 신성장사업 [8점]

사업정의	기관의 미래성장 주도 사업분야인 수소의 생산·공급 플랜트 건설에 따른 가스플랜트 관련 신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신성장 기술 개발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기관의 기술개발 및 기술활용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신성장 기술 개발활용 성과 = (특허 성과×50%) + (기술사업화 성과×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정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 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기술사업화 건수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 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 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재표(손익계산서), 부가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 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2) 신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EBITDA대 매출액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경마시행 사업			16
	(1) 경주의 국제경쟁력 강화		3	
	(2) 경주시행의 안정성 향상 성과		2	
	(3) 경마사업 글로벌 운영효율성 강화		2	
	(4) 정부 맡겨량 목표 달성		2	
	(5) 경주시행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건전레저 및 발매사업			17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성적 향상		2	
	(2) 불법경마 단속 지원 성과		1	
	(3) 레저사업 확대 성과		2	
	(4) 재해율 감소 노력		3	
	(5) 건전레저 및 발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3. 말산업 육성사업			12
	(1) 승마사업 활성화 성과		4	
	(2) 말 복지 향상 성과		3	
	(3) 말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규제와 정부·지자체 등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장외발매소 폐쇄 등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부가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함
㉔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 시 고려사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규제와 정부·지자체 등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장외발매소 폐쇄 등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부가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함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 시 고려사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규제와 정부·지자체 등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장외발매소 폐쇄 등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부가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함
㉕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 시 고려사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규제와 정부·지자체 등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장외발매소 폐쇄 등에 따른 매출액과 영업이익(부가가치)의 변동분을 반영함

□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경마시행 사업 [16점]

사업정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경마(競馬) 시행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준 높은 경마상품을 제공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경주의 국제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경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G급 대상경주 레이스 레이팅의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평가방법	$20\text{점}+80\text{점}\times\left[\frac{\text{실적}-\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right]\times 0.5+\left[\frac{\text{실적(최근3년평균)}-\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최근3년평균)}-\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right]\times 0.5$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주의 국제경쟁력 강화 성과 = 당해연도 시행된 전체 G급 대상경주에 대한 레이스 레이팅의 평균 ② 중장기 목표 : 2019년 한국마사회 실적을 기준목표, 2016~2018년 일본 중앙경마(JRA) 더트주로 G급 대상경주 레이스 레이팅의 3년 평균기록을 달성목표로 하고 달성기간이 15년인 장기추세선 상의 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 G급 대상경주 : GI, GII, GIII, L급으로 구분되는 국내 대상경주 중 G급에 해당되는 GI, GII, GIII 경주로 한다. • 레이스 레이팅 : 경주결과 1~4위를 차지한 경주마의 연중 최고 레이팅 평균

(2) 경주시행의 안정성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이 경마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 경마 경주 또는 경주 시행을 위한 훈련 중 기수 사망사고 및 경주 안정성을 저해한 경주마(실격, 출발제외, 주행중지) 감소를 통한 경주시행 안정성 달성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경주·훈련 중 기수 사망사고 0건 경주시행 안정성 저해 경주마(실격·출발제외·주행중지) 0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주시행의 안정성 향상 성과=100-Σ (경주·훈련 중 기수 사망사고 감점+ 경주시행 안정성 저해 경주마 발생 감점)

② 경주·훈련 중 기수 사망사고 및 경주시행 안정성 저해 경주마 발생 감점

경주·훈련 중 기수사망사고 (건별)	경주시행 안정성 저해 경주마 두수 (두수별)		
	실격		출발제외·주행중지
	중대규정위반	주행방해	
40점	10점	1점	0.1점

③ 경주·훈련 중 기수 사망사고: 낙마, 마체이상, 악벽 등의 사유로 기수가 사망한 사고

④ 실격, 출발제외 및 주행중지 두수: 경마시행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된 경마 중 실격, 출발제외 및 주행중지 두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실격 두수

- (중대규정위반) 결승선 도착 이후 금지약물 검출되거나, 후검량이 전검량의 1kg를 초과하는 등 경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규정위반을 하여 심판위원으로부터 실격판정을 받은 마필 수

- (주행방해) 진로방해, 압제, 충돌, 고성 등으로 다른 말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채찍 사용 등으로 심판위원으로부터 실격판정을 받은 마필 수

• 출발제외 및 주행중지 두수

- (출발제외) 경주에 편성되어 기수가 기승하여 출발지점까지 진출했으나 출발대에 진입하지 못하여 출발 전에 경주에서 제외된 마필의 수

- (주행중지) 경주 출발 이후 기수가 낙마하거나, 마필과 함께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결승선에 도착할 수 없는 마필의 수

(3) 경마사업 글로벌 운영효율성 강화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2점)

정 의

경마사업의 글로벌 운영효율성 강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글로벌 Top 5 국가중 최고 실적
최저목표 : 글로벌 Top 5 국가의 평균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마사업 글로벌 운영효율성 = 경주시행규모 대비 효율성 × 0.5 + 경주자원규모 대비 효율성 × 0.5

- 산식 = $20 + 80 \times \frac{\text{기관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경주시행규모 대비 효율성 = 경마 발매금액 / 경주시행 규모 - 측정산식 : 경마 발매금액 / 시행 경주 수 ③ 경주자원규모 대비 효율성 = 경마 발매금액 / 경주자원 규모 - 측정산식 : 경마 발매금액 / 경주마 출전두수 ④ '경마 발매금액'은 기관의 매출정보시스템상 더러브렛 경주 발매금액으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경마시행 Part I 국가 중 선진국 Top5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 국가별 실적 :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더러브렛 기준을 적용한 최신 IFHA(국제경마연맹)의 Blue Book, Annual Report 및 각 시행체 공시 데이터를 활용 • 외화표시금액은 2021~2025년도 매매기준율 평균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

(4) 정부 말개량 목표 달성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경주마의 능력제고 및 생산·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평가 방법	$20\text{점}+80\text{점}\times\left[\left(\frac{\text{실적}-\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right)\times 0.5+\left(\frac{\text{실적(최근3년평균)}-\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최근3년평균)}-\text{최저목표(최근3년평균)}}\right)\times 0.5\right]$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1,000m경주기록 × 0.2 + 1,200m경주기록 × 0.2 + 1,400m경주기록 × 0.2 + 1,800m경주기록 × 0.2 + 2,000m경주기록 × 0.2 ② 경주기록은 더러브렛 경주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출전마들의 기록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③ 중장기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3호(2023.1.26.)에 고시되어 있는 「5. 말」 항목의 경주거리별 2030년 개량목표를 달성목표로 하고 달성기간이 5년인 장기추세선상의 목표

(5) 경주시행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건전레저 및 발매산업 [17점]

사업정의	국민 누구나 즐기는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문화를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성적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사행기관 건전화 관리 현황 및 추진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고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상위 기관 득점 최저목표 :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하위 기관 득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감위건전화평가 성적 향상 = $20+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마사회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2) 불법경마 단속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경마 건전화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경마 온·오프라인 단속 지원 실적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불법경마단속 지원 성과는 오프라인은 수사의뢰·고발건수 40%, 온라인은 사이트 폐쇄의뢰실적 40%, 폐쇄실적 20%로 각각 실적에 해당 비중을 적용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수사의뢰·고발건수 실적은 기관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한 건수로 산출한다. • 사이트 폐쇄의뢰 및 폐쇄실적은 당해연도에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구글, 네이버, 인스타그램,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에 폐쇄의뢰한 건수와 폐쇄된 건수로 한다. • 온라인사이트 단속실적 산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효과를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결측 처리할 수 있다.

(3) 레저사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국민의 편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레저시설 유·무료 입장인원 향상 및 실명구매율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레저사업 확대 성과 = 레저시설 활성화 성과 × 0.5 + 실명구매율 향상 성과 × 0.5 ② 레저시설 활성화 성과 = 경마공원·목장(경주마 은퇴 목장 포함) 연간 (유·무료)입장인원 및 경마 미개최일 장외발매소(문화센터) 등 방문인원 합계 ③ 실명구매율 확대 성과 = $\frac{\text{연간 실명 발매금액}}{\text{연간 총 발매금액}}$ - 실명 발매금액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실명구매”의 개념에 따라 기존 전자카드 및 온라인발매의 발매금액을 합한 것으로, 기관의 매출정보시스템 상 실명 마권 발매금액 - 총 발매금액 = 기관의 매출정보시스템 상 총 마권 발매금액

(4) 재해율 감소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이 보유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 대해 안전을 확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근로자 재해율×0.4+발주공사 재해율×0.2+국민·시설 재해율×0.4 ②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인명사고(근로자)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대재해 1인당 3, 일반재해 1인당 1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④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⑤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⑥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가중치 : 사망 1인당 10, 중상 1인당 3, 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⑦ 시설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사고 ○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가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측정 산식
및 변수

- ⑧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이용객수는 기관의 매출정보 시스템 상의 유·무료 입장인원과 비경마고객 입장인원(경마공원, 장외발매소, 목장) 및 문화센터 수강생의 합으로 산출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 발주공사 근로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연도말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적용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5) 건전레저 및 발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③ 말산업 육성사업 [12점]

사업정의	말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 확산으로 말산업 수요 창출 및 말 복지 선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승마사업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승마수요 창출 확대 및 산업규모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승마사업 활성화 성과 = 정기승마인구 득점률 × 0.5 + 승마산업규모 득점률 × 0.5 ② 정기승마인구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수치 ③ 승마산업규모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말산업 산출 총액에서 경마·마주 부문을 제외한 생산·승마·말관련업 합계 수치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말산업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불가 시 최근년도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산정함

(2) 말 복지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경주마 치명적 부상을 감축(하향지표) 및 은퇴 경주마의 승용 전환(상향지표)을 통한 말 복지 수준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① 경주마 치명적 부상을 감축(목표부여(편차))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성과(중장기 목표부여) :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① 경주마 치명적 부상을 감축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성과 :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경주마 치명적 부상률 감축 실적의 득점률(1점) +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실적의 득점률(2점) ② 경주 중 말 치명적 부상률 감축 실적 = $\frac{\text{치명적 부상 두수} \times 3 + \text{폐출혈 발생 두수}}{\text{연간 경주 출전 두수}}$ - 치명적 부상 : 더러브렛 경주 중 사고로 인해 72시간 이내 폐사되는 수준의 부상을 의미함 ③ 은퇴 경주마 승용 전환 실적 = $\frac{\text{승용 전환 두수}}{\text{연간 은퇴 경주마 두수}}$ ④ 중장기 목표 : '22년 한국마사회 실적을 기준목표,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된 중장기 경영목표에 제시된 목표치(62%)를 달성목표로 하여 달성기간이 7년인 장기추세선 상의 목표

(3) 말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영업이익률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방송광고 판매사업			22
	(1) 방송광고 영업경쟁력 강화		6	
	(2) 중소기업 광고마케팅 활동 지원		6	
	(3) 방송광고 판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15
	(1) 방송통신광고 조사사업 경쟁력 강화		4	
	(2) 광고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4	
	(3)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공익광고 사업			8
	(1) 공익광고 AIE 활용 실적		2	
	(2) 공익광고 제작 및 캠페인 운용 성과		2	
	(3) 공익광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산정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text{매출액} = \text{총매출액} - \text{광고회사 대행수수료}$
㉔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산정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text{매출액} = \text{총매출액} - \text{광고회사 대행수수료}$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㉖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및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방송광고 판매사업 [22점]

사업정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통해 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방송의 공공성·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며 중소기업의 광고·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 방송광고 영업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A, B), 가중치 : 6점)	
정의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의 시청률 대비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과 비지상파 사업 매출액 등 방송광고판매 경쟁력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A, B)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A, B)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방송광고 영업경쟁력 강화는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의 시청률 대비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A)의 평점과 비지상파 사업 매출액(B)의 평점을 87:13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A = \frac{\text{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text{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 시청률}}$ - 공사 판매대행 지상파 매체 시청률 - 시청률 조사가 가능한 공사가 판매 대행하고 있는 지상파 전 매체(KBS 1-TV 제외) 시청률의 합 * 시청률 산출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개인(2049) 시청률(06시-25시) 기준 -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 - 공사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실적은 공사가 영업 대행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매체의 판매실적의 합으로 공사 판매마감 전산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③ $B = \text{비지상파 매체 광고판매 매출액, 해외사업 매출액, 콘텐츠 투자 사업 수익, 컨설팅 수수료 등 공사가 추진한 신규 사업 매출액 및 수익의 합}$

(2) 중소기업 광고마케팅 활동 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의	공사가 광고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2년 연속(전년도와 당해연도) 광고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주의 전년도 말일 기준 종업원 수의 합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2년 연속(전년도와 당해연도) 광고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주의 당해연도 말일 기준 종업원 수의 합 ②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주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가 선정한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 함 ③ 종업원 수 산출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공신력 있는 외부 자료에 의함

(3) 방송광고 판매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15점]

사업정의	미디어·광고 산업분야 연구·조사를 통한 산업 발전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광고·마케팅 전문교육 등 제공을 통한 광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 방송통신광고 조사사업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A), 목표부여(편차)(B), 가중치 : 4점)

정 의	공사에서 수행하는 방송통신광고 조사사업의 경쟁력을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와 조사자료 대외 활용도를 통해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A)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B)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A :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 - 최고목표 : 100점 - 최저목표 : 80점 (통계품질진단 결과 '양호' 등급 해당점수) <B : 조사자료 대외 활용도>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통계청 품질진단 결과(A) - 산식 = 방송통신광고 통계 품질진단 평점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취업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관련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자), 재직증명서 또는 외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동의서 미제출자), 창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집계 • 수료생 수는 기관의 수료과정별 결과보고 내 수료생 수로 집계

(3)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공익광고 사업 [8점]

사업정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함

(1) 공익광고 AIE 활용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공사 제작 공익광고(영상물) 및 공사 주관 공익광고제 수상작(인쇄물)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한 AIE(Advertising In Education)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최근 5개년 작품 중 당해연도 AIE 활용 실적}}{\text{공익광고 최근 5개년 작품 수}}$ ② AIE 활용실적은 공익광고를 교육목적으로 활용한 실적의 합으로 공익광고 이용신청서에 근거하여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 AIE 활용 실적 산출시 공익목적(학교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활용한 실적만 인정 • 공익광고 최근 5개년 작품은 공사가 제작한 공익광고(영상물) 및 공사가 주관한 공익광고제 수상작(인쇄물)으로, 홈페이지 공익광고자료실에 등록된 영상·인쇄 공익광고를 근거로 산출

(2) 공익광고 제작 및 캠페인 운용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공익광고협회에 의해 당해연도 공익광고 주제로 선정되어 TV에 방영된 공익광고의 제작 노력과 효과적 캠페인 운용 성과를 통합효과지수를 활용, 타 공공캠페인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공사 제작 및 운용 공익광고의 통합효과지수}}{\text{타 공공캠페인의 통합효과지수}}$ ② 통합효과지수 : 공익광고협의회에 의해 당해연도 공익광고 주제로 선정되어 TV에 방영된 각 공익광고에 대하여 캠페인 종료 후 국민을 대상으로 주제적절성, 크리에이티브, 태도·행동 변화, 사회적 기여·공익성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광고 효과를 산출한 지수로, 조사대상 공익광고의 산술평균으로 함 * 통합효과지수 = 주제의 적절성(21%) + 사회적 기여 및 공익성 (27%) + 태도·행동 변화(30%) + 크리에이티브(22%) ③ 통합효과지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선정된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조사된 결과로 함 ④ '타 공공캠페인의 통합효과지수'는 타 공공캠페인 선정 범위*에 근거해 3편 선정 후 공사 공익광고와 동일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술평균으로 지수 도출한 결과로 함 * 타 공공캠페인 선정 범위 • 유사 기간 방영 : 공사 공익광고 송출일 전후 1개월 이내 방영 • 정부 및 공공기관 광고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특정지역 한정 광고 배제) - 광고의 목적성 동일 : 공익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광고
(3) 공익광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부동산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영업이익률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부동산공시통계사업			23
	(1) 주택공시 실거래반영률 균형성		4	
	(2) 주택공시 검증가격제공 성과		3	
	(3) 통계청 품질진단 점수		6	
	(4) 부동산공시통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부동산 시장관리사업			14
	(1)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축소 노력		2	
	(2) 실거래 신고정보 검증체계 정확성		2	
	(3) 실거래 조사 정확성 제고 노력		2	
	(4) 리츠시장 개선 기여도		1	
	(5) 부동산 시장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부동산산업 지원사업			8
	(1) 공익사업 신속추진 지원 노력도		3	
	(2) 탄소중립 지원 노력		1	
	(3) 부동산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㉖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부동산공시통계사업 [23점]

사업정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균형성 제고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및 공정과세 실현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생산으로 부동산정책 지원과 대국민 부동산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 주택공시 실거래반영률 균형성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 가중치 : 4점)

정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COD로 주택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균형성을 측정하여 대국민 신뢰성 제고와 주택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표	[단독주택] 최고목표: COD 10, 최저목표: COD 20 [공동주택] 최고목표: COD 5, 최저목표: COD 20 * 최고·최저목표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24.9)에 따라 IAAO(국제과세평가관협회) COD 기준을 적용함
측정 산식 및 변수	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 균형성 평점×0.5 ① 실거래반영률 =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 균형성 평점×0.5 균형성 ② 실거래가반영률 균형성 = $\frac{\sum_{i=1}^N X_i - \text{Median}(X) }{N} \times \frac{100}{\text{Median}(X)}$ (* X_i : i번째 호의 실거래가반영률 = $\frac{\text{공시가격}_i}{\text{실거래가}_i}$, N : 거래 호수, Median(X) : 실거래가반영률 중간값) ③ 실거래가반영률 균형성에서의 공시가격은 해당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함 ④ 실거래가반영률 균형성에서의 실거래가는 거래일을 직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거래의 실거래가를 말하며, 부적정 실거래가 제외조건은 산출시 고려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부적정 실거래가 제외 조건은 이하와 같음

기준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권리적 제외기준	▪ 계약해제 제외 ▪ 지분거래 제외 ▪ 다수 물건 거래 제외 ▪ 중복거래 최신 1건 아닌 것 제외 ▪ 금액 오류 제외	▪ 계약해제 제외 ▪ 지분거래 제외 ▪ 중복거래 최신 1건 아닌 것 제외
물적 제외기준	○ 거래-공시 사이에 이하 항목이 불일치하는 거래 제외 ▪ 지목 ▪ 용도지역 ▪ 대지면적 ▪ 연면적 ○ 용도복합 주택 제외 (주상, 주상, 기타복합)	▪ 면적 극단치 제외 ▪ 금액 극단치 제외 (ex. 거래면적 1㎡, 거래금액 10만원, 거래단가 100억원)
통계적 제외기준	시세와의 격차율* 30%** 초과 제외 * 격차율 = $100\% \times \left \frac{\text{실거래가}}{\text{시세}} - 1 \right$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준용 (저가양수·고가양도 판단 기준)	지역별 실거래가반영률 상·하위 1.5IQR 제외

(2) 주택공시 검증가격제공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주택의 시가에 대한 적정성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량산정모형을 고도화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검증가격의 업무제공 비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택공시검증 가격제공 성과 = $\frac{\text{표준주택 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 제공비율}(\%) \text{ 평점} \times 0.5}{\text{표준주택 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 제공비율}(\%) \text{ 평점} \times 0.5} + \frac{\text{공동주택 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 제공비율}(\%) \text{ 평점} \times 0.5}{\text{공동주택 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 제공비율}(\%) \text{ 평점} \times 0.5}$ ② 표준주택 대량 산정 모형 검증 가격 제공비율(%) = $\frac{\text{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제공 표준주택 수}}{\text{공시대상 표준주택 수}} \times 100(\%)$ ③ 공동주택 대량 산정 모형 검증 가격 제공비율(%) = $\frac{\text{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제공 공동주택 수}}{\text{공시대상 공동주택 수}} \times 100(\%)$ ④ 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제공 표준주택 수, 대량산정모형 검증가격제공 공동주택 수, 공시대상 표준주택 수,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평가대상연도 차년도 1월 1일자 공시대상 주택호수를 의미

(3) 통계청 품질진단 점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 의	한국부동산원이 생산한 부동산통계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우수한 통계생산을 통한 부동산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통계청 품질진단 점수> 최고목표 : 100점 최저목표 : 79점(통계품질진단결과 '보통'등급의 최상단)
측정 산식 및 변수	※ 통계청 품질진단 점수 : 통계청이 한국부동산원 생산 7종의 국가승인통계에 대하여 각각의 품질을 진단하여 발표한 결과인 품질진단평점(가점 및 노력도 점수 제외)의 산술평균 * 한국부동산원 생산 7종 국가승인통계 : (1) 전국지가변동률조사 (2)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3)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4) 부동산거래현황 (5)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6)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7) 건물에너지 사용량통계 ※ 산출시 고려사항 • 7종의 국가승인통계 중 당해연도 품질진단대상에서 제외되어 품질진단 평점이 없는 경우, 해당통계는 결측 처리하고 나머지 통계의 품질진단평점 산술평균으로 측정

(4) 부동산공시통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② 부동산 시장관리사업 [14점]**

사업정의	부동산 거래·투자·금융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강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1)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축소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비율의 측정과 부적격 사유별 조치방안 마련을 통한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에 대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축소 노력 = $\frac{\text{주택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평점} \times 0.7}{\text{부적격 사유 관리 노력도 평점} \times 0.3}$ ②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 $\frac{\text{연간 부적격 당첨자 수}}{\text{연간 주택청약 당첨자 수}}$ ③ 부적격 사유 관리 노력도 = $\frac{\text{연간 부적격 사유 사업주체'기타'입력건수}}{\text{연간 부적격 당첨자 수}}$ ④ 연간 부적격 당첨자 수는 청약홈을 통해 실시된 청약건수 중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횡수제한,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해 부적격 처리된 부적격 당첨자의 수를 말함 ⑤ 연간 주택청약 당첨자 수는 청약홈을 통해 실시된 전체 청약 당첨자 수를 말함 ⑥ 부적격 사유 사업주체'기타'입력건수는 사업주체가 명확한 부적격 등록 사유를 선택하지 않고 임의로'기타'로 처리하는 건수를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과거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최고 및 최저 목표설정시 4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2) 실거래 신고정보 검증체계 정확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실거래 신고정보 검증체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정보 오류의 검증 처리실적을 측정하여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거래 신고정보 검증체계 정확성 = $\text{오류 잔존율} \times 0.3 + \text{오류 발생률} \times 0.7$ ② 오류 잔존율 = $\frac{\text{당해연도말 오류 잔존건수}}{\text{당해연도 총 오류발생건수}}$ ③ 오류 발생률 = $\frac{\text{당해연도말 오류 발생건수}}{\text{당해연도 공동주택 총 전월세건수}}$ ④ 당해연도 총 오류 발생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된 전월세 정보에 대한 적정성 진단시 발생한 총 오류건수를 말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⑤ 당해연도 말 오류 잔존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된 전월세 정보에 대한 적정성 진단시 발생한 오류 중 당해연도 12.31기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오류건수를 말함 ⑥ 당해연도 공동주택 총 전월세건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된 전월세 건수를 합한 값을 말함 ⑦ 단, 당해연도 매매 실거래 신고정보 오류 발생률이 3.5% 또는 오류 잔존율이 9%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 매매 실거래 신고 관련 세부지표를 추가하여 운영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보증금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3) 실거래 조사 정확성 제고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이 수행하는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정확도를 향상하여 거래 당사자의 실거래 조사 수용도를 제고하고, 불법·편법거래 예방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 시장조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거래 조사 정확성 제고 노력 = $\frac{\text{당해연도 위법의심거래 관계기관 통보 건수}}{\text{당해연도 이상거래 총 선별 건수}}$ ② 당해연도 이상거래 총 선별 건수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정보 자료분석 등을 통해 선별된 이상거래 조사 대상 총 건수로 최종 조사마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산출함 ③ 당해연도 위법의심거래 관계기관 통보 건수 : 거래당사자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 조사 후 최종 위법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신고관청),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1회* 이상 통보한 건수로 최종조사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산출함 ※ 1건의 조사대상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 되더라도 1건으로 집계함 ※ 국세청(증여추정, 특수관계인 차입금/보증금 등) : 국세청에서 각 지방세 무서에 알리게 되며, 세무조사 및 차입금 관리 등 조치됨

측정 산식 및 변수	금융위(LTV위반, 대출용도외 유용 등) : 금융위/금감원에서 대출규정 위반여부 검토 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 환수 등 조치 경찰청(명의신탁, 공인중개사법 위반, 전세사기 의심 등) : 각 관할 경찰서에 배정되며, 사건 수사하여 검찰 기소 등 조치 지자체(지연신고, 계약일거짓신고,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 각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통보되며, 사실관계 재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상기 당해연도 위법의심거래 관계기관 통보건수, 당해연도 위법의심거래 관계기관 통보건수는 실거래조사시스템(RTIS) 상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4) 리츠시장 개선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강화 노력 및 리츠인가 소요일수 개선을 통한 리츠인가 개선 노력을 측정하여 리츠시장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리츠시장 개선 기여도 = (리츠건전성 강화 기여도 평점)×0.8+ (리츠인가 개선 노력도 평점)×0.2 ② 리츠 건전성 강화 기여도(0.8점) = $\frac{\text{검토대상 발생 건수}}{\text{연간 상시모니터링 검토 실적}}$ ※ 연간 상시모니터링 검토실적 : 국토교통부 제출 분기별 모니터링보고서 기준으로 직전연도 4분기부터 당해연도 3분기까지 수행한 상시모니터링 검토건수 ※ 검토대상 발생건수는 상시모니터링 검토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되어 검토 완료·관찰대상·조치대상으로 검토된 건수를 말함 ③ 리츠인가 개선 노력도(0.2점) = 당해연도 리츠인가 평균 소요일수 ※ 당해연도 리츠인가 소요일수 : 리츠인가(리츠등록, 변경인가, 변경등록 포함) 관련 서류 접수 후 서류보완요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 실제 인가완료시까지 소요된 기간

(5) 부동산 시장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부동산산업 지원사업 [8점]

사업정의	도시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개발·녹색건축 등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1) 공익사업 신속추진 지원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및 사회기반시설 등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익사업 신속추진 지원 노력도 = $\frac{\text{협의보상 평균 소요기간 평점} \times 0.6 + \text{수용재결 평균 소요기간 평점} \times 0.4}{\text{표준편차}}$ ② 협의보상 평균 소요기간 = $\frac{\sum \text{필지별 협의보상 소요기간}}{\sum \text{협의보상완료 필지 수}}$ ③ 수용재결 평균 소요기간 = $\frac{\sum \text{필지별 수용재결 소요기간}}{\sum \text{수용재결완료 필지 수}}$ ④ 협의보상 소요기간 및 수용재결 소요기간은 당해연도 소유권을 취득한 편입토지의 토지조서 작성일과 보상완료일(협의 또는 수용보상금 지급일)간의 소요일수로 함 ⑤ 당해연도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유자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편입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취득이 협의이면 협의보상완료 필지, 수용이면 수용재결완료 필지로 구분함 ⑥ 보상완료일은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편입토지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날짜를 의미하며, 단독소유 토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지급한 날짜, 공유지분 토지는 공유자 전체 지급일 중 최종 지급일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필지별 협의보상·수용재결 소요기간 및 협의보상·수용재결 필지수는 보상관리시스템(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특히 제10-0979892호)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한 잔여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하는 국·공유지는 실적 제외

(2) 탄소중립 지원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신축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통한 국가 건물부문 탄소중립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탄소 중립 지원 노력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 평점×0.7 +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 평점×0.3 ②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 = $\frac{\sum \text{공공부문 연간 발급된 인증서(예비)상 자립률}(\%)}{\sum \text{공공부문 연간 총 인증(예비) 발급 건수}}$ ③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 = $\frac{\sum \text{민간부문 연간 발급된 인증서(예비)상 자립률}(\%)}{\sum \text{민간부문 연간 총 인증(예비) 발급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상 자립률*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프로그램(ECO2)을 통해 산출된 값이며, 한국에너지공단(운영기관)의 인증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및 내부 인증 관리 시스템 기준으로 함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 100
(3) 부동산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	
	㉡ EBITDA 대 매출액		3.5	
	㉢ 부채비율		1	
	㉣ 이자보상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화폐사업			15
	(1) 글로벌 수준의 위폐발생 방지 성과		3	
	(2) 대국민 화폐사용 편익 증대		3	
	(3) 지역화폐 디지털 전환 성과		1	
	(4)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해율 감축 노력		2	
	(5) 화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2. ID사업			16
	(1) 여권 위변조 발생 방지 성과		2	
	(2) 전자여권 제조·발급효율 향상 성과		2	
	(3) IC 주민등록증 제조·발급효율 향상 성과		2	
	(4) 모바일 ID 서비스 품질 향상		2	
	(5) ID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핵심역량 연계 사업			14
	(1) 핵심역량 연계 사업 확대노력 성과		4	
	(2)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		3	
	(3) 핵심역량 연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EBITDA 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5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② EBITDA = 영업이익 + 유무형자산상각비 ③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이자보상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절감노력을 이자보상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②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관의 이자보상비율은 편람상 규정된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화폐사업 [15점]

사업정의	고품질의 실물 화폐를 완벽하게 제조·공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폐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글로벌 수준의 위폐발생 방지 성과 (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3점)

정의	첨단 위변조 방지요소를 적용한 고품질의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에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①에만 해당)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비교국가 중 위폐발생 최저국가 최저목표 : 비교국가 중 TOP 3 국가 평균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수준의 위폐발생 방지 성과의 평점은 ① ‘위폐방지 성과지수’와 ② ‘위폐방지 달성도’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위폐방지 성과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text{Currency Anti-counterfeit Outcome Index} = \frac{\text{한국은행권 위폐현황(1억장당)}}{\text{위폐발생최저국가 위폐현황(1억장당)}}$ ② 위폐방지 달성도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한국은행권 위폐현황}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한국은행권 위폐현황, 위폐발생 최저국가 위폐현황, 비교대상 주요 국가의 위폐현황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 보도자료 「위조지폐 발견 현황」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위폐발생 최저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 위폐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최고목표가 '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목표는 '0'으로 한다. · 한국은행권 및 위폐발생 최저국가의 위폐발생 장수 산출시 단일사건의 위폐발생 장수가 전체 위폐발생량의 5%를 초과하는 대량위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대국민 화폐사용 편익 증대 (평가방식 : ① 글로벌 실적비교, ②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국민들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제조·공급을 목표로 은행권에 대한 국민편익 증대 성과를 “① 은행권 유통수명 경쟁력 향상”과 “② 은행권 제조효율 개선”노력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②에만 해당)
목 표	① 최고목표 : 권종별 은행권 유통수명 1위 국가 최저목표 : 권종별 은행권 유통수명 5위 국가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대국민 화폐사용 편익 증대 실적은 ‘은행권 유통수명 경쟁력 향상’의 평점과 ‘은행권 제조효율 개선’의 평점을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은행권 유통수명 경쟁력 향상 = $\frac{\text{한국은행권 권종별 유통수명}}{\text{권종별 최고국가 은행권 유통수명}}$ - 한국은행권 및 권종별 최고국가 은행권 유통수명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 보도자료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주요국 은행권 유통수명은 최저액면(천원)·중간액면(만원)·고액면(5만원)을 기준으로 한국은행권과 동일한 재질(면)의 국가와 비교한다. - 권종별 최고국가 은행권 유통수명은 한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통수명이 가장 긴 국가로 한다. - 은행권 유통수명 경쟁력 향상 평점은 최저액면, 중간액면, 고액면 달성도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 권종별 유통수명 경쟁력 달성도가 100% 이상일 경우 달성도는 100%로 평가 한다. ② 은행권 제조효율개선 = $\frac{\sum \text{권종별 생산량}}{\sum \text{권종별 투입량}}$ - 권종별 투입량은 생산량과 손지량의 합으로 구한다. - 권종별 생산량, 손지량은 기관 ERP시스템상의 생산실적으로 한다. - 평가대상연도의 각 권종별 생산량 비중으로 목표와 실적을 가중평균하여 득점 산출
(3) 지역화폐 디지털 전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지역화폐 디지털 전환 노력과 성과를 지역화폐 전체 발행액 대비 모바일 지역화폐 사용 비중 확대 성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모바일 지역화폐 사용액}}{(\text{지류 지역화폐 발행액} + \text{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액})} \times 100$ ② 지류 지역화폐 발행액은 공사가 각 지자체에 공급한 지류(紙類) 지역사랑상품권 액면가의 합으로 하며,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액은 공사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 'Chak'에서 발행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및 정책수당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③ 모바일 지역화폐 사용액은 공사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 'Chak'에서 사용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및 정책수당 금액의 합으로 한다. ④ 최고목표가 '100%' 이상일 경우 최고목표는 '100%' 로 한다.

(4)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해율 감축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재난·안전 재해율 감소 실적을 통해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 × 40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 × 30 + 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 × 30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가중치: 사망사고 1인당 10, 중대재해·중상 1인당 3, 일반재해·경상 1인당 1, 기타 1인당 0.5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textcircled{2} \text{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textcircled{3} \text{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시설(설비) 사고}}{\text{화폐박물관 관람객수(백명)}}$$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 :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대 폐수누출 사고, 일반 폐수누출 사고는 아래 기준 적용

- 중대 폐수누출 사고 : 폐수 누출 사고로 인해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가 발생하는 경우(사망,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 제외) 3
- 일반 폐수누출 사고 : 폐수 누출 사고로 인해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경징계가 발생하는 경우(사망, 중대재해·중상,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 제외) 1

$$④ \text{ 평점} = \text{기본득점} + (100\text{점} - \text{기본득점})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평가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 (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화폐박물관 관람객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데이터 요청」에 따라 공사가 증빙·제출하는 화폐박물관 관람객수로 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폐수누출사고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사고에 대해 유관 부처에 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시설(설비) 사고로 판단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국민·시설 재해율의 분모 수치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내로 하며, 초과 시 단위를 조정하여 평가함.

(5) 화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② ID사업 [16점]

사업정의	실물 및 모바일ID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모바일 ID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여권 위변조 발생 방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권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여권 위변조 발생 방지 성과를 “출국인원 만 명당 여권 위조발생률”로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여권 위조발생률} = \frac{\text{국내·외 여권 위조건수}}{\text{출국인원(만명)}}$ - 여권 위조건수는 국내 출입국관리관청에서 적발한 PC(Poly Carbonate) 재질 등이 적용된 보안강화 전자여권의 국내·외 총건수로 하되, 여권 위조 직접요인에 해당하는 위변조 및 사진교체 건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취합·제공 자료 기준) - 출국인원은 법무부 출입국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2026년도 평가는 PC(Poly Carbonate) 재질 여권이 본격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의 실적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2) 전자여권 제조·발급효율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해외체류 국민의 신분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전자여권이 완벽하고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발급효율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전자여권 제조·발급 손율} = (\text{제조 손율} \times 0.6) + (\text{발급 손율} \times 0.4)$ $\text{② 전자여권 손율} = \frac{\text{손품량}}{\text{투입량}}$ ③ 투입량은 완품량과 손품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완품량 및 손품량은 기관 ERP시스템상의 생산실적으로 한다. • 손율은 전자여권(일반복수 58p/26p)의 제조·발급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3) IC 주민등록증 제조·발급효율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국민의 신원 확인과 행정·민원 서비스 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해 IC 주민등록증이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발급효율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IC 주민등록증 제조·발급 손율 = (제조 손율 × 0.6) + (발급 손율 × 0.4) ② IC 주민등록증 손율 = $\frac{\text{손품량}}{\text{투입량}}$ ③ 투입량은 완품량과 손품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완품량 및 손품량은 기관 ERP시스템상의 생산실적으로 한다. • 손율은 IC 주민등록증 제조·발급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4) 모바일 ID 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공사와 수요처간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 SLA(Service Level Agreement)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모바일 ID 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SLA 최고목표 (95점) 최저목표 : SLA 최저목표 (65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모바일 ID 서비스 품질 향상 = $\frac{\sum(\text{서비스 수준지표별 배점} \times \text{지표별 달성도})}{\text{평가 개월 수}}$ ② 모바일 ID 서비스 품질 향상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점 + 80점 × $\frac{\text{모바일 ID 서비스 품질 향상 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평가 대상은 공사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 사업 등으로 한다. - SLA 평가는 월단위로 실시하며 서비스 수준 적용범위, 운영지표, 평가 등 세부사항은 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서비스 수준 협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5) ID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핵심역량 연계 사업 [14점]

사업정의	고품위 화폐제조 역량과 위변조방지 기술 기반 신사업 추진으로 국민경제 발전 및 문화경쟁력 증진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핵심역량 연계 사업 확대노력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業의진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기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핵심역량 연계 사업”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핵심역량 연계 사업 확대 실적 = 공공 부문 매출액 × 0.4 + 비공공 부문 매출액 × 0.6 ② 사업구분 - 공공 부문 매출액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핵심역량 연계 사업 매출액 합계 - 비공공 부문 매출액 : 공공 부문 외 수요처 매출액 합계 보안인쇄(상품권류, 정품인증류, 위변조방지제품류), ③ 핵심역량 연계 사업 매출액 = 보안용지(국내), 일반 메달, IoT사업, ICT사업, 수출 (해외)제품 매출액, 용역 및 로열티 수익 ※ 산출시 고려사항 • 신성장 사업 매출액 산정 시, 상품 및 금·은 사업(골드바, 실버바, 불리온, 장기근속 메달, 시상 메달) 매출액과 화폐사업, ID사업 관련 매출액은 제외한다.

(2) 기술·품질 경쟁력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신성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혁신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백만기회당 결함수 (DPMO*) 향상 노력 = $\frac{\text{DPMO 가중 향상 성과}}{\text{총생산제품 종수}}$ * DPMO : 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 ② DPMO 가중 향상 성과 = $\sum$ 20만개 이상 생산 제품의 DPMO 가중치 <table border="1"> <thead> <tr> <th>DPMO 달성수준</th><th>가중치</th></tr> </thead> <tbody> <tr> <td>0</td><td>1</td></tr> <tr> <td>0초과~10미만</td><td>0.8</td></tr> <tr> <td>10이상~30미만</td><td>0.6</td></tr> <tr> <td>30이상~50미만</td><td>0.4</td></tr> <tr> <td>50이상~100미만</td><td>0.2</td></tr> <tr> <td>100이상~</td><td>0</td></tr> </tbody> </table> ③ 총생산제품 종수 : 평가년도 총 생산 제품 수 중 20만개 이상 생산제품 종수 ※ 산출시 고려사항 총 생산제품 수 : 생산제품이 세부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세부 제품은 각각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 (예 : 은행권 →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4개 제품)	DPMO 달성수준	가중치	0	1	0초과~10미만	0.8	10이상~30미만	0.6	30이상~50미만	0.4	50이상~100미만	0.2	100이상~	0
DPMO 달성수준	가중치														
0	1														
0초과~10미만	0.8														
10이상~30미만	0.6														
30이상~50미만	0.4														
50이상~100미만	0.2														
100이상~	0														

(3) 핵심역량 연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전KDN(주)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영업이익률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ICT운영사업			18
	(1) 전력ICT 운영효율 향상		7	
	(2) 에너지·산업분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 노력		2	
	(3) ICT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전력계통사업			17
	(1) 배전자동화설비 장애관리		5	
	(2) 전력계통분야 사업추진 성과		2	
	(3)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노력		3	
	(4) 전력계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미래성장사업			10
	(1) 미래성장동력 확보노력		3	
	(2) 미래기술 확보 및 사업화 성과		2	
	(3) 미래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㉔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영업이익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②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②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ICT운영사업 [18점]

사업정의	전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ICT인프라 유지관리로 고객 및 국민 편익 증진

(1) 전력ICT 운영효율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의	중요시스템 작업지시 처리 일수 단축 및 적기 처리 준수 노력, 능률적인 사전 장애조치를 통한 전력ICT 운영효율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목표	① 유지보수 처리일 단축(하향지표), ③설비 고장 사전조치율(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유지보수 처리기한 초과건수 0건
측정 산식 및 변수	전력ICT 운영효율 향상 = $\{(유지보수 처리일 단축^{\textcircled{1}} \times 0.6) + (\text{유지보수 적기처리율 관리}^{\textcircled{2}} \times 0.4)\} \times 0.6$ $+ \text{설비 고장 사전조치율}^{\textcircled{3}} \times 0.4$ ① 유지보수 처리일 단축* = $\frac{\text{작업지시 처리일수}}{\text{중요시스템 작업지시 요청일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유지보수 적기처리율 관리** = $100 - \sum \text{처리기한 초과건수} \times 1$ ③ 설비 고장 사전조치율*** = $\frac{\text{전력통신설비 고장 사전조치건수}}{\text{전력통신설비 합계}}$ * 중요시스템 작업지시 요청일수 및 처리일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요시스템으로 분류한 실적 합계로 함 ** 유지보수 처리기한 초과건수는 각 고객사에서 요청한 유지보수 처리기한을 초과한 건수의 합계로 함 *** 전력통신설비는 한국전력공사 ICT업무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고장보수 대상설비 12종으로 하며 고장 사전조치건수는 한전 고장관리시스템(ITS)을 통해 고객사의 승인을 받은 건수에 한함

(2) 에너지·산업분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정확한 이상징후 적발로 에너지·산업분야 공공기관의 운영 안정화 실현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에너지·산업분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 노력도 = 탐지 정확도 × 0.5 + (1÷탐지 신속도) × 0.5 • 탐지 정확도(정탐률) = $\frac{\text{사이버 공격 정탐 건수}}{\text{사이버공격 통보 건수}}$ • 탐지 신속도(MTTD*) = $\frac{\text{공격탐지 시간의 합}}{\text{사이버공격 통보 건수}}$ * MTTD(Mean Time To Detect) : 보안 위협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를 인지하는 평균 소요 시간 • 정탐 건수, 통보 건수, 탐지 시간 실적은 기후부·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의 정보공유시스템에서 각 기관에 통지한 실적 합계 적용 • 대상 기관 : 기후부·산업부에서 지정하는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함

(3) ICT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전력계통사업 [17점]

사업정의	전력계통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전력공급망 디지털 촉진 및 품질강화

(1) 배전자동화설비 장애관리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전력계통ICT설비의 무중단 운영을 위한 배전자동화설비 장애율 절감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배전자동화설비 장애 관리 = (주장치 장애율×0.4+단말장치 장애율×0.3+조작부 장애율×0.3) ※ 각 장애율 = $\frac{\text{장애건수}}{\text{설비건수}}$ ② 장애발생건수는 주장치, 단말장치, 조작부의 기능정지, 비정상 제어·계측·감시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저해하는 장애가 발견되어 한전에서 현장보수를 요청한 건

측정 산식 및 변수	(단, 설비운영에 영향이 없는 소모품 등 단순 고장에 대한 장애는 실적 집계시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배전자동화설비 합계는 DAS 성능관리 위탁용역 계약서 중 배전자동화설비 위탁보수대상 설비수량 • 장애발생수량은 한전KDN DAS유지보수 관리시스템 및 한전에서 승인한 배전지능화 성능관리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2) 전력계통분야 사업추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 비수탁 사업 중 전력운송 효율 향상 및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력계통분야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전력계통분야 사업추진 성과 = ①전력계통분야 사업 매출액(1점) + ②전력계통분야 사업 건수(1점)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내 전력계통 비수탁사업 기준으로 사업 매출액과 사업건수를 산출한다.(단순 수탁사업 제외) • 실적은 기관 ERP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3)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무사고, 무재해 목표 달성도를 측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력 = $\text{근로자 재해율} \times 0.4 + \text{발주공사 재해율} \times 0.3 + \text{국민·시설 재해율} \times 0.3$ ②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 ③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인명사고(근로자), 인명사고(발주공사) = 사망 + 중대재해 + 일반재해

※ 가중치: 사망 1인당10, 중대재해 1인당3, 일반재해 1인당1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을 적용

- 사망: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⑤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사고}}{\text{상시근로자수}}$

⑥ 인명사고(국민) = 사망 + 중상 + 경상 + 기타

※ 가중치: 사망 1인당10, 중상 1인당3, 경상 1인당1, 기타 1인당0.5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을 적용

- 사망: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⑦ 시설(설비)사고: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 사고

-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건) x 10
-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건) x 5
- 일반재해가 발생한 시설(설비) 사고(건) x 3

⑧ 가중치: 근로자 재해 1.2, 발주공사 재해 0.9, 국민·시설 재해 0.9

⑨ 평점 = 기본득점 + (100점-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⑩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산업재해율}}{\text{국내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의 합으로 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연도말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적용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4) 전력계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미래성장사업 [10점]

사업정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디지털·친환경 에너지ICT분야 신사업 발굴 및 기술개발

(1) 미래성장동력 확보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미래성장사업 확대를 위한 대내·외 매출액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래성장동력 확보노력 = 대내사업 매출액×0.4 + 대외사업 매출액×0.6 ② 사업구분 - 대내사업 매출액 : 전력그룹사 수주사업 매출액 합계 - 대외사업 매출액 : 전력그룹사 이외 수주사업 매출액 합계 ③ 미래성장동력사업 매출액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의한 8대 에너지신산업 및 정부 4차산업혁명 16대 전략분야, 정보보안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을 활용한 사업을 기준으로 매출액 실적을 합산하여 계산(단순 상제품 사업은 제외) ① 수요자원거래시장, ② ESS통합서비스, ③ 에너지자립섬, ④ 태양광대여, ⑤ 전기자동차, ⑥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⑦ 친환경 에너지타운, ⑧ 제로에너지빌딩(산업부 8대 에너지신산업) ① 시스템반도체, ② 미래자동차, ③ 바이오헬스, ④ 인공지능, ⑤ 빅데이터, ⑥ 5G+, ⑦ IoT, ⑧ 서비스 플랫폼, ⑨ 실감형콘텐츠, ⑩ 블록체인, ⑪ 스마트시티, ⑫ 스마트제조, ⑬ 지능형 로봇, ⑭ 신재생에너지, ⑮ 배터리, ⑯ 드론(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 16대 전략분야)

(2) 미래기술 확보 및 사업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미래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핵심기술 확보노력 및 R&D 사업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개발 활성화 = (특허 성과 × 50%) + (기술사업화 성과 × 50%) ② 특허 성과 = $\frac{\text{특허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특허 등록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의미함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1.5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③ 기술사업화 성과 = $\frac{\text{기술사업화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연구개발 집행 실적금액}}$ - 기술사업화 건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개발을 적용(기술료·기술이전 등)하여 발생한 매출 건수를 의미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은 대상 사업의 전체 집행실적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총괄과 「4차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Z코드 및 기술설명」에 따라 Z코드로 분류된 특허를 기준으로 함. • 실적은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기술사용계약서)로 증빙함 • 기술사업화 건수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으로 기술이전한 건수(건당 0.5 적용)를 포함하되, 해당 방안이 발표된 시점 이후에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적제출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연구개발 집행실적금액(억원)은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도 간의 평균금액(억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안)」 실적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함.
	(3) 미래성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해양환경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8.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5	2	
	3. 재무성과관리			15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확보)	4 (1) (1)		
	(2) 재무예산성과			
	㉠ 총자산회전율		1.5	
	㉡ EBITDA 대 매출액		4	
	㉢ 부채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5	
	㉤ 자본생산성		2.5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7.5	22.5	5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해양환경 보전 사업			17
	(1) 해양수질 개선 성과		3	
	(2)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성과		3	
	(3)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3	
	(4) 해양환경 보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해양오염 방제 사업			16
	(1) 해양오염 사고 저감 성과		4	
	(2) 해양오염방제 전문역량 강화 성과		3	
	(3) 재난안전관리 강화 성과		2	
	(4) 해양오염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해양예선 사업			12
	(1) 항만예선 운영 성과		4	
	(2) 국가 입출항 선박 및 예인선 근로자 안전 강화 성과		2	
	(3) 해양예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		5
	주요사업 합계	26	24	50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6점]

㉠ 총자산회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1.5점)	
정 의	기관의 총자산 관리 및 성장성을 총자산회전율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② 매출액,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및 총자산 산출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수입 및 비용에 따른 영향은 제외함

㉠ EBITDA대 매출액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매출액 대비 EBITDA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1} \text{ 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EBITDA}}{\text{매출액}}$ $\textcircled{2} \text{ EBITDA} = \text{영업이익} + \text{유무형감가상각비}$ $\textcircled{3} \text{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및 EBITDA 산출 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수입 및 비용에 따른 영향은 제외함

㉡ 부채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1} \text{ 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extcircled{2} \text{ 부채와 자기자본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5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및 평균인원 산출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수입 및 비용에 따른 영향은 제외함
④ 자본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자본생산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산}}$ ② 부가가치, 총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및 총자산 산출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따른 수입 및 비용에 따른 영향은 제외함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해양환경 보전 사업 [17점]

사업정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과 동시에 해양수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신속·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환경의 건강성 진단을 수행한다.

(1) 해양수질 개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우리나라 전국 연안의 해양수질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수질평가 지수(WQI)를 산출하여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수질 개선 성과 = $\frac{\text{해양환경측정망 목표수질(WQI) 달성 정점 수}}{\text{해양환경측정망 조사 정점 수}}$ ② 수질평가 지수(WQI, Water Quality Index) - WQI 계산방법 : $10 \times [\text{저층산소포화도(DO)}] + 6 \times [(\text{식물플랑크톤농도(Chl-a)} + \text{투명도(SD)}) / 2] + 4 \times [(\text{용존무기질소(DIN)} + \text{용존무기인(DIP)}) / 2]$ •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2018.1.23.)) • WQI 평가 점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결과로 목표수질 값을 달성하기 위해 각해역에 포함된 정점의 연평균 (2, 5, 8, 11월) 자료에 대한 해수수질 기준결과를 도출하여 달성, 미달성을 평가 ③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정점 수 -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 대상해역 : 전국 연안 해양환경측정망 375개 정점(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 및 연안해역환경측정망) - 근거: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31호)(2020.2.28.)) ④ 해양수질조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및 조사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해양수산부의 검증·평가에 따라 확정된다. - 근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2)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성과 우수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 (60%) + ㉡ 대형저서동물 중 다양도 점수 (40%)
	② 지수산출 세부 산식
	㉠ 해양보호구역 확대 노력 = $\frac{\text{해양보호구역 지정 총 면적(누적)}}{\text{해양보호구역 확대 대상 면적}}$
	- 해양보호구역 지정 총 면적: 해당년도까지 습지보전법 및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국가 통계자료로 확인된 누적 면적 * 근거: 「습지보전법」 제8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고시 -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상 면적: 32,925km ² • 전체 해양면적(438,991km ²) × 해양보호구역 확대목표(30%) × 2024년 기준 국가 해양보호구역 면적 중 습지보전법 및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지정된 면적의 비중(25%) • 2030년 해양보호구역 확대 목표와 관련하여 공단의 역할 및 목표에 관한 정부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당 계획을 반영하여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상 면적’을 변경한다.

㉡ 대형저서동물 중 다양도 점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중 매년 조사가 이뤄지는 중점해역을 대상으로 대형저서동물 출현점수를 Shannon & Weaver function(Pielou, 1966)을 사용하여 아래 산식 및 기준에 따라 산출한 평균값
- 종다양도: $(H') = -\sum_{i=1}^s (p_i \ln p_i)$ s: 출현종수 p _i : 총 출현 개체수에 대한 i번째 종의 개체수의 비율
- 중점해역 정점별 종 다양도 점수의 합/중점해역 정점수(26개소)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다양도 점수	< 1.8	1.8 ≤ <2.05	2.05 ≤ <2.3	2.3 ≤ <2.55	2.55 ≤ <2.8	2.8 ≤ <3.05	3.05 ≤ <3.3	3.3 ≤ <3.55	3.55 ≤ <3.8	3.8 ≤

*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82호										

(3)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해양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폐기물 재활용률 = $\frac{\text{해당연도 해양폐기물 재활용 실적(ton)}}{\text{해당연도 해양폐기물 처리실적(ton)}}$ •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을 말함																	
	② 해양폐기물 재활용 실적 : 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집하장에서 분류·집하하고 재활용한 처리량으로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 입력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③ 해양폐기물 처리실적 : 지방해양수산청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해양폐기물 집하장에서 처리한 실적으로 공인계량소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																	
	④ 중장기 목표 : 정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27년 해양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는 20%로 하되, 기관이 달성할 연도별 단위목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able><tr><th>구 분</th><th>기준목표</th><th>'24년</th><th>'25년</th><th>'26년</th><th>'27년</th></tr><tr><td>중장기 목표</td><td>0.233</td><td>5.170</td><td>10.120</td><td>15.058</td><td>20.000</td></tr><tr><td>단위목표</td><td>-</td><td>4.94</td><td>4.94</td><td>4.94</td><td>4.94</td></tr></table>	구 분	기준목표	'24년	'25년	'26년	'27년	중장기 목표	0.233	5.170	10.120	15.058	20.000	단위목표	-	4.94	4.94	4.94
구 분	기준목표	'24년	'25년	'26년	'27년													
중장기 목표	0.233	5.170	10.120	15.058	20.000													
단위목표	-	4.94	4.94	4.94	4.94													

(4) 해양환경 보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해양오염 방제 사업 [16점]

사업정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 대비·대응 서비스를 통한 해양안전 가치 제고

(1) 해양오염사고 저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체계 개선을 통한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저감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표	36%(해양경찰청 목표의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양오염사고 저감 성과 = '부주의' 해양오염 사고율(%) ② '부주의' 해양오염 사고율(%) = $\frac{\text{'부주의'에 의한 사고건수}}{\text{전체 해양오염사고건수}} \times 100$ ③ '부주의'에 의한 사고건수 및 전체 해양오염사고건수는 해양경찰청 통계(해경백서, 해양오염방제국 연간통계자료)에 의한 '부주의 해양오염사고 건수' 및 '전체 해양오염사고 건수(사고유형 : 해난, 파손, 부주의, 고의, 기타)'로 함

(2) 해양오염방제 전문역량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해양사고 대비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방제역량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외부인 대상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및 전문방제교육의 확대 및 어촌계 오염사고 자치 방제능력 육성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 수료인원(30%) + ㉡어촌계 긴급방제 동원 가능선박 확대 노력(40%) + ㉢친환경 방제선 활용률(30%) ② 세부 측정 기준 ㉠ 해양오염방제 전문교육 수료인원은 해양환경교육원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및 전문방제교육을 수료한 인원으로 함 • 해양오염방지관리인교육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대상으로 동법 제121조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 • 전문방제교육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전문교육

측정 산식
및 변수

㉠ 어촌계 긴급방제 동원 가능선박 확대 노력
 = 어촌계 긴급방제 동원 가능선박 확보율 × 0.5
 + 어촌계 긴급방제 동원 가능선박 훈련 실적 × 0.5

- 어촌계 긴급방제 동원 가능선박 확보율은 공단-어촌계 간 일정기간 협의를 거쳐 오염사고 발생 시 우선 동원키로 해당 어촌계에서 동의한 선박(동원협약서 체결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국 어촌계 선박 척수는 수협에서 매년 발간하는 ‘어촌계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함
- ‘어촌계 긴급방제 동원 가능선박 훈련 실적’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어촌계 선박 훈련동원, 어촌계 훈련참여 실적을 평가함.

구분	오염사고대응	긴급방제 동원선박 훈련	
		해상방제 훈련	해안방제 훈련
건수	3점	2점	1점

- * 오염사고대응: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어촌계 긴급방제 선박을 동원한 사고 대응 건수
- * 해상방제훈련: 공단 해양오염 방제훈련지침 제12조, 15조에 따라 합동 훈련시 어선 동원 훈련
- * 해안방제훈련: 공단 해양오염 방제훈련지침 제8조, 13조에 따라 운영되는 방제기자재 운용 훈련

㉡ 국가 통계 ‘연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수’ 기준 전체 해양오염사고 건수 대비 환경친화적 선박이 투입된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text{친환경 방제선 활용률(\%)} = \frac{\text{환경친화적 선박 동원 해양오염사고 건수}}{\text{해양오염사고 건수}} \times 100$$

- * 환경친화적 선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신규 건조 또는 개조한 선박

(3) 재난안전관리 강화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관을 방문하는 국민은 물론 기관 소속 근로자 및 기관이 소유한 시설(선원·선박 제외)에 대한 재난안전사고 저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재해율 = ① 근로자 재해율 평점(40%) + ② 발주공사 재해율 평점(30%) + ③ 국민·시설 재해율 평점(30%)

측정 산식
및 변수

- ① 근로자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근로자)}}{\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② 발주공사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발주공사)}}{\text{발주공사 근로자수}}$$
- 발주공사 근로자 수 및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가중치(①,②): 사망1인당 10, 중대재해·중상1인당 3, 일반재해·경상1인당 1, 기타 1인당 0.5
-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③ 국민·시설 재해율(%) =
$$\frac{\text{인명사고(국민)} + \text{시설(설비) 사고}}{\text{상시근로자수(기관 임직원수와 비정규직 인원수)}}$$
- 가중치
- 사망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10
 - 중대재해·중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5
 - 일반재해·경상이 발생한 시설(설비)사고(건) × 3
- ※ 국민 사망, 중상, 경상, 기타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 : 국민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200만원 이상
 - 경상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기타 : 배상책임보험 지급금액 100만원 미만
- ※ 보험금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
- 중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경상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기타 : 의사 최초 진단결과 5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측정 산식
및 변수

- ④ 평점 = 기본득점 + (100점 - 기본득점) ×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⑤ 기본득점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당해연도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당해연도에 해당 기관의 근로자(임직원 및 비정규직), 발주공사 근로자 또는 국민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득점을 20점으로 한다.

$$\bullet \text{ 기본득점 산출 구간} = \frac{\text{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text{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 \times 100$$

구 간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기본득점(적용)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 기관의 발주공사 산업재해율과 국내 건설업 전체 산업재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사고 실적의 합이 0인 경우 만점 처리하고, 최고목표치가 음수(-)일 경우 목표치를 '0'으로 함.
- 상시근로자수는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 인원수를 포함하며, 기관의 임직원수(현원)와 비정규직 인원수는 알리오에 공시된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함.
-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기관의 임직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소속외 인력)을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인명사고(국민)의 경중은 사고에 따른 보상금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상금액에 따라 국민 재해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함.
- 과년도 평가에 기반영된 동일사고 건의 재해자 상태변화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 내역상 재해정도 변화 시, 기반영된 가중치를 공제하여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는 기관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설비)에서 발생한 붕괴, 폭발, 누출, 화재로 인해 근로자 및 국민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인명사고 자료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인명사고와 중복하여 산정함(기관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1건으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할 경우, 인명사고(명) 20점, 시설(설비)사고(건) 10점으로 산정).
- 시설 사고가 가중치 기준에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함.
- 시설(설비) 사고건수 중 기관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태풍, 폭우, 폭설, 집중호우, 홍수, 지진, 낙뢰, 산불, 강풍)와 외부원인(차량·중장비 충돌, 수목도괴 접촉 등)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4) 해양오염 방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해양예선 사업 [12점]

사업정의	국내 무역항 입·출항 선박에 안전한 예인서비스를 공급하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항행장애물 제거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1) 항만예선 운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국가 항만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하는 항만예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부유물 감감사고 저감을 위한 항행장애물 제거 노력을 통해 수익성과 공익성 균형 있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하향지표)
기준치	㉔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㉕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㉔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㉕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㉔ 항만예선 수익성 제고(80%) + ㉕ 부유물 감감사고 저감 성과(20%) ② ㉔ 항만예선 수익성 제고 = $\frac{\text{연간 예선운영수입}}{\text{공단 예선 총 마력}}$ - 연간 예선운영수입 : 손익계산서 상의 예선운영 수입 - 공단 예선 총 마력 : 공단에서 보유한 예선의 총 마력 합계 - 예선 마력은 선박별 “예선업등록증” 마력을 기준으로 한다. ※ 선박의 건조·매각·마력변경, 기타 불가항력 사유 발생 등으로 변경되는 예선 마력은 일할 계산한다. ③ ㉕ 부유물 감감사고 저감 성과 = 당해연도 부유물 감감사고 건수 - 부유물 감감사고 건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따름

(2) 국가 입출항 선박 및 예인선 근로자 안전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전국 8개 주요 무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이·접안 하여 해당 선박 근로자(선원)의 안전을 보호 하고, 기관 예인작업선 근로자(선원)들의 작업 중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무사고 달성노력 = ∑사고발생점수										
	<table><tr><th>구분</th><th>사망사고</th><th>재난사고 (이접안 작업 중)</th><th>중대재해</th><th>일반재해</th></tr><tr><td>사고발생점수</td><td>40점</td><td>15점</td><td>3점</td><td>2점</td></tr></table>	구분	사망사고	재난사고 (이접안 작업 중)	중대재해	일반재해	사고발생점수	40점	15점	3점	2점
	구분	사망사고	재난사고 (이접안 작업 중)	중대재해	일반재해						
	사고발생점수	40점	15점	3점	2점						
	② 사망사고 : 근로자,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③ 재난·중대사고 : 기관이 이접안을 지원하는 대상선박이 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선박 좌초, 충돌 등) 발생, 해상안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신고 된 재난사고 ※ 해양수산부(해양안전심판원) 해난사고 통계 자료 활용										
④ 중대재해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기관 예인작업선 및 기관의 과실로 인한 피예인선 선원 중대 산업재해											
⑤ 일반재해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 되지않는 기관 예인작업선 및 기관의 과실로 인한 피예인선 선원 일반 산업재해											
(3) 해양예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제 2 절

준정부기관

기금 관리형

1. 공무원연금공단	604
2. 국민연금공단	614
3. 국민체육진흥공단	624
4. 기술보증기금	636
5. 신용보증기금	648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58
7. 한국무역보험공사	668
8. 한국자산관리공사	678
9. 한국주택금융공사	690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	
	㉡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재직공무원지원사업			22
	(1) 재직기간 관리 신속 처리 노력도		3	
	(2) 급여적기지급률		5	
	(3) 복지사업 활성화 노력도		2	
	(4) 청년공무원 주거지원율		2	
	(5) 재직공무원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연금수급자지원사업			18
	(1) 연금수급자 디지털 관리 노력도		4	
	(2) 급여환수채권 회수율		2	
	(3) 급여 미청구자 관리 노력도		3	
	(4) 연금수급자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3. 공상공무원지원사업			9
	(1) 재해보상급여 지급 적기성		2	
	(2) 공무상요양 처리 신속성		3	
	(3) 공상공무원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④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5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재직공무원지원사업 [22점]

사업정의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재직관리를 통한 퇴직급여 등 산정지원과 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재직기간 관리 신속 처리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공무원연금 급여산정의 기초자료인 재직기간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여부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직기간 관리 신속 처리 노력도 = $\frac{\text{재직기간 합산} \cdot \text{연계처리 총 처리일수}}{\text{재직기간 합산} \cdot \text{연계처리건수}}$ ② 재직기간 합산·연계처리 총 처리일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소요일수(영업일 기준) 중 보완일수를 제외한 소요일수의 합계 ③ 재직기간 합산·연계처리건수는 연도 말 재직기간 합산·연계 총 승인 건수

(2) 급여적기지급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퇴직급여 적기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 지급)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급여적기지급률 = $\left(\frac{\left(\frac{6\text{일 이내 퇴직일시금}}{\text{지급처리건수}} \right)}{\left(\frac{\text{당해연도 퇴직일시금}}{\text{지급처리건수}} \right)} \times 0.7 \right) + \left(\frac{\left(\frac{6\text{일 이내 퇴직연금}}{\text{지급처리건수}} \right)}{\left(\frac{\text{당해연도 퇴직연금}}{\text{지급처리건수}} \right)} \times 0.3 \right)$ ② 6일 이내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지급처리건수: 급여 청구서 공단 접수일로부터 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소요기간(타기관 조회 등 서류보완기간 포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 총 6일 이내에 지급처리된 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퇴직연금,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1호가목 및 라목의 급여를 의미하고, 퇴직일 이전 급여 사전 청구건은 제외(정년 및 명예퇴직 등) ※ 산출시 고려사항 • 최고목표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목표는 100%로 한다.

(3) 복지사업 활성화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고객의 민간업체 대비 영업성과 향상 노력 및 후생복지 제공액의 확대를 위한 제휴복지사업 수익 증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복지사업 활성화 노력도 = (복지시설 영업성과 향상도×0.6) + (제휴복지사업 수익 향상도×0.4) ① 복지시설 영업성과 향상도 = (공단 골프장 홀 당 내장객 수) - (국내 대중제 골프장 홀 당 내장객 수) - 공단 골프장 홀 당 내장객 수는 당해 연도 천안·화성·남원·김해골프장 홀 당 이용객 수 - 국내 대중제 골프장 홀 당 내장객 수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내 대중제 골프장 홀 당 이용객 수 ② 제휴복지사업 수익 향상도 = $\frac{\text{제휴복지사업 수익액}}{\text{공무원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국내 대중제골프장 홀당 내장객 수는 공시된 전년도 실적으로 적용(평가 연도 실적은 익년도 3~4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홈페이지 공표) • 제휴복지사업 수익액은 민간업체와 제휴를 통한 제휴복지사업 수수료 수입 금액 • 공무원 수는 제휴복지사업 수익 수혜자인 매년도말 재직공무원 수

(4) 청년공무원 주거지원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공직사회의 미래지향성 제고를 위해 청년공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기여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청년공무원 주거지원율 = $\frac{\text{청년공무원 신규 입주세대수}}{\text{신규교체 입주세대수}}$ ② 청년공무원은 만 34세 이하로 임용 후 3년 이하의 공무원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③ 신규교체 입주세대수는 당해연도 신규교체 입주세대

(5) 재직공무원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연금수급자지원사업 [18점]

사업정의	퇴직공무원 및 유족에게 연금 등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수급자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며, 연금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생활지원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연금수급자 디지털 관리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연금수급자 신분변동(연금수급 계좌,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 신청·처리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향상하고 업무처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연금수급자 디지털 관리 노력도 = $\frac{\text{디지털을 이용한 신분변동 처리건수}}{\text{당해연도 전체 신분변동 처리건수}}$ ② 디지털 신분변동 처리건수 : 디지털(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변경 또는 신청하여 처리한 신분변동 건수 ※ 연금수급자 신분변동 : 연금수급 계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변경, 일부정지 신고·조정·해지, 유족연금 승계 신청

(2) 급여환수채권 회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급여지급 이후 형벌 등 급여 제한사유 발생으로 과오 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장기·부실채권을 최소화하는 등 장기 급여환수채권 관리의 적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급여환수채권 회수율 = $\frac{\text{장기 환수채권의 당해연도 회수액}}{\text{당해연도 장기 환수채권 총액}}$ ② 장기 환수채권 총액 : 장기 환수채권의 당해연도 회수액 + 장기 환수채권의 당해연도말 잔액 ※ 환수채권은 관리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복직, 연금 종결·승계 신고지연, 정지기관 신고지연에 한해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산정하며, 회수액 및 잔액은 연체이자 등 포함하여 산정

(3) 급여 미청구자 관리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당해연도 이전 급여 미청구자 및 당해연도 퇴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급여 제도 안내와 급여청구 유도 등을 통한 급여 미청구자 발생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급여 미청구자 관리 노력도 = $\frac{\text{당해연도 급여청구 건수}}{\text{전년도 말 급여 미청구자 및 당해연도 퇴직자 수}}$ ② 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등으로 하고, 퇴직일 이전 급여 사전청구건을 포함

(4) 연금수급자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③ 공상공무원지원사업 [9점]

사업정의	공상공무원 대상 급여의 신속·공정한 지급 및 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의 종합재해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재해보상급여 지급 적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공상공무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보상급여 지급 적기성 = $\frac{\text{지급 심사 결정 14일 초과건수}}{\text{재해보상급여 심사 결정건수}}$ ② 지급 심사 결정 14일 초과건수 : 공단 접수일(또는 인사혁신처 승인결정 통보일)로부터 지급심사 결정일까지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의 합계 (중복급여 지급여부 확인 등 서류보완기간 및 토요일·공휴일 포함) ③ 재해보상급여 심사 결정건수 : 당해연도 공단의 재해보상급여 지급심사 결정건수의 합계 ※ 재해보상급여 :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재심, 소송 등으로 결정내용 변경 및 고객요청에 의한 심사정지 건 제외되며, 요양급여는 공단과 고객이 직접 정산하는 특수요양비(본인 부담액)만 포함

(2) 공무상요양 처리 신속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상요양 신청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상공무원의 빠른 치료와 적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무상요양 처리 신속성 = $\frac{\text{심사 처리일수 합}}{\text{심사 결정건수 합}}$ ② 심사처리일수 합은 평가연도에 심사 결정된 건에 대해 공단 접수일로부터 심사결정일(인사처 이송일)까지 소요기간의 합계 ※ 서류 보완기간 제외 ③ 심사 결정건수 합은 평가연도에 인사혁신처(공단)이 심사 결정한 건의 합계

(3) 공상공무원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 민 연 금 공 단

국민연금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㉓ 사업비집행률		2	
	㉔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㉕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가입자관리사업			21
	(1) 연금수급권 확보 강화		5	
	(2)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3	
	(3) 자격관리의 적정성 제고		3	
	(4) 가입자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연금급여관리사업			20
	(1) 적기 정확한 급여 지급		4	
	(2) 연금지급의 적정성 제고		5	
	(3)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2	
	(4) 연금급여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3. 장애인지원사업			8
	(1) 장애인 편익증진 기여도		2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기 제공 성과		2	
	(3) 장애인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㉞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5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 가·감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㉟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가입자관리사업 [21점]

사업정의	더 많은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과 정확한 자격관리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보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1) 연금수급권 확보 강화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의	더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연금수급권 확보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장기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연금수급권 확보 강화 = $\frac{\text{연금수급권 확보자}^2}{50\text{대 가입자}^1}$ 1) 50대 가입자: 해당년도말 기준, 50대 가입자의 합계(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포함) 2) 연금수급권 확보자: 해당년도말 기준, 50대 가입자 중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 - '30년까지 50대 가입자의 83.1% 연금수급권 확보 목표(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82.4%를 초과하는 목표 설정)

(2)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 취약계층 가입자 수 - 평가연도내 취약계층 가입대상으로 구축된 확인대상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처리된 가입자 수(고지자 기준)의 연간 누계 *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가입확인대상, 중점 추진 사업장

(3) 자격관리의 적정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가입자의 권리 보호와 부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자격 변동사항을 적시·적기 처리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자격관리의 적정성 제고 = $\frac{\text{적기처리건수}}{\text{자격확인 대상 건수}}$ - 자격확인 대상 건수 :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확인 대상으로 발굴*된 건의 총합 * 사용자 미가입 사업장, 분리적용 사업장, 사업장 사용자 변경,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납부재개 예정자 확인 - 적기처리건수 : 자격확인 대상으로 발굴된 건 중 발굴월 다음달까지 자격확인을 완료한 건의 총합

(4) 가입자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연금급여관리사업 [20점]

사업정의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적기에 연금을 지급하고, 정확한 수급권 관리를 통해 국민신뢰와 재정건전성 제고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1) 적기 정확한 급여 지급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연금 급여의 적기 지급 및 정확한 지급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적기 정확한 급여 지급 = $\frac{\text{적기 지급건수}^{1)} }{\text{지급결정건수}^{2)} } \times 0.5 + \frac{\text{지급결정건수} - \text{수급권취소건수}}{\text{지급결정건수}} \times 0.5$ 1) 지급사유 발생일의 익월에 소급분 없이 적기 지급한 건 2)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에 한함
(2) 연금지급의 적정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수급권 확인조사 고도화로 미신고사항 적발 적중률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환수금 징수를 통해 연금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 수급권 확인조사 적중률 향상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 환수금 징수율 제고 : 장기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 표	- 수급권 확인조사 적중률 향상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환수금 징수율 제고 :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 연금지급의 적정성 제고 = ①수급권 확인조사 적중률 향상(2점) + ②환수금 징수율 제고(3점) ① 수급권 확인조사 적중률 향상 = $\frac{\text{미신고 적발건수}^{1)}}{\text{수급권 확인조사 대상자 수}^{2)}}$ 1) 공단의 수급권 확인조사를 통해 미신고사항을 적발하여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처리한 건수 2)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명시한 수급권 확인조사 대상건수 ② 환수금 징수율 제고 = $\frac{\text{당해연도 징수건수}^{1)}}{\text{환수금 징수 대상건수}^{2)}} \times 0.5 + \frac{\text{당해연도 징수금액}^{1)}}{\text{환수금 징수 대상금액}^{2)}} \times 0.5$ 1) 일부납부 포함 2) 분할연금 제외, 과거 3개년 기 발생분 포함(소멸시효 완성건 제외), 국민연금법 제57조의2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한함 3) 중장기 목표 :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2030년 목표(90.0%)로 설정

(3)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매년 기초연금 목표 수급자 수를 확보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력 = 당해연도 말 기초연금 수급자 수 (평가년도 12월의 수급자) ② 최고목표 산출 시 고려사항 - 기초연금법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65세 이상 노인인구 70%)가 명시되어, 최고목표가 직전 공표된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 수로 함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산정시 평가연도 전년도말 외국인(법무부 등록 외국인)과 거주불명등록자(행안부 거주불명등록자), 수급 중 사망으로 인한 상실자 수를 제외 ③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평가대상 연도말 기준 수급자 수로 당해연도분 소급지급자 포함

(4) 연금급여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③ 장애인지원사업 [8점]

사업정의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정확한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 및 신속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1) 장애인 편익증진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자료보완 필요시 장애등록 신청인이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하향 복합지표) * 기관 간 자료 직접 연계, 공단 직접확보(이메일·팩스·문서24), 비용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등 장애인 중심의 無방문·無부담·無결점 행정 확산 노력

기 준 치	① (하향지표)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② (상향지표)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자료보완 축소율(1점) + ② 지원서비스 제공율(1점) ① = $\frac{\text{자료보완 요구 건수}}{\text{심사결정건수}} \times 100$ ② = $\frac{\text{장애정도심사 지원서비스 건수}^{1)}}{\text{장애정도심사 심사결정건수}^{2)}} \times 100$ 1) 기관 간 직접연계 입수자료(진료정보교류시스템, 건강보험공단 신장장애 혈액투석정보 연계) + 직접확보(팩스·e메일·문서24) + 비용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건수 합 2) 전체 장애정도심사 결정건수의 합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기 제공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신속한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 결정을 통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기 제공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기 제공 성과 = $\frac{30\text{일 초과 건수}}{\text{활동지원서비스신청건수}} \times 100$ ② 30일 초과 건수는 공단에 활동지원서비스가 신청된 날로부터 수급자격 심의결과 등록일까지 소요된 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건수의 합 ③ 활동지원서비스 신청건수는 당해연도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건수의 합

(3) 장애인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	
	㉡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스포츠복지증진사업			23
	(1) 국민체육 참여 향상		6	
	(2) 국민건강체력 증진		4	
	(3) 사회적 약자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2	
	(4) 스포츠복지증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2. 체육기금조성사업			18
	(1) 기금조성사업 건전성 제고		6	
	(2)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확대		4	
	(3) 체육기금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스포츠산업육성사업			8
	(1) 스포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	
	(2)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맞춤 일자리 창출		2	
	(3) 스포츠산업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5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총수익은 사업수익과 비사업수익(자본적 지출에 총당하지 않을 국고 보조금 포함)의 합계로 하되, 사업수익 중 경륜·경정 환급금 및 제세, 투표권 당첨금과 비사업수익 중 기금법정공과금은 제외한다. • 순사업비 산정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 계획”에 의한 매출총량 규제 등으로 영업이 중단·축소된 경우 이를 매출액에 반영하여 산출한다.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스포츠복지증진사업 [23점]

사업정의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전국민의 스포츠참여 수준 제고 및 국민 건강체력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참여 보장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스포츠복지 수준을 증진시키는 사업

(1) 국민체육 참여 향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의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확대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국민생활체육참여율 당해연도 정책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민체육 참여 향상 성과 $= 20 + 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국민생활체육참여율}}{\text{당해연도 국민생활체육참여율 정책목표}}$ ②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은 전국민 중 주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이며, 국가승인통계(제113003호)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활용함 ③ 국민생활체육참여율 당해연도 정책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국민생활체육참여율 목표로 함

(2) 국민건강체력 증진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부여, 가중치: 4점)

정의	기관이 추진하는 국민체력100사업의 ①체력측정 및 증진 프로그램 참여, ②개인별 AI 운동처방·코칭, ③스포츠활동 포인트 제공, ④체력등급 향상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통해 국민건강체력 증진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국민체력100 이용 확대, ② 개인별 AI 운동처방·코칭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5개년) ③ 스포츠활동 포인트 확대 , ④국민체력증진 효과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국민체력100 이용 확대(35%) + ②개인별 AI 운동처방·코칭 확대(20%) + ③스포츠활동 포인트 확대(15%) + ④국민체력증진 효과(3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민체력100 이용 확대 = 체력측정인원 +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여인원(오프라인) - 체력증진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국민체력인증센터 및 국민체력100 민간 파트너스를 통해 참여한 인원을 기준으로 함(단, 비대면 이용은 실적에서 제외) ② 개인별 AI 운동처방·코칭 확대 = 체력측정 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운동처방·코칭건수 ③ 스포츠활동 포인트 확대 = 스포츠활동 참여 포인트 수혜인원 수 - [국정과제106] 스포츠활동 참여 포인트 제도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 받은 인원 ④ 국민체력증진 효과 = 체력측정인원 중 체력등급이 향상된 인원 - 체력등급이 향상된 인원은 당해연도 최종 측정등급이 기존등급(최저) 보다 높아진 인원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국민체력100 이용 확대 실적은 지자체·학교·기업, 기타 사업운영과 관련한 정보수집기관 등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개인별 AI 운동처방·코칭 확대는 최고/최저목표 설정 시 5개년 실적이 확보되는 '28년도 이전까지는 평가 당해연도까지 확보된 실적 간의 표준편차를 적용함 • 스포츠활동 포인트 확대는 '27년도부터 목표부여(편차)를 적용하되, '27년도 최고/최저목표 설정 시에는 4개년 표준편차를 적용함 • 국민체력증진 효과 실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를 기준으로 산출함
(3) 사회적 약자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이 추진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주기적인 스포츠참여활동 참여지원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하고, 단위목표도 조정하여 평가함 ②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②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적 약자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성과 =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80%)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20%) ②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 확대 = 스포츠강좌 이용 유·청소년 수 - 스포츠강좌이용 유·청소년 수(5~18세)는 당해연도에 기관의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가맹시설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한 인원의 합계로 함 * 종장기 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장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목표로 설정 (28년 목표 15만명)하며, 해당 종장기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목표를 적용함 * (저소득층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으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 (가맹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시설 및 단기강좌 이용 시설 ③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확대 = 스포츠강좌 이용 장애인 수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자 수(5~69세)는 당해연도에 기관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가맹시설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한 인원의 합계로 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5~69세의 장애인으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 (가맹시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시설 및 단기강좌 이용 시설 ※ 산출시 고려사항 : 스포츠강좌 수강인원 산출시 예산을 매칭하는 지자체를 통해 참여가 최종 확인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4) 스포츠복지증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② 체육기금조성사업 [18점]

사업정의	국민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자원 마련을 위해 투표권·경륜·경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체육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사행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전화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사업
(1) 기금조성사업 건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관리 현황 및 추진성과 평가결과를 통해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건전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최고목표: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상위 기관 득점 최저목표: 당해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최하위 기관 득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금조성사업 건전성 제고(6점) = 경륜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1.9점) + 경정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1.6점)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2.5점) ② 경륜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 = $20+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경륜사업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③ 경정사업 사감위 건전화평가 결과 = $20+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경정사업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④ 체육진흥투표권 건전화평가 결과 = $20+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사감위 건전화 평가 득점}-\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 기관 소관사업 중 하나가 최상위 득점을 달성한 경우, 나머지 사업의 최고 목표는 최상위 득점을 제외한 차상위 득점을 적용하고, 차상위 득점도 기관 소관사업이 달성한 경우 잔여사업은 3위 득점을 최고목표로 적용함

(2)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확대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목 표	정부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정책목표와 과거실적 추세에 도전성을 반영한 값 중 높은 값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확대 성과 = $\frac{\text{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text{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 ②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실적은 당해연도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법정전입금으로 함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정책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에 제출하는 「기금 중기사업계획」 상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차년도 국민 체육진흥기금 법정전입금 조성 계획으로 함 ④ 과거실적 추세에 도전성을 반영한 값 = 전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t-2년) 대비 (t-1년) 증가율의 2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목표금액과 실적금액 산출 시 법정전입금 외 이자와 시효만료로 인한 전입금은 제외함 • '25년도 법령에 의한 사업자 교체 사유로 투표권 사업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당해연도 투표권 사업의 일평균 기금 법정전입금을 실적으로 산입하여 산출함.

(3) 체육기금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스포츠산업육성사업 [8점]

사업정의	민간주도 스포츠산업 성장 기반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국내 스포츠산업 성장에 기여

(1) 스포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스포츠중소기업의 사업역량 강화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지원기업의 매출액 증가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스포츠산업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증가율과 과거 3개년 스포츠산업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증가율의 평균값 중 최고값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스포츠산업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 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스포츠산업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 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포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20 + 80 \times \frac{\text{공단 지원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공단 지원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기관이 수행하는 「스포츠산업 선도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에서 기업체 수로 나누어 산출함 ③ 스포츠산업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국가승인통계(제113021호)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표하는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체 매출액을 전체 기업체 수로 나누어 산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지원기업의 매출액은 지원기업이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증빙함 • 당해연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통계자료 확보불가 시 최근년도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산정함

(2)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 맞춤 일자리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스포츠중소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기업의 고용인원 증가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 × 120% 최저목표: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스포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인원 성과(50%) + ② 스포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성과(50%) ① 스포츠 중소기업 $\frac{\text{지원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 수}}{\text{일자리 창출인원 성과}} = \frac{\text{지원 예산}}{\text{지원 예산}}$ - 지원기업 : 당해연도 공단의 「창업 및 엑셀러레이터 지원사업, 예비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 수 : 지원기업의 전년대비 당해연도 고용인원 증감의 합 - 지원예산 : 당해연도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 금액 ② 스포츠 중소기업 $\frac{\text{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수}}{\text{일자리 창출기업 성과}} = \frac{\text{지원기업 수}}{\text{지원기업 수}}$ -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수 : 지원기업 중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수의 합 - 지원기업 수 : 전체 지원기업 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 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피보험자수 확인이 불가할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측정함 • ‘스포츠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성과’ 평가방식은 ‘28년도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

(3) 스포츠산업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 부채/자산비율		2	
	㉡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기술금융지원사업			27
	(1) 기술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고용 성과		6	
	(2) 포용적 산업 생태계 활성화 노력도		4	
	(3) 혁신형 고성장 전망기업 성장지원 노력도		4	
	(4) 기술금융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2. 기술평가사업			13
	(1) R&D기업 혁신지원을 통한 매출액 성과		4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노력도		3	
	(3) 기술평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기술금융관리사업			9
	(1)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강화		1	
	(2)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2	
	(3)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2	
	(4) 기술금융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채/자산 비율은 재정상태표에서 집계된 당해연도말 부채 및 직전연도말 자산을 기초자료로 함 - 지표산출을 위한 재무자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완성보증계정을 합하여 산출함

나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5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가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지표산출을 위한 재무자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완성보증계정을 합하여 산출

□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기술금융지원사업 [27점]

사업정의	담보는 부족하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여 창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1) 기술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고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술기업 및 혁신성장성이 높은 산업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통한 고용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지원 고용 성과 = $(\text{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 성과} \times 0.1) + (\text{혁신성장산업 고용유지율} \times 0.4) + (\text{신규 일자리창출 기업수 성과} \times 0.5)$ ② 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 성과 = $\frac{\text{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text{총신규보증금액}}$ - 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의 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 ※ 당해연도 신규보증 지원받은 기업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달 대비 해당 연도말의 인원수 차이 - 총신규보증금액 : 당해연도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 -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에 따라 직·간접 피해기업에 지원한 보증(Track 1·2에 한함)은 평가대상인 당해연도 신규보증에서 제외 ※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용지침」(25.4.29)에 따른 보증 ③ 혁신성장산업 고용유지율 = $\frac{\text{당해연도말 고용유지인원수}}{\text{신규보증 지원월말 고용인원수}}$ - 당해연도말 고용유지 인원수 : 지원월말 대비 당해연도말 고용인원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된 기업의 지원월말 고용인원수의 합 - 신규보증 지원월말 고용인원수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의 지원월말 고용인원수 합계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신규 일자리창출 기업수 성과 = $\frac{\text{당해연도말 일자리창출 기업수}}{\text{신규보증 지원 기업수}}$ - 당해연도말 일자리창출 기업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달 대비 평가년도말 고용인원수가 증가한 기업체 수의 합 - 신규보증 지원 기업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체 수의 합 ※ 산출시 고려사항 • 평가대상보증은 기술보증에 한한다. • 신규보증기업의 고용인원수는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적용. 단, 고용보험 가입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수 적용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 등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따라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품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보증해지기업 및 사고기업은 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 총신규보증금액, 당해연도말 고용유지인원수, 신규보증 지원월말 고용인원수, 당해연도말 일자리창출 기업수, 신규보증 지원 기업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포용적 산업 생태계 활성화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포용적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술금융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포용적 산업 생태계 활성화 노력도 $= \frac{\text{포용적 산업분야 신규보증지원금액}}{\text{총신규보증금액}}$ ② 포용적 산업분야 신규보증지원금액: 청년기술창업보증, 안전인프라보증, 소셜벤처임팩트보증의 신규보증지원금액의 합 - 청년기술창업보증 신규보증지원금액: ‘기술창업보증 운용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청년창업기업보증을 지원한 보증금액 - 안전인프라보증 신규보증지원금액: ‘안전인프라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안전인프라보증을 지원한 보증금액 - 소셜벤처임팩트보증 신규보증지원금액: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셜벤처(S-Venture) 임팩트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소셜벤처임팩트보증을 지원한 보증금액 - 총신규보증금액 : 당해연도 신규보증을 지원한 보증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 평가대상보증은 기술보증에 한한다.

(3) 혁신형 고성장 전망기업 성장지원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형 고성장 전망기업 발굴·육성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술금융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혁신형 고성장 전망기업 성장지원 노력도 $= (\text{AI·미래전략산업분야 지원 노력도} \times 0.5) + (\text{AI·미래전략산업분야 일자리창출 성과} \times 0.5)$ ② AI·미래전략산업분야 = $\frac{\text{AI·미래전략산업분야 신규보증지원금액}}{\text{총신규보증금액}}$ - AI·미래전략산업분야 신규보증지원금액: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한 보증금액 - 총신규보증금액 : 당해연도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 ③ AI·미래전략산업분야 = $\frac{\text{당해연도말 일자리창출 기업수}}{\text{일자리창출 성과}} = \frac{\text{신규보증 지원 기업수}}{\text{신규보증 지원 기업수}}$ - 당해연도말 일자리창출 기업수: 당해연도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신규 지원받은 기업의 보증지원 월말 대비 해당 연도말에 고용인원수가 증가한 기업체 수 - 신규보증 지원 기업수 : 당해연도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한 기업체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평가대상보증은 기술보증에 한한다. • '26년 평가시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7년 평가시 과거 4개년 표준편차 활용하고, '28년 평가부터 과거 5개년 표준편차활용 • 신규보증기업의 고용인원수는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적용. 단, 고용보험 가입자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수 적용 • 보증해지기업 및 사고기업은 당해연도말 일자리창출 기업수, 신규보증 지원 기업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기술금융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3점)	

② 기술평가사업 [13점]

사업정의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 투자, 기술이전, 기술보호, 벤처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

(1) R&D기업 혁신지원을 통한 매출액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R&D평가를 통해 도전적인 기술혁신기업을 지원하고, 지원기업의 매출액 성과를 측정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R&D평가기업 매출액 성과 = $\Sigma(\text{R\&D평가기업 매출증가액})$ ② R&D평가기업은 'R&D보증 취급기준'에 의한 개발단계 R&D보증 및 정부출연R&D보증 평가기업을 말함 ③ R&D평가기업 매출증가액(억원)은 당해연도 R&D 신규보증 지원기업의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매출증가액을 말함 - R&D평가기업 매출증가액(억원) = 당해연도 지원기업의 당해연도 매출액 - 당해연도 지원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전년도 매출액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연도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사·회계사로부터 확인된 매출증빙확인서 자료에 의한다. • '25년도까지의 매출증가액 실적 산정을 위한 당해연도, 전년도 매출액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역량 제고 및 공정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노력도 = $\frac{\text{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건수}}{\text{최근 3개년 평균 중소기업수}}$ ②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건수는 당해연도에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 사이트 (Tech-Safe)를 통해 지원한 기술임치 및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TTRS) 실적에 의함 ③ 중소기업수는 국가승인통계 제142019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기본통계' 결과에 의한다.

(3) 기술평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기술금융관리사업 [9점]

사업정의	보증 부실화 사전예방부터 채권회수 및 재기지원까지 통합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확보로 기술금융 선순환 체계 구축

(1)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부실채권 정리강화 노력을 통한 기관 재정건전성 제고 기여도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실채권 정리강화 노력도 = $\frac{\text{부실채권 정리실적}}{\text{기초구상권잔액}}$ ② 부실채권 정리실적 : 기초 구상권(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잔액에 대한 채무조정 금액, 채권회수금액 및 채권소각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채무조정 금액 : 주채무자에 대한 기관 자체 채무조정 구상권원금,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한 채무조정, 법원에 의한 회생 및 개인회생인가 관련 구상권원금의 합계 - 채권회수금액 : 기초 구상권으로부터 평가기간내 회수한 금액(출자전환 제외) - 채권소각금액 : 기초 구상권으로부터 평가기간내 기관 자체 채권소각한 구상권 원금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평가대상은 기술보증관련 구상권에 한함 • 부실채권 정리실적 중에 대내변수(자체 채무조정, 채권회수)에 대해서는 가중치 0.8 적용 • 부실채권 정리실적 중에 대외변수(신용회복, 기업회생, 개인회생) 및 채권 소각금액에 대해서는 가중치 0.2 적용

(2)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를 통한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목표	(목표부여) 최고목표 : 기준치×120% (목표부여)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 실패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 재기지원 신규보증 실적 - 재기지원 신규보증 실적 : 기금 내규에 따른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채무조정완료자, 매각채권 채무자, 관리종결 확정자'에 대한 보증의 신규보증 합산금액

(3)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의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를 통한 기금보증자산의 건전성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표	재정경제부에서 승인한 당해연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사고율의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증기업의 사고율 관리 달성도 = $\frac{\text{사고율실적}}{\text{목표사고율}} \times 100$ ② 목표사고율은 재정경제부에서 승인한 당해연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사고율의 90%를 말함 ③ 사고율실적 = $\frac{\text{사고금액}}{\text{보증잔액}}$ - 사고금액 : 사고발생금액에 사고정상화금액을 제외한 사고금액 - 보증잔액 : 당해연도말 현재 보증잔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직접보증 기준(P-CBO보증 및 재보증은 제외)

(4) 기술금융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신용보증기금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 부채/자산비율		2	
	㉡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정책금융사업			24
	(1) 보증기업의 일자리 성과 창출		6	
	(2) 미래전략산업(ABCDEF) 육성 지원 노력도		5	
	(3) 정책금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2. 혁신금융사업			15
	(1)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3	
	(2)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확대 노력도		3	
	(3)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3	
	(4) 혁신금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지속성장금융사업			10
	(1) 부실채권 정리 강화		2	
	(2)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2	
	(3) 리스크관리 강화		2	
	(4) 지속성장금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㉔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5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정책금융사업 [24점]

사업정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미래성장과 위기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기반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

(1) 보증기업의 일자리 성과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생산적 금융지원을 통한 보증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증기업의 일자리 성과 창출 = 보증기업의 일자리창출 인원수 성과(3점) + 일자리창출기업 비중 성과(3점) ② 보증기업의 일자리창출 인원수 성과 = $\frac{\text{신규 일자리창출 인원수}}{\text{총신규보증금액}}$ -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의 신규 보증을 지원받은 달 대비 평가년도말 고용인원수 증감의 합 - 총신규보증금액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의 합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③ 일자리창출기업 비중 성과 = $\frac{\text{신규 일자리창출 기업수}}{\text{총신규보증 기업수}}$ - 신규 일자리창출 기업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의 신규 보증을 지원받은 달 대비 평가년도말 고용인원수가 증가한 기업체 수의 합 - 총신규보증 기업수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기업체 수의 합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 고용인원수는 평가년도 말 현재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수'를 적용. 단, 피보험자수 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인원수로 적용 ※ 산출 시 고려사항 •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위기대응 특례보증: 금융위원회 「위기대응 특례보증 운용지침」(’25.5.12.)에 따른 보증 • ’26년도는 과거 3개년, ’27년도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를 적용하고, ’28년도부터는 과거 5개년 표준편차를 적용

(2) 미래전략산업(ABCDEF) 육성 지원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첨단산업 분야 ABCDEF(산업AI·바이오·컬처·방산·항공드론·기후테크·팩토리)에 대한 금융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래전략산업(ABCDEF) 육성 지원 노력도 = $\frac{\text{미래전략산업 품목 영위기업 신규보증금액}}{\text{총신규보증금액}}$ - 분자 : 「혁신성장 공동기준」 상 미래전략산업 품목 영위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신규보증 지원금액의 합 - 분모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의 합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② 미래전략산업 품목 영위기업 : 새 정부의 10대 첨단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에 부합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상 미래전략산업** 연관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 * 10대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 미래전략산업(ABCDEF): ^A산업AI, ^B바이오, ^C컬처, ^D방산·항공·드론, ^E기후테크, ^F팩토리 관련 8개 테마, 22개 분야에 해당하는 총 177개 품목 ※ 산출 시 고려사항 • ‘미래전략산업 품목 영위기업 신규보증금액’에서 병·의원(Q86), 동물병원(M731), 전문자격 기반 업종(M711, M712), 음식점(I56), 도·소매업(G) 영위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금액은 제외(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적용) • ’27년도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

(3) 정책금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3점)

② 혁신금융사업 [15점]

사업정의	플랫폼 금융, 기업 데이터, 유동화회사보증, 직접투자 및 매출채권보험 등 다각적인 혁신금융 시스템 제공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1)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금액 실적(1.5점) +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업체수 실적(1.5점) ②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 $\frac{\text{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신규보증금액}}{\text{총신규보증금액}}$ ③ 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 $\frac{\text{고객 친화형 플랫폼 기반 신규보증업체수}}{\text{총신규보증업체수}}$ - 분자 : 당해연도에 신보 플랫폼(신보 ON-Biz) 및 외부 금융회사 플랫폼을 통해 'Easy-One 보증'을 신규로 지원한 금액, 업체수의 합 - 분모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 업체수의 합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2)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확대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신용보험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확대 노력도 = $\frac{\text{소상공인보험 인수금액}}{\text{총신용보험 인수금액}}$

측정 산식 및 변수	- 소상공인보험 인수금액 : 당해연도에 인수한 소상공인보험 보험가입 매출채권 총액 - 총신용보험 인수금액 : 당해연도에 인수한 보험가입매출채권 총액 ② 소상공인보험 : 「정책 우대기업에 대한 매출채권보험 운용기준」에 따른 소상공인 특화 보험 - 소상공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업종별 매출액, 상시근로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 5인(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당기매출액 :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10억원 ~ 120억원 이하) (2)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받은 기업

(3)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노력도 = $\frac{\text{지식재산 기반 신규보증금액}}{\text{총신규보증금액}}$ - 분자 : 당해연도에 'IP-Value 보증' 또는 'IP-SMART 보증'을 적용하여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의 합 - 분모 : 당해연도에 신규보증을 지원한 금액의 합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② IP-Value 보증, IP-SMART 보증 : 「지식재산 보증 운용기준」에 따른 지식재산(IP)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IP-Value 보증 : 지식재산가치 평가시스템(KIVE)으로 평가한 최종 지식재산가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소요자금을 보증 - IP-SMART 보증 :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하여 해당 지식재산권 활용에 따른 소요자금을 보증 ③ 지식재산가치 평가시스템(KIVE) : 「지식재산가치 평가시스템(KIVE) 운용기준」에 따른 지식재산가치 평가방법

(4) 혁신금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지속성장금융사업 [10점]

사업정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와 채권관리 효율화로 기본재산 확충을 도모하며,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기업과 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
(1) 부실채권 정리 강화(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의	정책금융기관의 기본재산 확충, 구상권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부실채권 정리 강화} = \frac{\text{기본재산 확충실적}}{\text{기본재산 확충 대상채권}}$ ② 기본재산 확충실적 : 기초 구상권 원금 잔액 및 당해연도 대위변제로 신규 발생한 구상권 원금에 대한 채권회수 금액, 채무조정 금액(법인 기업에 대한 보증 및 소상공인 위탁보증 관련 구상권은 제외) - 채무조정 금액은 신보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한 채무조정, 법원에 의한 회생 및 개인회생인가 관련 구상권 원금으로 함
(2)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의	선순환의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패 중소기업의 재기지원 확대 = 재기지원 신규보증실적 ② 재기지원 신규보증실적 : 신보의 재도전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법적 변제외무 종결기업보증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 지원하는 재창업지원보증을 신규보증 합산금액
(3) 리스크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의	보증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리스크관리 강화 = $\frac{\text{부실률 목표}}{\text{부실률 실적}}$ ② 부실률 목표는 평가 당해연도 업무계획에 대한 주무부처 승인목표의 90%로 설정함 ③ 부실률 실적 = $\frac{\text{당해연도 부실발생 금액} - \text{부실정상화 금액}}{\text{연도말 보증잔액}}$ (직접보증 기준. 단, P-CBO, 건설브릿지론보증은 제외)
(4) 지속성장금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	
	㉡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정책자금 지원사업			28
	(1)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		6	
	(2)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성과		6	
	(3)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3	
	(4) 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2. 수출지원 사업			11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성과		3	
	(2)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성과		3	
	(3) 수출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인력양성 사업			10
	(1)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성과		5	
	(2) 인력양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㉞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6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㉟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정책자금 지원사업 [28점]

사업정의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미래신기술 기업 일자리 창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리스크 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미래신기술 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 =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 성과(0.5) +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수 성과(0.5) ②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 성과(3점) = $\frac{\text{미래 신기술 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text{총 지원액(억원)}}$ -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은 달 대비 해당 연도말 1인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수. 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외 - 총지원액(억원) : 정책자금 연간 총지원액(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취급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함. 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외) ③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수 성과(3점) = $\frac{\text{미래 신기술 지원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수}}{\text{총 지원기업 수}}$ -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은 달 대비 해당 연도말 1인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수.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제외 - 총 지원기업 수 : 정책자금 연간 총 지원기업 수(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취급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함. 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미래 신기술 지원기업 :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미래 신기술 기업 • 미래신기술기업에 대한 분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립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름 • 일자리 창출 인원 수 산출은 상용직 국민연금 가입자수, 상용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의함

(2)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성과 = 창업초기 기업 성장지원 확충(0.5) + 혁신기업 성장역량 확충(0.5) ② 창업초기 기업 성장지원 확충(3점) = 창업초기(업력 3년미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기업 기업당 지원액(억원)/창업초기 기업(업력 3년미만) 정책자금 기업당 지원액(억원) * 창업초기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기업 : 업력 3년 미만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기업 ③ 혁신기업 성장역량 확충(3점) = 혁신기업 시설투자 지원액(억원) / 업력 7년 이상 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액(억원) - 혁신기업 시설투자 지원액 : 업력 7년 이상의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지원 ※ 산출시 고려사항 • 혁신성장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립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참고1 「혁신성장 분야」에 따름 • 소재·부품·장비 산업 영위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립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름

(3)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사고율 관리를 통한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목표 사고율 비중의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고율 관리 달성도 = (사고율 실적 / 목표 사고율) × 100 ② 목표 사고율은 당해연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목표의 90%로 설정함 ③ 사고율 실적 = 사고금액 / 직접대출 잔액 * 사고금액 : 당해연도 사고발생 금액에서 사고정상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직접대출 잔액 : 당해연도말 직접대출잔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출처 : 차세대 시스템 내에서 구현되는 ERMs(전사통합위험관리 시스템). 단, 대출이 아닌 상품(스케일업금융, 매출채권팩토링)은 제외
(4) 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3점)	

② 수출지원 사업 [11점]

사업정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통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성공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성과 = $\frac{\text{수출기업화 성공기업 수}}{\text{내수기업 지원기업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하는 관세청 수출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청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실적은 무역협회 자료 포함 •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 수출기업화 성공기업 : 당해연도 1,000불 이상 수출 기업 • 대상사업 : 수출바우처,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온라인수출플랫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단, 사업 구조상 개별 참여기업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

(2)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수출기업의 수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성과 = $\frac{\text{수출기업 수출액 합계}}{\text{수출기업 지원기업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하는 관세청 수출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청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실적은 무역협회 자료 포함 - 수출기업 : 전년도 1,000불 이상 500만불 미만 수출실적 보유 지원기업 - 대상사업 : 수출바우처,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온라인수출플랫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단, 사업 구조상 개별 참여기업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

(3) 수출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3] 인력양성 사업 [10점]

사업정의	중소벤처기업의 재직자 및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등 인재양성 노력 성과를 평가한다.

(1)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예정)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성과 = 투자유치 건수 / 졸업(예정) 기업수 ※ 산출시 고려사항 : • 투자실적 인정 기준 - (인정대상) 벤처투자법 제2조 제1호의 “투자”에 해당하는 자본적 투자(보통주, 전환주 등 종류주식) 및 채권적 투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를 인정하며, 투자자*는 개인·법인·펀드 등 상관없이 모두 인정 * 단, 중진공 직접 투자는 제외하며, 크라우드펀딩은 투자형에 한해 인정 - (인정기간 및 증빙서류) 해당 사업연도 내 투자계약서, 투자확인서, 주식인수증 등을 통해 계약일자, 인수일자 등 확인 - (인정금액)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 이상 투자건에 한해 실적 인정 • 졸업(예정)기업은 당해연도 입교기업 중 중도포기, 중도탈락, 성공평가 실패기업 제외 • '26년 평가시 과거 4개년 표준편차, '27년 이후 과거 5개년 표준편차 활용
(2) 인력양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 부채/자산비율		2	
	㉡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21
	(1)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성과		4	
	(2) 글로벌 中企 육성 지원 성과		5	
	(3)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무역보험 지원구조 혁신 성과		2	
	(4)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15
	(1) 中企 해외 프로젝트 활성화 성과		3	
	(2) 글로벌 수준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성과		5	
	(3)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13
	(1) 5극3특 균형 성장 수출기반 확대 성과		2	
	(2) 무역보험 리스크관리 성과		3	
	(3) 국외채권 회수 성과		2	
	(4)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1} \text{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textcircled{2} \text{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5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1} \text{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textcircled{2} \text{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총수익은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수익(지급준비금 환입액 제외),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등의 합계액으로 함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21점]

사업정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정책보험(금융)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1)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글로벌사우스 시장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성과} = \frac{\text{글로벌사우스지역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text{글로벌사우스지역 우리나라 당해연도 수출실적}}$ ② 글로벌사우스 지역은 '24.10.31자 기준 「글로벌사우스 및 주력시장 단기 수출보험 특별지원 지침」에 따른 아래 국가로 함 ASEAN 10개국 + 인도, CIS 11개국 + 몽골, 5~7등급 국가 (아르헨티나, 이란, 쿠바 제외) ③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 대상종목은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거래를 지원하는 종목인 단기수출보험(재판매),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 단기수출보험(글로벌네트워크탑업),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연간계약형-재판매), 단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 재판매)를 제외함 ④ 우리나라 당해연도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 실적을 기준으로 함

(2) 글로벌 中企 육성 지원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수출신용보증·보험 공급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육성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中企 육성 지원 성과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총 지원실적 $\times$ 1/2)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기업 수 $\times$ 1/2) ② 중장기 목표 - 중소기업 무역보험 총 지원실적 :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2030년 목표 (120조원)로 설정 -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기업 수 :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 2030년 목표 (54,000개 사)로 설정
(3)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무역보험 지원구조 혁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기업 다이렉트 지원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times$ 120% 최저목표 : 기준치 $\times$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다이렉트 무역보험 지원 실적
(4)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15점]

사업정의	중장기수출보험 등 정책보험(금융)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프로젝트 및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
(1) 中企 해외 프로젝트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전략, 비전략시장 및 위험시장에 대한 자본재 수출(선박 제외)과 해외사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中企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 상 최근 5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주 비중 중 최고값 ② 中企 해외 프로젝트 지원 확대 성과 - 최고목표 : 기준치×120% -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中企 해외 프로젝트 활성화 성과 = (中企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1/2) + (中企 해외 프로젝트 지원 확대 성과×1/2) ② 中企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성과 = $\frac{\text{中企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text{총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 - 中企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종목 지원실적(선박수출 건 제외)으로 함 ※ 선박의 경우, 조세회피지에 대한 편의치적이 대부분이고,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 산정 시 제외 - 총 해외 프로젝트 금융 창출 실적은 연간 총 해외 프로젝트 지원실적으로 함 ③ 中企 해외 프로젝트 지원 확대 성과 =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 종목 직접 이용 중소·중견기업 수(선박수출 지원 건 제외) ※ 선박의 경우, 조세회피지에 대한 편의치적이 대부분이고,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지원 확대 성과 산정 시 제외 ④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종목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수출보증보험
(2) 글로벌 수준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성과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공사의 해외시장 프로젝트 수주지원 성과를 글로벌 TOP ECA 수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기관 직전 3개년 평균 지원실적) x (1+글로벌 Top5 ECA 직전 3개년 지원실적 합계 연평균 증가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수준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성과 = 당해연도 중장기성 보험 지원실적 ② 중장기성 보험 지원실적은 MLT(Medium and Long Term Export Credit) 및 OCB(Other Cross-Border Credit) 종목 지원실적 합계로 함(단, 기관 지원실적에서 방위산업 수출 지원실적 및 “MASGA” 프로젝트 지원 실적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MLT(Medium and Long Term Export Credit)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 OCB(Other Cross-Border Credit) :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③ 방위산업 수출 지원실적은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수입자로 금융을 지원한 실적을 의미 ④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지원 실적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체결 예정인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전략적 투자양해각서(MOU) 등에 따른 미국향 선박 수출 지원 실적을 의미 ⑤ 글로벌 TOP5 ECA는 Berne Union 제공 중장기성 보험 지원실적 기준 공사를 제외한 상위 5개 ECA(Export Credit Agency)로 함 ※ Berne Union : 국제신용·투자보험자 연맹(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 ※ ECA :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자국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보험, 신용보증 등을 제공하는 기관 ⑥ 글로벌 Top5 ECA 직전 3개년 지원실적 합계 연평균 증가율은 연도별 지원실적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기관 직전 3개년 평균 지원실적을 목표로 함
(3)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13점]

사업정의	리스크 관리 및 회수 기능 강화를 통한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한 무역보험 저변 확대에 지속가능한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1) 5극3특 균형 성장 수출기반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대한 수출기반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5극3특 균형 성장 수출기반 확대 성과 = $\frac{\text{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영위하는 무역보험 이용기업수}}{\text{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영위하는 전년도 전체 수출기업수}}$ ※ 지자체 등 단체가 보험계약자인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또는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수출안전망은 제외 ②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4.7.1.(11차))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5.8.22. 관계부처합동)」에 의거, 전체 산업1,205개 중 360개로 분류함 ③ 수도권 소재 기업은 무역보험 이용기업수 및 전체 수출기업수에서 제외함 ④ 전체 수출기업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를 기준으로 함

(2) 무역보험 리스크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무역보험 사고율 관리를 통한 기금의 건전성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재정경제부에서 승인한 당해연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당해연도 목표 사고율×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무역보험의 리스크관리 성과 (사고율) = $\frac{\text{당해연도 보험금 지급액}}{\text{당해연도 인수실적}} \times 100$ ② 보험금 지급액 및 인수실적 대상종목은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을 제외함

(3) 국외채권 회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무역보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외채권의 사후적인 회수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근 3년 실적 평균의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외채권 회수성과 = $\frac{\text{국외채권 회수금액}}{\text{국외채권 평균잔액}}$ ② 국외채권은 위험소재지가 해외인 무역보험 종목(중장기성 종목 제외)의 사고로 인하여 공사가 국외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비상 위험 채권* 잔액 제외)을 의미 * 비상위험 채권 : 전쟁, 지불유예(Moratorium), 경제제재(Sanction) 등 비상위험 발생에 따른 외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국외채권 ③ 국외채권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월말 잔액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

(4)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자산관리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	
	㉡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가계안정지원사업			13
	(1)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성과		2	
	(2)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성과		4	
	(3) 가계안정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기업안정지원사업			19
	(1) 펀드조성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6	
	(2) 자산매입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3	
	(3) 금융지원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2	
	(4) 기업안정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17
	(1) 공공개발사업 확대 성과		3	
	(2) 근로자 및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1	
	(3) 국유재산 관리·활용 성과		4	
	(4) 압류재산 매각 성과		1	
	(5)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정 의	기금운용관리는 2025년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기금운용평가의 자산운용부문 평가결과 중 “비계량지표” 점수와 “계량지표”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평가함

(3) 효율성 관리 [1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가계안정지원사업 [13점]

사업정의	취약 가계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가계의 신용회복 및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1)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장기연체자에 대한 장기연체 해소 노력을 통해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성과 $= (\text{장기연체 채무조정률} \times 0.6) + (\text{장기연체 채무종결률} \times 0.4)$ ② 장기연체 채무조정률 = $\frac{\text{연중 대내외 채무조정 장기연체 차주수}}{\text{보유 장기연체 차주수}}$ ③ 장기연체 채무종결률 = $\frac{\text{연중 소각 장기연체 차주수}}{\text{보유 장기연체 차주수}}$ - 대내외 채무조정 장기연체 차주수 : 캠프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한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을 통한 장기연체 해소 개인 차주수 - 보유 장기연체 차주수 : 직전연도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 차주수

(2)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성과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차주수 × 0.5)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액 × 0.5) ②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차주수(채무액) :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한 부실(우려) 채권 중 공사가 매입하여 채무조정(안)을 수립하고 약정을 지원한 차주수(채무액)
(3) 가계안정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기업안정지원사업 [19점]

사업정의	위기 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1) 펀드조성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 ①~② 목표부여, ③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 의	구조개선기업 등에 대한 펀드조성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펀드투자기업 정상영업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선박펀드 해운경쟁력 개선도)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③ (지원기업의 고용 개선도)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
목 표	① (펀드투자기업 정상영업률)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② (선박펀드 해운경쟁력 개선도)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③ (지원기업의 고용 개선도)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펀드투자기업 정상영업률(3점) - 펀드투자기업 : 공사가 출·투자한 기업지원펀드(PEF, PDF)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 기업 - 펀드투자기업 정상영업률 = $\frac{\text{(t-3)년도 펀드투자기업 중 t년도까지 영업중인 기업수}}{\text{(t-3)년도 펀드투자 기업수}} \times 0.2 + \frac{\text{(t-2)년도 펀드투자기업 중 t년도까지 영업중인 기업수}}{\text{(t-2)년도 펀드투자 기업수}} \times 0.3 + \frac{\text{(t-1)년도 펀드투자기업 중 t년도까지 영업중인 기업수}}{\text{(t-1)년도 펀드투자 기업수}} \times 0.5$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선박펀드 해운경쟁력 개선도 (2점)

$$\text{선박펀드 해운경쟁력 개선도} = \frac{\text{보유 선박 중 관련법령 등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text{총 보유선박 수}}$$

※ 세부 산식

$$\begin{aligned} & \frac{\text{①선박평형수처리 기준 인증 선박 수}}{\text{총 보유선박 수}} \times 25\% + \frac{\text{②질소·황산화물 배출저감 기준 인증 선박 수}}{\text{총 보유선박 수}} \times 25\% \\ & + \frac{\text{③선박에너지효율지수 인증 선박 수}}{\text{총 보유선박 수}} \times 25\% + \frac{\text{④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급 인증 선박 수}}{\text{총 보유선박 수}} \times 25\% \end{aligned}$$

- 관련 법령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선박법)
- 친환경선박은 친환경선박법(2025.10.1.시행) 제2조제3항 가목에서 정의하는 선박으로 한다.
- 세부 기준(‘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2025.10.31.시행) 제2조 준용)
 - 세부산식 ① 관련 법 규칙 등에 따른 BWTS(선박평형수처리장치) 설치 인증 선박 수
 - 세부산식 ② 관련 법 규칙 등에 따른 IAPP(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인증 선박 수
 - 세부산식③ 관련 법 규칙 등에 따른 IEEC(국제에너지효율증서), EEDI(에너지 효율설계지수) 등 관련 인증 선박 수
 - 세부산식 ④ 관련 법 규칙 등에 따른 CII(탄소집약도)등급 중 D등급 이상 선박 수
- ‘총 보유선박 수’는 회계연도말 선박펀드를 통해 보유 중인 선박(신조선은 선박인도일 기준)을 말한다.
- 관련 법령, 기준, 규칙 등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 기준에서 제외되는 선박(중화물선박, 5천톤 미만 선박 등)은 세부지표별 산출에서 제외(분모·분자) 한다.

③ 지원기업의 고용 개선도(1점)

$$\text{고용 개선도} = \frac{\text{당해연도 지원기업 중 고용개선(유지)된 기업 수}}{\text{당해연도 지원기업 수}}$$

- 고용개선은 지원 전 월말 고용인원 수 대비 당해연도말 고용인원수가 증가(유지)한 경우로 함(지원 전 월말 자료 조회 불가 시 지원 전 최근 자료 활용)

측정 산식 및 변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또는 공적연금상 근로자 수로 함 - 평가대상은 사업기간·지원규모·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지원펀드, 선박펀드로 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중장기 목표 :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상 2030년 목표로 설정

(2) 자산매입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구조개선기업 등에 대한 자산매입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 직전 5개년 인수기업 산업평균 법인 연체율* * 나이스평가정보(주) (KIS Line) 고시 연체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산매입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 구조개선기업 임대료 정상상환율 ② 구조개선기업 임대료 정상상환율 = 구조개선기업 임대료 정상상환 금액 ÷ 구조개선기업 임대료 정상상환 계획금액* * 공사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결 및 금융위원회 제출 금액 ※ 지원종료(우선매수권 행사, 임대차종료 등) 인수자산의 임대료는 계획 및 실적에서 제외

(3) 금융지원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회생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1- 직전 5개년도 회생인가후 평균 폐지율* * 대법원 사법연감 [9.도산관련사건표 가.회생(합의)사건]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지원형 경영정상화 지원 성과 = 회생기업 정상영업률 ② 회생기업 정상영업률 = $\frac{\frac{(t-3)\text{년도 자금대여기업 중 } t\text{년도까지 영업중인 기업수}}{(t-3)\text{년도 자금대여 기업수}} \times 0.2 + \frac{\frac{(t-2)\text{년도 자금대여기업 중 } t\text{년도까지 영업중인 기업수}}{(t-2)\text{년도 자금대여 기업수}} \times 0.3 + \frac{\frac{(t-1)\text{년도 자금대여기업 중 } t\text{년도까지 영업중인 기업수}}{(t-1)\text{년도 자금대여 기업수}} \times 0.5}{3} \times 0.5$ ※ 자금대여기업은 캠퍼기업지원금융(주)을 통해 대여의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한 회생중이거나 회생종결한 기업으로 하고, 영업중인 기업은 폐업 또는 파산 진행중이지 않는 기업으로 함. 또한, 중복지원한 기업은 처음 지원한 연도만 실적으로 인정

(4) 기업안정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17점]

사업정의	국·공유지 개발 활성화, 국유재산 매각·대부 등 활용 확대 및 체납조세정리 등을 통해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하는 사업

(1) 공공개발사업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공공개발사업 및 주택 개발 승인 확대를 통해 개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후 국유청사 활용 확대(1.5점) - 측정산식 = 총괄청에서 확정한 국유 복합개발(청사) 예정재산 연면적(m ²) -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노후 국유청사(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개발 세부제안서 중 개발예정재산으로 확정한 사업에 한함 ②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1.5점) - 측정산식 = 총괄청에서 확정한 수도권 주택 공급 예정재산 연면적(m ²) -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국·공유지(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개발 세부제안서 중 개발예정재산으로 확정한 사업의 주거용도 연면적(m ²)에 한함 - 주거용도: '건축법' 상 주거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2) 근로자 및 국민 안전사고 감축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점)

정 의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체제 구축을 통한 국유지 개발 사업장 안전에 기여한 노력과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사고 감소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무사고 달성(사고건수 0건)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측정산식=근로자 안전 평점×0.5 + 국민 안전 평점×0.5									
	② 근로자 안전=100점-Σ사고발생점수									
	<table><tr><th>구 분</th><th>사망사고</th><th>중대재해</th><th>일반재해</th></tr><tr><td>사고발생점수(1건당)</td><td>40점</td><td>10점</td><td>2점</td></tr></table>	구 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	사고발생점수(1건당)	40점	10점	2점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중대산업재해
구 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							
사고발생점수(1건당)	40점	10점	2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이외의 산업재해

③ 국민 안전=100점-Σ사고발생점수

구 분	사망사고	중상	경상	기타
사고발생점수(1건당)	40점	15점	3점	2점

※ 사고발생점수 : 평가연도 내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한 고객 중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산출

- 중상, 경상, 기타 구분

구분	기준
중상	과거 3년간 대인보험금 건당 평균지급 금액의 10배 이상
경상	과거 3년간 대인보험금 건당 평균지급 금액 이상
기타	과거 3년간 대인보험금 건당 평균지급 금액 미만

-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공사 소유 및 위탁개발한 시설물로 당년도 말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

(3) 국유재산 관리·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국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징수 노력을 통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 증대 및 무단점유 정상화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국유재산 관리수입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 최고목표 산출시 고려사항 • 최고목표가 국회에서 의결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상 대부(관유물 대여료)·변상금 수입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금수입계획 금액으로 함 ② (국유재산 활용확대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유재산 관리수입 성과(2점) - 측정산식 = 연간 국유재산 대부 수입 금액 + 연간 국유재산 변상금 수입 금액 - 국유재산 대부수입 및 변상금수입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납입되는 대부(관유물대여료)·변상금 금액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정책에 따른 대부 수입 감면금액은 실적에 포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국유재산 활용확대 성과(2점) - 측정산식 = $\frac{\text{국유재산 신규대부 필지수} + \text{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필지수}}{\text{연평균 보유 필지수}}$ - 연평균 보유 필지수는 기초와 매월 말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통계 합계를 13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함
(4) 압류재산 매각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1점)	
정 의	채납 압류재산의 매각을 통해 국가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압류재산 매각 성과 = $\frac{\text{매각금액}}{\text{편입금액}}$ ② 매각금액 : 해당연도에 매각된 금액 ③ 편입금액 : 전년도말 미정리 편입금액과 해당연도에 발생한 편입금액의 합 * 공매의뢰기관 또는 공사가 보류·협의를 요청하여 공매 중지된 편입금액 및 자납·해제로 종결된 편입금액은 제외 ④ 중장기 목표 : 기관 중장기 경영목표상 2030년 목표로 설정
(5) 공공자산 가치증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13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1)		
	(2) 재무예산성과			
	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2	
	㉔ 기금운용성과		6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4.5	20.5	45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유동화사업			20
	(1) 포용금융 확대 및 저출생 대응 성과		7	
	(2) 정책모기지 재원조달 다변화 성과		2	
	(3) 유동화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체율 관리 노력		2	
	(4) 유동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18
	(1)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노력		4	
	(2) 사회적 배려대상가구 주거안전망 강화 노력		4	
	(3) 부실채권 정리율		2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주택연금보증사업			11
	(1)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5	
	(2) 주택연금보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26	55
	전체 합계	53.5	46.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8점]

㉠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적정수준 이상의 핵심자본 유지와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를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실적을 평가한다. (핵심자본비율: 상향지표, 기금 부채/자산비율: 하향지표)	
기 준 치	핵심자본비율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기금 부채/자산비율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④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가중치 : 6점)

㉑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유동화사업 [20점]

사업정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과 취약차주를 위한 포용금융 실천을 통해 서민의 내집마련 금융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

(1) 포용금융 확대 및 저출생 대응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7점)

정 의	포용금융 확대를 통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노력과 출생(예정)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생 해소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금융 취약계층 정책모기지 공급 비중]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저출생해소 정책모기지 공급 비중]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
목 표	① (금융 취약계층 정책모기지 공급 비중) 최고목표: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기준치-2×단위목표 ② (저출생 해소 정책모기지 공급 비중) 최고목표: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 취약계층 정책모기지 공급 비중 (4점) = $\frac{\text{금융 취약계층 보증자리론 공급액}}{\text{보증자리론공급액}}$ - 중장기목표: 2030년까지 금융 취약계층 정책모기지 공급비중을 47.5%까지 확대 ② 저출생 해소 정책모기지 공급 비중(3점) = $\frac{\text{저출생해소지원보증자리론공급액}}{\text{보증자리론공급액}}$ - 중장기목표: 2030년까지 저출생 해소 정책모기지 공급비중을 48.8%*까지 확대 * 2026~2030 중장기 경영목표 상의 2030년도 최종목표치 ※ 산출시 고려사항 • 금융취약계층 보증자리론공급액은 청년 중 저소득(중위소득의 80%이하), 저신용(NICE 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발급)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공급액)으로 함 • 저출생해소지원 보증자리론공급액은 주무부처(금융위원회) 승인 신혼·신생아출산·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공급액)으로 함. (단, 중복 지원은 제외)

(2) 정책모기지 재원조달 다변화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정책모기지 재원조달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유동화 재원조달체계 구축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모기지 재원조달 다변화 성과 = $\frac{\text{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액} - \text{일반MBS발행액}}{\text{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액}}$ - 중장기목표: 2030년까지 정책모기지 재원조달 다변화 성과를 35.0%까지 확대 ※ 산출시 고려사항 • 채권유동화 실적은 모든 종류의 MBS·MBB 발행금액, 모기지-스왑, 유동화 목적 해외공사채 발행 실적을 포함 • 일반MBS는 콜옵선부, 비콜옵선부 종목을 혼합하여 다수의 만기로 발행되는 CMO 구조의 원화MBS를 의미함 • 유동화증권이 해외 통화로 발행되는 경우, 통화스왑 후 결정되는 최종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출

(3) 유동화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체율 관리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유동화자산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체율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주무부처(금융위원회) 승인 당해연도 공사 업무계획에서 정한 연체율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90% 최저목표 : 기준치×11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동화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체율 관리 노력 = $\frac{\text{당해연도 매월말 유동화자산 연체율의 합}}{12}$ ② 당해연도 매월말 유동화자산의 연체율 = $\frac{\text{해당월말 1개월 이상 유동화자산 연체대출 잔액}}{\text{해당월말 유동화자산 총 대출잔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유동화자산이란 공사가 MBS(MBB 포함)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채권보유 포함)을 말함

(4) 유동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18점]

사업정의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전월세대출 및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기 위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부실채무자 재기지원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금융 활성화에 기여

(1)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노력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전세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노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지건수 ÷ 전세자금 보증 유지건수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지건수 :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공사가 공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기말 유지건수 ③ 전세자금보증 유지건수 : 전세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공사가 공급한 전세자금보증의 기말 유지건수 ④ 중장기 목표 : 2030년까지 공사 전세자금보증 유지건수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유지건수 비중을 12%까지 확대

(2) 사회적 배려대상가구 주거안전망 강화 노력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 의	주거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대상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적 배려대상가구 전세자금보증 이용비중 = $\frac{\text{사회적 배려대상가구 전세자금보증 이용건수}}{\text{총 전세자금보증 이용건수}}$ ② 사회적 배려대상가구 전세자금보증 이용건수 : 보증료, 보증한도 등 보증우대 지원 대상이 되는 신혼가구(결혼예정 포함), 미성년자녀양육 가구(출산예정 포함),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가구*에 대해 평가기간 동안 신규(증액 포함)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 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등으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가구) ③ 총 전세자금보증 이용건수 : 평가기간 동안 신규(증액 포함)로 취급하는 총 전세자금보증 건수 ④ 중장기 목표 : 2030년까지 공사 사회적 배려대상가구 전세자금보증 이용 비중을 35.7%까지 확대
(3) 부실채권 정리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채무자 재기지원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10% 최저목표 : 기준치×90%
측정 산식 및 변수	□ 부실채권 정리율 = 대외 채무조정률×0.4 + 대내 채무조정률×0.6 연중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신용회복지원 - 대외 채무조정률 = $\frac{\text{확정 전세보증 구상채무자 수}}{\text{평가연도 기초 전세보증 구상채무자 수}}$ 연중 자체 채무조정, 시효완성, 구상채권 상각 - 대내 채무조정률 = $\frac{\text{전세보증 구상채무자 수}}{\text{평가연도 기초 전세보증 구상채무자 수}}$
(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주택연금보증사업 [11점]

사업정의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 및 이용저변 확대를 통한 고령층 소득 증대 및 노후 생활 보장 강화

(1) 고령층 생활안정지원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주택연금 이용률 = $\frac{\text{주택연금 이용가구수}}{\text{60세 이상 자가가구수}}$ ② 중장기 목표 : 2030년까지 주택연금 이용률을 2.7%까지 확대 ③ 당해연도 실적과 최근 3년평균 실적 비율은 70%:30%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주택연금 이용가구수는 회계연도 말 기준 유지건수로 하되, 부부 중 일방이 60세 이상인 가구로 한정 • 60세 이상 자가가구수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2020년)결과 이용(천단위절사)

(2) 주택연금보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위탁집행형 - SOC·안전

1. 국가철도공단	704
2. 국토안전관리원	714
3. 한국가스안전공사	728
4. 한국교통안전공단	738
5. 한국국토정보공사	750
6. 한국농어촌공사	760
7. 한국도로교통공단	770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78
9. 한국석유관리원	788
1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798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06
12. 한국전기안전공사	816
13. 한국전력거래소	826
1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38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부채/자산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철도망 구축사업			31
	(1)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대		11	
	(2) 철도건설사업의 품질 제고 노력		3.5	
	(3) 철도건설사업의 근로자 안전 확보 노력		3.5	
	(4) 철도망 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2.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17
	(1)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시설 사고 방지		10	
	(2)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철도자산 활용 및 해외사업			6
	(1)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3	
	(2) 철도자산 활용 및 해외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철도망 구축사업 [31점]

사업정의	국가철도망 적기 구축을 통한 대국민 교통편의 증진 및 철도건설 품질·안전 제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철도노선 신설·개선을 통한 국민 교통편의 증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1점)

정 의	기관의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을 통한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확대 등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교통편의 증진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연장 = 고속·일반철도사업의 평점×0.5 +광역철도사업의 평점×0.5 ② 국가철도망 구축연장이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 사업별 연도별 개통연장을 의미함 (단, 전철화 추진사업은 전철화 개통 시 실적으로 산정) ③ 연장은 철도통계연보 상의 철도거리를 의미하며, 철도통계연보 개정 전 개통된 노선의 연장은 국토교통부 사용개시 고시 등의 철도거리km를 기준으로 산정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각 항목의 값은 최근 5개년 산술평균값을 적용함

(2) 철도건설사업의 개통품질 향상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5점)

정 의	철도노선의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최소화 하고 적기 조치하여 안전한 개통을 통한 대국민 교통편의 증진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개통 품질 확보율 = 보완 요구율의 평점 × 0.2 + 보완 사항 조치율의 평점 × 0.8 ② 보완요구율 = 100 - (보완 요구건수 / 평가 요구 건수 × 100) ③ 보완사항 조치율 = 보완 완료건수 / 보완 요구 건수 ×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개통 완료한 사업에 한 함 • 보완 요구 건수 및 평가 요구 건수는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부)」 상 용어의 정의에 따라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시 발생한 건수를 의미 하며, 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 보고 문서를 따름

(3) 철도건설사업의 근로자 안전 확보 노력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 3.5점)

정 의	철도건설 사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당해연도 목표치
목 표	중장기경영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해율 = $\frac{\text{일반재해} + (\text{중대재해} \times 3) + (\text{사망사고} \times 10)}{\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사망사고 : 근로자,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마'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상시근로자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3호에 따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근로자의 수

(4) 철도망 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3점)

②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17점]

사업정의	철도시설 유지관리체계 고도화 및 선제적 개량을 통한 국민 안전·편의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철도시설 사고 방지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0점)	
<물적재해> 철도기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철도사고 감소 노력과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의	건널목 안전시설 보강 및 입체화 사업, 스크린도어 설치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철도시설의 확충과 지속 관리를 통해 철도기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시설 안전율 = $\text{철도시설 사고건수} / \text{철도총연장(km)} \times 100$ ② 철도시설 사고건수 :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승강장사고의 합 - 열차사고 :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상 규정·집계된 고속·일반철도 시설(시설, 전철, 신호)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열차사고의 건수 - 건널목사고 : 전체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의 건수로 하며, 자살사고는 제외함 - 승강장사고 : 고상홈 승강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건수로 하며, 자살사고는 제외함 ③ 중장기목표 : 2024년 철도시설안전율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0% 수준으로 감소(근거 - 공단 중장기 경영목표)
<인적재해> 철도기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철도사고 사상자 감소 노력과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철도기반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철도사고로부터 철도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철도시설 이용객 안전확보율 = (사망자수 x 1 + 부상자 수 x 0.5) / 철도총연장(km) x 100 ②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는 열차사고, 건널목사고, 승강장사고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를 의미함 - 열차사고 :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상 규정 · 집계된 고속 · 일반철도 시설(시설, 전철, 신호)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열차사고 - 건널목사고 : 전체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며, 자살사고는 제외함 - 승강장사고 : 고상홈 승강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며, 자살사고는 제외함 - 다만, 자살 등 공단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함

(2) 철도시설 현대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철도자산 활용 및 해외사업 [6점]

사업정의	철도자산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철도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당해연도 목표치(철도시설물 디지털화)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100% (철도시설물 디지털화)
측정 산식 및 변수	철도자산활용가치 = (임대수익의 평점 × 0.3) + (해외사업수익의 평점 × 0.2) + (철도시설물 디지털화의 평점 × 0.5) ① 임대수익과 해외사업수익 금액은 회계결산서 상의 금액으로 함 ② 철도시설물 디지털화 : 연차별 스마트 철도기술 구축 실적/구축 목표 (구축 단위는 개소 또는 km)

측정 산식 및 변수	- 스마트 철도기술 구축 : 스마트철도역사,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조물 IoT, 전기설비IoT, 스마트건널목, 변전설비 디지털화, 차상검측시스템 구축 - 연차별 구축 목표는 국가철도공단 중장기 경영목표 및 이사장 경영성과 계획서 상 성과목표 중 높은 목표를 따름
(2) 철도자산 활용 및 해외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토안전관리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안전한 건설 및 지하 환경 조성 사업			18
	(1) 건설공사 사고재해 감소		3	
	(2)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질개선		2	
	(3) 고위험지역 지하안전 관리 강화		5	
	(4) 안전한 건설 및 지하 환경 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기반시설 안전 및 성능 향상 사업			20
	(1)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도 확보		5	
	(2) 점검·진단 부실관리 강화		3	
	(3) 시설물 안전 조치율 향상		3	
	(4) 기반시설 안전 및 성능 향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3. 건축물 안전 및 사용가치 증진 사업			16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확보		3	
	(2)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강화		5	
	(3)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확보 및 복합성능 개선		2	
	(4) 건축물 안전 및 사용가치 증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㉔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안전한 건설 및 지하 환경 조성 사업 [18점]

사업정의	건설현장·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건설공사 사고재해 감소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발굴하고, 적기 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건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감소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③, ④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① 건설 사고위험 발굴률: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② 건설 사고위험 조치율: 조치율 100% 달성 ③ 건설 사고사망 만인율, ④ 건설 사고부상 만인율: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건설 사고위험 발굴률 (0.75점) + ② 건설 사고위험 조치율 (0.75점) + ③ 건설 사고사망 만인율 (1.0점) + ④ 건설 사고부상 만인율 (0.5점) $\text{① 건설 사고위험 발굴률} = \frac{\text{사고위험요소 발굴 건수}}{\text{건설현장 점검 건수}}$ - 건설현장 점검 건수: 당해연도 기관이 직접 시행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중 CSI에 등록된 점검 건수의 합계 - 사고위험요소 발굴 건수: 당해연도 기관이 직접 시행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중 CSI에 등록된 지적 건수의 합계(단, 1항의 경우 제외) 1) 법 위반사항으로 기관이 지적한 시점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지적(착공전 안전관리 계획 승인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여부, 정기안전점검 계약 및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적정사용 여부, 감리 검토·확인 후 시공여부,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 확인 여부 등) $\text{② 건설 사고위험 조치율} = \frac{\text{사고위험요소 조치 건수}}{\text{사고위험요소 발굴 건수}} \times 100$ - 사고위험요소 조치 건수: 당해연도 기관이 CSI에 등록한 지적 건수에 대하여 시공사 등이 조치결과를 등록한 건수의 합 (익년도 1월31일 기준 집계)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건설 사고사망 만인율 =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통계에 따른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로 함. ④ 건설 사고부상 만인율 = $\frac{\text{건설업 사고부상자수(명)}}{\text{건설업 상시근로자수(만명)}}$ - 건설업 사고부상자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건설사고 부상자 수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에서 발표하는 당해 연도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 CSI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2)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질개선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컨설팅 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평가 방법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질개선 = 20점 + (80점 × $\frac{\text{안전수준 향상 노력}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수준 향상 노력 = ② 부실업체 역량강화 × 50% + ③ 부실업체 저감율 × 50% ② 부실업체 역량강화 = $\frac{\text{부실업체 컨설팅 실시 건수}}{\text{부실업체 대상 건수}} \times 100$ - 부실업체 대상 건수 : 안전관리 수준평가 중 서면평가 결과 미흡(40점 이상 ~ 60점 미만), 매우미흡(40점 미만) 등급의 건설공사 참여자 수 - 부실업체 컨설팅 실시 건수 : 부실업체를 대상 중 관리원에서 안전관리 체질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 한 업체 수 * 1개 업체의 다수 현장과 본사를 각각 컨설팅 한 경우 1건으로 집계함 ③ 부실업체 저감율 = $\frac{\text{보통등급 이상 달성업체 건수}}{\text{부실업체 컨설팅 실시 건수}} \times 100$ - 보통등급 이상 달성업체 건수: 부실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가 60점(보통등급) 이상을 달성한 업체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컨설팅 실시 전·후 부실업체 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집계함 - 최종평가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Pool을 활용하여 시행

측정 산식 및 변수	- 평가 점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5에 따라 산정된 기관별 점수를 활용 - 건설사고 사망자로 인한 등급 하락은 미반영하고 평가점수로만 산정
(3) 고위험지역 지하안전 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굴착현장 및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고위험 굴착현장 안전 지원 성과 × 50% + ② 도로 싱크홀(침하) 예방 성과 × 50% ① 고위험 굴착현장 안전 지원 성과 = $\frac{\text{안전점검 지원 수(개소)}}{\text{굴착공사 현장 수(개소)}} \times 100$ - 굴착공사 현장 수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지하안전법제20조)를 수행 중인 굴착공사 현장 수 - 안전점검 지원 수 : 굴착공사 현장 및 주변지반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굴착공사 현장점검과 지하안전 조사를 모두 수행한 건수를 기준으로 함 ② 도로 싱크홀(침하) 예방 성과 = $\frac{\text{공동 탐지 성과(개)}}{\text{지하안전 조사량(km)}}$ - 지하안전 조사량 :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탐사를 실시한 도로의 연장*으로서 차도와 보도를 합한 연장을 말함 * (차도) 1차로 기준 조사연장, (보도) 최소 유효폭 1.5m 기준 조사연장 - 공동 탐지 성과 : 지하안전 조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空洞)을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의 공동등급(긴급·우선·일반)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별 가중치(1.0·0.8·0.6)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 개수의 합을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세부지표①(고위험 굴착현장 안전 지원 성과): 목표치 산정을 위해 '26년은 과거 2개년, '27년은 3개년, '28년은 4개년의 표준편차를 각각 적용한다. - 세부지표②(도로 싱크홀(침하) 예방 성과): 지하안전 조사량은 매년 정부 목표*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표미달 시에는 정부 목표치를 적용한다. *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25.5): '25년 3,700km, '26년 4,200km, '27년 4,500km, '28년 4,800km, '29년 5,100km - 실적 증빙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시스템(JIS)에서 관리되지 않는 실적은 외부기관 발송 공문을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4) 안전한 건설 및 지하 환경 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기반시설 안전 및 성능 향상 사업 [20점]

사업정의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 및 성능을 향상하여 시설물의 활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도 확보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가중치: 5점)

정의	국가 주요시설물(제1·2·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목표 안전등급 달성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목표	시설물 안전등급 목표: 국토교통부의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 성과지표 목표(α , β)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제1·2종 시설물 안전등급 목표 달성도 $\times$ 30% + ②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목표 달성도 $\times$ 70% ① 제1·2종시설물 안전등급 목표 달성도 = $\frac{\sum \text{당해연도 안전등급 B등급 이상 제1·2종시설물 개수}}{\sum \text{당해연도 점검·진단 시행 제1·2종시설물 개수}} / \alpha \times 100$ ②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목표 달성도 $\frac{\sum \text{당해연도 안전등급 B등급 이상 제3종시설물 개수}}{\sum \text{당해연도 점검 시행 제3종시설물 개수}} / \beta \times 100$ - α: 기본계획 상 제1·2종 시설물 안전등급 목표(95%) - β: 기본계획 상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목표(80%)+5% ※ 산출시 고려사항 - 제1·2·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상에 등록된 시설물로 점검·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을 기준으로 함 - 제1·2·3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한 등급을 기준으로 함 - 제1·2종 및 제3종 시설물 안전도 확보율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국토부고시)에 제시된 목표치를 적용하되, 제3종 시설물의 경우 목표치를 5% 상향

(2) 점검·진단 부실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의 부실을 발굴하고 적기에 시정조치 하여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점검·진단 적정률×20% + 점검·진단 부실 시정률×80% ① 점검·진단 적정률 = $1 - \frac{\text{점검·진단 보고서 부실 건수}}{\text{점검·진단 보고서 평가 건수}} \times 100$ ② 점검·진단 부실 시정률 = $\frac{\text{점검·진단 부실 시정조치 적기 완료 건수}}{\text{점검·진단 부실 시정조치 요구 건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점검 및 진단 보고서 부실 건수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4조에 따라 점검·진단 보고서 등을 평가한 결과, 부실 기준에 해당하는 건수의 합 • 점검 및 진단 보고서 평가 건수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43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평가한 건수의 합 • 점검 및 진단 부실 시정조치 적기 완료 건수 :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관리주체, 점검·진단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 건수의 합 • 점검 및 진단 부실 시정조치 요구 건수 :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건수의 합 • 점검 및 진단 부실 시정조치 적기 완료 건수, 점검 및 진단 부실 시정조치 요구 건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상의 정상등록 업체를 기준으로 산출 • 부실 판정기준, 시정조치 기한 등 법령에 따른 관리 규정이 변경될 경우, 해당 기준을 변경 이전 건에도 적용하여 실적을 산출

(3) 시설물 안전 조치율 향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되고 있는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A·B·C 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 30% + ② D·E 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 70% ① A·B·C 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 $\frac{\text{A·B·C 등급 시설물 중 안전조치 완료 시설물 수}}{\text{A·B·C 등급 시설물 수}} \times 100$ · A·B·C 등급 시설물 수 : 시설물안전법 상 1·2·3종 시설물 중 직전연도 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등급이 A·B·C 등급인 시설물 수 · A·B·C 등급 시설물 중 안전조치 완료 시설물 수 : A·B·C 등급 시설물 중 평가 당해연도에 보수·보강 또는 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한 시설물 수 ② D·E 등급 시설물 안전조치 완료율 = $\frac{\text{D·E 등급 시설물 중 안전조치 완료 시설물 수}}{\text{D·E 등급 시설물 수}} \times 100$ · D·E 등급 시설물 수 : 시설물안전법 상 1·2·3종 시설물 중 직전연도 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안전등급이 D·E 등급인 시설물 수 · D·E 등급 시설물 중 안전조치 완료 시설물 수 : D·E 등급 시설물 중 평가 당해연도에 보수·보강 또는 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한 시설물 수
(4) 기반시설 안전 및 성능 향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③ 건축물 안전 및 사용가치 증진 사업 [16점]

사업정의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증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확보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이행 관리를 통해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조치계획 수립 준수율 × 50% + ② 기한 내 조치 완료율 × 50% ① 조치계획 수립 준수율(%) = $\frac{\text{조치계획 기한 내 제출 수}}{\text{위험시설 수}} \times 100$ - 조치계획 기한 내 제출 수: 안전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을 완료한 수 - 위험시설 수: 당해연도 기관이 직접 수행한 안전점검 시설 중 미흡·불량 등급으로 판정된 건수 ② 기한 내 조치 완료율(%) = $\frac{\text{기한 내 조치이행 완료 수}}{\text{조치예정 시설 수}} \times 100$ - 기한 내 조치이행 완료 수: 조치계획서에서 정한 조치완료 예정일 이내에 안전조치를 완료한 건수 - 조치예정 시설 수: 당해 연도까지 기관이 발굴한 위험시설 중 당해 연도에 조치예정일이 도래하는 시설로서 직전 연도까지 조치 완료는 제외한 건수 (단, 조치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시설 중 당해연도 안전조치 완료는 포함)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의하는 시설 • 위험시설,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이행 완료 건수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SFMS) 상의 정보로 산출

(2) 건축물 생애 주기 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건축물관리점검의 부적정을 저감과 해체계획서 부적정을 저감으로 건축물의 사용가치 증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건축물관리점검 기술 수준 향상×50%) + (해체계획서 수립 기술 수준 향상×50%) ① 건축물관리점검 기술 수준 향상=1- $\frac{\text{점검평가 결과 부적정 건수}}{\text{점검평가 총 건수}} \times 100$ ② 해체계획서 수립 기술 수준 향상=1- $\frac{\text{해체계획서 검토결과 부적정 동 수}}{\text{해체계획서 검토 총 건물 동 수}} \times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건축물관리점검 부적정률 저감의 경우 예비평가 이후 평가위원회의 심의 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반영(개선명령 이행확인 평가 제외) • 해체계획서의 경우 최초검토한 건물 동수에 대해서만 반영(보완제출한 재검토 제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관리원에 검토의뢰 되는 해체계획서를 대상으로 함(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된 해체계획서 제외)
(3)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확보 및 복합성능 개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공공시설물(어린이집, 보건소 등)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너지성능 및 구조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녹색건축물 전환율 × 35% + ②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절감량 × 35% + ③ 복합성능개선을 × 30% ① 녹색건축물 전환율(%) = $\frac{\text{에너지 성능이 30\% 이상 개선된 시설 수}}{\text{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시설 수}} \times 100$ - 에너지 성능이 30%이상 개선된 시설이란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어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 중 에너지 성능이 30%이상 개선된 시설물 수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시설이란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고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 수를 말함 ②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절감량(kgCO₂eq/m²) = $\frac{\text{그린리모델링 전·후 온실가스 절감량 합계}}{\text{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시설의 연면적 합계}}$ - 그린리모델링 전·후 온실가스 절감량 합계란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어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별 공사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의 전체 합계를 말함 ③ 복합성능개선을(%) = $\frac{\text{구조보강 적용 시설 수}}{\text{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시설 수}} \times 100$ - 구조보강 적용 시설이라 함은 시설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 중 구조적 보강(내진, 구조, 누수, 화재, 석면 구조공사 등)을 설계, 시공 등 공사 과정에 적용한 시설물을 말함

(4) 건축물 안전 및 사용가치 증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안전검사사업			28
	(1)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7	
	(2) 가스사고 위험요소 발굴 성과		5	
	(3) 장기사용 고압가스배관 안전성 향상성과		4	
	(4) 안전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2. 안전망구축사업			12
	(1) 가스안전 소외지역 안전성 향상성과		4	
	(2)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3	
	(3) 안전망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가스안전산업 지원사업			14
	(1) 기업지원성과		3	
	(2) 수소산업육성 안전지원 성과		5	
	(3) 가스안전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안전검사사업 [28점]

사업정의	설립목적 사업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가스시설·배관·제품 등에 대한 검사·시험·진단 등 가스안전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감소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산업통상부가 정한 연도별 정책목표					
	연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목표	1.746	1.692	1.638	1.584	1.53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치(인명피해율) = 인명피해(명)/총 인구수(백만명) ②인명피해(명)는 산업통상부가 발표하는 가스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합계로 하며 사망자는 2, 부상자는 1의 가중치로 산정함 ③총 인구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이며 당해연도 12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함					

(2) 가스사고 위험요소 발굴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가스시설 내 잠재된 가스사고 위험요소(아차사고)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통한 국가 가스사고 감축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가스사고 위험요소 발굴률 = $\frac{\text{가스사고 위험요소 발굴건수}}{\text{가스사용가구(백만가구)}}$ ② 가스사고 위험요소(아차사고) 발굴건수란 가스시설에 내재되어 가스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단순누출 등의 위험요소(아차사고)를 사전에 발굴하고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화재·폭발 등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실적을 말함 ③ 가스사용가구는 가스를 사용하는 단독·공동주택, 산업용 및 상업·업무용 시설 등을 말함

(3) 장기사용 고압가스배관 안전성 향상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장기사용 고압도시가스시설의 정밀진단 및 건전성 관리를 통해, 노후 대형 기반시설의 국민안전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장기사용배관 누적개선을 [목표부여(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장기사용 고압가스배관 누적개선을 = (총 누적 지적사항/총 검사일수) × 0.5 + (장기사용 고압가스 배관 누적 지적사항 개선실적/총 누적 지적사항) × 0.5 ② 장기사용 고압가스배관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지정한 가스공급설비(도시가스 고압배관)를 의미한다. ③ 장기사용 고압가스배관 누적지적사항 및 개선실적은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법에 의해 산업통상부에 보고한 실적을 의미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장기사용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최초 지적사항이 추후 재지적되는 경우 추가 지적건수로 산출한다. ④ 누적 검사일수는 현장 확인을 위해 투입된 총 검사일수(MD)를 의미한다.

(4) 안전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2점)

② 안전망구축사업 [12점]

사업정의	포용적 가스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가스안전 사각지대 발굴·개선, 안전문화 확산 등 국가 가스안전망 구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가스안전 소외지역 안전성 향상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도시·산간 등 가스안전 소외지역 안전성 향상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가스안전 소외지역 안전성 향상을 [목표부여(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가스안전 소외지역 안전성 향상 성과 = (위해우려시설 발굴 건수 / 가스안전 모니터링 수) × 0.5 + (위해우려시설 개선 건수 / 위해우려시설 발굴 건수) × 0.5												
	① 가스안전 모니터링 대상은 산업통상부의 연도별 정책목표의 도서·산간 지역 대상을 의미함												
	<table><tr><td>연도</td><td>26년</td><td>27년</td><td>28년</td><td>29년</td><td>30년</td></tr><tr><td>목표</td><td>31,564</td><td>33,142</td><td>34,799</td><td>36,539</td><td>38,366</td></tr></table> ※ 도서지역은 행안부 유인섬 통계 현황에서 정하는 섬, 산간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벽지·접적 지역에 속한 시설을 말함	연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목표	31,564	33,142	34,799	36,539	38,366
	연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목표	31,564	33,142	34,799	36,539	38,366								
② 위해우려시설 발굴 건수는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 확인 및 거주자 인터뷰(부재세대 제외)를 통해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가스사고 우려 항목을 표시하여 응답한 건수임													
③ 위해우려시설 개선건수는 가스누출, 막음조치 미비 및 가스시설 노후 등 가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개선한 건수임													
(2) 취약 가스시설 안전성 향상성과 (평가방식: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취약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등 가스사고 위험요소 근절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적합률 [목표대실적] - 목표 : 100%												
	② 온라인 불법행위 차단성과 [목표부여(편차)]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취약가스시설 안전성 향상 = ①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적합률 평점 × 40%) + ② (온라인 불법행위 차단성과 평점 × 60%)												
	①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적합률은 정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공사에서 실시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건수 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건수임 ※ 점검적합률(%) = (해당연도 적합건수 / 해당연도 점검건수) × 100												
	② 온라인 불법행위 차단성과 = (온라인 불법행위 발굴건수 / 통신판매업자 수) × 0.5 + (온라인 불법행위 차단건수 / 온라인 불법행위 발굴건수) × 0.5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온라인 불법행위 차단건수는 공사에서 온라인 불법판매사이트를 확인 및 발굴하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개별사이트에 요청하여 사이트 폐쇄, 판매 중지 조치된 건수임 ※ 산출시 고려사항 • 개별사이트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이 아닌 비회원사를 의미함 • 해외사이트의 경우 동일 판매업자의 유사제품 판매는 단건으로 함 • 통신판매업자수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로 함

(3) 안전망구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가스안전산업 지원사업 [14점]

사업정의	지속가능한 가스안전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기반 민간성장지원, 신에너지 수소 산업 활성화, 탄소중립 등 가스안전산업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기업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민간기업과의 공동 안전진단 등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직접계약 전환기업 비율[목표부여(편차)]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직접계약 전환기업 비율 $= \text{직접계약 전환기업 총 수} / \text{협업기업 총 수} \times 100\%$ ② 직접계약이란, 공사에 협업(안전진단, 정밀안전검진,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음향방출시험)을 발주한 이력이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함 ③ 직접계약 전환기업 비율 실적이란, 협업(안전진단, 정밀안전검진,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음향방출시험)에 참여한 중소기업(협업 기업) 누적 업체 수 대비 직접계약을 체결한 누적 중소기업(전환 기업)의 비율을 말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직접계약 전환 실적은 非법정사업을 대상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참여한 기업이란 공사와 협업 중소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기업을 말함 • 직접계약 실적은 발주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용역계약서, 입찰결과 공고문으로 함
(2) 수소산업육성 안전지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수소산업 선도기술 조기 발굴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수소 등 탄소중립시설의 안전성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수소시설 구축지원 성과 평점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규제특례 안전기반 신속지원 성과, ③ 수소설비 안전성 검증 지원 실적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수소산업육성 안전지원 성과 = (수소시설 구축지원 성과 평점 × 30%) + (규제특례 안전기반 신속지원 성과 평점 × 30%) + (수소설비 안전성 검증 지원 실적 성과 평점 × 40%) ② 수소시설 구축지원 성과란, 3대 수소 핵심시설 ¹⁾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완성검사가 완료된 신규 핵심시설 당 실시한 사전 컨설팅 총 건수 ²⁾ 를 말함 1) 3대 수소 핵심시설 :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기지, 수소연료전지 2) 사전컨설팅 총건수 : 검사 단계 ³⁾ 별 최대 1회 한도이며, 과거연도 실적을 포함한다. 3) 검사단계 : 설계단계,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운영단계 ③ 규제특례 안전기반 신속지원 성과란,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 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제86조 제4항에 따른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신속처리율*을 말함 * 신속처리율 : 특례 대상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 심사 신청 후 수소분야 규제특례 안전관리계획 심사위원회 심사 통보를 받은 처리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수소설비** 안전성 검증 지원 성과’란, 정부의 수소안전관리 정책에 따라 구축된 공사의 수소안전 시험·인증 핵심 인프라*에서 실시한 수소설비의 성능·인증시험 수행 건수를 말함 *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용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수소자동차 내압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소안전설비, 용기, 특정설비
(3) 가스안전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교통안전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자동차운송안전 및 모빌리티활성화 사업			20
	(1) 사업용자동차 안전도 향상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실적		9	
	(2) 모빌리티활성화 성과		2	
	(3) 자동차운송안전 및 모빌리티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자동차안전관리 사업			26
	(1) 제작결함 소비자보호 성과		6	
	(2)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7	
	(3) 운행 자동차 현장 검사 성과		3	
	(4) 자동차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업			4
	(1) 철도점검기관 안전도 향상		2	
	(2) 철도교통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4. 드론·항공교통안전관리 사업			4
	(1) 드론 사고감소 성과		1.5	
	(2) 현장 항공안전 활성화 지수		0.5	
	(3) 드론·항공교통안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순사업비, 평균인원 산출시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사업의 순사업비, 평균인원은 제외함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자동차운송안전 및 모빌리티활성화 사업 [20점]

사업정의	사업용자동차(여객, 화물 등)를 포함한 국가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사업용자동차 안전도 향상 및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9점)

정 의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교통수단안전점검 운수회사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조치를 위한 노력과 이를 통한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실적을 평가한다. (① 상향지표, ② 하향지표)								
기 준 치	① 사업용자동차 안전도 향상 성과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사업용자동차 안전도향상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상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목표치 (단위 : 명) <table><tr><td>구분</td><td>2024년</td><td>2025년</td><td>2026년</td></tr><tr><td>목표</td><td>0.8</td><td>0.7</td><td>0.6</td></tr></table>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0.8	0.7	0.6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0.8	0.7	0.6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용자동차 안전도향상 성과(가중치4점) $= \left(\frac{\text{위험요인 적발건수}}{\text{위험운수회사 수}} \times 0.7 \right) + \left(\frac{\text{조치건수}}{\text{위험요인 적발건수}} \times 0.3 \right)$ - ‘위험운수회사 수’는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공단이 위탁받은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 기준으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통해 산정함 - ‘위험요인 적발건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시 운수회사의 위험요소를 적발하여 행정관청에 실제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를 말하며, 의뢰요청 공문으로 산출 - ‘조치건수’는 위험요인 적발 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기관이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처분통보가 내려진 건수를 말하며, 교통행정기관의 회신공문으로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4분기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지자체 조치건수는 차년도 1분기까지 처리된 실적까지 인정하여 산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실적(가중치 5점) - 중장기 목표: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0.6명 이하로 감소
(2) 모빌리티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국민 이동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위한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 수혜자 확대, 규제특례기업 성장 기여를 통한 모빌리티 활성화 성과 노력을 평가 (상향지표)
기 준 치	- K-패스 활성화 성과 :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 규제샌드박스 특례기업 성장 기여도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단, 2026년은 전년도 실적과 직전 2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으로 함)
목 표	- K-패스 활성화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 규제샌드박스 특례기업 성장 기여도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단, 2026년은 목표부여로 평가하되, 2027년은 표준편차(과거 3개년), 2028년은 표준편차(과거 4개년)를 적용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모빌리티활성화 성과 = K-패스 활성화 성과(1점) + 규제 특례기업 성장 기여도(1점) ② K-패스 활성화 성과 = 연도별 K-패스 이용자 누적수 - 중장기 목표 : 2026~2030 자체 중장기 경영목표에 제시된 K-패스 이용자 누적수로서 2030년까지 530만명 달성 ③ 규제샌드박스 특례기업 성장 기여도 = $\frac{\text{특례기업 당해연도 매출액}}{\text{3개년 평균 지원 예산}}$ ※ 산출시 고려사항 • ‘K-패스 이용자 누적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패스)시스템’에서 추출한 가입자 수를 말하며, ‘중장기 경영목표(26~30년)’에 근거하여 중장기 목표(30년 530만 명) 달성을 위해 연도별 단위목표를 설정함. 단, 실적치가 최초 목표를 초과할 경우 공통 편람에 따라 단위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 ‘규제샌드박스 특례기업 성장 기여도’는 공단의 3개년 평균 지원 예산(억원) 대비 규제 특례기업의 ‘사업 개시 및 시행’ 이후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 합계로 산출

측정 산식 및 변수	• ‘3개년 평균 지원 예산’은 모빌리티지원센터 운영예산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지원금예산으로 한정하며, 당해연도 포함한 3개년 평균액으로 산출 • ‘특례기업 당해연도 매출액’은 지원 대상기업의 규제특례 사업에 한하여 발생한 매출 성과를 산출함
(3) 자동차운송안전 및 모빌리티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자동차안전관리 사업 [26점]

사업정의	제작차에 대한 결함조사, 안전도평가, 운행차에 대한 안전도 및 배출가스 검사, 미래차에 대한 안전성 연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국가 자동차 관리 정책 실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제작결함 소비자보호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예방 및 제작결함에 대한 소비자 보호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제작결함 소비자보호 성과 = $\frac{\text{제작결함에 대한 소비자보호 건수}}{\text{자동차리콜센터 신고 건수}}$ ② ‘제작결함에 대한 소비자보호 건수’는 자동차리콜센터 신고 건수 중 소비자 보호조치(조기 리콜·무상수리, 조사에 의한 리콜·무상수리)가 시행된 건수 ③ ‘자동차리콜센터 신고 건수’는 자동차리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중 중복 사례(동일 차종, 동일 부품)를 제외한 건수 - 차대번호가 다른 동일 차종이 동일한 결함으로 신고 시 중복 사례로 산정함

(2) 운행 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운행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자동차검사를 통한 운행자동차 안전도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전기자동차 배터리화재 안전확보 성과 :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② 전기·전자장치 부착차량 안전확보 성과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전기자동차 배터리화재 안전확보 성과 (중장기목표부여)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② 전기·전자장치 부착차량 안전확보 성과(목표부여(편차))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 단, 2027년은 표준편차(과거 4개년), 2028년부터는 표준편차(과거 5개년)을 적용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운행자동차 안전도 향상 실적= 전기자동차 배터리화재 안전확보 성과(4점) + 전기·전자장치 부착차량 안전확보 성과(3점) ② $\text{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안전 확보 성과} = \left(\frac{\text{BMS검사대수}}{\text{전기차 검사대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조치대수}}{\text{BMS부적합대수}} \times 0.5 \right)$ - ‘전기차 검사대수’는 연료가 전기·하이브리드·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BMS 검사 대상은 정기, 종합, 종합(배출면제)검사로 한정하고, 커넥터 표준화 기술이 적용된 2009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 대수를 말하며,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추출한 자료로 산출 - ‘BMS 검사대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자동차 기능종합진단서의 배터리 상태 진단을 성공하여 정보를 전송한 검사대수를 말하며 공단·민간 검사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 ‘BMS부적합대수’는 전기차 검사를 실시하여 고전원전기장치 부적합 판정받은 차량대수를 말하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추출한 자료로 산출. 다만, 검사기간 연장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재검사기간이 차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제외함 - ‘조치대수’는 고전원전기장치 진단검사 부적합 차량 중 재검사(폐차포함)를 완료한 차량대수를 말하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추출한 자료로 산출 ※ 중장기 목표 : 2026~2030 자체 중장기 경영목표에 제시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안전확보 성과목표로 2030년까지 100%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전기·전자장치부착 차량 검사안전도 확보 성과} = \left(\frac{\text{전기·전자장치검사대수}}{\text{자동차검사대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조치대수}}{\text{전기·전자장치부적합대수}} \times 0.5 \right)$ - ‘자동차검사대수’는 전기·전자장치진단 검사 대상인 정기, 종합, 종합(배출면제)검사로 한정하고, 커넥터 표준화 기술이 적용된 2009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 대수를 말하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추출한 자료로 산출 - ‘전기·전자장치 검사대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진단을 성공하여 정보를 전송한 검사대수를 말하며 공단·민간 검사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 ‘전기·전자장치 부적합대수’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전자진단 검사 부적합 판정받은 차량대수를 말하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추출한 자료로 산출. 다만, 검사기간 연장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재검사기간이 차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는 제외함 - ‘조치대수’는 전기·전자장치 부적합 대상 자동차가 조치후 재검사(폐차 포함) 완료한 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에서 추출한 자료로 산출
(3) 운행 자동차 현장 검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운행 자동차의 불법사항 근절을 위한 현장검사 노력과 불법사항이 적발된 자동차의 안전조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 단, 2025년은 표준편차(과거 3개년), 2026년은 표준편차(과거 4개년), 2027년부터는 표준편차(과거 5개년)를 적용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운행자동차 현장 검사 성과 = 운행자동차 현장 검사 건수 - 공단 현장검사원이 적발한 차량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후, 행정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등록조치
(4) 자동차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③ 철도교통안전관리 사업 [4점]

사업정의	철도 개통에서 운영에 이르는 철도 전 생애주기에 대한 차량,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검사, 승인, 평가, 교육, 자격관리 등을 통해 중·대형 사고 예방, 운행장애 감소 등 철도교통 안전을 확보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철도점검기관 안전도 향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인적재해> 철도안전 수시검사 기관의 중·대형 및 일반 철도사고 Zero 달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2.0점)

정 의	철도안전 수시검사 기관의 철도사고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100점(중·대형 철도사고 0건)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대형 및 일반 철도사고의 Zero 달성 성과 = 100점 - ∑사고발생점수(건별)			
	② 건별 사고발생 점수			
	유형	대형철도사고(건)	중대철도사고(건)	일반철도사고(건)
	사고발생점수	40점	10점	2점
	③ 대형 철도사고 : 철도사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한 사고로 함(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철도분야 29쪽, 국토교통부 제4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25쪽) - 대형 철도사고 발생건수는 중대 및 일반 철도사고 발생 건수로 산정하지 않음			
④ 중대 철도사고 : 철도사고 사상자가 3인 이상 발생한 사고로 함(철도 안전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 중대 철도사고 발생건수는 일반 철도사고 발생 건수로 산정하지 않음				
⑤ 일반 철도사고 : 철도사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사고로 함(「철도 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사고 관련하여 1인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대형, 중대, 일반 철도사고는 철도운영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살 자(추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 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제외함				

(2) 철도교통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2점)

4] 드론·항공교통안전관리 사업[4점]

사업정의	드론 사용사업·기체 안전관리, 드론분야 자격·교육 관리 및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한 드론교통 안전을 확보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안전·보안 자율신고제도 운영 및 항공장애표시 등 안전관리 등을 통해 항공교통 안전을 확보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드론 사고감소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5점)

정 의	안전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이라 한다)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드론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및 드론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드론 사고감소 성과 $= \frac{\text{드론 안전조치 요구수}}{\text{드론 안전활동 예산}} \times 0.5 + \frac{\text{드론 무사고업체수}}{\text{드론 안전조치 요구수}} \times 0.5$ - '드론 안전조치 요구수'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에 따라 '드론 원스톱민원서비스'에서 집계된 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의 당해년도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 '드론 안전활동 예산'은 「항공사업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정부위탁사업의 당해년도 예산을 만원 단위로 소수점 두자리까지 산출 - '드론 무사고업체수'는 '드론 사용사업체수'에서 '드론 사고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정 - '드론 사용사업체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수로 당해년도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드론 통계자료'의 수치로 산출 - '드론 사고업체수'는 「드론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드론 정보통합시스템'에서 집계된 당해년도 사업용 드론의 보험금이 지급된 업체 수로 산출

(2) 현장 항공안전 활성화 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항공종사자 자격취득자(취업자) 대비 항공안전 및 항공보안 자율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현장 항공 안전도의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현장 항공안전 활성화 지수 = $\frac{\text{항공안전 위험신고 건수}}{\text{항공운송업체 종사자 수(백명)}}$ ② '항공안전 위험신고 건수'는 평가년도 동안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및 항공보안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건수(항공안전 자율 보고건수와 항공보안 자율신고 건수)로 정부 시스템(항공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건수의 합으로 함 ③ '항공운송업체 종사자 수'는 평가년도 동안 한국항공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적항공사별 항공종사자 확보 현황 통계(조종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를 대상으로 산정 함
(3) 드론 · 항공교통안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2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국토정보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자체수입증가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1	
	㉣ 부가가치율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국토정보 구축			18
	(1) 디지털지적 구축률		6	
	(2) 주소정보 구축률		5	
	(3) 국토정보 구축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국토정보 관리			12
	(1) 지적공부 품질강화		6	
	(2) 국토정보 관리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국토정보 서비스			24
	(1)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성과		8	
	(2) 공간정보 거래 활성화율		6	
	(3) 국토정보 서비스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자체수입증가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체수입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② 자체수입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㉕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법규나 규정에 근거한 무료 및 감면측량의 매출 감소분은 보정함

㉔ 부가가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부가가치율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② 부가가치와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부가가치 산출시 법규나 규정에 근거한 무료 및 감면측량의 매출 감소분은 보정함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국토정보 구축(18점)

사업정의	디지털기술과 국제위치 기준을 기반으로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

(1) 디지털지적 구축률(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지적공부와 실체가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디지털지적 구축 필지수}}{\text{디지털지적 구축계획 필지수}}$ ② 디지털지적 구축계획 필지수는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한다. ③ 디지털지적 구축 필지수는 측량이 완료되어 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 조서가 통지된 필지수로 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디지털지적 구축 필지수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행정지원시스템 통계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다.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한 SOC 국책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실적 등을 포함한다.

(2) 주소정보 구축률(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주소정보의 안정적 구축 노력을 평가한다.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주소정보 구축 건수}}{\text{연간 사업계획 건수}}$ ② 연간 사업계획 건수 : 정부의 주소정보 구축 계획 총 건수 ③ 주소정보 구축 건수 : 정부 사업계획 건수 대비 구축한 주소정보 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목표는 행안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적용 - 주소정보 구축 건수는 주소정보 갱신 건수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소 구축 결과보고서 또는 통계자료에 의한다.
(3) 국토정보 구축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국토정보 관리(12점)

사업정의	구축된 국토정보의 무결성 확보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
(1) 지적공부 품질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지적측량, 건축, 설계 등 전반적인 SOC 사업의 기초 도면으로 활용하는 지적도면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품질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개별지적도 오류 정비율, 연속지적도 오류 정비율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개별지적도 오류 정비율×0.5) + (연속지적도 오류 정비율×0.5) 1) 개별지적도 오류 정비율 = $\frac{\text{오류정비 필지 수}}{\text{개별지적도 오류 필지 수}}$ 2) 연속지적도 오류 정비율 = $\frac{\text{오류정비 도곽 수}}{\text{연속지적도 오류 도곽 수}}$ ② 개별지적도 오류정비 필지수 및 연속지적도 오류정비 도곽수는 지적측량 업무 시스템인 비즈랜드 및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의한다.
(2) 국토정보 관리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국토정보 서비스(24점)

사업정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증대된 국토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국민 재산권 보호 등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1)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지적측량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1) 지적측량수요 해소: 100% 2)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지적측량수요해소율×0.5) +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0.5) 1) 지적측량 수요 해소율 = $\frac{\text{지적측량수요 해소 건수}}{\text{지적측량의뢰 건수}}$ 2)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 = $\frac{\text{5일 이내 현장착수 건수}}{\text{지적측량의뢰 건수}}$ ② 지적측량 의뢰 건수는 국민이 신청하는 지적측량 건수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 측량업무 대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측량업무(건) 중 세부측량으로 한다. - 12월 26일 이후 신청하더라도 연말까지 진행이 불가하여 기간을 한정 ③ 지적측량수요 해소 건수는 신청된 지적측량 서비스가 완료되어 지적측량결과부가 발급된 건수로 한다. ④ 5일 이내 현장측량 건수는 신청 후 현장 착수까지 5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 건수로 한다. - 현장측량 건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인 5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공간정보 거래 활성화율(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공간정보 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 등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공간데이터 민간거래 건수}}{\text{거래대상 공간데이터 건수}}$ ② 공간데이터 민간거래 건수 : 공간데이터마켓 내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 건수 ③ 거래대상 공간데이터 건수 : 공간데이터마켓 내 데이터 공급 종수(누계) ④ 공간데이터 민간거래 건수 및 거래대상 공간데이터 건수는 공간데이터마켓 통계자료에 의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2022년 공간데이터마켓 구축 완료에 따라 '26년은 4개년, '27년 이후는 5개년 표준편차를 적용한다.

(3) 국토정보 서비스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4
	(1) 복합영농기반 구축 노력도		8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2. 농촌용수관리사업			16
	(1) 농업용수 관리 노력도 제고		5	
	(2) 재해대비 시설안전관리 노력도		4	
	(3) 농촌용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농지은행사업			15
	(1)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9	
	(2) 농지은행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농어촌활력증진사업			9
	(1) 농촌 성장환경 조성 노력도		5	
	(2)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4점]

사업정의	다양한 작물의 효율적 생산체계 구축과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업분야 민간지원 등을 통해 국가 식량자급률 개선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복합영농기반 구축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복합영농기반구축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복합영농기반구축 노력도} = \frac{\text{발전환 배수개선사업 증가율(B)}}{\text{논 배수개선사업 증가율(A)}}$ $A = \frac{\text{당해연도 논 배수개선사업 시행면적(ha)}}{\text{논 배수개선사업 잔여면적(ha)}}$ $B = \frac{\text{당해연도 발전환 배수개선사업 시행면적(ha)}}{\text{발전환 배수개선사업 잔여면적(ha)}}$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논, 발전환(타작물) 배수개선사업 시행면적은 당해연도 농식품부에서 예산배정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지구의 수혜면적 합계로 함 • 논과 발전환(타작물) 배수개선사업의 분류는 농식품부에서 지구지정한 결과에 따름 • 논, 발전환(타작물) 배수개선사업의 잔여면적은 배수개선사업 중장기계획상의 전체대상면적에서 직전년도까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면적으로 함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② 농촌용수관리사업 [16점]

사업정의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리시설 성능개선 및 친환경적인 관리로 농촌지역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농업용수 관리노력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안정적 농업용수 관리로 농업용수이용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농업용수관리 노력도 $= \frac{\sum (\text{월별 정상단계*} \times \text{각 저수지별 저수용량 비중} \times \text{월별 강수**})}{365}$ * 평년대비 저수율 70% 초과 ** 강수보정계수 = $\frac{10\text{개년 평균 월별 강수량}}{\text{당해연도 월별 강수량}}$ ※ 산출시 고려사항 • 농업용수 관리노력도 제고지표는 각 저수지별 정상(평년대비 70%초과)일수를 각 저수지의 저수용량 비중을 곱한 값에 강수보정계수를 곱하여 365일로 나눈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 • 각 저수지 저수용량 비중은 전체 평가대상 저수지 유효저수량 중 해당 저수지의 유효저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함 • 대상 저수지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유효저수량 100만^m³ 이상의 저수지로 함 • 강수량 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 • 최고목표는 1(100%)을 초과 할 수 없음 • 당해년 월별 강수는 10개년 평균의 110%를 초과할수 없음

(2) 재해대비 시설안전관리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호우 및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피해 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의 안전점검활동과 그 성과를 향상시키는 노력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안전활동성과 = $(\frac{\text{지적사항 건수}}{\text{안전활동 지구수}} \times 0.5) + (\frac{\text{조치완료 건수}}{\text{지적사항 건수}} \times 0.5)$ ※ 산출시 고려사항 - 안전활동 지구수는公社「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근거로 시행되는 지도 점검 중 주요점검(해빙기, 우기대비, 종합점검) 기준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개선이 목적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적용함 ‘지적사항 건수’와 ‘조치완료 건수’는 당해연도(1.1~12.31)에 한하여 적용

(3) 농촌용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농지은행사업 [15점]

사업정의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9점)

정 의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 및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재 양성 지원을 통해 농업의 세대전환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농지 집단화 노력도(6점) + 정예청년농 육성 기여도(3점) 1) 농지 집단화 노력도 = $\frac{\text{농지 집단화 지원면적 (ha)}}{\text{공공임대농지 지원면적 (ha)}}$ 2) 정예청년농 육성 기여도 = $\frac{\text{정예청년농 육성인원 (명)}}{\text{청년농 지원인원 (명)}}$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농지 집단화 노력도는 농지를 집적화·규모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원한 농지면적을 대상으로 산출 - 농지 집단화 지원면적은 농업인의 경작농지와 물리적으로 경계가 맞붙은 연접농지를 지원한 면적 - 공공임대농지 지원면적은公社가 통제 불가능한 기존계약의 재계약건 제외 • 정예청년농 육성 기여도는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지은행사업을 대상으로 산출 - 정예청년농 육성인원은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이후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3ha 이상 농지를 지원받은 청년농업인 수 - 청년농 지원인원은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이후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청년농업인 수 • 농지 집단화 노력도 및 정예청년농 육성 기여도에 사용되는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FBIMS)을 기준으로 함

(2) 농지은행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4 농어촌활력증진사업 [9점]

사업정의	농어촌 공간을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유무형의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사회의 활력증진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농촌 성장환경 조성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농어촌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 공간의 재배치에 기여한 실적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1)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 노력도 = 당해연도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매출액(백만원)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회계결산서의 해당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2)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운전면허사업			19
	(1) 운전면허관리의 공공성 제고도		11	
	(2) 운전면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도로환경 개선사업			14
	(1) 교통안전활동 성과		2	
	(2)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6	
	(3) 도로환경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교통방송사업			12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 제고 성과		7	
	(2) 교통방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			9
	(1) 교통안전교육 사업성과		5	
	(2)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운전면허사업 [19점]

사업정의	엄정한 운전면허 관리와 적성검사 제도 운영을 통해 교통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운전면허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익 향상

(1) 운전면허관리의 공공성 제고도 (평가방식 : ①③목표부여, ②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1점)	
정의	국정과제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부응하고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노력 및 성과, 운전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면허취득조력 성과, 도시형시험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③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운전면허관리의 공공성 제고도 = ①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제고 성과(4점) + ② 취약계층 운전면허취득 제고율(3점) + ③ 도시형시험장 이용 활성화(4점) ①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제고 성과 = $\left(\frac{\text{고령운전자 1만명당 사망자수}}{\text{안전운전 컨설팅률}} \right)^{-1}$ -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운전자 - 고령운전자 1만명당 사망자 수 = $\frac{\text{고령운전자가해 교통사고 사망자수}}{\text{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소지자수}} \times 10,000$ - 안전운전 컨설팅률 = $\frac{\text{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 인원}}{\text{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갱신수검 인원}} \times 100$ ② 취약계층 운전면허취득 제고율 = $\frac{\text{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자수}}{\text{운전지원센터 연간 운영일수}}$ - 취약계층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상이자 -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자수 = 운전지원센터를 통한 당해연도 취약계층 운전면허 취득자수 - 운전지원센터 연간 운영일수 = (전년도 운전지원센터수 × 당해연도 운영일수) + (신규 운전지원센터 개소일부터 당해연도 12.31.까지 운영일수) - 운영일수는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연간 근로일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도시형시험장 이용 활성화 = $\frac{\text{도시형시험장 학과시험 응시건수}}{\text{전체 학과시험응시건수}} \times 100$ - 도시형시험장 : 운전면허시험장 외 학과시험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시험장

(2) 운전면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2 도로환경 개선사업 [14점]

사업정의	국민안전 중심의 도로환경 집중 개선과 교통안전 서비스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1) 교통안전활동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신호운영 기반의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교통안전활동 성과 = ① 안전조치 요구수 ×0.5 + ② 안전조치 이행률 ×0.5 ① 안전조치 요구수 = $\left(\frac{\text{안전관리 요구 교차로}}{\text{안전활동 투입인원}} \right)$ ② 안전조치 이행률 = $\left(\frac{\text{안전조치 완료 교차로}}{\text{안전관리 요구 교차로}} \right)$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증빙은 공단 신호운영개선 월별 집계표, 정원표와 같은 내부통계를 객관적 자료로 증빙 •안전관리 요구 교차로는 공단이 경찰청 또는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한 교차로를 의미 •안전관리 완료 교차로는 안전관리 요구 교차로 중 경찰청, 도로관리청(국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이 조치를 완료한 교차로를 의미 •안전활동 투입인원: 교통안전본부 및 지방조직(지부) 교통안전본부 산하 부서 정원으로 산정 •안전조치 이행률의 최고목표가 1을 초과할 경우, 1을 최고목표로 함

(2)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실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 의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치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1.0	0.9	0.8	0.7	0.6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② 중장기 목표 :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0.6명 이하로 감소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증빙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등 통계자료					

(3) 도로환경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3] 교통방송사업 [12점]

사업정의	교통방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공익방송의 사회적 책임 실현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 의	공익방송의 책임 강화를 위해 우수 콘텐츠 제작, 공공성 확보, 국민 참여,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송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당해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 최상위 채널 득점 최저목표 : 당해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 최하위 채널 득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방송평가 향상도 $= 20 + 80 \times \frac{\text{당해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 득점}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산출시 고려사항 1) 평가의 기준이 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평가 기준, 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표를 수정한다. 2) 방송평가 항목 중 '내용 및 편성'에 해당되는 수상실적, 방송심의, 시청자 의견반영,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등 4개 항목을 평가한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 득점은 전국 tbn FM의 평균 실적 적용 4) 최고목표, 최저목표 산정 시 다채널 방송사일 경우 소속(또는 계열사) 방송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평균 실적 적용

(2) 교통방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 [9점]

사업정의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로 모든 국민이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

(1) 교통안전교육 사업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하향), ② 목표대실적(상향), 가중치 : 5점)	
정 의	예방교육 확대와 처벌교육 감소를 통한 운전자 안전의식 향상 노력과 교육 사업 서비스 만족도 측정으로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재정경제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사업 목표치
측정 산식 및 변수	교통안전교육 사업성과 = ① 운전자 안전의식 향상 노력도 × 0.6 + ② 교육사업 서비스 만족도 × 0.4 ① 운전자 안전의식 향상 노력도 = $\frac{\text{처벌교육 이수인원}}{\text{예방교육 이수인원}}$ - 처벌교육 이수인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도로교통법)에 의한 정지·취소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수를 의미함 - 예방교육 이수인원은 비처벌성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수를 의미함 ② 교육사업 서비스 만족도 = 재정경제부 주관 평가연도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사업 목표치 대비 달성률 ※ 산출시 고려사항 • 예방교육 이수인원과 처벌교육 이수인원은 통계청, 경찰청, 공단 교육운영 시스템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기초로 측정함

(2)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부채/자산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사고·사망재해 예방 사업			25
	(1) 사고·사망재해 감소		15	
	(2) 사고·사망재해 예방 사업의 성과관리 적정성	10		
	2.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11
	(1)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확대 성과		3	
	(2)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체계 구축성과		3	
	(3)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의 성과관리 적정성	5		
	3.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12
	(1) 보건관리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3	
	(2) 작업환경측정 이행 및 개선지원		4	
	(3)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사업			6
	(1)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3	
	(2)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㉖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사고·사망재해 예방 사업 [25점]

사업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키고, 안전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으로 사고·사망 재해예방 기반 조성

(1) 사고·사망재해 감소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15점)

정의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를 달성을 위한 사고사망자 및 사고부상 감소성적을 평가한다.(하향지표)

목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노동안전 종합 대책) 및 공단 중장기 경영목표에서 정한 목표치로 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망재해 감소(‰)	0.37	0.35	0.33	0.31	0.29
사고부상 감소(%)	0.44	0.43	0.42	0.41	0.4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고·사망재해 감소 = 사망재해감소 x 0.6 + 사고부상 감소 x 0.4

①-1 사망재해 감소 = $\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근로자 수}} \times 10,000$

①-2 사고부상 감소 = $\frac{\text{사고부상자 수}}{\text{근로자 수}} \times 100$

②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통계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자 및 사고부상자 수와 근로자 수로 함

③ 사고부상 감소는 공단 직원이 사고·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직접 점검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④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목표치 설정('18.1월) 이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 되어 편입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아래 산재보험 정보 적용대상)는 실적 산출시 제외

구분	산재보험 정보(DB)
소규모 건설공사	CNTRWK_AMOUNT_SCTN_CD “11, 12” CNTRWK_YAR_SCALE_VALE < 100 CNTRWK_MJR_SCALE_VALE < 200
1인 미만 사업장	AVG_LABRR_CO < 1
중소기업 사업주	BSNS_CL_CD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0821 ~ E0846, E0901 ~ E0909

(2) 사고·사망재해 예방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10점)

②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11점]

사업정의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대비하는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

(1)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확대 노력과 도입 사업장 재해감소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 하향지표)
기준치	(상향)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하향)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확대 성과 =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증가율(2점) +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재해감소(1점) ①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frac{100인\ 미만\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수}{100인\ 미만\ 전\ 업종\ 사업장\ 수} \times 10,000$ 증가율(2점) = ※ 도입사업장 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www.kras.or.kr)을 통해 당해연도에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100인 미만)으로 함 ※ 전 업종 사업장수(100인 미만)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함 ②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frac{100인\ 미만\ 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사고재해율}{100인\ 미만\ 전\ 업종\ 사고재해율} \times 100$ 재해감소(1점) = ※ 사고재해율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산정 함

(2)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체계 구축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고위험업종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위험업종 안전보건 체계 구축 성과 = $\frac{\text{컨설팅 실시 사업장 실적평가 점수}}{\text{건설업체 실적평가 점수}} \times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컨설팅 실시 사업장 실적평가 점수는 컨설팅 대상 중 직전년도에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당해연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점수 ③ 건설업체 실적평가 점수는 컨설팅 대상 중 직전년도에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지 않은 사업장의 당해연도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평가 점수

(3)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12점]

사업정의	근로자는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사업주는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산업현장의 건강위험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지원

(1) 보건관리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수진자 확대를 통한 직업성 질병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보건관리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 $\frac{50인\ 미만\ 사업장\ 수진자\ 수(b)}{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a)}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a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통계 현황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 • b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특수건강진단 수진자 수

(2) 작업환경측정 이행 및 개선지원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 이행 및 개선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작업환경측정 이행 및 개선지원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율(2점) + 작업환경 위험사업장 개선율(2점) ①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율(2점) = $\frac{\text{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 이행 사업장 수}}{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수} \times 100$ ② 작업환경 위험사업장 개선율(2점) = $\frac{\text{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수}}{\text{작업환경 위험 사업장 수}} \times 100$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율> 산출 시 고려사항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 이행 사업장은 전년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당해연도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사업장으로 함(소음·분진 제외) ※ <작업환경 위험사업장 개선율> 산출 시 고려사항 • 작업환경 위험 사업장은 전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 관리 기준(노출기준의 50%)을 초과한 사업장으로 함(소음, 고열 제외) •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은 작업환경 위험사업장의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당해연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감소한 사업장으로 함 • 노출수준 감소 사업장은 기준값(관리기준 1.5배) 이상인 경우 전년 대비 3%이상 감소, 기준값 미만인 경우 전년대비 1%이상 감소 시 개선 실적으로 인정

(3) 직업건강활동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 사업 [6점]

사업정의	사업장의 자기규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사업주·근로자 대상 교육·콘텐츠 제공, 국민의 안전인식 향상 홍보 등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 사업 추진

(1)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의	안전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 개선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② 교육 이수 사업장 재해감소 성과 [목표대실적] <table><tr><td>연도</td><td>2025년</td><td>2026년</td><td>2027년</td><td>2028년</td><td>2029년</td></tr><tr><td>사고사망만인율(‰)</td><td>0.570</td><td>0.533</td><td>0.515</td><td>0.496</td><td>0.478</td></tr></table>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고사망만인율(‰)	0.570	0.533	0.515	0.496	0.478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사고사망만인율(‰)	0.570	0.533	0.515	0.496	0.478								
측정 산식 및 변수	○ 안전보건교육 확대 성과 = 경영책임자 등 교육 확대(1점) + 교육이수 사업장 재해감소 성과(2점) ① 경영책임자 등 교육 확대=$\frac{\text{경영책임자 등 교육 이수자 수}}{\text{전체 투입 예산}}$ ② 교육 이수 사업장 재해감소 성과=$\frac{\text{경영책임자 등 교육 이수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text{경영책임자 등 교육 이수 사업장 근로자 수}} \times 10,000$ * 경영책임자 등 교육: 사업주(경영책임자) 대상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현장 교육 포함), 자기규율 예방체계 교육 * 투입 예산은 안전보건교육 사업 전체 예산으로 함 * 교육 이수 사업장 재해감소 성과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 교육 이수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및 근로자 수로 함												
(2) 안전문화 기반조성 및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석유관리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자체수입증가율		0.5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석유시장 검사 사업			32
	(1)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8	
	(2) 석유 불법유통 점검체계 고도화		7	
	(3) 부과금 과다환급 신청 차단 노력		3	
	(4) 석유시장 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2. 수소시장 관리 사업			12
	(1) 수소 유통 확대 및 충전 편의성 제고		7	
	(2) 수소시장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시험연구 사업			10
	(1) 시험연구 성과 및 활용성 제고		6	
	(2) 시험연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자체수입증가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체수입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② 자체수입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석유시장 검사 사업 [32점]

사업정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및 유통질서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여 품질 건전성 및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

(1) 석유사업자 건전성 확보 (평가방식 : 중장기 목표부여, 가중치 : 8점)

[illegible]

(2) 석유 불법유통 점검체계 고도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공정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한 불법유통 근절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 단, 2026년은 표준편차(과거 4개년), 2027년부터는 표준편차(과거 5개년)를 적용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석유 불법유통 점검체계 고도화 = $\frac{\text{의심업체 중 적발된 업체 수}}{\text{불법행위 의심업체 수}} \times 100$ ② 불법행위 의심업체 수는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 국토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선별되어 공문 등으로 제공된 석유사업자 수의 합 ③ 의심업체 중 적발된 업체 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발된 석유사업자 수의 합

(3) 부과금 과다환급 신청 차단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 의	세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석유수입부과금 과다 환급 차단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과금 과다환급 신청 차단 노력 = $\frac{\text{과다환급 차단금액}}{\text{환급금 신청금액}}$																																
	② 환급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같은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환급하는 금액																																
	<table><tr><td>제1항 제1호</td><td>제1항 제2호</td><td>제1항 제3호</td><td>제1항 제4호</td><td>제1항 제5호</td><td>제1항 제6,7호</td><td>제1항 제8호</td><td>제1항 제9호</td><td>제1항 제10호</td><td>제3항</td><td>제4항</td></tr><tr><td>수출</td><td>공업 원료</td><td>비축</td><td>국내생산 부족</td><td>운할기유 제조원료</td><td>KRX 전자상거래 이용</td><td>LNG 열병합 발전</td><td>LNG 냉난방 연료</td><td>LNG 벙커링</td><td>원유 도입선 다변화</td><td>과오납 등</td></tr></table>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제1항 제4호	제1항 제5호	제1항 제6,7호	제1항 제8호	제1항 제9호	제1항 제10호	제3항	제4항	수출	공업 원료	비축	국내생산 부족	운할기유 제조원료	KRX 전자상거래 이용	LNG 열병합 발전	LNG 냉난방 연료	LNG 벙커링	원유 도입선 다변화	과오납 등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제1항 제4호	제1항 제5호	제1항 제6,7호	제1항 제8호	제1항 제9호	제1항 제10호	제3항	제4항																						
수출	공업 원료	비축	국내생산 부족	운할기유 제조원료	KRX 전자상거래 이용	LNG 열병합 발전	LNG 냉난방 연료	LNG 벙커링	원유 도입선 다변화	과오납 등																							
③ 환급금 신청금액은 당해연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시스템에 등록된 환급 신청 금액의 합																																	
	④ 과다환급 차단금액은 당해연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시스템에서 과다하게 신청되어 취소된 환급 신청 금액의 합																																
	- 과다환급 차단금액 = 과다 환급신청금액 - 환급금액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중복 신청, 환급 대상·용도 오류, 단위 오류 등으로 인한 반려·취소는 과다환급 차단금액에서 제외

(4) 석유시장 검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4점)

② 수소시장 관리 사업 [12점]

사업정의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수급관리 및 유통량 확대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 편의를 향상하는 사업

(1) 수소 유통 확대 및 충전 편의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의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및 수소 충전소 영업 중단일 최소화 노력을 통해 수소 유통량 확대 및 소비자 충전편의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 하향지표)
기준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① 수송용 수소 유통량 확대(상향)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3개년) * 단, 2027년은 표준편차(과거 4개년), 2028년부터는 표준편차(과거 5개년)를 적용한다. ② 수소충전소 영업중단률 감소(하향)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수소 유통 확대 및 충전 편의성 제고 = ① 수송용 수소 유통량 확대(4점) + ② 수소충전소 영업중단률 감소(3점) ① 수송용 수소 유통량 확대 = $\frac{\text{승용차 수소 유통량} \times 0.4 + \text{승용차 외 차량 수소 유통량} \times 0.6}{\text{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실적}}$ · 수소 유통량은 전국 충전소에서 수소 차량에 공급되는 연간 수소 판매량의 합 - 승용차 수소 유통량은 승용차에 공급된 수소 판매량 - 승용차 외 차량 수소 유통량은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에 공급된 수소 판매량

측정 산식 및 변수	-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실적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수소사업자가 구매한 운송장비 대수의 합 (누적, 운송장비는 수송용 수소 운송용에 한함) - 수소 유통량은 전국 충전소에서 수소 차량에 공급되는 연간 수소 판매량의 합 - 승용차 수소 유통량은 승용차에 공급된 수소 판매량 - 승용차 외 차량 수소 유통량은 버스, 화물차, 특수차량에 공급된 수소 판매량 -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실적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수소사업자가 구매한 운송장비 대수의 합 (누적, 운송장비는 수송용 수소 운송용에 한함) ② 수소충전소 영업 중단률 제고 = $\frac{\text{전국 수소충전소 영업중단 일수}}{\text{전국 수소충전소 계획 운영 일수}} \times 100$ - 전국 수소충전소 영업중단 일수는 생산사 및 출하센터에서 수급 차질 등의 사유로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지 못한 일수의 합 - 전국 수소충전소 계획 운영 일수는 연간 전국 충전소별 사전 통지된 휴무 일수를 제외한 운영 일수의 합 (365일-사전 통지된 휴무일) ※ 산출시 고려사항 -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과 POS 미연계 충전소, 긴급 설비고장이 발생한 충전소, 수소공급시설(석유화학사, 생산기지 등)의 예방정비에 따라 사전 공지(하잉)되어 공급 중단된 충전소는 제외 - 사전통지된 휴무일에 영업하는 경우 충전소 계획 운영 일수에 포함 - 영업 중단일과 사전 통지된 휴무일은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을 활용하여 확인 (영업 중단일은 판매 정보로 확인하며, 충전소가 영업시간(하잉 등록 기준) 내에 판매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수소시장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시험연구 사업 [10점]

사업정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관련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시험 신뢰성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

(1) 시험연구 성과 및 활용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석유제품 품질 향상, 석유대체연료 보급 관련 연구개발 및 민간·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활성화하고 창출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시험연구 성과 및 활용성 제고 = $\frac{\text{연구성과활용} \times 0.6 + \text{민간·중소기업 기술지원} \times 0.4}{\text{최근 3개년 평균 예산}}$ ② 연구성과활용 = 국내·외 학술지 논문 수 - 국내 학술지 논문 수 : 당해연도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수 - 해외 학술지 논문 수 : 당해연도 SCI(E)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 - 해외 학술지 논문 수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함 - 참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참여율은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③ 민간·중소기업 기술지원=시험재원 국산화×0.7+기술컨설팅×0.3 - 시험재원 국산화 :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시험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건수 - 기술컨설팅 : 민간·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지원 실적 등을 말함 ④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연구사업비)으로 산출함

(2) 시험연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자체수입증가율		0.5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37
	(1) 승강기사고 인명피해율		9	
	(2) 승강기 간힘시간 감소율		6	
	(3) 부적합 승강기 처리기간 단축성과		6	
	(4)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6		
	2. 승강기 산업 지원사업			11
	(1) 에너지절감형 승강기 확산성과		4	
	(2) 중소기업 승강기 설계 기술력 향상 성과		2	
	(3) 승강기 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승강기 안전문화사업			6
	(1) 이용자과실 승강기 중대고장율		2	
	(2) 승강기 관리주체 간힘승객 구조율		2	
	(3) 승강기 안전문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자체수입증가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체수입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② 자체수입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㉕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37점]

사업정의	효율적사고예방·대응과 지속적인 안전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국민의 승강기 안전 확보

(1) 승강기사고 인명피해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9점)

정 의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목 표	행정안전부가 정한 연도별 정책목표					
	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목표	1.558	1.493	1.428	1.362	1.297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승강기 인명피해율 = $\frac{\text{사고 피해인원}}{\text{총 인구수}} \times 1,000,000$					
	② 사고 피해인원은 당해 연도에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인원 중 사망자와 부상자(「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의 부상자)를 합산*한 인원을 의미함					
	* 사망과 부상에 대한 가중치는 피해인원 1인당 사망 2, 부상 1					
	③ 총 인구수는 매해 12월 말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승강기 간힘시간 감소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승강기 이용자 간힘에 대해 구조방식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승객의 간힘시간 감소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간힘시간 감소성과 = $\frac{\Sigma \text{간힘시간}}{\Sigma \text{중대고장 간힘건수}}$ ② 중대고장 간힘건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 중 이용자가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어 공단에 통보된 고장건수를 의미함 ③ 간힘시간은 공단에 통보된 중대고장 중에서 승객이 갇힌 순간부터 구조가 완료된 시간까지 소요된 전체시간을 의미함

(3) 부적합 승강기 처리기간 단축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승강기 검사 부적합 항목의 개선기간을 단축하여 승강기 위해요소를 조기 제거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적합 승강기 처리기간 단축 성과 = $\frac{\Sigma \text{부적합 처리기간}}{\text{부적합 승강기 대수}}$ ② 부적합 승강기 대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연도에 조건부합격을 판정받은 승강기 대수를 의미함 ③ 부적합 처리기간은 조건부 합격을 받은 날부터 개선을 완료하여 합격을 받을 때까지의 소요일을 의미함 ④ 부적합 승강기 대수 및 부적합 처리기간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운영되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의 통계를 활용 ⑤ 관련 고시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부적합 사항 이행 기간을 별도로 인정받은 승강기는 부적합 승강기 대수 및 부적합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4) 승강기 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6점)

② 승강기 산업 지원사업 [11점]

사업정의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확대

(1) 에너지절감형 승강기 확산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승강기 안전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승강기의 확산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에너지절감형 승강기 대수}}{\text{승강기 보유대수}} \times 100$ ② ‘승강기 보유대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3조에 따라 운영되는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등록된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대수를 말하며,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의 승강기 보유대수를 활용 ③ ‘에너지절감형 승강기 대수’는 승강기에 ‘회생전력장치’ 등 에너지 절감형 장치가 설치·적용된 승강기의 대수를 말하며, 당해연도 12월말 기준의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www.elevator.go.kr)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
(2) 중소기업 승강기 설계 기술력 향상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 ②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중소 승강기 업계에 대한 설계 기술지원으로 승강기 설계심사 적합률을 개선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중소기업 승강기 설계 기술력 향상 성과 = ①기술지원율(0.5점)+ ② 설계심사 적합률(1.5점) ① 기술지원율 = $\left(\frac{\text{기술지원 수혜 중소기업 설계심사 신청 건수}}{\text{중소기업 설계심사 신청 건수}} \right) \times 100$ ② 설계심사 적합률 = $\left(\frac{\text{기술지원 수혜 중소기업 설계심사 적합 건수}}{\text{기술지원 수혜 중소기업 설계심사 신청 건수}} \right) \times 100$ ※ 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중소기업: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현대 엘리베이터, 오티스 엘리베이터, 티케이 엘리베이터,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을 제외한 기업 • 기술지원 수혜 중소기업: 공단의 기술지원(교육, 기술간담회, 기술상담,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설계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된 설계심사
(3) 승강기 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승강기 안전문화사업 [6점]

사업정의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직무자 책임이행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

(1) 이용자과실 승강기 중대고장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중대 고장 발생을 예방한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이용자과실 승강기 중대고장율} = \frac{\sum \text{이용자과실 고장건수}}{\sum \text{중대고장 건수}} \times 100$ ② 중대고장 건수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어 공단에 통보된 고장건수를 의미함 ③ 이용자과실 고장건수는 공단에 통보된 중대고장 중에서 고장의 원인이 이용자과실에 의해 발생한 중대 고장을 의미함

(2) 승강기 관리주체 간힘승객 구조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승강기 이용자 간힘에 대응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인해 신속하게 구조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승강기 관리주체 간힘승객 구조율} = \frac{\sum \text{관리주체 구조건수}}{\sum \text{중대고장 간힘건수}} \times 100$ ② 중대고장 간힘건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 중 이용자가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되어 공단에 통보된 고장건수를 의미함 ③ 관리주체 구조건수는 공단에 통보된 중대고장 중에서 관리주체(안전관리자)가 갇힌 승객을 구조한 건수를 의미함

(3) 승강기 안전문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2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중저준위방폐물 인수·처분사업			20
	(1)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		9	
	(2) 중저준위방폐물 발생 대비 처분성과		3	
	(3) 중저준위방폐물 인수·처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방폐물 관리시설 확충·안전운영사업			29
	(1) 종사자 피폭선량 안전관리 성과		8	
	(2)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지수		7	
	(3) 처분시설 안전운영 노력		2	
	(4) 방폐물 관리시설 확충·안전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3.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5
	(1) 고준위 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2	
	(2)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㉑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㉒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중저준위방폐물 인수·처분 사업 [20점]

사업정의	발생기관으로부터 중저준위 방폐물을 인수·검사·처분하는 과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폐물 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9점)

정 의	중저준위방폐물을 경주 방폐물 처분시설에 안전하게 반입하여 처분하기 위한 활동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인수검사 대상 방폐물량-인수 부적합 방폐물량)/인수검사 대상 방폐물량}×0.3+{(처분검사 신청 방폐물량-처분 불합격 방폐물량)/처분 검사 신청 방폐물량}×0.7 ② 인수검사 대상·인수 부적합 방폐물량 :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공단이 경주 처분시설에서 실시하는 인수검사 대상 방폐물 수량 및 인수검사 불합격 방폐물 수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인수검사 부적합 방폐물 발생 보고' 자료에 의함 ③ 처분검사 신청·처분 불합격 방폐물량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처분시설에서 실시하는 처분검사 신청 방폐물 수량 및 처분검사 불합격 방폐물 수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통지하는 '처분검사 결과 통보' 자료에 의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방폐물 안전처분 성과'의 최고목표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최고목표로 함

(2) 중저준위방폐물 발생 대비 처분 성과 (평가방식: 중장기 목표 부여, 가중치: 3점)

정 의	외부 방폐물 관리 위험 해소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 대비 기관의 처분 성과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연도 목표치 *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높은 경우 실적치로 함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기준치-2×단위목표

평가방법	$20\text{점}+80\text{점}\times\left[\left(\frac{\text{실적}-\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text{최저목표}}\right)\times 0.5+\left(\frac{\text{실적}(\text{최근3년평균})-\text{최저목표}(\text{최근3년평균})}{\text{최고목표}(\text{최근3년평균})-\text{최저목표}(\text{최근3년평균})}\right)\times 0.5\right]$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저준위방폐물 발생 대비 처분 성과 : $\frac{\text{중저준위방폐물 처분총량}}{\text{중저준위방폐물 발생총량}}\times 100$ ② 중저준위방폐물 발생총량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주무부처에 보고된 국내 전체 방폐물 발생량 (단위: 200L 드럼) ③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총량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주무부처에 보고된 처분시설 내 전체 방폐물 처분량 (단위: 200L 드럼) ④ 중장기 목표 : 2030년까지 국내 전체 중저준위방폐물 발생총량 대비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총량 비중을 25.462%까지 확대
(3) 중저준위방폐물 인수·처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방폐물 관리시설 확충·안전운영사업 [29점]

사업정의	방사선과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폐물 처분시설 확충·안전 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종사자 피폭선량 안전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8점)

정 의	기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종사자 피폭선량 안전관리 실적(%) = $\frac{\text{방사선작업종사자(명)} - \text{기준선량 이상 피폭 종사자(명)}}{\text{방사선작업종사자(명)}}\times 100$ ② 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항에 따른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종사자 ③ 기준선량 이상 피폭 종사자: 기록준위 이상 피폭된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당해연도 기준선량 이상 피폭된 방사선작업종사자 - ‘기준선량 이상 피폭 종사자’는 피폭수준에 따라 아래 가중치 적용 * (기준선량 이상 기준선량 1.5배 미만)×1+(기준선량 1.5배 이상 기준선량 2배 미만)×3+(기준선량 2배 이상 기준선량 3배 미만)×5+(기준선량 3배 이상)×10+(20mSv 초과)×50

측정 산식 및 변수	가. 기록준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관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피폭선량 관리 최소값 나. 기준선량: 아래 산식으로 도출 하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선량한도인 20mSv를 초과 할 수 없음 $\text{기준선량} = \text{일반인 선량한도 (1mSv)} \times \left[\frac{\text{최근 3년간 평균 공간 방사선량}}{\text{시설초기 평균 공간 방사선량}} \times 0.4 + \frac{\text{최근 3년간 평균 방폐물량}}{\text{시설초기 평균 방폐물량}} \times 0.3 + \frac{\text{최근 3년간 평균 작업량}}{\text{시설초기 평균 작업량}} \times 0.3 \right]$ • ‘최근 3년간’은 직전 3개년, ‘시설초기’는 처분시설 운영초기 3개년(2015~2017)을 의미 • ‘공간 방사선량’은 처분시설 내 측정 된 공간 방사선량 중 가장 높은 선량(uSv) • ‘방폐물량’은 처분시설 내 처분된 누적 방폐물량 • ‘작업량’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시간

(2)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지수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7점)

정 의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기관의 사고예방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무사고)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100-(사망사고 건수×40+방사선사고 건수×30+중대재해 건수×10+일반재해 건수×2) ② 사망사고 : 근로자,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③ 방사선사고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규정」 부록 2의 사건평가지침 중 4등급(사고)이상의 사건 ④ 중대재해 : 처분시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를 제외한 재해 ⑤ 일반재해 : 처분시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재해 ※ 산출시 고려사항 • 중대재해 및 일반재해 사고관리 대상 : 중저준위처분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단 내부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사고 실적에서 제외 * 천재지변, 교통사고, 근로자간 폭행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처분시설 안전운영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규제기관의 지적사항을 줄이는 성과를 통해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안전운영 대상 건수 - 지적사항 발급 건수) / 안전운영 대상 건수\} \times 100$ ② 지적사항 발급 건수 :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 결과로 발급된 지적건수 ③ 안전운영 대상 건수: 정기검사 대상 기술기준 서류, 주요설비 및 절차서의 합 가. 기술기준 서류 : 원자력안전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승인받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의 인허가서류 나. 주요설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표 3.1-1 “주요구조물, 계통 및 기기” 다. 절차서 : 정기검사 수검대상 절차서(품질보증·운영·RI 절차서) ※ 산출시 고려사항 • 정기검사 대상 기술기준 서류, 주요설비 및 절차서 수는 연도말일(12.31)을 기준으로 집계 • ‘처분시설 안전운영 노력 성과’의 최고목표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최고목표로 함
(4) 방폐물 관리시설 확충 · 안전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2점)	

[3]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5점]

사업정의	고준위방폐물에 관한 제도 마련, 부지선정, 핵심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고준위 기술 개발 및 확산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확산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최근 3년 평균 예산]의 평점 × 0.1 + [국내외 학술지 논문 수 / 최근 3년 평균 예산]의 평점 × 0.5 + [기술이전 건수/ 최근 3년 평균 예산]의 평점 × 0.4 ②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기관이 관리하는 고준위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하며, 삼국특허는 10배 가중치를 적용 ③ 국내외 학술지 논문 수 - 해외 학술지 논문 수: 기관이 관리하는 고준위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SCI(E), SSCI, A&HCI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 - 국내 학술지 논문 수: 기관이 관리하는 고준위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수 * 해외 학술지 논문 수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함. ④ 기술이전 건수 : 고준위 기술 관련 국내외 민간기업 기술이전 신규 및 갱신 계약체결건수, 성과공유과제 등록 승인건수로 산출하며, 기술이전(사용) 계약서 및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확인증으로 증빙한다. ※ 산출 시 고려사항 • 기준치, 목표 및 산식은 고준위 R&D로드맵 수립 ('22년) 이후 기술개발 실적 및 지출 예산으로 산출하여, '24년: 과거 2개년 표준편차, '25년: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6년: 과거 4개년 표준편차를 적용한다. • 최근 3년 평균 예산은 공단이 지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개발' 단위 과제 사업예산 항목으로 산출함.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국내외 학술지 논문 수는 기여율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지식재산권 기여율은 지원기관 수가 단수인 경우 100%, 지원기관 수가 복수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 국내외 학술지 논문 참여율은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 국내외 학술지 논문 수는 논문에 대한 표지, 사사표기, 게재년월, 저자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함

(2)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자체수입증가율		0.5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			27
	(1) 전기화재 감소		5	
	(2) 전기설비 안전확보 성과		6	
	(3) 전주기 전력설비 사고예방 노력도		4	
	(4)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2. 전기안전지원사업			18
	(1) 전기차 충전시설 부적합설비 개선 노력도		6	
	(2) 민간 전기안전관리 품질향상 노력		5	
	(3) 전기안전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전기안전진흥사업			9
	(1)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		5	
	(2) 전기안전진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자체수입증가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체수입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② 자체수입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 [27점]

사업정의	발전 및 송·변전설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빌딩 및 주택·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사용전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사업

(1) 전기화재 감소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전기화재 감소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전기화재 감소} = \frac{\text{전기화재 발생건수}}{\text{전기설비용량(MW)}}$ ②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전기화재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에 의한 발열이 발화원이 되는 화재의 총칭으로 전기적 원인의 발화원이 확인 된 화재를 말한다.

(2) 전기설비 안전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전기설비 법정사업 수행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확보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전기설비 안전확보 성과} = \frac{\text{보완조치 요구수}}{\text{기술검토 실시수}} \times 0.4 + \frac{\text{보완조치 완료수}}{\text{보완조치 요구수}} \times 0.3 + \frac{\text{법정검사 합격수}}{\text{법정검사 실시수}} \times 0.3$ ② 기술검토 실시수는 검사실시 전 도면, 서류 등 당해연도 기술검토 실시 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보완조치 요구수는 검사실시 전 권고, 시정 등 당해연도 보완조치 요구 건수 ④ 보완조치 완료수는 보완조치 요구사항을 개선 완료한 건수 ⑤ 법정검사 실시수는 당해연도 법정검사 실시 건수 ⑥ 법정검사 합격수는 당해연도 법정검사 합격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기술검토 실시수, 보완조치 요구·완료수, 법정검사 실시·합격수는 저압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3) 전주기 전력설비 사고예방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전력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고예방활동으로 대규모 정전에 기인한 전기재해 파급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평가(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주기 전력설비 사고예방 노력도 = $\frac{\text{사전기술검토 개선완료}}{\text{사전기술검토 실시}} \times 0.4 + \frac{\text{사용전 개선완료}}{\text{사용전 개선요구}} \times 0.3 + \frac{\text{사용중 개선완료}}{\text{사용중 개선요구}} \times 0.3$ ② 사전기술검토 실시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서류, 도면 등에 대해 접수를 받아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건수 ③ 사전기술검토 개선완료 : 기술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개선 완료한 건수 ④ 사용전 개선요구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중 개선을 요구한 건수 ⑤ 사용중 개선요구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중 개선을 요구한 건수 ⑥ 사용전 개선완료 : 사용전검사에서 개선요구한 사항 중 개선 완료한 건 ⑦ 사용중 개선완료 : 정기검사에서 개선요구한 사항 중 개선 완료한 건 ⑧ 개선요구건수는 시정요구서, 지적서 발행건수를 의미함 ⑨ 개선요구건수 및 보완·수정요구건수 집계 기준은 당해 연도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당해 연도 4분기 개선요구건에 대한 완료 실적은 익년도 1분기 이내 실적을 포함

(4) 전기안전검사·점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2점)

② 전기안전지원사업 [18점]

사업정의	국가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 및 전기사고 원인·경위 등의 조사와 민간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1) 전기차 충전시설 부적합설비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관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기차 충전시설 부적합설비 개선 노력도 = $\frac{\text{부적합 건수}}{\text{전체 실시 건수}} \times 0.5 + \frac{\text{개선 건수}}{\text{부적합 건수}} \times 0.5$ ② 전체 실시건수 :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점검 전체 최초 실시 건수 ③ 부적합 건수 : 전기차 충전시설 최초 부적합 설비 건수 ④ 개선 건수 : 전기차 충전시설 최초 부적합 설비가 개선되어 적합 설비로 전환하는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1월부터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민간 전기안전관리 품질향상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민간 전기안전관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안전 품질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민간 전기안전 일자리 창출 노력 = $\frac{\text{부적합 조치요구 건수}}{\text{계측장비 기술지원 건수}} \times 0.5 + \frac{\text{개선 조치완료 건수}}{\text{부적합 조치요구 건수}} \times 0.5$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계측장비 기술지원 건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민간에서 계측장비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기준으로 함 ③ 부적합 조치요구 건수 :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④ 개선 조치완료 건수 :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부적합 조치요구 건수는 현지시정 조치완료 건수를 포함한다. • 부적합장비 조치요구 건수 및 개선 조치완료 건수는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전기안전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전기안전진흥사업 [9점]

사업정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 연구 및 기술 개발·보급, 국가 전기안전 기술력 강화를 위한 교육,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전기안전 진흥사업

(1)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감소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 $\frac{\text{전기화재 인명피해자 수}}{\text{고객호수(백만호)}}$ ② 전기화재 인명피해 수는 사망 2, 부상 1의 비율로 합산하여 반영 ③ 중장기 목표 : 2029년까지 전기화재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율을 감소 시켜 정책목표 수준 이하로 달성 - 전기화재 인명피해율 : 6.900 ※ 산출시 고려사항 • 전기화재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에 의한 발열이 발화원이 되는 화재의 총칭으로 전기적 원인의 발화원이 확인 된 화재를 말한다. • 전기화재 인명피해자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고객호수는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의 고객호수로 산출한다.

(2) 전기안전진행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전력거래소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전력계통 운영 사업			27
	(1)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6	
	(2)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2	
	(3) 탄소중립 실현 수요예측 경쟁력 강화		5	
	(4) 광역정전 예방 및 안전관리		3	
	(5) 전력계통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2.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16
	(1) 글로벌 전력시장 가격 안정성 관리		3	
	(2)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성과		2	
	(3) 국민 참여형 전력시장 확산 성과		2	
	(4) 전력거래 정확도		2	
	(5)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미래형 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11
	(1)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감축 전원믹스 달성 노력도		6	
	(2) 미래형 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전력계통 운영 사업 [27점]

사업정의	전력망 운영기술 고도화 및 예측 정확도 제고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1)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적정 전력예비력 확보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정부고시의 예비전력 기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수급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예비력을 연중 365일 일정 범위내로 유지하는 변동성 최소화 노력도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적정 예비력 확보기준의 상·하한 범위 유지 노력으로 운영예비력 실적 최적화 산식 : [연중 일일 운영예비력 최적화 점수의 평균]		
	최적화 점 수	운영예비력 최적화 실적	페널티 점수
		상한 초과시 (설비용량의 13%)	매 1만kW 편차마다 1점
		하한 미달시 (800만kW미만)	매 1만kW 편차마다 2점, 단, 650만kW 미만시는 5점
※ 운영예비력 최적화 상하한 범위 : 예비력 800만kW~일일 설비용량의 13% (전력수급기본계획 적용)			
※ 운영 예비력 최적화 점수 :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한 시간대의 가용 운영예비력이 최적화 상·하한 범위 포함 여부에 따라 페널티 점수 부여			

(2)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원인물질(대기오염물질) 감축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여한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목표치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준치	28%	31%	34%
	* 연도별 기준치는 정부에서 발전공기업으로 부여한 목표치의 평균값을 적용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환경 개선 노력도 =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② 감축 실적은 2017년~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먼지) 평균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감축실적 * 발전공기업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 대비 저감 실적을 종합하며, 배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TMS(Tele-metering System) 공식 측정 자료를 적용 ③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준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부·전력기관 협약을 통해 발전공기업으로 부여한 목표치의 평균 값을 적용한 것으로, 2017년~2018년 석탄화력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 대비 당해연도 배출량 감축 목표량임 ※ 전력거래소는 발전 및 송전망 운영 책임기관으로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계획 수립·운영 및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화력발전기 출력제한 검토·공표·운영, 발전기 환경설비 개선 정지 검토·승인,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등 전력부문 대기환경 개선의 핵심임무 수행 중

(3) 탄소중립 실현 수요예측 경쟁력 강화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수요예측 오차율 수준을 글로벌 TOP 실적과 비교하여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정교한 전력수요 예측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산 식	$20+80 \times (\text{실적} - \text{최저목표}) / (\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목 표	최고목표 : 비교대상기관의 연평균 Peak Error(%) 중 가장 낮은 실적 최저목표 : 비교대상기관의 연평균 Peak Error(%) 실적 평균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 일별 최대수요실적 대비 최대수요 발생시간대 수요예측값의 연평균 오차율 $= \Sigma \left(\frac{ \text{최대수요실적} - \text{수요예측값} }{\text{최대수요실적}} \right) / \text{연간일수}$ ② 최대수요실적은 계통운영시스템(EMS)에 등록된 일별 최대수요실적 적용 ③ 수요예측값은 전력거래시스템(E-powermarket)에 등록된 수요예측값(최대수요실적 발생시간대 해당하는 값) 적용 ※ 산출시 고려사항 • 연평균 Peak Error : 일별 최대수요실적 대비 최대수요실적 발생시간대 수요예측값의 연평균 오차율 • 비교대상기관 : 미국 전력계통 운영기관(PJM, ERCOT, CAISO) • 글로벌 실적은 비교대상기관에서 공표한 공식 통계 리포트 자료 중 최신 통계 사용

(4) 광역정전 예방 및 안전 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안정적인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과 국가 기반 시설의 기능연속성 확보를 통해 광역정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광역정전 예방성과 100점 달성 기반시설 기능연속성 강화 지수 100점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광역정전 예방성과 지수)×0.5+ (기반시설 기능연속성 강화 지수)×0.5 ② 광역정전 예방성과 지수=(계통주파수 유지율+광역정전 예방성과)/2 - 계통주파수 유지율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 4조 '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의 유지율로 2초 단위로 측정한 주파수가 60Hz에서 $\pm 0.1\text{Hz}$를 벗어나지 않는 데이터의 연간 비중 - 광역정전 예방성과 : $100 - (\text{연간 광역 정전 발생시간} \times 10)$ - 광역정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분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500MW 이상 수용가에 '전력공급 장애정전'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국가승인통계인 전력시장통계를 기준으로 산출 ③ 기반시설 기능연속성 강화 지수=계통시스템 안전 가동률(0.6) +사이버 안전관리(0.2)+기반시설 보안강화(0.2) - 계통시스템 안전 가동률=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및 전력시장운영시스템(CBP)의 가동률 평균으로,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가동중지 시간을 제외한 연간 가동시간 비중(%) - 사이버 안전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전력거래소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점수 적용 - 기반시설 보안강화=$100 - (\text{국가핵심기반 관리실태 점검 지적건수} \times 5\text{점})$

(5) 전력계통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 11점)

②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16점]

사업정의	국민참여형 신시장 확대 및 저탄소 중심의 효율적 전력시장 운영

(1) 글로벌 전력시장 가격 안정성 관리 (평가방식: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3점)

정 의	전력시장 가격 및 변동성 수준을 지수화한 시장가격 안정화 지수를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시장 개편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산 식	$20+80 \times (\text{국내 시장가격 안정화 지수} - \text{최저목표}) / (\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목 표	최고목표 : 주요 국가 중 시장가격 안정화 지수 상위 1~3순위 국가의 평균값 최저목표 : 주요 국가 중 시장가격 안정화 지수 하위 6~8순위 국가의 평균값
측정 산식 및 변수	시장가격 안정화 지수는 주요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① 시장가격 평균값 비교 계수 및 ② 시장가격 변동성 비교 계수를 합산하여 산출 ① 시장가격 평균값 비교 계수=해당 국가의 연평균 시장가격÷해당 국가의 연평균 시장가격 중 최댓값 ② 시장가격 변동성 비교 계수* =해당 국가의 거래시간별 시장가격 표준편차 ÷ 해당 국가의 연평균 시장가격 * 해당 국가의 시장가격 변동성을 환율 환산 없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표준편차 ÷ 평균값) 기법을 활용하여 산출 ※ 산출시 고려사항 • 주요 국가 :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PJM), 캐나다(IESO), 일본, 호주(AEMO) • 글로벌 실적은 국가별 공식 통계의 하루전 시장가격 기준 최신 자료 적용 • 국가별 단일 시장가격이 산출되지 않고 지역별로 가격만 산출될 경우 통계 상 대표지역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적용 • 시장가격 평균값 비교시 환율은 국가별로 해당 연도를 포함한 과거 5개년 연평균 환율값 적용

(2)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관의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MWh)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20+80×(REC 거래량-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량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계약 및 현물 REC 시장에서 거래된 전력량(1REC=1MWh로 환산) ② 기준치 :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MWh) =총생산 전력량(MWh)×의무공급비율(%)-자체건설 이행량(MWh) - 총생산 전력량 :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총전력생산량(신재생법 18조의4) - 의무공급비율 : 당해연도 의무공급비율(신재생법 시행령 별표3) - 자체건설 이행량 :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자체 건설한 신재생발전 기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한 물량, 시장 거래하지 않으므로 제외
(3) 국민 참여형 전력시장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2점)	
정 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력신시장(직접PPA, 국민DR)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직접PPA 거래량 평점 x 0.5) + (국민DR 거래량 평점 x 0.5) ※ 직접PPA 거래량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8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 ※ 국민DR 거래량 : 수요관리사업자(전기사업법 제31조⑤)가 소규모 전기사용자로 구성한 국민DR을 통해 감축한 전력량
(4) 전력거래 정확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전력거래 프로세스 전반의 정확성 및 안정성 향상 성과를 “①정산정확도”와 “②결제 정확도”의 제고 노력으로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전력거래 정확도 실적은 “정산정확도”의 평점과 “결제정확도”의 평점을 1:1의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 ① 정산 정확도 = 정산수정건수 ÷ 총 정산건수 - 정산 수정건수 = 초기 정산금 대비 확정 정산금이 정정된 건수 - 총 정산건수 = 정산 대상 발전기의 총 정산 건수 ② 결제 정확도 = (입금시간 미준수 건수 ÷ 총 입금건수)×0.5 + (지급시간 미준수 건수 ÷ 총 지급건수)×0.5 - 입금시간 미준수 건수 : 전력시장운영규칙 상 입금시간의 미준수 건수 - 총 입금건수 : 연간 총 입금 건수 - 지급시간 미준수 건수 : 전력시장운영규칙 상 지급시간의 미준수 건수 - 총 지급건수 : 연간 총 지급 건수 ※ 전력거래 정확도는 발전기 시간단위로 정산하므로 모든 건수는 발전기별, 시간별 데이터 기준 • 단,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의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월의 계통한계가격 수정건수는 일 단위 데이터 기준(전력시장통계 기준 적용) ※ 결제 정확도는 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된 차수에 발생한 건수 기준 ※ 자료는 익년도 1월말 전력거래시스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최고목표가 '0'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목표는 '0'으로 함 ※ 법, 고시, 규칙 개정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재정산, 재결제는 제외

(5) 전력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미래형 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11점]

사업정의	무탄소 전원 확충 및 전력인프라 혁신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사업
(1) 재생에너지 중심 탄소감축 전원믹스 달성 노력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핵심사항인 수급안정성, 에너지안보 및 환경성(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저탄소 전원믹스 구성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국가 상위계획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상의 저탄소 전원믹스 계획 100% 이행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저탄소 전원믹스}^* \text{ 실적}}{\text{저탄소 전원믹스 계획}} \times 100$ * 저탄소 전원믹스 = (신재생발전 설비용량 +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 석탄발전 설비용량 • 저탄소 전원믹스 실적: 한국전력통계(국가승인통계)의 해당연도 발전원별 설비용량(MW)을 기준으로 산출한 저탄소 전원믹스 실적 • 저탄소 전원믹스 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 5항에 따라 최근 확정 공고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산출한 저탄소 전원믹스 목표
(2) 미래형 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선박검사사업			25
	(1) 선박안전 강화성과		8	
	(2) 선박도면 품질향상 강화성과		6	
	(3) 선박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2. 여객선 운항관리사업			15
	(1)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4	
	(2) 해상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5	
	(3) 여객선 운항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			14
	(1)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		4	
	(2) 해양교통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성과		2	
	(3) 친환경선박 인증성과		2	
	(4)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선박검사사업 [25점]

사업정의	선박검사를 통한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객 중심의 대국민 지원을 수행하여 해양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

(1) 선박안전 강화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선박안전법, 어선법에 의해 집행된 선박검사척수 대비 수리보완요청지수 실적과 수리보완요청지수 대비 수리보완조치완료지수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text{선박안전 강화성과} = \left(\frac{\text{수리보완요청지수}}{\text{해당연도선박검사척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수리보완조치완료지수}}{\text{수리보완요청지수}} \times 0.5 \right)$ - 수리보완요청지수 = 집중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수리보완요청수×0.8 + 그 외의 선박에 대한 수리보완요청수 × 0.2 - 수리보완조치완료지수 = 집중관리 대상선박에 대한 수리보완조치완료수×0.8 + 그 외의 선박에 대한 수리보완조치완료수×0.2 - 수리보완요청수는 선박검사 시 수리보완요청서를 발급한 건수 - 해당연도선박검사척수는 사업결산서상의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의한 정기(최초정기 포함), 중간검사 집행 척수 - 수리보완조치완료수는 수리보완요청서의 내용을 개선하여 선박검사에 합격한 건수 - 집중관리 대상선박은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선박(선령 30년 이상)과 여객선 * 노후선박 : 선령 30년이상 어선·일반선을 말하며, 선령 산정기준은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름 * 여객선 : 선박안전법에 따른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함

(2) 선박도면 품질향상 강화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선박안전법, 어선법에 의해 집행된 도면승인 신청건수 대비 보완요청 항목 건수와 보완요청 항목 건수 대비 개선 항목 건수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선박도면 품질향상 강화성과 $= \left(\frac{\text{해당연도 도면승인 보완요청 항목건수}}{\text{해당연도 도면승인 신청건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해당연도 도면승인 보완개선 항목건수}}{\text{해당연도 도면승인 보완요청 항목건수}} \times 0.5 \right)$ - 도면승인보완개선의 개선 항목 건수는 공문에 의해 도면승인 신청자에게 도면승인보완 요청한 항목 중 개선된 실적을 산정하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된 선박검사지침 및 어선검사지침에 따라 본부 승인 건에 한함 - 도면승인보완요청의 요청 항목 건수는 공문에 의해 도면승인 신청자에게 도면승인보완 요청한 항목을 산정하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된 선박검사지침 및 어선검사지침에 따라 본부 승인 건에 한함 - 도면승인 신청건수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된 선박검사지침 및 어선검사지침에 따른 본부 승인 대상 신청 건에 한함

(3) 선박검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② 여객선 운항관리사업 [15점]

사업정의	여객선 및 여객선 교통환경의 안전관리와 여객선 이용자,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해양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사업

(1)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선 안전운항 확보 ① 노력(상향지표) 및 ②, ③ 성과(하향지표)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당해연도 실적치 ③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의하거나 운항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제외한다.
(2) 해상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내항여객선 항로 안전성 향상과 위해요소 저감 노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해상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 항로안전 관리실적 50% + 항로안전 확보실적 50% ② 항로안전 관리실적 = $\frac{\text{항로점검실적}}{\text{내항여객선 항로 수}}$ - 항로점검 실적은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자가 내항여객선에 직접 승선하여 항로를 점검하고 공단이 관리하는 운항관리업무절차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실적(건)을 말함 - 내항여객선 항로 수는 “내항여객운송사업 항로 고시”에 따른 면허 항로 중 해당연도에 운항실적이 발생한 항로를 말함 ③ 항로안전 확보실적 = $\frac{\text{위해요소 개선실적}}{\text{항로점검실적}}$ - 위해요소 개선실적은 내항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 및 기항지에 관해 발견된 위해요소 중 해당연도에 개선이 완료된 실적(건)을 말함
(3) 여객선 운항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 [14점]

사업정의	해양사고 예방 중심 안전체계 강화와 안전·친환경분야 정책 및 기술 지원을 통하여 해양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1)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 해양교통안전 확보 노력을 통한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년~'26년)의 연차별 목표치 준용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해양사고 (등록선박 100척당)	2.348	2.196	2.045
	인명피해 (인구 백만명당)	1.818	1.764	1.711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해양교통안전 확보성과 = ① 해양사고율×2.0점 + ② 인명피해율 ×2.0점			
	① 해양사고율 = $\left(\frac{\text{해양사고 건수}}{\text{등록선박척수(백척)}} \right)$ - 해양사고 건수는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자료(사고종류별 해양사고 현황)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로 함 - 등록선박척수는 해양수산부의 통계자료에 의함. 단, 정부통계 집계기간 평가기간에 공표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등록선박척수를 준용함 ② 인명피해율 = $\left(\frac{\text{인명피해(명)}}{\text{총 인구수(백만명)}} \right)$ - 인명피해 명수는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공시하는 '인명피해현황' 중 인명 사망 및 실종 인원으로 함 - 총 인구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이며 당해연도 12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함 - 목표치 :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년~'26년)의 2026년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연차별 목표치를 준용하여 '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 해양사고율과 인명피해율 목표치 산정을 위한 등록선박척수와 총 인구수는 '22년도 기준의 등록선박 108,022척 및 총 인구수 51,439,038명으로 함			

(2) 해양교통안전 기술개발 및 보급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공단의 해양교통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산식 = 논문 성과 40%(0.8점) + 지식재산권 성과 20%(0.4점) + 기술이전 성과 40%(0.8점)

및 변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논문 성과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수 / 최근 3개년 평균 연구개발비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수 : [2 × 해외학술지(SCI(E)급) 논문게재 건수] + 국내학술지(KCI 등재후보지 이상) 논문게재 건수 - 참여율은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② 지식재산권 성과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최근 3개년 평균 연구개발비 -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공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하며, 삼극특허는 10배 가중치를 적용함 - 기여율은 지식재산권이 창출된 당해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용역의 협약서(계약서)에 따른 공단의 지식재산권 지분을 적용 ③ 기술이전 성과 = 기술이전(실시) 건수 / 최근 3개년 평균 연구개발비 - 기술이전(실시) 건수 : 공단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창출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이전(실시)계약 실적 건수로 기술이전(실시) 계약서로 증빙 ④ 최근 3개년 평균 연구개발비 : 공단에 배정된 자체연구개발과제, 국가 연구개발과제, 수탁연구용역 연구개발비 합계의 최근 3개년 평균(억원)

(3) 친환경선박 인증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운영중인 친환경선박 인증제도의 인증건수 및 친환경선박 인증 확대 노력 대비 사용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친환경선박 인증성과 $= \frac{(\text{친환경선박 인증 건수} \times 0.7) + (\text{친환경선박 인증 확대 노력} \times 0.3)}{\text{평가년도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위탁 예산}}$ - 친환경선박 인증 건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단이 발행한 본·예비 인증서 건수 - 친환경선박 인증 확대 노력은 공단이 친환경선박 인증 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공동주최 설명회 및 현장방문 기술지원으로 공문서 증빙이

측정 산식 및 변수	가능한 실적 - 평가년도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위탁 예산은 친환경 인증사업 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계약의 과업지시서 또는 보조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운용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4) 해양교통안전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위탁집행형 - 산업진흥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52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862
3. 우체국금융개발원	870
4. 우체국물류지원단	880
5. 한국관광공사	890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00
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10
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20
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932
10. 한국산업단지공단	942
11. 한국산업인력공단	952
12. 한국에너지공단	962
13. 한국연구재단	970
14. 한국인터넷진흥원	980
1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90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12
	(1)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의 수출 확대 성과		7	
	(2)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2.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16
	(1)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성과		5	
	(2) 혁신성장 분야 해외 공급망 진입지원 사업 성과		4	
	(3)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무역 지원 인프라 혁신 및 경제 안보 강화 지원사업			14
	(1) AI 무역 확대 성과		5	
	(2) 해외 인프라 진출지원 확대 성과		3	
	(3) 무역 지원 인프라 혁신 및 경제 안보 강화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			12
	(1)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지원 성과		7	
	(2)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12점]

사업정의	수출 중소기업 육성으로 수출 주체를 다변화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1)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의 수출 확대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 의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의 수출 확대 성과 = 내수기업 수출 확대 성과(4점) + 수출초보기업 수출 확대 성과(3점) ② 내수기업 수출 확대 성과 : 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내수기업 중 당해연도에 1,000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 수(개사) ③ 수출초보기업 수출 확대 성과 : 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수출초보기업 중 당해연도에 10만 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 수(개사) ④ 대상 고객은 고객·사업관리시스템에 당해연도 기관 서비스 이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평가연도 5월 발표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은 대상 고객에서 제외 •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하는 관세청 수출 통계(차년도 2월 확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청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실적은 무역협회의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서를 증빙으로 함 • 내수기업은 관세청 수출 통계 기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인 기업, 수출초보기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뜻함
(2)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②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16점]

사업정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1)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기관의 타깃국가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 성과 = 기관의 타깃국가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이 발생한 건수 (기업별 국가수)(2점) + 기관의 타깃국가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출액(\$)(3점) ② 대상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타깃국가를 설정하여 수출기회를 모색하는 맞춤형 기간제 사업인 해외 지사화 사업,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하는 관세청 수출 통계(차년도 2월 확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청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실적은 무역협회의 용역/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실적증명서를 증빙으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평가연도 5월 발표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은 대상 고객에서 제외 - 이 외 중계무역 및 통과무역의 수출실적은 기타 거래입증문서(수출신고필증, 계약서, 신용장, Commercial Invoice, 내륙운송장 등)를 통해 실제 최종 목적국 으로 수출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으로 함

(2) 혁신성장 분야 해외 공급망 진입지원 사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소부장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해외 기업의 공급망 구축 및 소싱 다변화 수요를 타깃팅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성약이 발생한 해외수요처의 수를 평가 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혁신성장 분야 해외 공급망 진입지원 사업 성과 = 기관의 혁신성장 수요기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최종 성약 발생한 해외수요처의 수 ② 혁신성장 수요기반 수출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 해외 기업의 공급망 구축, 소싱 다변화 수요를 타깃팅하는 국내 담당부서와 해외조직의 지원사업을 의미함 ③ 최종 성약은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3년 동안 공사가 발굴한 해외수요처의 공급망 구축 및 소싱 다변화 수요에 대한 지원내역이 고객·사업관리시스템 상에 입력되어 있는 수출·성약 건을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수요처는 글로벌기업 및 관계사(Tier1, Tier2 벤더·무역상사), 해외정부·기관, 산업 해당 기업 등으로 하며, 글로벌기업 대상 수출·성약의 경우 복수 국가에서 지원하여 각각 수출·성약 발생 시 별도 실적으로 집계함 • 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하는 관세청 수출 통계(차년도 2월 확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관세청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실적은 무역협회에서 인정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확인을 증빙으로 함 • 계약을 통한 해외수요처 진출 성약의 경우 해외수요처 대상 계약확정과 대금지급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한정함 • (대기업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해당 연도 1월 발표 기준 상호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 집단 소속기업)은 제외함
(3)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무역 지원 인프라 혁신 및 경제 안보 강화 지원사업 [14점]

사업정의	무역 지원 인프라 혁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1) AI 무역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AI 무역 확대를 위해 기관에서 운영하는 AI 무역 플랫폼인 buyKOREA를 통해 최종 성약이 이루어진 수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AI 무역 확대 성과 = 공사 AI 무역 플랫폼(buyKOREA)을 통한 수출성약 건수(2점) + 공사 AI 무역 플랫폼(buyKOREA)을 통한 수출성약액(\$)(3점) ② 공사의 AI 무역 플랫폼인 buyKOREA 시스템 상에 인콰이어리(바이어의 구체적인 구매수요) 혹은 국내기업의 상품정보 등록 후 최종 성약이 발생한 건으로, 공사 buyKOREA 혹은 고객관리시스템(CRM) 상에 실적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산출시 고려사항 - 성약증빙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하는 관세청 수출 통계(차년도 2월 확정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확인필증, buyKOREA내에서 발생한 거래 증빙(신용카드, T/T, PayPal 등), C/I류+B/L류, 바이어 확인서, 무역협회 확인서 등 거래입증문서 - 수출면장 증빙의 정확성 확인 시 수출건의 필증번호, 신고일자, 바이어명, 국내기업명을 바탕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확인 후 확인필증 발급

(2) 해외 인프라 진출지원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실적 및 효율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해외 인프라 진출지원 확대 성과 =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실적(건) / 투입예산(억원) ②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실적은 국내기업이 공사의 지원을 받아 플랜트·에너지·건설·인프라·환경·ICT 및 ICT기반 융복합 등 분야의 해외 프로젝트에 설계, 건설·토목, 공급·납품·조달, 사업관리(CM, PMO), 운영·관리(O&M), 감리, 조사, 기술지원 등의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수를 의미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공사의 지원은 국내기업이 공사사업에 참가하거나 공사가 국내기업에게 프로젝트 관계자 상담지원, 정보제공, 면담실시 등을 제공한 것을 의미함. - 실적은 공사의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또는 고객 관리 시스템 내에 프로젝트 정보와 공사 지원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건 중, 계약서, 낙찰통보서, 착수지시서(NTP), 수주확인서(LOA), 해외건설협회 수주통계 등 국내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참여 증빙을 구비한 건에 한함. - 투입예산은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주요 사업 수행 및 해외 수주지원센터·협의회 운영을 위한 연간 예산 집행액을 의미함.

(3) 무역 지원 인프라 혁신 및 경제 안보 강화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사업 [12점]

사업정의	주요 산업·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사절단·IR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외국인 신규·증액 투자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사업

(1)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지원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7점)

정의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발굴·유치를 지원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지원 성과 = 공사의 투자유치 사업을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유치 신고실적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5백만 달러 이상 투자유치 신고실적(건) ※ 산출시 고려사항 • 동일 프로젝트의 다수 투자 건은 1건으로 계산, 아울러 동일 투자가의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다수 소액 투자건(5백만 달러 미만)의 투자액 합계가 5백만 달러 이상시 1건으로 인정 • 다수 투자가의 동일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건은 복수 건으로 인정 • 외국인투자유치 신고실적은 산업통상부의 외국인투자유치실적 공식발표 또는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기준 당해연도 투자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신성장동력 산업은 전략적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가 사전에 확인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따름

(2) 외국인투자유치 및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1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1	
	㉔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소상공인 지속가능성 제고			19
	(1) 소상공인 성장 및 재도약 지원		7	
	(2)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성과		3	
	(3) 소상공인 지속가능성 제고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시장·상권 활성화			18
	(1)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7	
	(2)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2	
	(3)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2	
	(4) 시장·상권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정책자금 효과성 제고			17
	(1) 정책자금 영업지속 성과율		6	
	(2)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4	
	(3) 정책자금 효과성 제고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소상공인 지속가능성 제고 [19점]

사업정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1) 소상공인 성장 및 재도약 지원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의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유도하고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재창업률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상공인 성장지원 성과(4점) $= \text{소상공인 수출 성과} \times 0.5 + \text{소상공인 민간투자 유치 성과} \times 0.5$ ㉠ 소상공인 수출 성과 = $\frac{\text{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수출액(달러)}}{\text{기업가형 소상공인 선정업체 수}}$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창의·혁신 아이템 등을 보유하고 로컬·라이프 스타일 등 유형별 경쟁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민간투자 유치 성과 = 민간투자·펀딩 유치액(백만원)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증빙) 관세청 수출액 통계(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 (실적증빙)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투자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실적 확인서 등 ② 소상공인 재창업률(3점) $\frac{\text{재창업자 수}}{\text{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 투입예산}} = \times 100$ - 재창업자 :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통해 재창업에 성공한 자 ※ 산출시 고려사항 • 재창업 인정 : 사업자등록 완료자 또는 업체(국세청 휴·폐업 조사로 확인)

(2)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H/W, S/W) 지원을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 = \frac{\text{t-1년도 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액}}{\text{t년도 평균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수혜 소상공인 매출액은 국세청 데이터 활용

(3) 소상공인 지속가능성 제고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시장·상권 활성화 [18점]

사업정의	시장경영 혁신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1)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전통시장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매출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점포당 평균 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지원 전통시장·상점가는 공모를 통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상점가로 정의한다. - 매출액은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매출액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의거 운영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에서 산출한다.

(2)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온누리상품권 유통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의 합산으로 산출

(3)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전통시장의 안전확보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전통시장 안전확보성과} = \left(\frac{\text{안전조치요구수}}{\text{안전점검시장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안전조치완료수}}{\text{안전조치요구수}} \times 0.5 \right)$ ※ 산출시 고려사항 • 안전점검시장수는 당해연도에 안전점검을 시행한 시장수로 한다. • 안전조치요구수는 안전점검을 통해 지자체 및 상인회에 안내된 조치권고수로서 '소상공인24'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 안전조치완료수는 지자체 및 상인회에서 조치권고사항을 처리완료하고 '소상공인24' 시스템에 입력된 수로 확인한다. • 5개년 데이터가 축적되는 '27년 평가부터 5개년 편차를 적용한다.

(4) 시장·상권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정책자금 효과성 제고 [17점]

사업정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성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을 평가한다.

(1) 정책자금 영업지속 성과율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정책자금 수혜업체 영업지속 성과율 측정을 통해 정책자금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저신용자 영업지속 성과 평점(50\%)} + \text{중신용자 영업지속 성과 평점(30\%)} + \text{고신용자 영업지속 성과 평점(20\%)}$ $\text{신용도별 정책자금 영업지속 성과 평점} = \frac{\text{생존업체 융자 지원금액}}{\text{총 융자 지원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융자 지원금액은 t-1년도 하반기부터 t년도까지 지원한 금액 • 신용도 기준: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중신용자(NCB 745점~839점), 고신용자(NCB 840점 이상)

(2) 정책자금 리스크 관리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소상공인 진단 기반의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의 최대손실예상한도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은 목표 신용-VaR 비중의 9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정책자금 사전리스크 관리 = 신용VaR 비중 ② 신용VaR 비중 = 당해연도 신용 VaR 소진액 / 대출잔액 ③ 목표는 평가 대상연도 전년 회계결산 확정 후 주무부처 승인으로 설정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리스크 관리 시스템 •평가대상 : 평가연도말 공단이 취급한 직접대출 총 잔액

(3) 정책자금 효과성 제고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우체국금융개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노동생산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예금지원 사업			16
	(1) 포용금융 제공 성과		6	
	(2) 지역금융 활성화 성과		3	
	(3) 예금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보험지원 사업			20
	(1) 보험 지속성장 제고 성과		5	
	(2) 유병자보험 제공 강화 성과		5	
	(3) 특별조건부계약 제고 성과		2	
	(4) 보험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고객서비스 운영 사업			18
	(1) 보험심사 만족도 제고 성과		5	
	(2)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성과		5	
	(3) 고객서비스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㉔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예금지원 사업 [16점]

사업정의	서민, 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경제적 생활 안정과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예금 인프라 운영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포용금융 제공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금융소외계층 대상 예금상품 확대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통한 포용금융 실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예금 포용금융 제공 성과 = 서민지원 상품 보급 성과(4점) + 고령자 디지털 전환 성과(2점) ② 서민지원 상품 보급 성과 = $\frac{\text{서민지원 예금상품 유지계좌}}{\text{우체국예금 전체 유지계좌}} \times 100$ ③ 서민지원 예금상품 유지계좌 : 우체국예금 서민지원 상품 유지계좌 수 ④ 우체국예금 전체 유지계좌 : 우체국예금 고객이 보유한 전체 유지계좌 수 ※ 산출시 고려사항 유지계좌는 우체국예금 고객이 해지하지 않고 유지중인 전체계좌(정상계좌, 거래중지편입계좌, 해지의제계좌의 합)를 의미함 ⑤ 고령자 디지털 전환 성과 = $\frac{65세 이상 고객 모바일뱅킹 정상계좌}{65세 이상 고객 전체 정상계좌} \times 100$ ⑥ 65세 이상 고객 모바일뱅킹 정상계좌 : 65세 이상 예금고객이 모바일뱅킹에서 가입한 정상계좌 수 ⑦ 65세 이상 고객 전체 정상계좌 : 65세 이상 예금고객이 보유한 전체 정상계좌 수

(2) 지역금융 활성화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비수도권 고객의 금융자산 형성을 뒷받침하여 지역 간 금융격차 완화 및 지역금융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비수도권 지역 금융 활성화 성과 = $\frac{\text{비수도권 우수고객 유지계좌}}{\text{비수도권 고객 수}} \times 100$ ② 비수도권 우수고객 유지계좌 :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고객 유지계좌 수 ③ 비수도권 고객 수 :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고객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우수고객 산출은 주무기관(우정사업본부)에서 정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제도 등급·선정기준'에 따름 • 주무기관(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전국 9개 우정청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 경인청을 제외한 7개 우정청(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전체를 '비수도권'으로 정의함

(3) 예금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보험지원 사업 [20점]

사업정의	고령자, 유병자 등 보험취약계층 대상 보험혜택 강화 및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보험 인프라 운영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보험 지속성장 제고 성과(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보험의 건전한 사업운영을 위한 손해율 관리와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총자산 증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하향, 상향지표)
목 표	해당연도 국내 생명보험사 총자산 가중평균 손해율×95% 해당연도 주무기관 우체국 보험총자산 목표×103%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험 지속성장 제고 성과 = 손해율 관리 성과(2.5점) + 총자산 목표달성도(2.5점) ② 손해율 관리 성과 = $\frac{\text{우체국보험 손해율}}{\text{국내 생명보험사 전체 평균 손해율} \times 95\%}$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우체국보험 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위험보험금의 비율로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우체국보험 경영공시에서 확인된 실적치
	$\text{우체국보험 손해율} = \frac{\text{위험보험금(B)}}{\text{위험보험료(A)}}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위험보험료(A) :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받은 보험료 • 위험보험금(B) : 보험계약자에게 위험보장의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④ 비교대상 실적인 국내 생명보험사 실적은 기업별 연도말 경영공시에 공시된 최적가정 실제손해율을 총자산 가중평균하여 그 값을 해당연도말 목표 설정
	$\text{⑤ 총자산 목표달성도} = \frac{\text{우체국 보험총자산 실적}}{\text{주무기관 우체국 보험총자산 목표} \times 103\%}$
	⑥ 우체국 보험총자산 실적 : 연말 기준 우체국 보험총자산 실적 ⑦ 주무기관 우체국 보험총자산 목표 :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계획 보험총자산 목표

(2) 유병자보험 제공 강화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보험 취약계층인 유병자 고객에 대한 가입 확대 및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 능력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유병자보험 제공 강화 성과 = $\frac{\text{유병자 전용상품 위험보험료}}{\text{전체 위험보험료}} \times 100$ ② 위험보험료 : 전체 보험료 중 보험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③ 유병자상품 위험보험료 : 만성질환 등으로 일반 보험을 가입 할 수 없는 유병자를 위한 간편보험 등의 위험보험료

(3) 특별조건부계약 제고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고객의 병력을 조건부로 처리하여 보험가입 기회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특별조건부계약 제고 성과 = $\frac{\text{특별조건부계약 처리건수}}{\text{특별조건부계약 대상건수}} \times 100$ ② 특별조건부계약 대상건수 : 특별조건부 계약이 가능한 청약건수 ③ 특별조건부계약 처리건수 : 특별조건부 계약으로 처리된 건수

(4) 보험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고객센터 서비스 운영 사업 [18점]

사업정의	신속·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고품질 금융고객상담을 통한 국민의 편리한 금융 생활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보험심사 만족도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국내 생명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민원 수준 비교를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 서비스의 품질 제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당해연도 국내 전체 생명보험사 민원 환산건수 × 95%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험심사 만족도 제고 성과 = $\frac{\text{우체국보험 지급 민원건수}}{\text{국내 생명보험사 지급 민원건수} \times 95\%}$ ② 우체국보험 민원 건수 : 유형별(판매·유지·지급·기타) 민원건수 중 지급 민원 건수를 보유계약건수 10만건 당 환산한 건수 ③ 국내 생명보험사 민원건수 : 국내 생명보험사 유형별(판매·유지·지급·기타) 민원건수 중 지급민원 건수(합계)를 보유계약건수(합계) 10만건 당 환산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우체국보험 민원건수는 우체국보험(https://www.epostlife.go.kr) 경영공시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 - 지급민원 건수는 연도말 기준으로 분기별(당분기) 공시된 지급민원 건수의 합 - 보유계약 건수는 연도말 개인보험 건수의 합

측정 산식 및 변수	• 국내 생명보험사 민원건수는 생명보험협회(https://klia.or.kr)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 - 국내 생명보험사 지급민원 건수의 합계는 ‘소비자-소비자포털-소비자 정보통합공시-민원건수-(유형별) 민원건수’에 연도말 기준으로 분기별 (당분기) 공시된 지급민원 건수의 합 - 보유계약 건수의 합계는 ‘소비자-생명보험 통계-월간생명보험통계(IV. 계약상황-IV-3. 보험종류별 보유계약)’ 연도말 개인보험 건수의 합
(2) 금융상담고객 만족도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의 고객편의 증대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상담고객 만족도 = $\frac{(\text{최초통화해결률(FCR) 평점} \times 0.5) + (\text{상담고객체감 만족도 평점} \times 0.5)}{2}$ ② 최초통화해결률(FCR):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이 고객센터(콜센터)로 걸려온 인바운드 전체 콜수 대비 당일 중복 통화건수를 제외하고, 최초1회만 연결된 전화의 완결통화건수 비율 * FCR(First Call Resolution Ratio) ③ 상담고객체감 만족도: 우체국금융 이용고객(예금·보험)을 대상으로 고객센터(콜센터)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을 평가한 결과 ※ 산출시 고려사항 • 최초통화해결률 통화건수는 주민번호 로그 기준(고객확정) • 최초통화해결률과 상담고객체감 만족도 조사결과 평점을 각각 산출하여 산식에 반영
(3) 고객서비스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우편물 운송사업			27
	(1) 운송품질향상		10	
	(2) 국제우편물 운송경쟁력 제고		6	
	(3) 우편물 운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2. 소포사업			19
	(1) 소포배달 서비스 품질 관리		7	
	(2) 물류센터 정시발송률		4	
	(3) 소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안전한 우편물류			8
	(1) 우편물류 안전지수		2	
	(2) 소포배달원 과로 방지 성과		2	
	(3) 안전한 우편물류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우편물 운송사업 [27점]

사업정의	전국 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을 안전·신속·정확하게 국내 배달우체국과 해외 우체국까지 운송하는 사업

(1) 운송품질향상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10점)

정의	신속·정확 지표를 통해 우편물 운송품질향상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표	무결점 정시도착률 달성(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정시도착률 = $\frac{\text{총 도착건수} - \text{지연 도착건수}}{\text{총 도착건수}}$ ② 총 도착건수: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한 총 우편물 운송차량 운행건수를 집계 * 육로운송에 한함(해상운송 제외) ③ 지연도착 건수: 도착시간 기준 1시간 초과 도착 건수를 집계

(2) 국제우편물 운송경쟁력 제고

(평가방식: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의	기관의 ① 국제우편물 운송서비스 향상(상향지표) 및 ② 운송지역 확대(상향지표)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노력을 평가한다.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① 운송서비스 향상(50%) + ② 운송지역 확대(50%) ① 운송서비스 향상 = $\frac{\text{국제특송우편물(EMS) 운송정보 정상제공 건수}}{\text{총 국제특송우편물(EMS) 발송건수}}$ (목표부여(편차)) - 국제특송우편물(EMS) 운송정보 정상제공 건수 : 총 발송 건수 중 지연 및 누락 건수 제외 - 총 국제특송우편물(EMS) 발송건수 : 우편물 종추적 시스템 구축 Kahala 11개국 발송 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방법 :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통계자료 'Kahala 운송사 별 전송률 조회' 건수 합계 * '05년~현재 카할라 우정 연합체(Khala Posts Group)는 11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캐나다)의 EMS 배달 보장 서비스를 시행 ② 운송지역 확대 = 국제우편물 항공운송지역 총 개수 (목표부여) - 항공운송지역: 항공운송을 통한 해외 우편물류서비스 제공 지역의 수를 의미 - 산출방법: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및 인터넷 우체국
(3) 우편물 운송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② 소포사업 [19점]

사업정의	집배원이 이륜차로 배달하기 어려운 고종량·고부피 소포우편물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위탁받아 배달지역별로 분류하여 발송하고, 소포위탁배달원(1톤차량)과 계약하여 국민들에게 배달하는 사업

(1) 소포배달 서비스 품질 관리(평가방식 : 글로벌 실적비교, 가중치 : 7점)	
정의	우체국소포 배달 서비스 품질 관리 성과를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전 세계 UPU 회원국 중 'UPU 배달 서비스 품질 지수' TOP 20 국가들의 평균 최저목표 : 전 세계 UPU 회원국들의 'UPU 배달 서비스 품질 지수' 평균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포배달 서비스 품질 관리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 $- 20점 + 80점 \times \frac{\text{기관 배달 서비스 품질 지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기관 배달 서비스 품질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 $- \text{기관 배달 서비스 품질 지수}^* = \frac{\text{도착 당일 배달 완료 물량}}{\text{도착 당일 배달 완료 물량} + \text{도착 당일 배달 미완료 물량}}$

측정 산식 및 변수	- 배달 서비스 품질 지수 : 품질 표준 기간 이내 실제로 배달된 우편물의 비율을 측정한 지수로, 100%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배달 서비스 품질을 의미 * 기관 배달 서비스 품질 지수 : 소포배달원이 배달 완료한 전체 우편물 중 도착 당일(배정받은 날) 배달 완료한 우편물의 비율을 측정한 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글로벌 실적치는 UPU[™](만국우편연합)에서 제공하는 우편통계 및 데이터 조회에서 평가대상년도 도래 전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활용 ** 1874년 설립된 192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제기구로서, 우편서비스의 표준화·조정·협력을 담당함(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국제기구) • 기관 실적치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에서 산출되는 배달 데이터를 활용

(2) 물류센터 정시발송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소포우편물 정시 발송 노력을 측정함으로써, 소포우편물 물류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물류센터 정시발송률} = \frac{\text{정시 발송 물량}}{\text{총 발송 물량}}$ ② 총 발송 물량: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에 처리된 물류센터 연간 총 소포우편물 발송 물량 ③ 정시 발송 물량: 물류센터 연간 총 소포우편물 발송물량 중 지연 발송 물량을 제외(총 발송 물량 - 지연 발송 물량) * 지연 발송 물량: 물류센터 발송 마감시각(23시20분)을 초과하여 중부권광역 우편물류센터로 발송된 물량

(3) 소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안전한 우편물류 [8점]

사업정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우편물류 구현

(1) 우편물류 안전지수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의

근로자의 ① 안전사고 및 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무사고 달성(10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우편물류 안전지수 = ① 산업안전지수(50%) + ② 교통안전지수(50%)

① 산업안전지수 = 100점 - ∑사고발생점수

구분	사망 사고	중대 재해	일반재해(일수)		
사고발생 점수 (건당)	40점	10점	91일 이상	90~29일	28~3일
			2점	0.5점	0.1점

※ 산출시 고려사항

• 사망사고 :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시 제외

-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② 교통안전지수 실적으로 평가

② 교통안전지수 = 100점 - ∑사고발생점수

구분	사망 사고	중대 재해	일반재해(일수)		
사고발생 점수 (건당)	40점	10점	91일 이상	90~29일	28~3일
			2점	0.5점	0.1점

※ 산출시 고려사항

• 사망사고 : 근로자가 사망한 자과실 교통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를 제외한 자과실 교통사고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 중 자과실 교통사고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시 제외

(2) 소포배달원 과로 방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 의	소포배달원의 장시간(야간) 근무 관리를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소포배달원 일 22시 이내 배달 완료 100%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포배달원 과로 방지 성과 = $\frac{\text{총 배달인원} - \text{일 22시 이후 배달인원}}{\text{총 배달인원}}$ ② 총 배달인원 : 일일 배달인원의 연간 누적 합계 ③ 일 22시 이후 배달인원 : 일일 배달완료시각이 22시를 초과하는 배달 인원의 연간 누적 합계 (단, 일일배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2시 이전 배달을 완료하였으나 배달결과등록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자료 기준 *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중 배달시간 관련 기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표 산식 및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3) 안전한 우편물류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 4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22
	(1) 효율적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성과		10	
	(2) MICE 신규 수요 창출 및 유치 성과		2	
	(3)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국내관광 활성화			18
	(1)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		7	
	(2) 관광복지 확대 성과		4	
	(3)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관광서비스 기반강화			14
	(1) 관광분야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3	
	(2) 관광기업 글로벌 진출 성과		2	
	(3) AI·관광데이터 활용 성과		3	
	(4) 관광서비스 기반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22점]

사업정의	방한 외래관광객의 양적 확대 및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마케팅 활동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효율적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0점)

정 의	공사 해외지사의 외래관광객 유치지원활동을 통해 모객한 외래객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circled{1} \text{ 효율적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성과} = \frac{\textcircled{㉠} \text{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한 외래관광객 모객실적}}{\textcircled{㉡} \text{ 투입예산}}$ $\textcircled{㉠}$ 외래관광객 모객실적 : 공사 해외지사의 유치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지 여행사, 업계 등과 공동으로 모객한 관광객 인원 $\textcircled{㉡}$ 투입예산 : 해당연도 공사 해외지사 사업비 ※ 산출시 고려사항 • 모객 실적은 상품화 유치지원 실적관리 시스템(TMS시스템)에 의해 산출 집계 • 신설지사의 실적과 투입예산은 신설연도 평가시 제외하고, 차년도 평가부터 포함 • 코로나 기간('20~'22년) 실적 제외

(2) MICE 신규 수요 창출 및 유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중대형 신규 MICE 행사 발굴·지원을 통한 MICE 신규 수요 창출 및 유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과거 3개년 평균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MICE 신규 수요 창출 및 유치 성과 = ㉠ 공사가 발굴하여 유치 지원한 MICE 행사 건수(1점) + ㉡ 공사의 유치 지원 활동을 통해 유치 성공한 MICE 행사 건수(1점) ※ 산출시 고려사항 • 정부·공공·학술·기업 단체가 주관하는 외국인 참가자 300명 이상, 최소 2일 이상 진행되는 중대형 MICE 행사 • 유치 지원 및 유치 확정 MICE 행사 건수는 관광마케팅시스템(TMS 시스템)에서 집계함 • 표준편차 산출 시 2026년은 과거 3개년, 2027년은 과거 4개년 적용

(3)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국내관광 활성화 [18점]

사업정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복지 확대 활동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비수도권 집중 홍보마케팅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사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집중 마케팅 지역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 = 당해연도 비수도권 집중마케팅 지점 내국인 관광객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집중 마케팅 지점 : 여행주간 캠페인의 집중 육성·마케팅 비수도권 관광지(서울, 경기, 인천 제외) • ‘내국인 관광객 수’는 국가승인통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유·무료 관광지)’ 자료 활용(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2) 관광복지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국내여행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를 통해 관광복지 확대 성과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참여실적 : 100%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당해연도 근로자 참여실적 = $\frac{\text{참여인원}}{\text{목표인원}}$ ㉡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 $\frac{\text{실제집행액}}{\text{최종 참여인원} \times \text{정부지원금}}$ ※ 산출시 고려사항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20만원), 기업(10~15만원), 정부(5~10만원)가 분담하여 조성한 금액(1인당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18년부터 시행) • ㉠ 당해연도 근로자 참여실적 : 참여인원은 근로자 개인 분담금(20만원)을 납부한 인원으로 임금내역을 증빙으로 집계 • ㉡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 최종 참여인원은 참여인원에서 중도 탈퇴자(참여기업이 신청하여 중도탈퇴 처리가 완료된 인원)를 제외한 인원 • 목표인원 :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정부계획 인원 • 참여대상 및 목표인원은 정부정책에 따름

(3)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관광서비스 기반강화 [14점]

사업정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기업 지원, 관광인력 양성, 관광데이터 개방·활성화 등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관광분야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관광분야 예비인재 교육, 취업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등 관광일자리센터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관광분야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 $= \textcircled{㉠} \text{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 / \textcircled{㉡} \text{ 전체 투입예산}$ $\textcircled{㉠} \text{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 = \text{관광일자리센터에서 제공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당연도 취업한 인원}$ $\textcircled{㉡} \text{ 전체 투입예산} = \text{관광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연간 투입예산}$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확인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정부·지자체·유관 기관 협업실적 공문 등 •표준편차 산출 시 2026년은 과거 3개년, 2027년은 과거 4개년 적용

(2) 관광기업 글로벌 진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관광기업 발굴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관광기업 글로벌 진출 성과 = 공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관광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실현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 비즈니스 실현 건수 : 공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국내 관광기업이 해외에서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 실적(해외기업과의 계약, 비밀유지 계약(NDA), 협약)

측정 산식 및 변수	* 실적관리시스템(TMS (Tourism Marketing System) 시스템) 내 등록된 성과 보고서 등 증빙이 구비된 실적에 한함 • 2022년 신설 사업으로 표준편차 산출 시 2025년은 과거 3개년, 2026년은 과거 4개년 적용
(3) AI·관광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과 AI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을 통한 AI·관광데이터 활용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AI·관광데이터 활용 성과} = (\text{① 맞춤형 관광 빅데이터 활용 건수} \times 0.5) + (\text{②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창출 수} \times 0.5)$ ① 맞춤형 관광 빅데이터 활용 건수 = 공사 관광 빅데이터 사이트(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관광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이용 건수 ②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창출 수 = 공사 관광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출된 서비스 개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① 맞춤형 관광 빅데이터 활용 건수: 사용자 맞춤형 분석결과 데이터셋 및 AI보고서 등을 다운로드한 건수로 '한국관광 데이터랩' 관리시스템에서 집계(2022년 공식 오픈으로 표준편차 산출 시 2026년은 과거 4개년 적용) • ②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창출 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OpenAPI), 공문, 공사 관광데이터 개방사이트(한국관광 콘텐츠랩)로 집계된 데이터 활용 건수(웹·앱 개발, AI 학습, AI 모델 개발, 신규 제품 개발·제작)
(4) 관광서비스 기반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17
	(1)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5	
	(2) 해외 온라인 한국식품관 수출성과		5	
	(3)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16
	(1) 농산물 온라인 거래활성화		5	
	(2) 산지유통스마트화		5	
	(3)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18
	(1)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9	
	(2)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4. 식품산업 육성사업			3
	(1)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		2	
	(2) 식품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㉓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17점]

사업정의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농어가 소득연계 품목 수출성과 (평가방식 : 글로벌실적비교,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지원사업 성과로 지원사업의 농어가 소득과 연계한 농식품 수출증대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OECD TOP 10 농수산물식품 최근 5년 수출증가율 평균값의 2배) 최저목표 : 기준치×(1-OECD TOP 10 농수산물식품 최근 5년 수출증가율 평균값의 2배)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 농어가 소득연계 수출 조직화에 참여하는 회원사 지원 수출액(\$) - 수출조직(수출협의회, 수출선도조직, 수출통합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 ② 지원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수출 조직화 사업에 참여한 농수산물 식품 회원사(제조자, 수출업체)의 당해연도 수출액 합계로 함 (대기업은 제외). *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지칭 ※ 산출시 고려사항 • 지원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TRASS) 실적치를 사용 • OECD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Global Trade Atlas에서 발표한 실적치를 사용 하며 한국을 제외한 수출액 사용

(2) 해외 온라인 한국식품관 수출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해외 온라인 한국식품관 운영을 통한 농수산물식품 수출 인프라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 해외 온라인 한국식품관 매출액(US\$) - 온라인 한국식품관 매출액 실적은 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매출 실적 증빙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달러 이외 통화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환산

(3) 농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농수산물 유통조성 사업 [16점]

사업정의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반에 걸쳐 유통기반 조성,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sum$ (농산물 온라인 거래실적) ② 농산물 온라인 거래실적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kafb2b 시스템) 산지 거래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산지거래액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스템(kafb2b) 통계 실적치를 사용 • 과거실적 : ('21~'25년) 농산물 온라인경매(eaT시스템) 참여업체 거래액 포함

(2) 산지유통스마트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산지유통의 조직화·전문화를 지속 확대하는 기반 위에서 스마트 APC를 통한 디지털 기반 유통 물류 효율성 증대 등 질적 성과의 확산 수준을 종합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 $\frac{\sum \text{스마트 APC 운영조직의 연간 매출액}}{\sum \text{전체 APC 운영조직의 연간 매출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전체 APC 운영조직은 정부가 승인한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출자출하조직을 지칭 • 스마트 APC 운영조직은 스마트화 평가를 통해 선정된 APC 시설지원 사업자를 지칭(스마트 APC 시설 지원이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의 매출액을 실적으로 집계) • 매출액은 정부의 「원예농산물 생산유통통합조직 육성 지침」 내 실적인정 기준 상 정해진 취급유형(공동선별출하, 공동출하)을 통한 매출액을 지칭 • 최종 실적은 생산유통통합조직 현장실사 및 연차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확정

(3) 농수산물 유통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18점]

사업정의	국산 농산물 구매 및 해외 농산물 수입·비축 후 시장가격 등 수급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9점)

정의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와 소비자에 대한 물가안정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월편차를 전년실적이 아닌 당해연도 공사관리의 농산물의 월편차와 비교하여 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의 가격변동 최소화 노력을 평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당해연도 식품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와 비교함으로써 공사가 관리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① 관리 농산물 가격변동 최소화 노력 : 농산물 중 공사관리품목을 제외한 품목의 당해연도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편차의 평균 ② 관리 농산물 가격안정 노력 : 연간 식품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	① 관리 농산물 가격변동 최소화 노력 - 최고목표: 기준치×70%, 최저목표: 기준치×120% ② 관리 농산물 가격안정 노력 - 최고목표: 기준치×95%, 최저목표: 기준치×115%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관리 농산물 가격변동 최소화 노력(6점) i) 실적 = 농산물 중 공사관리품목(A)의 평균 CPI 월 편차 $= \frac{\sum(A \text{의 당해연도 월별 } CPI \text{의 편차})}{A \text{의 품목 수}}$ ii) 기준치 = 농산물 중 공사관리품목을 제외한 품목(B)의 평균 CPI 월 편차 $= \frac{\sum(B \text{의 당해연도 월별 } CPI \text{의 편차})}{B \text{의 품목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 및 기준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성질별)를 의미함 •공사 관리품목 ①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명시된 품목으로 공사가 수입, 구매, 비축 및 방출하고 있는 농산물 ② TRQ 운영계획에 따라 공사가 수입하거나 비축, 방출하는 미곡류 ③ ①, ②번에 해당되면서 국가데이터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농산물 ② 관리 농산물 가격안정 노력(3점) i) 실적 = 공사 관리품목(A) 소비자물가지수(CPI) $= \frac{\sum(A \text{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지수} \times \text{해당 품목의 가중치})}{\sum(A \text{의 가중치})}$ ii) 기준치 = 식품(B)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 산출시 고려사항 •기준치의 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식품 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를 의미함 •실적의 공사 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품목성질별)를 의미함 •공사 관리품목 ①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명시된 품목으로 공사가 수입, 구매, 비축 및 방출하고 있는 농산물 ② TRQ 운영계획에 따라 공사가 수입하거나 비축, 방출하는 미곡류 ③ ①, ②번에 해당되면서 국가데이터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농산물

(2)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④ 식품산업 육성사업 [3점]

사업정의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인 식품산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농업과 식품산업 동반성장 지원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의	기관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국산원료 농산물 이용 확대 성과로서 공사 지원 식품업체의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활성화 성과를 평가한다.
목표	목표대실적 :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 식품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업체 국산원료 구매의무액 달성도 ②세부산식 = $0.2 + 0.8 \times (\text{지원업체별 구매의무액 이행업체수} / \text{전체 지원업체수})$ ③구매의무액 달성목표는 주무부처가 정한 지원금액 대비 사업의무액 비중에 10% 가산한 135%를 적용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식품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업체 국산원료 구매의무액 달성도는 정책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산정 •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여 사업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발생업체는 제외한다. - 사고발생업체 : 공사 채권 또는 담보물 압류, 회생절차개시, 파산, 폐업,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위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기준

(2) 식품산업 육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노동생산성		1	
	㉡ 부가가치율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전파이용 기회 확대 사업			20
	(1) 전파품질 조기 안정화 기여도		8	
	(2) 공공용 주파수 신속 공급 성과		3	
	(3) 전파이용 기회 확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국민안전 편익서비스 강화 사업			18
	(1) 인명구조 및 재난 관리 강화 성과		8	
	(2) 근로자 무사고 달성 노력		3	
	(3) 국민안전 편익서비스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성화 사업			16
	(1) 기금 재정 효율화 성과		5	
	(2) 국내 방송콘텐츠 OTT 방영 성과		4	
	(3)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㉕ 부가가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부가가치율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매출액}}$ ② 부가가치와 매출액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전파이용 기회 확대 사업 [20점]

사업정의	이동통신 전파품질 관리, 주파수 분석·발굴·공급 등 전파자원 전주기 관리를 통해 국가 공공재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깨끗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1) 전파품질 조기 안정화 기여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의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이동통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합격한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기관의 조기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파품질 조기 안정화 기여도 = $\frac{\text{이동통신 무선국 조기개선 국수}}{\text{이동통신 무선국 총 불합격 수}}$ ② 이동통신 무선국 조기개선 국수 : 정기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개선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합격 판정을 받은 이동통신 무선국 수 *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빠르게 개선한 전년도 통신사 기준 일수 ③ 이동통신 무선국 총 불합격 수 :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신청한 전체 검사국수 중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무선국 수 ※ 불합격된 총 이동통신 무선국 중 행정처분의뢰, 허가취소 된 무선국은 산출에서 제외 ※ 실적의 증빙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검사관리시스템(RIMS)으로 함

(2) 공공용 주파수 신속 공급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3점)

정의	공공용 주파수 수요에 대해 이용 적정성 조사·분석을 신속히 수행함으로써 주파수 공급까지 소요된 기간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text{공공용 주파수 공급 단축 비율} = \frac{\text{주파수 공급 소요기간(일)}}{\text{공공용 주파수 우선공급 건수(건)}}$ ② 주파수 공급 소요기간 : 과기정통부에서 당해연도 수요에 대해 우선공급으로 검토되어 해당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일자 ③ 주파수 우선공급 건수 : 당해연도 접수된 공공용 주파수 수요 중 우선공급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공공용 주파수 수요 법정(전파법) 접수기한인 매년 3월 31일 기준, 접수·분류 및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2개월을 제외하고 소요된 일자로 적용하며,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주파수 대역을 신청한 경우는 중복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 1건으로 본다.

(3) 전파이용 기회 확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국민안전 편익서비스 강화 사업 [18점]

사업정의	인명안전 및 국민생활 환경 개선,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등을 통한 대국민 안전과 편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1) 인명구조 및 재난 관리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의	선박·항공기의 재난안전망 구축과 인명안전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안심사회 실현을 위해 안전관련 무선국의 검사실적과 사전·현장에서 시정·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명구조 및 재난 관리 강화 성과 = (인명안전 무선국 검사 성과(4점)) + (인명안전 무선국 개선 처리 노력(4점)) ② 인명안전 무선국 검사 성과 = $\frac{\text{인명안전 무선국 신속처리 국수}}{\text{인명안전 무선국 총 검사 국수}}$ - 인명안전 무선국 신속처리 국수 : 당해연도 인명안전 무선국 검사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검사를 완료한 검사국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요일·공휴일 등은 처리기간에 미산입

측정 산식 및 변수	- 인명안전 무선국 총 검사국수 : 관련 고시* 제3조의3(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국 및 선박·항공기 무선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검사국수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③ 인명안전 무선국 개선 처리 노력 = $\frac{\text{사전 요청 처리 국수} + \text{현장 개선 처리 국수}}{\text{인명안전 무선국 총 검사 국수}}$ - 사전 요청 처리 국수 : 인명안전 무선국을 운영하는 국민이 점검을 요청하여 관련 고시¹⁾ 제8조(검사의 방법)에 따라 항목별 적합 기준을 사전에 점검한 무선국 수 - 현장 개선 처리 국수 : 관련 고시²⁾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을 조치 후 합격된 인명안전 무선국 수 1), 2)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 산출시 고려사항 : ②, ③ 관련 실적의 증빙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무선국검사관리시스템(RIMS)으로 함

(2) 근로자 무사고 달성 노력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관의 안전사고 감소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근로자 무사고 달성 노력 = 100점 - ∑사고발생점수											
	<table><tr><td>구 분</td><td>사망사고</td><td>중대재해</td><td>일반재해</td></tr><tr><td>사고발생 점수(건당)</td><td>40점</td><td>10점</td><td>2점</td></tr></table>				구 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	사고발생 점수(건당)	40점	10점	2점
	구 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								
	사고발생 점수(건당)	40점	10점	2점								
	②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는 아래 기준 적용											
- 사망사고 :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 시 제외												
※ 산출시 고려사항 : 근로자는 기관의 임직원(현원)과 비정규직(기간제 및 파견, 용역(민간), 사내하도급), 발주공사 근로자를 포함하며 임직원과 비정규직 인명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적용하고, 발주공사 근로자의 인명사고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적용함												

(3) 국민안전 편익서비스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성화 사업 [16점]

사업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방송통신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1) 기금 재정 효율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의	기금 재정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리 대비 자산운용 수익률 초과 달성과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기금 재원의 조성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② 재정경제부가 해당연도 분기별로 공고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방송사업자의 당해연도 기금 분담금 조성 정책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금 재정 효율화 성과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리 대비 기금운용수익 성과(2점)) + (기금 분담금 재원 조성 성과(3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리 대비 기금 운용수익 성과 = $\frac{\sum(\text{기금별 운용수익률} \times \text{기금별 운용비중})}{\sum(\text{공자금} \text{ 차입금리} \times \text{차입금액 비중}) - 0.06\%}$ - 해당연도 기금(방발기금, 정진기금) 운용수익률을 운용규모(평균)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 - 해당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금리를 차입금액 규모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차입금리에서 기금운용경비* 0.1% 중 0.06%만 차감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영비는 운용수익률 비교와는 관련성이 낮은 행정적 요소로 제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용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 (예탁금리 등) 제2항 근거] ③ 기금 분담금 재원 조성 성과 = $\frac{\text{기금 분담금 조성 실적}}{\text{기금 분담금 조성 정책목표}}$ - 기금 분담금 조성 실적 : 지상파, 종편·보도, SO, IPTV, 위성, 홈쇼핑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당해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으로 함(결산기준) - 기금 분담금 조성 정책목표 : 과기정통부가 매년 기재부에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 상 차년도 기금 법정분담금 조성계획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단, 재정경제부로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 확정·통보 시 분담금 조성 목표에 반영) ※ 산출시 고려사항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수입금 데이터로 증빙하고, 통신사 경매 방식으로 조성되는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분담금은 제외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분담금 경감·면제금액과 징수율 조정에 따른 변동액은 산식에 반영함
(2) 국내 방송콘텐츠 OTT 방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글로벌 진출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내 방송콘텐츠 OTT 방영 성과 = $\frac{\text{당해연도 글로벌 OTT에 방영된 콘텐츠 지원금}}{\text{해외진출형 사업의 제작 지원 예산}}$ ② 당해연도 글로벌 OTT 방영 콘텐츠 지원금 :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의 제작 지원된 콘텐츠 중, 당해연도에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방영된 콘텐츠의 지원 예산 총액 ※ 글로벌 OTT 방영 콘텐츠 증빙 : 글로벌 OTT 플랫폼 게재 캡처본 및 지원사업자 제출 공문 ③ 해외진출형 사업의 제작 지원 예산 :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지원사업의 3개년(당해연도 포함) 평균 예산 ※ 산출시 고려사항 : 글로벌 OTT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초국가적 플랫폼 외에도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로컬 OTT를 포함
(3)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16
	(1) 지역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성과 제고		5	
	(2)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4	
	(3)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산업기술 혁신성장동력 확보			22
	(1)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성과		5	
	(2)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활용 가치창출 성과		6	
	(3)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 성과		2	
	(4) 산업기술 혁신성장동력 확보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3.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			16
	(1)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사업화매출 창출 성과		5	
	(2)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성과		4	
	(3)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 [16점]

사업정의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산업육성,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 수출 증대 등 산업활력 제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지역기업 및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지역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창출 역량,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우수 인력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는 직·간접 일자리 창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지역기업 및 중소기업 = ① 지역일자리 창출 성과×0.6 + 일자리 창출 성과 ②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0.4 ①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 $\frac{\text{당해연도 신규 고용인원}}{\text{당해연도 지원예산}}$ - 당해연도 신규고용 인원 : 지역혁신클러스터(R&D) 및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육성(R&D)사업을 통해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신규 고용 인원 - 당해연도 지원예산 : 지역혁신클러스터(R&D) 및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R&D)사업의 당해연도 지원 예산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외부자료(4대보험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증빙 ②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 = $\frac{\text{당해연도 신규 고용인원}}{\text{당해연도 지원예산}}$ - 당해연도 신규고용 인원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상생형 혁신도약(R&D)사업을 통해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신규고용 인원 - 당해연도 지원예산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상생형혁신도약(R&D)사업의 당해연도 지원 예산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외부자료(4대보험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증빙

(2)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 의	해외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글로벌 시장진출 성공지수 = ① 글로벌시장진출성공율×0.5 + ② 수출계약매출성과×0.5 ① 글로벌시장진출성공율 = $\frac{\text{당해연도 수출계약 체결 기업 수}}{\text{최근 3년간 지원 기업 수}}$ - 최근 3년간 지원기업 수 : 정부 예산서에 명시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수행한 기업의 합계 (중복제외) - 당해연도 수출계약 체결기업수 : 최근 3년간 지원기업 중 당해연도 수출계약이 발생한 기업 ※ 수출계약 체결기업수 증빙 :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발행) ② 수출계약 매출성과 = $\frac{\text{당해연도 수출계약 매출액}}{\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 최근 3년 평균예산 : 정부 예산서에 명시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예산 평균 - 당해연도 수출계약 매출액 : 최근 3년간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및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수출계약 액수 ※ 수출계약 매출성과 증빙 : 당해연도 NTIS 등록 사업화매출액 중 수출 증빙 확인된 금액(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수출실적확인서)
(3)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산업기술 혁신성장동력 확보 [22점]

사업정의	공공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연구인프라, 혁신인재 공급, 사업화 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의 혁신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기업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성장정체 극복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촉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표로서 기업이 실제로 유치한 투자금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 $\frac{\text{당해연도 민간투자유치금}}{\text{당해연도 예산}}$ ② 당해연도 투자유치금 : R&D 지원과제의 신청을 위한 필수 투자유치금액의 합 ③ 당해연도 예산 :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당해연도 지원예산 ※ 산출시 고려사항 당해연도 투자유치금은 해당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기관과 체결한 투자계약서로 실적 검증

(2)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활용 가치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정부의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시험분석·시생산·기술서비스 구축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활용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 ('26) 과거 3년 편차, ('27) 과거 4년 편차, ('28) 과거 5년 편차 적용으로 과거 실적 확보에 따라 단계적 확대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활용가치 창출 성과 = $\frac{\text{산업기술개발 장비의 연간 총 장비이용료}}{\text{산업기술개발 등록 장비의 총합}}$ ① 산업기술개발 장비의 연간 총 장비이용료 : 장비 보유기관의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동활용장비를 사용한 외부기관들의 연간 장비 이용료 총합 ② 산업기술개발 등록 장비의 총합 : i-Tube에 등록된 성과활용기간 내 기관 에서 관리 중인 장비의 총합 ※ 산출시 고려사항 • i-Tube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연구시스템 • 장비이용료 : 장비 이용자가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계측·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장비 이용료(i-Tube에 등록된 금액)
(3)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2점)	
정 의	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교정 및 지도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 하고,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재정 손실을 막는 등 연구비 관리의 적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예방(목표부여(편차))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목표대실적) : 해당사항 없음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 환수율 100%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의 평점 × 0.5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실적의 평점 × 0.5 ②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실적 : 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된 건수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은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생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함 ③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환수율) $\text{환수율} = \frac{\text{환수한 금액}}{\text{환수결정액}} \times 100$ - 연구비 부정사용금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측정 산식 및 변수	-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누적 기준 금액으로 하며,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자료로 증빙함 - 과제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쟁송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적 결정액에서 제외하며, 환수 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이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유예 또는 면제 처분한 공식 문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기된 소장으로 증빙함

(4) 산업기술 혁신성장동력 확보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③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 [16점]

사업정의	정책개발, 규제혁신제도 운영, 정부의 산업공급망 안정화 정책 지원을 통한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사업화매출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인프라를 구축·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기술 등의 인증, 성능평가 등을 지원하여 발생한 사업화 매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고목표 : 기준치×80% ※ 실적이 축적되는 '28년부터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전환
측정 산식 및 변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사업화매출 창출 성과 = $\frac{\text{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당해연도 사업화매출액}}{\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당해연도 사업화매출액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화 매출액 합계 ※ 산출시 고려사항 • 사업화매출액 측정대상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품목으로 한정(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총 개발기술적용매출액에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정

측정 산식 및 변수	• 사업화 매출액의 증빙자료는 매출 발생 실적확인서(기관의 직인 있는 자료), 재무제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로 함 ② 최근 3년 평균 예산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사업의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간 지원된 평균 예산
(2)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업의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규제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융합, 지역혁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창출 사업화 매출액 및 투자유치금액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규제혁신 매출액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규제혁신 투자유치 :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 ×80% ※ 투자유치 : 실적이 축적되는 '28년부터 목표부여(편차)방식으로 전환
측정 산식 및 변수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 성과 = (① 사업화매출액의 평점×0.5) + (② 투자유치 실적의 평점×0.5) ① <u>규제혁신 품목의 당해연도 사업화매출액</u> 최근 3개년도 평균 예산 * 규제혁신 품목의 당해연도 사업화 매출액: 규제혁신사업(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해당 품목의 당해연도 사업화 매출액 * 최근 3개년도 평균 예산: 규제혁신사업에 최근 3개년간 지원된 평균예산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 간 규제혁신 지원을 받은 기업(기관)의 해당 품목으로 한정하여 사업화 매출액 발생 성과 ② <u>규제혁신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유치 금액</u> 최근 3개년도 평균 예산 * 규제혁신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유치 금액: 규제혁신사업(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통해 규제혁신 지원을 받은 해당 기업(기관)의 당해연도 투자유치 금액 발생 성과 * 최근 3개년도 평균 예산: 규제혁신사업에 최근 3개년간 지원된 평균예산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 간 규제혁신 지원을 받은 기업(기관)의 투자유치 금액 발생 성과 • 투자유치: 정부 지원(R&D, 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한 타기관 및 기업 등 외부로부터 투자 계약 등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실적 • 투자유치증빙 : 기업 등에서 직인 또는 서명 날인한 투자유치 확인서
(3) 산업기술 환경변화 대응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산업기술 R&D지원사업			26
	(1)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6	
	(2) R&D 일자리 창출성과		3	
	(3) R&D 사업화 성과		6	
	(4) 산업기술 R&D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2. 공급망 R&D지원사업			17
	(1) 소부장 해외수출성과		5	
	(2) 소부장 투자유치성과		5	
	(3) 공급망 R&D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R&D시스템 고도화 지원사업			11
	(1)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성과		4	
	(2) 알키미스트 기업멤버십 확대 성과		2	
	(3) R&D시스템 고도화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㉓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㉔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산업기술 R&D지원사업 [26점]

사업정의	산업기술 R&D지원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지식재산권 창출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R&D사업 지원을 통해 창출한 지식재산권의 질적·양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양질의 특허성과(3점) + 지식재산권 창출건수(3점) - 양질의 특허성과 = $\frac{\text{양질의 특허성과}}{\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 지식재산권 창출건수 = $\frac{\text{전체 특허등록 건수} + \text{반도체 설계자산 등록 건수}}{\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② 양질의 특허성과 : 기관이 관리하는 첨단R&D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 중, 당해연도 12월 기준 SMART 'BBB' 등급 이상인 특허 건수 ③ 지식재산권 창출건수 : 기관이 관리하는 첨단R&D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 및 반도체설계자산(IP) 건수 ④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하며, 삼극특허는 10배 가중치를 적용함 ⑤ 지식재산권 중 특허 성과의 경우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기여율은 지원기관 수가 단순인 경우 100%, 지원기관 수가 복수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⑥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은 첨단R&D 사업 예산으로 산출함 * 첨단R&D사업(당해연도 단위사업 기준) : 인력양성, 스마트전자기술개발, 바이오 헬스기술개발, 창의산업기술개발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사사표기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의 특허청이 발급한 등록증 및 반도체 설계자산(IP)의 IP360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증빙 •비공개 과제는 제외

(2) R&D 일자리 창출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R&D 지원을 통한 신규 고용 및 기존 일자리 유지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고용창출 건수}}{\text{당해연도 예산}}$ ② 고용창출 건수 : 기관이 관리하는 주력 R&D 사업에 참여한 전일제 인력으로서 해당연도 신규 채용 연구 인력 및 기존 연구 인력 건수 ③ 참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과제참여율(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비율)과 과제참여기간 비율(과제 참여일수/365)을 적용 ④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은 주력 R&D사업 예산으로 산출함 * 주력R&D사업(당해연도 단위사업 기준) : 제조기반기술개발, 수송기기기술개발, 시스템산업기술개발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외부자료(4대보험 가입 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로 증빙 •비공개 과제는 제외 •당해연도 12월 이내 예산을 모수로 반영

(3) R&D 사업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R&D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 \times$ 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사업화 매출성과(4점) + 투자유치성과(2점) - 사업화 매출성과 = $\frac{\text{사업화 매출액}}{\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 투자유치성과 = $\frac{\text{투자유치금}}{\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② 사업화 매출액 : 기관이 관리하는 주력R&D 사업 수행을 통하여 창출한 기술개발을 적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③ 투자유치금 : 기관이 관리하는 주력R&D 사업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투자유치금 ④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은 주력 R&D사업 예산으로 산출함 * 주력R&D사업(당해연도 단위사업 기준) : 제조기반기술개발, 수송기기기술개발, 시스템산업기술개발 ※ 산출시 고려사항 • 매출액 성과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된 매출 증빙확인서)로 증빙 • 비공개 과제는 제외 • 당해연도 투자유치금은 해당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주식청약확인서 등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 매출액은 과제별 기술기여도*를 곱한 수치를 반영 * '기술기여도'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4) 산업기술 R&D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② 공급망 R&D지원사업 [17점]

사업정의	공급망 R&D 지원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소부장 해외수출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R&D사업 운영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수출매출액}}{\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수출매출액 : 소부장R&D 사업 수행 기업의 당해연도 해외 발생 매출액 ③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은 소부장 R&D사업 예산으로 산출함 * 소부장R&D사업(당해연도 단위사업 기준) :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 산출시 고려사항 • 해외 수출액 성과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 공인회계사로부터 확인된 매출증빙확인서)로 증빙 • 비공개 과제는 제외 • 매출액은 과제별 기술기여도*를 곱한 수치를 반영 * '기술기여도'란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2) 소부장 투자유치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운영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소부장 투자유치금}}{\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② 투자유치금 : 소부장 R&D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위한 당해연도 투자유치금 ③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은 소부장 R&D사업 예산으로 산출함 * 소부장R&D사업(당해연도 단위사업 기준) :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 산출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투자유치금은 해당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주식청약확인서 등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 비공개 과제는 제외

(3) 공급망 R&D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R&D시스템 고도화 지원사업 [11점]

사업정의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 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교정 및 지도, 연구비 집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재정 손실을 막는 등 연구비 관리의 적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 사전 탐지 오·유용 연구비(목표부여(편차))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실적중 높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목표대실적) : 해당사항 없음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 사전 탐지 오·유용 연구비 :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 환수율 100%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1점) + 사전 탐지 오·유용 연구비(1점)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실적(2점) ②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1점) : 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건수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은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함. ③ 사전 탐지 오·유용 연구비(1점) = 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지원과제에 대해 연구비 집행 시스템(RCMS) 개선을 통한 사전 탐지로 연구비 오·유용 사전 예방액 - 사전 예방 실적은 연구개발 기관이 당해연도 정산 이전에 불인정 예방도우미를 활용하여 복원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함 ④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실적(환수율)(2점) : $\text{환수율} = \frac{\text{환수한 금액}}{\text{환수 결정액}} \times 100$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측정 산식 및 변수	-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누적 기준 금액으로 하며,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빙함 - 과제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쟁송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적결정액에서 제외하며, 환수 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이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유예 또는 면제 처분한 공식 문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기된 소장으로 증빙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비공개 과제는 제외

(2) 알키미스트 기업멤버십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도전·혁신형 R&D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알키미스트 기업멤버십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최저목표 : 기준치 $\pm$ 2×표준편차(과거 5개년) * 단, 5개년 실적치가 없는 경우 3개년 또는 4개년 편차를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알키미스트 멤버십 가입기업 수 ② 알키미스트 멤버십 가입기업 수 : 알키미스트 기업멤버십 제도*를 통해 당해연도에 멤버십에 가입하는 기업 수 * 연구수행기관이 개발하는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멤버십을 구성하여 과제 워크숍, 평가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장 변화에 맞춘 무빙타겟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제도 ※ 산출시 고려사항 • 알키미스트 연구 테마별 멤버십 참여 협약서 등 멤버십 가입 기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3) R&D시스템 고도화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산업단지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디지털·저탄소 산업환경 조성			18
	(1)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촉진 기여 실적		6	
	(2) 산업단지 안전 관리		4	
	(3) 디지털·저탄소 산업환경 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16
	(1) 기업성장지원서비스 수혜기업 사업화 성과 향상 실적		5	
	(2) 특화단지 연계 지역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성과		4	
	(3)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산업입지 조성 및 리모델링			20
	(1)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성과		5	
	(2) 산업단지 환경개선 성과		7	
	(3) 산업입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순사업비를 구성하는 매출액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매출액은 진행률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디지털·저탄소 산업환경 조성 [18점]

사업정의	산업단지의 디지털·그린 전환 추진으로 경쟁력 있고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1)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촉진 기여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의	산업단지 디지털 경제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디지털 활용 거래 지원 노력과 저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저감 기여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에너지 저감 시스템 제공 성과는 2024년까지 목표부여 방식 (최고목표: 기준치×120%, 최저목표: 기준치×80%)을 적용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O2O 기반 제조거래 플랫폼 매칭 성과의 평점×2/3)+(에너지 저감 시스템 제공 성과의 평점×1/3) ① O2O 기반 제조거래 플랫폼 매칭 성과 = 온·오프라인 기반의 B2B 제조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조수요·공급 기업 간 양산계약체결 성공금액 - 성공금액은 공단이 사업비 지원을 통해 유발시킨 수요·공급기업간 양산계약의 합계이고 양자간 거래계약서와 사업 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② 에너지 저감 시스템 제공 성과(%) = $\frac{\sum \text{FEMS 구축기업 에너지 절감률}}{\text{FEMS 구축기업 수}}$ - $\sum \text{FEMS 구축기업 에너지 절감률}$ 은 FEMS를 구축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률의 합으로 전문기관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 - FEMS 구축기업 수는 스마트에너지플랫폼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함
(2) 산업단지 안전 관리 (평가방식 : 중장기목표부여,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의	관할산단 근로자 재해만인을 감소 성과와 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재해 관리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안전한 산업단지 만들기에 대한 노력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산단 근로자 재해만인을 저감 : 장기추세선 상의 직전년도 목표치와 전년도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최저목표 : 기준치+2×단위목표 ② 무사고 달성(사고건수 0건 → 100점 만점)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산단 근로자 재해만인을 저감의 평점×0.5) +(건설현장 재해관리의 평점×0.5) ① 산단 근로자 재해 만인을 저감(‰) = $\frac{\text{관할산단 환산 재해자 수}}{\text{관할산단 근로자 수}} \times 10,000$ - 관할산단 환산 재해자 수 :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관련한 재해 중 업무상 사고사망자, 사고부상자에 대하여 재해 경중 가중치(사망2, 부상1)를 부여하여 환산한 값 • 재해유형(발생형태) : 화재, 폭발·파열, 끼임, 떨어짐 등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분하는 산업재해 유형 중 18개 반영(제외 : 동물상해, 사업장외교통사고, 직업관련질병, 진폐, 폭력행위, 기타, 분류불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데이터를 활용 - 관할산단 근로자 수 : 국가산단·관할산단 산업동향(국가승인통계)을 활용 - 중장기 목표 :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 강화대책」 및 기관 중장기경영목표('23~'27)에 제시된 향후 5개년 간 20% 감축목표 ② 건설현장 재해관리 = 100점 - ∑사고발생점수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망사고</th><th rowspan="2">중대재해</th><th colspan="3">일반재해(일수)</th></tr><tr><th>91일 이상</th><th>90~29일</th><th>28~3일</th></tr><tr><td>사고발생점수 (건당)</td><td>40점</td><td>15점</td><td>2점</td><td>0.5점</td><td>0.1점</td></tr></table> - 사망사고 : 근로자,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사고 제외 - 일반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재해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제3호 '라'의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3호 '출퇴근 재해'는 실적산정시 제외	구 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일수)			91일 이상	90~29일	28~3일	사고발생점수 (건당)	40점	15점	2점	0.5점	0.1점
구 분	사망사고				중대재해	일반재해(일수)										
		91일 이상	90~29일	28~3일												
사고발생점수 (건당)	40점	15점	2점	0.5점	0.1점											
(3) 디지털·저탄소 산업환경 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16점]

사업정의	기술·경영 종합지원을 통한 입주 기업 성장과 규제발굴·정책개발을 통한 혁신 역량 강화
(1) 기업성장 지원서비스 수혜기업 사업화 성과 향상 실적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제품)로 인한, 당해연도 사업화 발생 성과와 이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R&D 지원과제 사업화율의 평점×0.5) + (R&D 지원과제 신규고용의 평점×0.5) ① R&D 지원과제 사업화율 = $\frac{\text{사업화 성과 발생 과제 수}}{\text{평균 R\&D사업비(3개년)}}$ - 사업화 성과 발생 과제 수 : 연구개발성과 활용기간 중 개발된 기술(제품)로 인해 당해연도 사업화 성과를 발생시킨 과제 수 ② R&D 지원과제 신규고용 = $\frac{\text{신규 고용 인원 수}}{\text{평균 R\&D사업비(3개년)}}$ - 신규 고용 인원 수 : 연구개발성과 활용기간 중 기업의 당해연도 신규 고용한 인원 수 ③ 평균 R&D사업비 :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간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된 R&D 투입예산의 연평균 금액(단위: 억원)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성과활용기간 내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활용보고서를 징구하여 증빙
(2) 특화단지 연계 지역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지역투자촉진보조사업의 산업정책 특화단지와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분야 민간투자 유치금액의 확대 성과와 보조금 적극환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특화단지 연계 지역전략산업 투자유치 성과×0.5)+(보조금 적극환수 성과의 평점×0.5) ① 특화단지 연계 지역전략산업 투자유치 성과(%) $= \frac{\text{당해연도 특화단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 민간 설비투자 유치금액}}{\text{당해연도 전체 보조금 수급기업의 민간투자 유치금액}} \times 100$ ② 보조금 적극환수 성과(%) $= \frac{\text{당해연도 국비환수결정액 합계}}{\text{당해연도 투자완료기업 국비결정액 합계}}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민간투자유치금액: 기업이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투자비용의 합 • 지역전략산업: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의 [별표 1]에 따른 업종 • 특화단지: 산업육성 및 지역발전 등 산업정책을 위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한 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제15조(지원특례)에 명시된 단지·구역·지구·특구 등을 의미 • 설비투자 유치금액: 민간투자유치금액 중 토지에 대한 투자액을 제외한 건설, 기계장비, 시설투자 등에 대한 금액을 의미 • 국비환수결정액 : 기업의 투자·고용미달, 국비 부적정 집행 등으로 정산 시점에 환수 결정된 국비금액 • 국비결정액 : 당해연도 투자완료기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된 국비금액 • 실적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지방투자시스템(REINS) 등 정부시스템을 활용하며, 외부 회계법인이 성과를 검증

(3)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산업입지 조성 및 리모델링 [20점]

사업정의	지역별 산업수요를 반영한 신규 산단을 기획·공급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기존산단의 리모델링 및 정주·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산단 편의환경 개선활동 추진

(1)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의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을 통한 신규 산업입지 공급 노력과 미분양 해소를 통한 사업 효율성 개선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신규 공급성과×0.2)+(미분양 개선성과×0.8) ① 신규 공급성과 = $\frac{\text{신규 산업입지 계약면적(m}^2\text{)}}{\text{신규 산업입지 분양면적(m}^2\text{)}}$ - 신규 산업입지 계약면적 : 신규 산업입지 분양면적에서 당해연도에 계약된 면적 - 신규 산업입지 분양면적 : 당해연도 최초 분양공고를 통해 공급하는 산업입지 면적의 합계 ② 미분양 개선성과 = $\frac{\text{미분양 산업입지 계약면적(m}^2\text{)}}{\text{미분양 산업입지 대상면적(m}^2\text{)}}$ - 미분양 산업입지 계약면적 : 미분양 산업입지 대상면적에서 당해연도에 계약된 면적 - 미분양 산업입지 대상면적 : 미분양 산업입지 분양공고 면적의 합계 ※ 산업입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정의된 산업단지 중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3에 따른 총유상공급면적

(2) 산업단지 환경개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의	공단이 민간 및 공공과 협업함으로써 기존 산업단지 내 산업·문화·여가 인프라 건립을 통한 환경개선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대행개발 성과의 평점×0.8) + (직접개발 성과의 평점×0.2) ① 대행개발 성과(‰) = $\frac{\text{대행개발 리모델링 완료 용지면적(m}^2\text{)}}{\text{전국 건축물 준공 연면적(m}^2\text{)}} \times 10,000$ - 대행개발 리모델링 완료 용지면적 : “산업집적법” 제45조의3 및 영 제58조의2에 따라, 민간 등 토지소유자가 공단을 대행하여 개발을 완료 한 후 승인권자로부터 준공인가를 득한 용지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함 ② 직접개발 성과(‰) = $\frac{\text{정부출연사업 건립시설 준공 건축연면적(m}^2\text{)}}{\text{전국 건축물 준공 연면적(m}^2\text{)}} \times 10,000$ - 정부출연사업 건립시설 준공 건축연면적 : 산업단지 내 문화·복지·편의 등의 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舊 복합문화 센터 건립사업 포함)” 및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플러스(舊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포함)”통해 준공된 각 시설의 완료보고서 상 건축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함 ※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기재면적은 조성 총연장에 국토교통부 예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보도 최소 유효폭(2.0m)을 곱하여 산정 ③ 전국 건축물 준공 연면적 :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 인허가 통계” 중 각 사업에 해당하는 용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연도의 상반기부터 직전 3개년 간의 연평균 실적을 산출하여 활용함 - 대행개발 성과 : 상업용, 공업용, 교육 및 사회용 - 직접개발 성과 : 상업용, 교육 및 사회용
(3) 산업입지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산업인력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23
	(1) 직업능력개발훈련 확산 성과		8	
	(2) 일자리 지원 성과		5	
	(3) 근로자평생학습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국가자격 및 NCS 운영			13
	(1) 국가자격 및 NCS 운영 성과		8	
	(2) 국가자격 및 NCS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국제인력 사업			18
	(1) 외국인고용 지원 사업 성과		5	
	(2) 해외취업지원 사업 성과		5	
	(3) 국제인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근로자 평생학습지원 사업 [23점]

사업정의	중소기업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확산, 신산업 인재육성, 일자리 지원을 통해 국가 인력수급을 효율화하는 사업이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중소기업 훈련확산과 맞춤형 훈련지원, 4차·신기술 핵심산업 인재 육성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중소기업 훈련 참여 확대 성과 = $\frac{\text{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소기업 사업장 수}}{\text{전체 투입예산}}$ (2점)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중소기업 사업장 수 : 당해연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중소기업 사업장 수 - 전체 투입예산 : 당해연도 해당사업 총 지출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 실적은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통계 수치를 적용한다. ②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지원 성과 = $\frac{\text{직업능력개발 맞춤형 훈련지원 사업장 수}}{\text{전체 투입예산}}$ (3점) * 대상사업 : (국정과제) 직업능력개발 전담주치의(S-Off), 능력개발클리닉 등 현장지원·컨설팅 지원 수 ③ 4차·신기술 핵심산업 인재 육성성과 = $\frac{\text{반도체 등 4차산업·신기술 분야 훈련 실시인원}}{\text{전체 투입예산}}$ (3점) - 반도체 등 4차산업 신기술 분야 훈련 실시인원 : 국가인적자원개발 권소사업(대중소, 전략분야, 미래유망, 첨단분야 등) 내 당해연도 신기술 분야* 훈련 실시 인원 * 신기술 분야 : AI, 클라우드, IoT, 메타버스, 5G·6G, 일반SW,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이차전지, 지능형로봇, 항공드론, 3D프린팅, 첨단소재,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양자, 우주, 나노, 기타신기술 등 (고용노동부 지정)

측정 산식 및 변수	- 전체투입예산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대중소, 전략분야, 미래 유망, 첨단분야 등) 4차산업·신기술 인재육성 관련 컨소시엄 사업 전체 예산(당해 예산)
(2) 일자리 지원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일학습병행 훈련의 확대 성과와 고용유지율 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일학습병행 훈련 확대 성과: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일학습병행 훈련 확대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일학습병행 고용유지 지원 성과 :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일학습병행 훈련 확대 성과 (2점) $\text{일학습병행 훈련 확대 성과} = \frac{\text{당해연도 훈련실시인원 중 당해연도 말까지 훈련을 이수하거나 계속 훈련을 유지중인 인원}}{\text{전체 투입예산}}$ - 전체 투입예산 : 당해연도 해당사업 총 지출금액 ② 일학습병행 고용유지 지원성과 (3점) $\text{일학습병행 고용유지 지원 성과} = \frac{\text{당해연도 훈련실시인원 중 당해연도 말까지 훈련을 이수하거나 계속 훈련을 유지중인 인원}}{\text{당해연도 훈련실시인원}}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HRD-net 시스템 추출 통계 수치를 적용한다.
(3)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국가자격 및 NCS 사업 [13점]

사업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체계를 통해 획득한 개인의 자격과 직무 능력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자격 서비스 사업이다

(1) 국가자격 및 NCS 운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 가중치 : 8점)		
정 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NCS 기반 국가자격의 확대 노력과 디지털 기반의 자격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증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NCS기반 국가자격 확대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디지털 자격기반 국민편의 증대 노력	• 국가기술자격 접근성제고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 수험자 맞춤형 정보제공 성과, 국가기술자격 활용성 확대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국가자격 및 NCS운영 성과 = (NCS기반 국가자격 확대 성과) (3점) + (디지털 자격기반 국민편의 증대 노력) (5점) ① NCS기반 국가자격 확대 성과 (3점) = $\frac{\text{NCS 기반 국가자격 취득자 수}}{\text{생산가능인구}}$ - NCS기반 국가자격은 NCS기반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을 포함 - 각 연도별 자격 취득인원은 Q-Net 및 CQ-Net를 활용하여 취합 -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생산가능인구로 측정함 ② 디지털 자격기반 국민편의 증대노력 (5점) = 국가기술자격 접근성 제고성과(2점) + 수험자 맞춤형 정보제공 성과(2점) + 국가기술자격 활용성 확대성과(1점) ③ 국가기술자격 접근성 제고 성과(2점) = $\frac{\text{디지털시험센터 이용인원}}{\text{국가기술자격 대상인원}}$ - 디지털시험센터 이용인원(분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연도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필·실기 접수인원 중 디지털시험센터에 접수한 인원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국가기술자격 대상인원(분모)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연도 검정형 필·실기 접수인원으로 함 ④ 수험자 맞춤형 정보제공 성과(2점) = $\frac{\text{국가자격 피드백서비스 수혜인원}}{\text{국가기술자격 대상인원}}$ - 국가자격 피드백서비스 수혜인원(분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정형 자격종목 중 피드백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목의 당해연도 필·실기 응시인원으로 함 - 국가기술자격 대상인원(분모)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당해연도 검정형 필·실기 접수인원으로 함 ⑤ 국가기술자격 활용성 확대 성과(1점) = $\frac{\text{디지털 자격서비스 이용인원}}{\text{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디지털 자격서비스 이용인원은 (1)민간 플랫폼(취업정보 플랫폼)을 통한 자격정보 연계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과 (2)공단 큐넷(Q-net)을 통한 모바일 자격·디지털 배지 발급 인원 및 자격정보 연계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으로 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정형 및 과정평가형 자격의 최근 3개년(당해연도 포함) 평균 취득 인원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자격정보시스템(QIS, CQIS) 통계 수치, 민간 플랫폼 연계 통계 수치(네이버(NAVER) 등 제공)를 적용함
(2) 국가자격 및 NCS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국제인력 사업 [18점]

사업정의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지원과 해외취업 인재 선순환을 통해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적자원 허브 사업이다
(1)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대실적, ②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의	중소기업 부족인력 해소를 위한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 핵심 목표인 외국 인근로자 국내 도입실적과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고용체류 및 정착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②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안정적 정착지원 성과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도입쿼터 대비 외국인근로자 도입률 : 당해연도 도입쿼터 (목표대실적) ②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안정적 정착지원 성과 ④ 외국인근로자 초밀착 체류지원 성과(1점)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⑤ 체류지원을 통한 숙련기능인력 전환율(1점)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성과 = (도입쿼터 대비 외국인근로자 도입률) (3점)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안정적 정착지원 성과) (2점) ① 도입쿼터 대비 외국인근로자 도입률 = $\frac{\text{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수}}{\text{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도입된 외국인근로자(E-9) 수로 측정 (한국고용정보원 EIS 통계자료 활용) -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당해 연도 전체 외국인력(E-9) 도입규모로 함. 단, 고용허가서 미발급분 제외 ②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안정적 정착지원 성과(2점) = ④ 외국인근로자 초밀착 체류지원 성과(1점) + ⑤ 체류지원을 통한 숙련기능인력 전환율(1점) ④ 외국인근로자 초밀착 체류지원 성과 = $\frac{\text{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 수}}{\text{국내 체류 E-9 외국인근로자 수}}$ ⑤ 체류지원을 통한 숙련기능인력 전환율 = $\frac{\text{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자 수}}{\text{국내 체류 E-9 외국인근로자 수}}$ - ‘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 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각종 고충상담 및 행정 서비스(통역지원 등)을 제공한 인원 수와 취업만료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대상 귀국컨설팅을 지원한 인원 수로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EPS 시스템 활용) - ‘국내 체류 E-9 외국인근로자 수’는 당해연도 12월 31일의 EIS 시스템상 수치(근로계약이 유효한 자)로 한다.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자 수’는 E-9에서 E-7-4로 당해연도에 체류자격을 전환한 근로자의 수로 한다. (법무부 통계자료 활용)

(2) 해외취업지원사업 성과 (평가방식 : ①목표부여(편차), ②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를 평가한다.
기 준 치	① 글로벌 인재 확산 성과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 전년도 국내 29세 이하 청년 평균연봉
목 표	① 글로벌 인재 확산 성과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최고목표 : 기준치×135%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글로벌 인재 확산 성과(2점) = $\frac{\text{연간 해외취업 합격 구인공고 건수}}{\text{연간 해외취업 구인공고 건수}}$ - 연간 해외취업 합격 구인공고 건수는 해외취업정보망(월드잡플러스) 내 연간 해외취업 합격자 발생 구인공고 건수로 함 - 연간 해외취업 구인공고 건수는 해외취업정보망(월드잡플러스) 내 연간 해외취업 구인공고 건수로 함 ②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3점) = 해외취업 일자리 평균연봉 - 해외취업 일자리 평균연봉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해외취업정보망(월드잡플러스)을 통하여 취업한 전체 해외취업인원의 연봉을 합산하여 전체 해외취업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함 - 국내 29세 이하의 평균연봉은 통계청(KOSIS)에서 추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로 산출함 - 고용노동부가 사용하는 환율 적용

(3) 국제인력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에너지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대응 지원사업			18
	(1) 산업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지원 성과		4	
	(2)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성과		7	
	(3)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대응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에너지절약 생활기반 강화 사업			16
	(1) 고효율 스마트 가전 시장 확대		4	
	(2)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4	
	(3) 에너지절약형 생활기반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20
	(1)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성과		7	
	(2) 민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5	
	(3)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대응 지원사업 [18점]

사업정의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향상과 기후대응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및 신성장 기반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산업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에너지효율 향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미만인 사업자)을 대상으로 KEEP+ 제도 운영을 통해 창출된 에너지절감 성과를 측정·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 KEEP+시스템을 통해 2023년부터 데이터 산출이 가능하여 3개년 표준편차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업체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지원 성과 = $\sum \text{KEEP+}^* \text{ 지원기업의 에너지절감량 실적} / \sum \text{KEEP+}^* \text{ 지원기업의 수}$ * KEEP+(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 한국에너지공단이 300toe 이상 선도 기업을 선정하여 패키지(에너지진단-설비투자-효율관리)로 지원하는 사업 ② KEEP+ 지원기업의 수 = KEEP+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패키지(에너지진단-설비투자-효율관리)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 ③ KEEP+ 지원기업의 에너지절감량 실적은 KEEP+ 시스템 내 등록된 자료로 측정하며 주무부처 보고 등을 통해 연말에 집계한 실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다소비사업장은 제외)을 기준으로 함

(2) 산업체 에너지효율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공단의 지원을 받는 단위사업장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인 사업자)의 에너지절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성과 = $\sum \text{KEA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절감량 실적 / $\sum \text{KEA 다소비사업장}^*$의 수 * KEA 다소비사업장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② KEA 다소비사업장의 수 = 에너지 진단대상 사업장* + 자금 지원대상 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2조에 따라 에너지 진단을 받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주무부처 공고)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③ KEA 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절감량 실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사업자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절감량 실적을 의미 (결과산출 시기를 고려, 전년도 실적으로 반영)

(3) 산업체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후대응 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에너지절약형 생활기반 강화 사업 [16점]

사업정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기·수송·건물 등 에너지효율향상을 유도하여 고효율·저소비 문화 확산하고, 국민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에너지이용시설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고효율 스마트 가전 시장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AI 기술 응용이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 가전 제품의 시장 확대를 통해 기기 부문 에너지절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효율 스마트 가전 시장 확대 성과 = $\sum \text{품목별 스마트 가전 단위 에너지절감량}$ ② 품목별 스마트 가전 단위 에너지절감량 = $\sum (\text{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른 제품별 연간에너지소비량} - \text{고효율 스마트 가전 제품별 연간에너지소비량}) / \text{고효율 스마트 가전 제품의 수}$ ③ 고효율 스마트 가전 제품은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품목 중에서 평가년도말 기준으로 효율등급제도 1등급 또는 고효율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말함(말소모델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다만, 품목추가, 적용범위 확대, 시험방법 변경 및 최저기준 상향 등의 규정변경이 해당연도 내에 시행 될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 확대와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성과 = Σ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실적 ②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실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규정에 따라 예비인증건수로 하며, 의무 대상을 제외한 ZEB 3등급이상 공공부문과 ZEB 5등급이상 민간부문 인증 실적*으로 함. * 민간 건축물의 설계기준(국토부 고시)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근거하여 포함된 실적을 의미함 ※ 예비인증이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3) 에너지절약형 생활기반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20점]

사업정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사업 등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보급·발굴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성과 = (태양광 보급용량×0.5) + (풍력 보급용량×0.3)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굴용량×0.2) ② 태양광 보급용량 = 태양광 RPS 설비확인 합산용량(MW)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중 태양광 설비(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③ 풍력 보급용량 = 풍력 RPS 설비확인 합산용량(MW)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중 풍력 설비(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④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굴용량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합산용량(MW)

(2) 민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한국형 RE100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수 확대와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도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복합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성과 =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수의 평점 × 0.3 +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도의 평점 × 0.7 ②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수의 평점 = 한국형 RE100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수의 총합 ③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달성도의 평점 $= \frac{\sum_{A=1}^{\text{참여기업 수}} \text{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text{참여기업의 전력 사용량}}$ ※ 참여기업의 전력 사용량은 사용량 데이터 집계 및 검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함

(3)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연구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1	
	㉡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과학기술 창의·전략연구 강화			36
	(1) 과학기술분야 질적 우수성과 창출		12	
	(2) ICT분야 혁신성과 창출		7	
	(3)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 성과		3	
	(4) 과학기술 창의·전략연구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2. 인문사회·학술연구·성장 강화			7
	(1) 인문사회분야 우수성과 창출		3	
	(2) 인문사회·학술연구·성장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3. 대학혁신·인재양성 강화			11
	(1)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배출		6	
	(2) 대학혁신·인재양성 강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과학기술 창의·전략연구 강화 [36점]

사업정의	과학기술 분야 창의·전략연구 및 디지털·원천기술의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과학기술분야 실적 우수성과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2점)

정의	재단이 지원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실적 수준이 높은 논문·지식재산권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실적 우수성과 = [분야별 상위 10% 학술지 발표 논문 수/최근 3년 평균 예산]의 평점×0.9+[지식재산권 국내외 등록건수/최근 3년 평균 예산]의 평점×0.1 ② 분야별 상위 10% 학술지 발표 논문 수 : 기관이 관리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JCR(Journal Citation Report) 기준 피인용 상위 10% 이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편수 ③ 지식재산권 국내외 등록 건수 : 기관이 관리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국내외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해외 등록 특허는 2배, 삼극특허는 10배 가중치 적용) ④ 논문은 참여율/특허는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참여율은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 기여율은 지원기관 수가 단수인 경우 100%, 지원기관 수가 복수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⑤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사사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논문에 대한 표지, 사사표기, 게재 연월, 저자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2) ICT분야 혁신성과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ICT분야 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서 창출된 혁신성이 높은 논문 및 우수 특허 성과를 기반으로 한 사업화성공 및 고용창출 등 관리·지원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ICT분야 혁신성과 창출 = (분야별 상위 10% 학술지 발표 논문 수÷최근3개년 지원금액평균(억원))x0.4 + (특허등록건수÷최근3개년 지원금액평균(억원))x0.4 + (사업화성공건수÷최근3개년 지원금액평균(억원))x0.1 + (고용창출건수÷최근3개년 지원금액평균(억원))x0.1 ② 분야별 상위 10% 학술지 발표 논문 수 : ICT분야 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물 중 당해연도 JCR(Journal Citation Report) 기준 피인용 상위 10% 이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편수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사사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논문에 대한 표지, 사사표기, 게재년월, 저자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 (참여율)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100(%)를 적용 ③ 특허등록건수 : ICT분야 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물 중 SMART 'A' 등급 이상인 국내·외 등록특허(특허등록증) 건수 * (가중치)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 등록 특허는 2배, 삼극특허는 10배 가중치를 적용 * (기여율) 지원기관 수가 단수 100%, 지원기관 수가 복수 1/n×100(%) 적용 ④ 사업화성공건수 : ICT분야 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물 중 매출액(재무재표(손익계산서), 부가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 또는 기술료(기술이전실시계약서, 기술료입금내역)가 발생한 건수 ⑤ 고용창출건수 : ICT분야 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과제에서 발생한 전일제 신규고용 및 기존인력 유지(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건수(참여율 적용) * (참여율) 과제참여율(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비율)과 과제참여기간 비율(과제 참여일수/365)을 적용

측정 산식 및 변수	⑥ 최근 3개년 지원금액 평균 : 정부에서 ICT분야 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금액으로 당해연도를 포함한 직전년도 2개년간 지원금 평균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단, 인재양성사업, 기반조성사업, 표준화 및 국제공동사업 등 ICT분야 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
(3)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목표대 실적, 가중치: 3점)	
정 의	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교정 및 지도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재정 손실을 막는 등 연구비 관리의 적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목표부여(편차))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목표대실적) : 해당사항 없음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환수율 100%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의 평점 × 0.5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실적의 평점 × 0.5 ②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 : 기관이 관리하는 R&D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건수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은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함. ③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실적(환수율) : $\text{환수율} = \frac{\text{환수한 금액}}{\text{환수 결정액}} \times 100$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누적 기준 금액으로 하며,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빙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과제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쟁송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적 결정액에서 제외하며, 환수 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이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유예 또는 면제 처분한 공식 문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기된 소장으로 증빙함.
(4) 과학기술 창의·전략연구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4점)	

② 인문사회·학술연구 성장 강화 [7점]

사업정의	인문사회 및 학술연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인문사회분야 우수성과 창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재단이 지원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우수 논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우수성과 창출 = 국내외 학술지 논문 수/연구비(최근 3개년, 억원) ② 국내 학술지 논문 수 : 기관이 관리하는 인문사회분야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수 ③ 해외 학술지 논문 수 : 기관이 관리하는 인문사회분야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SCIE, SCI, A&HCI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 ④ 해외 학술지 논문 수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함 ⑤ 참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참여율은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 \times 100(\%)$ 를 적용 ⑥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사사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논문에 대한 표지, 사사표기, 게재년월, 저자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2) 인문사회·학술연구 성장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③ 대학혁신·인재양성 강화 [11점]

사업정의	미래사회 혁신을 위한 인재 양성 및 대학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배출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재단이 지원한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창출된 참여 인력의 학위 취득 후 창·취업 및 진학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급인재 배출 성과 = 인력양성 성과/ 최근 3년 평균 예산 ② 인력양성 성과 : 기관이 관리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취·창업 및 진학한 인력 건수 ③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산출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외부자료(4대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증빙

(2) 대학혁신·인재양성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강화			20
	(1) 사이버 공격 예방 성과		5	
	(2) 사이버 공격 대응 성과		6	
	(3)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활용			17
	(1)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활용 성과		10	
	(2)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활용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정보보호 및 인터넷 산업육성			17
	(1) 정보보호 산업 육성사업 지원 성과		6	
	(2) 디지털 신뢰 서비스 활성화 성과		4	
	(3) 정보보호 및 인터넷 산업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㉔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강화 [20점]

사업정의	국민과 기업의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혁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의 효율적 대응과 협력 기반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1) 사이버 공격 예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침해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보안취약점 및 악성코드 조치를 통한 기관의 사이버 공격 예방 노력의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성과 평점 × 0.5 + 악성코드 분석조치 성과 평점 × 0.5 ②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성과 =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건수 : 보안점검 및 분석을 통해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한 건수의 합 - 예산 :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사업의 당해연도 총 예산액으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2024년도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5년도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③ 악성코드 분석조치 성과 = 악성코드 분석조치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악성코드 분석조치 건수 :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해 악성코드를 수집 및 분석하여 조치를 완료한 건수의 합 - 예산 : 악성코드 분석조치 사업의 당해연도 총 예산액으로 산출함

(2) 사이버 공격 대응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위협정보 공유 노력의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성과 평점 × 0.6 +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성과 평점 × 0.4 ②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성과 = (해킹 홈페이지 대응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0.5 + (스미싱·피싱 대응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0.5 - 해킹 홈페이지 대응 건수 : 해킹된 국내 홈페이지를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분석 및 복구 완료한 건수의 합 - 스미싱·피싱 대응 건수 : 개인을 대상으로 유포되는 스미싱·피싱 사이트를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차단 완료한 건수의 합 - 예산 : 해킹 홈페이지 대응 사업, 스미싱·피싱 대응 사업의 당해연도 총 예산액으로 산출 ※ 산출 시 고려사항 • 스미싱·피싱 대응 성과는 2024년도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5년도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③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성과 =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건수 : 사이버 위협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 건수의 합 ※ 사이버 위협정보 유형 : 사이버 공격지 및 유포지 주소(도메인 또는 IP주소), 악성코드 고유값(hash) 등 - 예산 :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사업의 당해연도 총 예산액으로 산출함
(3)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 9점)	

②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활용 [17점]

사업정의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

(1)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0점)

정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 불필요하게 유·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를 측정한다. (하향·상향지표)	
기준치	국민 개인정보 안전관리 지원	최근 3개년 평균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낮은 실적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최근 3개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국민 개인정보 안전관리 지원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국민 개인정보 안전관리 지원성과의 평점×0.5) +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성과의 평점×0.5) ② 국민 개인정보 안전관리 지원성과 = 당해연도 유출신고 지원업무의 처리기간 - 유출신고 처리기간 : 당해연도 신고된 유출사고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 제출 소요일 ※ 산출 시 고려사항 • 실적 증빙 : 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술지원 처리 기간 • 국민 개인정보 안전관리 지원성과의 목표는 2025년도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6년도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③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성과 = 민간·공공 개인정보 활용성공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예산 :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의 당해연도 총 예산액으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실적 증빙 : 성과발표회 및 보도자료(공문, 관련자료), 관계부처 사례집, 국제학술논문(SCI급) • 예산 산출 시 개인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시스템 구축예산은 제외	

(2)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정보보호 및 인터넷 산업육성 [17점]

사업정의	디지털보안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수요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전자문서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

(1) 정보보호산업 육성사업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KISA가 지원한 사업의 예산 대비 기업이 달성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사업화 지원 성과의 평점×0.6)+(제품화 지원 성과의 평점×0.4) ② 사업화 지원 성과 : 당해년도 사업화 건수 / 최근 3년 평균 예산 - 당해년도 사업화 건수 : 투자유치, 해외수출에 성공한 실적 - 예산 : 기업보육(정보보호클러스터 시설관리 및 운영), 투자유치(정보보호 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해외수출(정보보호산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의 최근 3년 평균액으로 산출함 ③ 제품화 지원 성과 : 당해년도 제품화 건수 / 최근 3년 평균 예산 - 당해년도 제품화 건수 : KISA가 개발한 기술이전의 취득 실적, 물리보안 제품 성능인증서 취득 실적, IoT 시험성적서·보안인증서 취득 실적 - 예산 : 기술이전(KISA 정보보호 원천기술개발), 물리보안 제품 성능인증(지능형CCTV 이용활성화), IoT 보안인증(IoT 보안인증제 운영 및 내재화 확산) 사업의 최근 3년 평균액으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실적증빙) : 투자유치(투자유치계약서), 해외수출(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증명서), 제품화(기술이전계약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취득 실적)

(2) 디지털 신뢰 서비스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디지털 신뢰 서비스 활성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 보안관리체계 확산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최근 3개년 평균 실적과 전년도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 성과의 평점×0.5) + (보안관리체계 확산 성과의 평점×0.5) ②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 성과 : 당해연도 고용창출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고용창출 건수 :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에 참여한 전일제 인력으로서 해당연도에 신규로 채용된 인력 건수 - 예산 :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사업 중 지원사업 예산으로 산출 ※ 산출 시 고려사항 • (실적증빙) 4대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상사업)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가상자산 시장을 제외한 블록체인 활성화 지원 사업) ③ 보안관리체계 확산 성과 : 당해연도 인증·지정 건수 / 당해연도 예산 - 당해연도 인증·지정 건수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취득 실적,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취득 실적, 주요 민간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건수의 합 - 예산 : 당해연도 대상사업의 인증·지정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산출 ※ 산출 시 고려사항 • (실적증빙) 인증 건수: ISMS, ISMS-P 인증서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인증서 지정 건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무조정실) 주관 신규 민간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 자료 • (대상사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 클라우드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인식제고
(3) 정보보호 및 인터넷 산업육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1	
	㉔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			17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성과		5	
	(2)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		5	
	(3)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사업			9
	(1) 지능형 인프라 활용 확산 성과		5	
	(2)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3.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사업			19
	(1) AI·지능화 사업화 성과		5	
	(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성과		6	
	(3)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디지털 포용사회 촉진 사업			9
	(1)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성과		5	
	(2) 디지털 포용사회 촉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 [17점]

사업정의	고수요·고품질의 국가데이터(공공·지능데이터 등)의 구축·개방 및 유통·활용 촉진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선도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성과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 AI허브에 개방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개인·기업 등이 다운로드한 연간 실적을 집계

(2) 공공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투입 예산 대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교육·홍보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개발자·기관이 개발한 서비스(웹·앱) 건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공공데이터 활용 성과} = \frac{\text{① 당해연도 민간(기업·개발자) 또는 ②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서비스 건수}}{\text{당해연도 투입 사업비 (단위 : 억)}} \times 100$ ① (민간) 승인된 기업·운영계정으로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웹·앱) 건수 ② 승인된 기업·운영계정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웹·앱)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①과 ②를 합산

(3) 국가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사업 [9점]

사업정의	차세대 네트워크 확산,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공공 통신망 확충을 선도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1) 지능형 인프라 활용 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국내 네트워크,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용화, 계약 달성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국산 네트워크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실적^1 / \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times 0.5) + (디지털 서비스 선정 실적^2 / \text{당해연도 예산} \times 0.5)$ 1)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발급, 기술성숙도(TRL) 단계 상승을 지원한 네트워크 서비스·장비 건수 2)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전년 대비 당해연도 SaaS 및 융합 서비스 등록 건수 ※ 예산 단위 : 억원

(2) 지능화 인프라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③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사업 [19점]

사업정의	디지털정부 및 AI·지능화 서비스 확산을 통해 국민 편익 증진, 공공 혁신, 민간 성장을 선도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1) AI·지능화 사업화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AI·지능화 선도 확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1) AI·지능화 사업화 성과 = (매출액 / 최근 3년 평균 예산 × 0.5) + (매출 발생 건수 / 최근 3년 평균 예산 × 0.5) - 대상사업 :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32조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관 제20조 제10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사업 중 AI·지능화 도입·전환 기반 구축, 선도 서비스 개발·실증·상용화 지원 사업 2) 세부지표별로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성과로 인정 - AI·지능화 선도 확산 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 시스템, 제품,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 및 매출 발생 건수 ① 제품·서비스 판매 및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매출 ② 플랫폼(앱 마켓·웹사이트)의 이용자 결제, 유료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 3) 예산 단위 : 원 4) 고려사항 : 재무재표(손익계산서), 부가세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 계약서, 협약서, 공문으로 증빙

(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 의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서비스를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서비스별 주관기관 목표치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성과 = $\frac{\sum \text{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별 이용목표 달성률 평점}^1)}{\text{평가대상 신규 서비스 수}^2)}$ 1)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구축한 신규 서비스의 과제별 이용건수 달성률을 서비스별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산정 후 달성률에 대한 평점을 계산하여 합산 2) 수요조사 및 서비스 발굴을 통해 연계·오픈되어 성과측정이 가능한 신규서비스 중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심의위원회(정부부처 주관)에서 성과 측정 대상으로 선정된 서비스 과제 ※ 산출시 고려사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별 이용건수 실적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시스템 및 주관기관이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공식적인 본인정보 제공 통계치를 분석·추출

(3) 지능화(융합) 국가·사회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디지털 포용사회 촉진 사업 [9점]

사업정의	국민 모두가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을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 혜택을 누리도록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선도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1)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노력과 성과를 점근 및 역량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 성과 =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수준(20%) + 디지털 튜터 양성 및 취업지원 성과(40%) + 국민 디지털 역량 제고 성과(40%) ②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수준 = $\frac{\sum \text{조사 대상 키오스크의 정보접근성 수준}^1}{\text{조사 대상 키오스크의 수}^2}$ 1)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국가표준 기반의 58개 접근성 측정 항목에 의한 실사 결과 2) 국내 설치 장소별(은행, 행정, 도서관, 음식점, 대학 등) 운영 중 키오스크 1,000대 ③ 디지털튜터 양성 및 취업지원 성과 = $\frac{\text{취업자 수}^1}{\text{교육 수료생 수}^2}$ 1) 공공·민간 교육기관에 취업한 인원으로 집계 2) 당해연도 전문 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강한 인원으로 집계 ※ 디지털튜터 양성 사업은 '26년 신규 사업으로 3개년 실적치가 확보되는 '28년까지 목표부여 방식 적용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④ 국민 디지털 역량 제고 성과 = $\frac{\text{교육 후 평균 디지털 역량 점수} - \text{교육 전 평균 디지털 역량 점수}}{\text{총점}} \times 100$ ※ 디지털 이용능력 및 디지털 역기능 대응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 ※ 3개년 실적치가 확보되는 '28년까지 목표부여 방식 적용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2) 디지털 포용사회 촉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환경 R&D 지원			15
	(1) 연구결과 기술이전 성과		3	
	(2) 양질의 지식재산권 성과		3	
	(3)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 성과		3	
	(4) 환경 R&D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2. 환경산업 혁신성장 지원			21
	(1) 환경기업 매출 향상 성과		6	
	(2) 환경창업기업 성공 성과		6	
	(3) 환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3.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확산			9
	(1) 친환경제품 민간시장 확대 성과		5	
	(2) 지속가능 소비·생산 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환경피해로부터 안심사회 구현			9
	(1) 환경피해자 일상회복 서비스 수급비율 확대 성과		5	
	(2) 환경피해로부터 안심사회 구현 성과관리의 적정성	4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환경R&D 지원 [15점]

사업정의	환경 분야 기술개발 및 성과 활용·확산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연구결과 기술이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R&D 과제의 기술이전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기술이전 건수 / 최근 3년 평균 예산 ② 기술이전 건수 :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기술이전 건수 ③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술이전(실시) 계약서로 증빙함

(2) 양질의 지식재산권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R&D 과제의 지원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양질의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최근 3년 평균 예산 ② 양질의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 중, SMART 'BBB' 등급 이상인 특허 건수 ③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하며, 삼국특허는 10배 가중치를 적용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④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기여율은 지원기관 수가 단수인 경우 100%, 지원기관 수가 복수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 ⑤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기(사사표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기여율 산정을 위한 지원기관 수는 사사표기에 명시된 기관으로 함 • 국내 특허가 해외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국내를 포함하여 나라별로 등록된 각각의 특허를 별개의 실적으로 인정 • 삼국특허의 경우에는 미국·일본·유럽 특허를 한 개의 실적으로 산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며, 삼국특허 중 일부를 최근 3년 이내에 등록하고 당해 연도 삼국특허가 완료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
(3)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및 환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과제 수행기관에 대한 교정 및 지도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재정 손실을 막는 등 연구비 관리의 적정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목표부여(편차))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실적 중 높은 실적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목표대실적) : 해당사항 없음
목 표	①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환수율 100% 달성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의 평점 × 0.5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실적의 평점 × 0.5 ②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 : 기관이 관리하는 R&D 사업 지원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내부감사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건수 -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 실적은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환수 실적(환수율) : $\text{환수율} = \frac{\text{환수한 금액}}{\text{환수 결정액}} \times 100$ -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 -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누적 기준 금액으로 하며, 최근 5년간 연도별 환수 결정액과 환수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증빙 - 과제 수행기관의 부도·폐업·쟁송에 따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적 결정액에서 제외하며, 환수 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이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유예 또는 면제 처분한 공식 문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기된 소장으로 증빙
(4) 환경 R&D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② 환경산업 혁신성장 지원 [21점]

사업정의	환경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성장과 산업계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환경기업 매출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환경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성장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수혜기업 매출액 / 투입 예산 ② 대상사업 :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창업·벤처지원 제외),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글로벌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십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 시 고려사항 매출실적은 세금계산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용평가업체 제공 매출액, 결산서상 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무역통계진흥원),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해외건설협회)로 적용
(2) 환경창업기업 성공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창업 성공기업 수 / 창업 지원기업 수 ② 창업 성공기업 수 : 창업 지원사업 협약종료 후 당해연도 매출이 발생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수 ③ 창업 지원기업 수 : 녹색산업 분야 우수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하여 창업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수 ④ 창업 지원사업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창업·벤처지원) ※ 산출 시 고려사항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의 정의를 준용함 - 협약 기간 종료 전 중도 포기 시, 지원기업에서 제외함 - 매출 발생실적은 세금계산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신용평가업체 제공 매출액, 결산서상 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상 매출액으로 증빙함
(3) 환경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③ 지속가능 소비·생산 확산 [9점]

사업정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조성을 위해 녹색소비 문화 확산과 녹색제품 생산 촉진을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친환경제품 민간시장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국민이 주도하는 친환경 소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 부문 친환경제품 비중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민간 부문 친환경제품 거래액 / 전체 친환경제품 거래액 ② 민간 부문 친환경제품 거래액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녹색매장,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여 기술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민간기업의 친환경제품 거래액 ③ 공공 부문 친환경제품 거래액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등)에서 구매한 친환경제품 거래액 ④ 전체 친환경제품 거래액 :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친환경제품 거래액 합계 ※ 산출 시 고려사항 • 친환경제품 거래실적은 녹색매장, 그린카드,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민간기업이 제출한 공식 대외문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과 연계하여 녹색구매정보시스템에 자동 집계되는 실적으로 증빙함

(2) 지속가능 소비·생산 확산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환경피해로부터 안심사회 구현 [9점]

사업정의	환경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환경피해자 일상회복 서비스 수급비율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환경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환경피해지원 서비스 수급자 수 / 환경피해 인정자 수 ② 환경피해 인정자 : 가습기살균제, 환경오염, 석면피해에 대한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 인정자로, 당해연도 말까지의 생존자 수 ③ 환경피해지원 서비스 수급자 수 : 환경피해 인정자가 기술원 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제공받은 각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합산 수치 *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오염 피해 및 석면피해 인정자의 회복을 위해 추진 하는 건강관리, 심신치유, 학습지원, 사회적응 지원, 진료비 후불제 서비스 ※ 산출 시 고려사항 • 환경피해인정자는 당해연도 말(12.31.)을 기준으로 생존한 자 수치로 함 • 서비스 수급자수는 환경피해인정자 중 당해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합산한 수치로 함
(2) 환경피해로부터 안심사회 구현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4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위탁집행형 - 국민복리증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12
2. 국립공원공단	1022
3. 국립생태원	1032
4. 국민건강보험공단	1042
5. 근로복지공단	1052
6. 예금보험공사	1064
7. 축산물품질평가원	1076
8. 한국고용정보원	1088
9. 한국국제협력단	109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04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12
1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122
13. 한국소비자원	1130
1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140
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50
16. 한국장학재단	1158
17. 한국재정정보원	1168
18. 한국환경공단	11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㉕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진료비 심사 사업			17
	(1) 적정진료 성과		3	
	(2) 진료비 효율화 성과		4	
	(3) 심사 사후관리 성과		3	
	(4) 진료비 심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의료의 질·안전 평가 사업			21
	(1) 질 향상 취약기관 관리 성과		5	
	(2) 의료 질 우수기관 관리 성과		4	
	(3)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3	
	(4) 의료의 질·안전 평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3.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16
	(1)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수행률		5	
	(2)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개방·활용 성과		4	
	(3)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진료비 심사 사업 [17점]

사업정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가 정확한지, 그리고 진료가의·약학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고 부적절한 진료비는 환수,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의 효율적 사용 및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사업

(1) 적정진료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분석심사를 통해 의학적 자율성 보장 및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합병증 예방,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보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적정진료 성과 = 분석심사 성과 • 분석심사 성과 (비용·질 적정기관 비율) = $\frac{\text{상·하반기 연속 적정기관 수}}{\text{당해연도 분석심사 대상기관 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적정기관 수: 분석심사 유형 분류 중 의료 질·비용 모두 적정하여 일반군 (General Zone)에 포함된 기관 • 대상기관: 고혈압·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2) 진료비 효율화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4점)

정의	진료비 급증 또는 사회적 이슈 항목에 대한 집중심사, 심사내역 재점검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을 예방한 진료비 효율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진료비 효율화 성과 = 선별집중심사 성과(3점) + 심사내역 재점검 정산금액(1점) - 선별집중심사 성과 : 의원급이상 의료기관 대상 선별집중 심사를 통한 사전예방금액과 조정금액의 합 • 사전예방금액 = 예측진료비 - 실제진료비 ※ 예측진료비: 선별집중심사 미시행 시 심사청구금액 (예상 청구건수 × 당해연도 건당 청구금액) * 예상 청구건수는 연평균 증감률 적용 ※ 실제진료비: 선별집중심사 시행 후 심사청구금액 • 조정금액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의 심사조정 금액 ※ 산출시 고려사항 •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함
(3) 심사 사후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자율점검제 등 심사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진료비 지출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심사 사후관리 성과 =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 적발 금액 + 자율점검제를 통해 확인된 부당 적발 금액 및 사전예방금액의 합(자율 점검 실시 전·후 해당 항목의 청구 감소 금액) ② 건강보험, 의료급여 대상으로 함 ③ '25년도 목표치, 3개년('22~'24) 편차방식을 적용함
(4) 진료비 심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의료의 질·안전 평가 사업 [21점]

사업정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자원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의약품 정보·데이터 제공·활용으로 국민 안전을 강화,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안전한 보건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1) 질 향상 취약기관 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의료서비스 질 수준이 취약한 기관의 질 향상을 전인하여 국민 의료안전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 질 향상 취약기관 관리 성과} = \frac{\text{Σ항목별 취약기관 수}}{\text{Σ항목별 평가대상기관 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취약기관: (등급 산출 항목) 4·5등급 기관, 평가항목별 최하등급 기관, (등급 미산출 항목) 종합점수(평가지표)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 - 당해연도 기관별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평가항목 대상

(2) 의료 질 우수기관 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의·약학적인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환자안전)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이 우수한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진료비 부담의 적정화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의료 질 우수기관 관리 성과} = \frac{\text{Σ항목별 우수기관 수}}{\text{Σ항목별 평가대상기관 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우수기관: (등급 산출 항목) 1등급, 2등급 기관 (등급 미산출 항목) 양호기관 - 당해연도 기관별 평가결과를 산출하는 평가항목 대상

(3)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실시간 점검하고 정보를 제공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처방·조제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예방 성과 = 부적절한 의약품(마약류) 사용 정보 수용률(2.4점) + 부적절한 의약품(비마약류) 사용 정보 수용률(0.6점) ② 부적절한 의약품(마약류) 사용 정보 수용률 = (처방변경건수+적정사유 기재 건수) / 처방·조제 점검을 통한 정보 제공 건수×100 ③ 부적절한 의약품(비마약류) 사용 정보 수용률 = (처방변경건수+적정사유 기재 건수) / 처방·조제 점검을 통한 정보 제공 건수×100 - 처방변경건수: 부적절한 의약품에 대한 DUR 정보제공으로 처방·조제를 변경한 건수 - 적정사유 기재 건수: DUR서비스를 통해 동일성분 중복 및 병용·연령·임부금기 등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의약사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기재 및 적절한 복약지도를 한 후 처방·조제한 건수 - 처방·조제 점검을 통한 정보제공 건수: DUR 서비스를 통해 의·약사에게 병용금기 등 부적절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부적절한 의약품(마약류) 사용 정보 수용률은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조제 건을 대상으로 함 - 부적절한 의약품(비마약류) 사용 정보 수용률은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은 처방·조제 건을 대상으로 함

(4) 의료의 질·안전 평가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③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16점]

사업정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 의료비 관리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재정을 보호하며,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관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1)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수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의	건강보험에 선별급여로 등재된 항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치료적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실질적인 의료보장 지원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목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수행률= $\frac{\text{평가연도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검토 이행 항목 수}}{\text{평가연도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검토 목표 항목 수}} \times 100$ ② 검토 목표 항목 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가 평가연도에 도래하는 항목 수를 대상으로 함 ③ 검토 수행 항목 수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가 도래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 검토 결과를 보고한 항목 수

(2)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개방·활용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계량 4점)

정의	HIRA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제공을 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 직전 3개년 실적이 없을 시 전년도 실적과 직전 2개년 평균 실적을 비교
목표	(목표부여) 최고목표: 기준치×120%, 최저목표: 기준치×80% (목표부여 편차)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개방·활용 성과 =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방 성과(3점) +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 성과(1점) ②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 개방 성과) 건강e음 앱을 통해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조회한 총 건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 성과) 의료진(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이 진료 등의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투약이력을 활용한 총 건수 ④ (평가방법)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방 성과(목표부여) ,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활용 성과(목표부여(편차)) *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 개방 성과는 2026년도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3)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립공원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㉕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공원자원 보전·협력사업			23
	(1) 생태계 건강성 지수 향상률		8	
	(2)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 노력		5	
	(3) 공원자원 보전·협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공원탐방사업			20
	(1) 국립공원 탐방 공공성 강화		7	
	(2) 지속가능한 공원탐방 정책 추진노력		5	
	(3) 공원탐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11
	(1)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6	
	(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순사업비 산출 시 호우·설·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과 관련된 복구사업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공원자원 보전·협력사업 [23점]

사업정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공원자원의 보전을 강화하고, 온전하게 보전된 공원자원을 외부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

(1) 생태계 건강성 지수(EHI) 향상률 (평가방식 : ①, ③ 목표부여(편차), ②, ④ 목표대실적, 가중치 : 8점)	
정 의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보전사업의 최종성과를 반영하는 생태계 건강성(EHI) 지수 향상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③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당해연도 멸종위기종 복원 목표(100%) ③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④ 1등급(8.28점)
측정 산식 및 변수	• 생태계 건강성 지수(EHI) 향상률 = 종다양도(H') (2점) + 멸종위기종복원율(2점) + 서식지보전복원지수(2점) + 해양생태계 지수(2점) • 생태계 건강성 지수(EHI)별 세부 산식 ① 종다양도(H') = $-\sum_{i=1}^R p_i \ln p_i$ * p_i : i번째 해당 종의 출현 지점 수/국립공원 전체 생물출현 지점 수 ② 멸종위기종복원율 = 멸종위기종 자연활동 개체수/복원목표 개체수×100 ③ 서식지보전복원지수 = 공원 훼손지 복원면적/공원 훼손지 면적×100 ④ 해양생태계지수 = $0.2 \times (H') + 0.8 \times (BPI + AMBI)$ * H' : 저서생물 종다양도 지수 BPI : 저서오염지수(섭식유형에 따른 분류) AMBI : 저서해양생물지수(환경오염 민감도) ※ 산출시 고려사항 • 종다양도는 자연공원법 제36조(자연자원조사), 제11조(공원자원모니터링)에 의거 공단, 학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모니터링 결과자료를 기초로 산출

측정 산식 및 변수	• 멸종위기종복원율 중 멸종위기종은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로 한정하며 제 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21-2025) 및 복원종 조사·모니터링 결과자료를 기초로 결과 산출하며, 목표대실적 방식으로 평가 • 서식지보전복원지수는 매년 공원에서 시행하는 육상 및 해상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 통계자료를 통해 산출 • 해양생태계지수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통해 산출

(2) 공원자원 훼손행위 예방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공원자원 훼손행위 전·후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원자원 보전·보호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원자원 훼손 행위 예방 노력 = $\left(\frac{\text{과태료 부과건수} \times 0.2 + \text{착한탐방안내건수} \times 0.8}{\text{탐방객 수}} \right) \times 100$ ② 과태료 부과건수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금지행위 적발건수를 말하며, 착한탐방안내건수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행위가 경미할 경우의 적발한 건수를 말함. * 착한탐방안내 2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③ 탐방객 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진입지점의 전자계수기, 인력계수, 유료입장객 등을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발표(정부승인 통계자료)하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기준으로 함. * 지자체 관리 한라산, 여수오동도 탐방객 수는 제외

(3) 공원자원 보전·협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공원탐방사업 [20점]

사업정의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람-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탐방서비스를 제공

(1) 국립공원 탐방 공공성 강화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사회문제해결형 탐방프로그램 확대 및 무장애 탐방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단의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문제해결형 탐방프로그램 참여인원의 평점 × 0.7 + 무장애 탐방인프라 확대율의 평점 × 0.3 ② 사회문제해결형 탐방프로그램 참여인원 - 사회문제해결형 탐방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대상 생태체험프로그램, 건강증진 필요집단 대상 치유프로그램, 저출생 및 돌봄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프로그램, 임신부 대상 숲 속 태교여행과 은둔·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사회성증진프로그램 및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대상 활력 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실적으로 함. - 탐방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국립공원공단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국립공원 체험·해설프로그램에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참여한 인원내 대하여 실적시스템으로 확인된 참여자 수로 함. ③ 무장애 탐방인프라 확대율 = $\frac{\text{무장애 탐방 시설 수}}{\text{전체 탐방 시설 수}} \times 100$ - 무장애 탐방시설 수는 연도말 주무부처로 제출하는 실적 중 야영장 내 무장애 영지수(무장애카라반, 키즈카라반 포함), 주차장 내 가족배려주차구획 조성결과를 근거로 하며, 국립공원 내 개별 야영장별 총 영지대비 무장애 영지 수가 10% 이상인 야영장 수와 주차장별 총 주차대수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와 가족배려주차구획 주차대수의 합이 10% 이상인 주차장 수의 합으로 함 - 가족배려주차구획은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한 주차구획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근거로 함 - 전체 탐방 시설 수는 평가 당해연도 '국립공원기본통계' 내 탐방시설(공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야영장, 주차장 수)의 합

(2) 지속가능한 공원탐방 정책 추진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공원탐방 서비스 거점시설(탐방체험시설) 운영 활성화, 공원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탐방을 위한 공단의 주요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지속가능한 공원탐방 정책 추진 노력 = $\left(\frac{\text{탐방체험시설 이용자 수}}{\text{탐방객 수}} \right) \text{의 평점} \times 0.5 + \left(\frac{\text{탄소중립형 공원시설 조성 동수}}{\text{공원시설(건축물) 동수}} \right) \text{의 평점} \times 0.5$ ② 탐방체험시설 서비스 이용자 수는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체험학습관에서 생태콘텐츠,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인원에 대하여 국립공원 실적시스템으로 확인된 서비스 이용자 수로 함. ③ 탐방객 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진입지점의 전자 계수기, 인력계수, 유료 입장객 등을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발표(정부승인 통계자료)하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기준으로 함. ※ 지자체 관리 한라산, 여수오동도 탐방객 수는 제외 ④ 탄소중립형 공원시설 조성 동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또는 인증 기준(기존 시설대비 연간 단위면적 당 1차 에너지 소요량 30% 이상 개선)에 준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실적을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건축물 동수로 함. ⑤ 공원시설(건축물) 동수는 국립공원 기본통계에 반영된 건축물 (공원사무소, 탐방안내소, 대피소, 화장실) 동수 및 생태탐방원·체험학습관·산악안전교육원 동수로 함.

(3) 공원탐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11점]

사업정의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																	
(1)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 의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목 표	(단위: 명) <table><tr><td>구분</td><td>2023년</td><td>2024년</td><td>2025년</td><td>2026년</td><td>2027년</td></tr><tr><td>목표</td><td>0.3486</td><td>0.3381</td><td>0.3280</td><td>0.3182</td><td>0.3084</td></tr></tabl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3486	0.3381	0.3280	0.3182	0.3084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	0.3486	0.3381	0.3280	0.3182	0.3084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탐방객 안전사고 감소율 = $\frac{(\text{안전사고 사망자 수} \times 2 + \text{안전사고 부상자 수}) \times 100,000}{\text{탐방객 수}}$ (10만명당) ② 탐방객 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진입지점의 전자 계수기, 인력계수, 유료 입장객 등을 집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발표(정부승인 통계자료)하는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기준으로 함. ※ 지자체 관리 한라산, 여수오동도 탐방객 수는 제외 ③ 국립공원공단 중장기 경영목표('23~'27)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과거 실적에 근거하여 최고 실적 0.37명(10만명당)에서 '27년까지 0.31명 이하로 감소 ※ 산출 시 고려사항 -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는 국립공원 통합방재시스템에 등록된 국립공원 안전사고 유형 중 사망 및 부상자로 함 - 안전사고 유형 중 번사(자살)에 의한 사망자 및 단순구조 출동인 안전구조, 기타는 제외																	
(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생태연구 사업			27
	(1) 국가 자연생태계 보전 성과		6	
	(2) 생태연구실적 및 활용 성과		9	
	(3) 생태연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2		
	2.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			13
	(1)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성과		8	
	(2)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생태가치확산 사업			14
	(1) 생태가치확산 사업 성과		3.5	
	(2) 생태가치확산 사업 안전성 확보 성과		2	
	(3) 생태가치 인식함양 성과		2.5	
	(4) 생태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생태연구 사업 [27점]

사업정의	국가 자연생태계 조사·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현

(1) 국가 자연생태계 보전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국가 자연생태계 보전과 정책 지원을 위한 생태 관련 연구결과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생태조사정보 생산 성과(4점) + 생태보전 정책지원 성과(2점) ② 생태조사정보 생산 성과는 당해연도 자연환경조사 대상이 되는 도엽당 생산하는 생태정보의 평균을 의미한다. - 생태정보는 조사원의 현장 목측, 드론·라이다 등 조사장비 활용, AI 등을 활용한 정보처리를 통해 생산하며, 발견된 생물종수 및 서식지 단위 지형 건수로 한다. ※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의거, 국가의 환경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생태환경정보의 수집을 위해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법정사업으로, '제6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년 1개 권역씩 조사를 수행함. ③ 생태보전 정책지원 성과 = $\frac{\text{신속처리A 건수} + \text{신속처리B 건수} \times 2}{\text{환경영향평가 요청 건수}}$ - 환경영향평가 요청 건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의뢰를 받은 환경영향평가 총 건수를 의미한다. - 신속처리A는 처리기간을 20%이상 ~ 30%미만 단축한 경우이고, 신속처리B는 30%이상을 단축한 경우로 한다. - 처리기간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요청받은 기간을 의미한다.

(2) 생태연구실적 및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9점)

정 의	생태연구 실적과 그 활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5점) + 지식재산권 확보 실적(4점) ② 해외학술지 게재실적 = $\frac{\text{해외학술지 게재 건수}}{\text{생태연구·조사사업 최근 3개년 평균예산(억원)}}$ - 해외 학술지 논문 수는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 수행을 통해 당해연도 SCI(E), SSCI, A&HCI에 등재된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로 산정한다. 다만 국외 공적기관에 의해 지정된 약탈적 학술지* 실적은 제외한다. * 국외 공적기관 지정 약탈적 학술지는 ‘노르웨이 고등교육역량위원회 X등급(약탈적) 학술지 리스트(https://kanalregister.hkdir.no/publiseringsskanaler/Forside/)’를 따른다.〔부실의심 또는 약탈적 학술지 이용 예방(한국연구재단) 참조〕 - 참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참여율은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한다. ※ 생태연구·조사사업 최근 3개년 평균예산은 해당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 간 생태연구·조사 사업예산의 평균금액으로 산출하되 건설비, 유형자산 및 정보화사업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권 확보실적 = $\frac{\text{지식재산권 등록 건수}}{\text{생태연구·조사사업 최근 3개년 평균예산(억원)}}$ -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중 SMART5 “A” 등급 이상 건수로 산정한다.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2배 가중치를 적용하며, 삼극특허는 10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 지식재산권 실적은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함(지원기관 수가 단수일 경우 100%, 복수일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실적은 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성과임을 명확하게 확인(사사표기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의 특허청이 발급한 등록증으로 증빙

(3) 생태연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2점)

②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 [13점]

사업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증식·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1)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사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8점)

정의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멸종위기종 증식 및 복원 관련 연구결과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결과 생산 실적(4점) + 멸종위기종 신규 서식지 발굴 실적(2점) + 멸종위기종 서식지 개선 실적(2점)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결과 생산 실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 조사'에서 수집한 멸종위기종과 서식지의 현황 자료(좌표, 개체 수, 위협 요인 등)로 조사지점별 입력 건수를 의미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야생생물 등에 서식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이 수행하는 조사사업 ③ 멸종위기종 신규 서식지 발굴 실적은 국립생태원 누리집 시민 제보, 복원사업 방사·이식 대상지 조사, 멸종위기종 기초 조사에서 확보한 서식지 정보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정보와 비교하여 신규 서식지로 확인된 건수로 산정한다. ④ 멸종위기종 서식지 개선 실적은 멸종위기종 방사, 이식 전·후에 멸종위기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서식지 환경개선(인공둥지설치, 산란지 개선공사, 수목 정비 등) 및 위협요인 제거활동(포식자, 외래종, 경쟁종 이주·제거, 감시카메라 설치 등)으로 한다. ※ 서식지 개선 실적은 멸종위기종 방사, 이식 전·후에 국립생태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활동에 한한다.

(2)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생태가치확산 사업 [14점]

사업정의	생태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 의식을 함양

(1) 생태가치확산 사업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대실적, 가중치: 3.5점)

정 의	국립생태원 유료입장객 비율, 미래세대 관람 비율 평점, 전시사업 효익성 지수 평점 측정으로 생태가치확산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기재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별 목표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①유료입장객 비율 평점×0.4 + ①미래세대 관람 비율 평점×0.3 + ②전시사업 효익성지수 평점×0.3 ② 유료입장객 비율 평점은 국립생태원에 입장하는 유료 입장객 수를 유·무료 전체 입장객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미래세대 관람 비율 평점은 미래세대(소아·청소년, 만5세~18세) 입장객 수를 유료입장객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전시사업 효익성지수는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전시사업 효익성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2) 생태가치확산 사업 안전성 확보 성과(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2점)

정 의	기관의 인명 사고 피해율을 측정함으로써, 국립생태원에 방문한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 +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명피해율 = $\frac{\text{인명피해} \times 100,000}{\text{유·무료 전체 입장객 수}}$ ② 인명피해율은 국립생태원 관람을 위해 입장한 전체 입장객 수 대비 관람 도중 발생한 인명피해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실적증빙은 국립생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청구된 건별로 한다. -인명피해 심각도의 상해정도에 따른 가중치는 사망 2, 부상 1을 적용한다. (자살사고는 제외함)											
(3) 생태가치 인식함양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대실적, 가중치: 2.5점)												
정 의	생태교육 참여 평점 및 교육사업 효익성지수 측정으로 대국민 생태교육 사업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①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기재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별 목표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①생태교육 참여 평점×0.7 + ②교육사업 효익성지수 평점×0.3											
	② 생태교육 참여 평점은 교육과정별 참가자수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 생태교육 참여 평점 = ∑(교육과정별 참가자수 × 가중치)											
	<table><tr><td>과정구분</td><td>일반과정</td><td>복지과정</td><td>전문과정</td></tr><tr><td>가중치</td><td>0.1</td><td>0.3</td><td>1</td></tr><tr><td>과정설명</td><td>일반인 대상 생태교육 (현장모객서비스 에코리움배움터 제외)</td><td>사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교육</td><td>공무원연수, 교원연수, 민간인력 양성과정, 대학생 교육과정</td></tr></table>	과정구분	일반과정	복지과정	전문과정	가중치	0.1	0.3	1	과정설명	일반인 대상 생태교육 (현장모객서비스 에코리움배움터 제외)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교육
과정구분	일반과정	복지과정	전문과정									
가중치	0.1	0.3	1									
과정설명	일반인 대상 생태교육 (현장모객서비스 에코리움배움터 제외)	사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교육	공무원연수, 교원연수, 민간인력 양성과정, 대학생 교육과정									
③ 교육사업 효익성지수는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교육사업 효익성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4) 생태가치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평가방식 : 9등급 평가, 가중치: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16
	(1)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비중 확대 성과		5	
	(2)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4	
	(3)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보험급여관리 사업			14
	(1)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3	
	(2)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5	
	(3) 보험급여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건강검진·증진 사업			10
	(1)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6	
	(2) 건강검진·증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장기요양보험 사업			14
	(1) 의료·요양 등 신규 재가서비스 이용 확대 성과		4	
	(2) 장기요양 급여비용 사전관리 및 부당 이득금 환수 성과		4	
	(3) 장기요양보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자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법정준비금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16점]

사업정의	건강보험 가입자·사업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소득 중심의 보험료 형평 부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

(1)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비중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의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효과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table><tr><td>연도</td><td>'23</td><td>'24</td><td>'25</td><td>'26</td></tr><tr><td>부과율(%)</td><td>94.5</td><td>95.0</td><td>95.5</td><td>96.0</td></tr></table>					연도	'23	'24	'25	'26	부과율(%)	94.5	95.0	95.5	96.0
연도	'23	'24	'25	'26											
부과율(%)	94.5	95.0	95.5	96.0											
측정 산식 및 변수	○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비중 확대 성과 = $\frac{\text{소득에 대한 당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text{당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times 100$ ※ 당년도 결산 기준														

(2)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4대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의 균형 있는 징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징수 성과 $= (\text{보험료 체납액 중 당년도에 징수한 금액} / \text{보험료 체납액})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보험료 체납액: 직전연도 말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총 체납액의 합계 • 징수한 금액: 체납액 중 당년도에 징수한 금액(결손처분, 관리종결, 징수권 소멸 금액 포함)

(3) 자격 및 부과·징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보험급여관리 사업 [14점]

사업정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급여의 효율적 관리 및 보험급여비용 부담지출 방지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1)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의	고액 의료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복지사각지대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혜 확대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복지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목표치를 연계 <table><tr><td>연도</td><td>2025년</td><td>2026년</td><td>2027년</td></tr><tr><td>이용환자수(만명)</td><td>290</td><td>340</td><td>400</td></tr></table>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이용환자수(만명)	290	340	400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이용환자수(만명)	290	340	4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성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혜 확대×80%) + (의료취약계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성과×20%)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혜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누적 이용환자수 ② 의료취약계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성과 = (당해연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중증질환 관련 지원금액 / 당해연도 총 지원금액) ×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지원대상이 되는 건강보험가입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및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중증질환 관련 지원금액: - 신청 의료비에 대한 대표적인 질환의 질병분류기호(KCD)가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의 중증질환, 별표4의 희귀질환, 별표4의2의 중증난치질환에 해당하거나, 별첨1의 뇌혈관질환, 별첨2의 심장질환, 별첨3의 중증화상(중증도 기준)의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료										

(2)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부당청구 및 부당수급 적발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불법개설기관 단속 및 환수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③<table><tr><td>연도</td><td>2023년</td><td>2024년</td><td>2025년</td><td>2026년</td><td>2027년</td></tr><tr><td>환수금액(억원)</td><td>236</td><td>246</td><td>256</td><td>267</td><td>278</td></tr></table>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환수금액(억원)	236	246	256	267	278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환수금액(억원)	236	246	256	267	278													
측정 산식 및 변수	○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 일반 부당이득금 환수(3.0점) + 불법개설기관 적발 성과(1.0점) + 불법개설기관 환수 성과(1.0점) ① 일반 부당이득금 환수 =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a) * a : 상해요인 부당이득 결정금액, 부당수급 결정금액, 본인부담 상한제 환입금, 요양기관 방문확인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 현지조사 적발 금액 (복지부 조사 의뢰 금액) ※ 산출 시 고려사항 •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 중 체납 후 진료에 의한 환수결정금액은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정책적인 배려 등 적극적 환수조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 ‘산재 정산 청구 건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및 ‘의료급여비 정산금액’은 기관 간 정산에 해당되어 제외 ② 불법개설기관 적발 성과 = (불법개설기관 적발 기관수(a) / 행정조사 기관수(b)) × 100 ③ 불법개설기관 환수 성과 = 불법개설기관 환수금액(c) * a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환수결정한 기관수를 말한다. * b :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행정조사한 기관수를 말한다. * c :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당해연도에 징수한 원금, 세액, 연체금, 소송이자 금액 *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제33조, 제4조), 약사법(제6조, 제20조, 제21조)의 개설 기준을 위반한 기관을 말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수사기관 직권 수사결과 통보건은 환수결정 기관수에서 제외한다.																	

(3) 보험급여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건강검진·증진 사업 [10점]

사업정의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 및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수명 향상

(1)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및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암검진 수검률의 지속적 향상을 통한 중증질환 조기 발견 확대로 질병을 적정 관리하고,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 악화 및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②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기관의 중장기경영목표의 목표치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목표(%)	60.300	60.600	60.900	61.200
	②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 (암검진 수검률×50%) + (만성질환자 관리율×50%)				
	① 암검진 수검률 = $\frac{\text{암검진 수검자 수}}{\text{암검진 대상자 수}} \times 100$				
	② 만성질환자 관리율 = $\frac{\text{건강지원사업 관리인원(b)}}{\text{만성질환 관리대상 인원(a)}} \times 100$				
	* a : 전년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청구된 인원 수 + 과소·과다 투약자 수 (6개월 간 고혈압·당뇨병 약물 소지율* 80% 미만 또는 150% 이상인 자)				
	* 약물 소지율: (약물 처방일수 ÷ 6개월) × 100				
	* b : 평가연도에 유선(음성봇 포함), 방문,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웹을 통해 건강 상담을 받고, 본인 요구도에 따라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①자가 측정기 대여, ②건강교육 프로그램, ③집중상담, ④건강정보 제공)를 받은 자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자가측정기 대여) 자가측정기 4주 이상 대여자, (건강교육 프로그램) 건강교실 3회 이상 또는 자조모임 3회 이상 참석자, (집중상담) 집중 상담 2회 이상 상담자, (건강정보제공) 질환별 맞춤형 책자 및 건강 생활실천 알림서비스 4회 이상 제공자				
	• 분모(a) 산출시 중복인원은 제거				

(2) 건강검진·증진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4점)

④ 장기요양보험 사업 [14점]

사업정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재정누수 방지를 통한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1) 의료·요양 등 신규 재가서비스 이용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의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신규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 의료·요양 등 신규 재가서비스 이용 확대 성과 = 재택의료센터 이용자 확대 성과(2.0점)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확대 성과(2.0점) ① 재택의료센터 이용자 확대 성과(a) = 재택의료센터 이용자 수 ②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확대 성과(b)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 수 * a : ‘27년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 b : ‘28년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 적용

(2) 장기요양 급여비용 사전관리 및 부당이득금 환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사전 심사 강화,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로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확보에 기여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장기요양 급여비용 사전관리 및 부당이득금 환수 성과 =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부당확인금액(60%) + 장기요양 부당 이득금 환수율(40%) •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당해연도 부당이득금 결정금액에 대한 환수율 ※ 산출시 고려사항 •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금액 중 체납후 수급에 의한 환수결정금액은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정책적인 배려 등 적극적 환수조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

(3) 장기요양보험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근로복지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부채/자산비율		0.5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11
	(1)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 노력		6	
	(2)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성과관리의 적정성	5		
	2.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27
	(1) 산재보험 신속성 제고 성과		5	
	(2) 구상금·부당이득 채권 회수율		4	
	(3) 사회복귀대상자 경제활동복귀율		7	
	(4)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1		
	3.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10
	(1) 산재직영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6	
	(2)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4. 복지연금사업			6
	(1)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3	
	(2) 복지연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퇴직연금기금운용자산과 퇴직연금기금적립부채는 제외하고 산출할 수 있음.

(3) 효율성 관리 [2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11점]

사업정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산재·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확대 및 가입촉진, 가입 지원 서비스 강화와 보험료 적기 신고·납부 지원, 공정한 보험료 부과 및 누수 방지,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

(1)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의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사회안전망 강화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 산재보험 가입자 수 확대 노력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노력: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대 노력 = 산재보험 가입자 수 확대 노력의 평점×0.5 +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노력의 평점×0.5 ② 산재보험 가입자 수 확대 노력 = $\frac{\text{산재보험 가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수}} \times 100$ -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산재보험 사업운영 시스템(노동보험시스템)에서 작성되는 사업연보 통계자료 기준의 매월 말 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수를 제외한 평가연도 월 평균 가입자 수 - 경제활동인구 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실업자 수를 제외한 평가연도 월 평균 수로 함 ③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노력 = $\frac{\text{고용보험 가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수}} \times 100$ -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평가연도 12.31. 기준 고용보험시스템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로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 가입자 수는 평가연도 중 고용보험시스템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취득자 수의 합계로 하며, 동일인이 다수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1명으로 산정

측정 산식 및 변수	- 경제활동인구 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평가연도 12.31. 기준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실업자 수와 자영업자수(무급가족종사자포함)를 제외한 수로 함

(2) 산재·고용보험 가입·부과업무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②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27점]

사업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서비스 및 요양·재활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사회·직업복귀를 촉진하고 맞춤형 보장 강화와 적정 보험급여 관리를 통해 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1) 산재보험 신속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요양·보상 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상향지표)
기 준 치	-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업무상 사고 평균처리기간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업무상 질병 적기처리율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재보험 신속성 제고 = (업무상 사고 평균처리기간 평점 × 70%) + (업무상 질병 적기처리율 평점 × 30%) ② 업무상 사고 평균처리기간 = $\frac{\text{업무상 사고 처리 일수의 합}}{\text{업무상 사고 처리 건수의 합}}$ - 업무상 사고 처리 일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접수되어 처리(결재완료)된 업무상 사고(출퇴근재해포함) 산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처리(결재완료)일까지 일수의 합으로 함 - 업무상 사고 처리 건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접수되어 처리(결재완료)된 업무상 사고(출퇴근재해포함) 산재신청서 건수의 합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대상: 평가연도에 업무상 사고·출퇴근재해 건으로 결정(결재완료)된 산재신청서(최초요양급여신청서, 유족급여청구서, 최초성 요양비청구서) • 단, 업무상 사고·출퇴근재해 접수건 중 구상대상, 반려, 이송, 기타 처리건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등)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기간은 제외 ③ 업무상 질병 적기처리율 = $\frac{\text{업무상 질병 120일 이내 처리 건수의 합}}{\text{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의 합}} \times 100$ - 업무상 질병 120일 이내 처리 건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처리(결재완료)된 산재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처리(결재완료)일까지 일수가 120일 이내인 처리건수의 합으로 함 -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의 합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처리(결재완료)된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서 건수의 합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대상: 평가연도에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결재완료)된 산재신청서(최초요양급여신청서, 유족급여청구서, 최초성 요양비청구서) • 단, 업무상 질병 접수건 중 반려, 이송, 기타 처리건 제외 • '26년 평가시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7년 평가시 과거 4개년 표준편차, '28년 평가시 과거 5개년 표준편차 적용

(2) 구상금·부당이득 채권 회수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급여 구상금과 급여지급 이후 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득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장기·부실 채권을 최소화하고 기금 건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유지하려는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구상금·부당이득 채권 회수율} = \frac{\text{구상금·부당이득 수납액}}{\text{구상금·부당이득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은 평가연도 1.1.~12.31.까지 수납된 채권 합산액을 말한다 ② 징수결정액은 평가 직전연도 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채권 금액과 평가연도 1.1.~12.31.까지 신규 징수결정한 채권 금액의 합을 말하며, 과실 비율의 소확정 및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어 감액되는 징수결정액과 소멸정리, 결손으로 인한 채권의 감액금액은 제외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불법의료기관의 진료에 의해 지급된 보험급여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금액은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사회복귀대상자 경제활동복귀율(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사회복귀대상자의 경제활동복귀 지원 업무를 통해 실제 경제활동 복귀에 이른 실적을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최근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복귀대상자 경제활동복귀율 = $\frac{\text{경제활동복귀자 수}}{\text{사회복귀대상자 수}} \times 100$ ② 경제활동복귀자 수는 사회복귀대상자 중 당해연도 매월 말일 이전 1주일 동안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또는 신규 취득한 자의 합을 말한다. ③ 사회복귀대상자 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노무제공자, 중소기업사업주로서 당해연도에 산재요양 종결한 자의 수를 말하며, 당해연도 이전에 산재요양 종결한 경제활동 미복귀자 중 당해연도 이전 3개년 이내 경제활동복귀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한다. ※ 제외 : 사망·소음성난청·진폐·CS2질환자·불법외국인근로자·재요양 후 종결한 자
(4)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③ 산재직영병원 운영사업 [10점]

사업정의	산재보험자 병원으로서 산재근로자의 산재예방·진료·요양·재활역할 및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안전망 역할 증진을 위한 사업
(1) 산재직영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목표 대 실적, 가중치 : 6점)	
정 의	산재환자 직업·사회복귀까지의 전문재활에 대한 평가와 의료질 향상 성과, 의료사고 감소 실적을 통해 산재직영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기 준 치	산재병원 전문재활 추진 성과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 전문재활 추진 성과 : 최고목표 : 기준치+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의료질 향상 성과 : 당해연도 의료질 평가 최고득점 • 의료사고감소노력 : 무사고 달성(사고건수 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문재활 추진 성과의 평점×37.5%)+(의료질 향상 성과의 평점×12.5%) +(의료사고 감소 노력 지표의 평점×50%) ② 전문재활 추진 성과 = $\frac{\text{산재환자 전문재활 치료 건수}}{\text{산재환자 재활치료 건수}} \times 100$ - 산재환자 전문재활 치료 건수: ①~⑤에 속하는 항목으로, 물리·작업, 집중재활, 직업재활, 수중재활, 특수·심리 재활, 언어재활 건수의 합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장 제3절의 신경계·외피근골 기능검사, 제7장 제2절의 운동치료 및 제3절 ②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절 ③ 「재활인증의료기관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제1장 제2~4절, 제2장 ④ 「소속병원 요양급여산정기준」 제1장 제2절, 제2장 ⑤ 「직장복지지원의료기관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3절 - 산재환자 재활치료 건수는 「산재환자 전문재활치료 건수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제7장에 명시된 항목」으로 함. ③ 의료질 향상 성과 = $\frac{\text{직영병원 당해연도 의료질 평가 취득점수}}{\text{보건복지부 고시 내 의료질 평가 1등급 부여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의료질 평가결과로 점수 산정 - 직영병원 당해연도 의료질 평가 취득점수는 의료질 평가 항목 중 환자 안전·의료질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직영병원별 병상 수로 가중치를 환산함 - 보건복지부 고시 내 의료질 평가 1등급 부여 기준은 환자안전·의료질 영역의 당해연도 종합병원 최고득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1등급 부여 기준 퍼센타일을 곱한 값으로 산정 ※ 산출시 고려사항 • 단, 모든 산재직영병원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세부항목의 가중치는 의료질 평가 득점 및 의료질 평가 최고득점 합계에서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기준·항목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의료사고 감소노력 = $100 - \sum \text{의료사고 발생점수}$ - $\sum \text{의료사고 발생점수}$: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지급된 배상금 금액에 따라 가중치 부여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퇴직연금 가입률 = $\frac{\text{연도말 공단 퇴직연금(DC형+기금형) 가입 사업장 수}}{\text{연도말 고용보험 30인 미만 가입 사업장 수}}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 연도말 공단 퇴직연금(DC형+기금형) 가입사업장 수에서 연도말 기준 근로자가 0명인 가입사업장 수는 제외함 ③ 취약사업장 미청구 퇴직급여지급률 = $\frac{\text{전년도말 폐업사업장 중 퇴직급여 지급 사업장 수}}{\text{전년도말 폐업사업장 중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 수}} \times 100$ - 전년도말 폐업사업장 중 퇴직급여 지급 사업장 수는 평가연도에 전년도말 폐업사업장 중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한 사업장수 합계로 함 - 전년도말 폐업사업장 중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 수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상 폐업일자가 전년도말 이전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전년도말까지 퇴직급여 미지급된 폐업사업장 수의 합계로 함.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고용승계), 실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말 미지급된 폐업사업장 수에서 제외 ④ 취약계층 근로자 대지급금 정리를율 = $\frac{\text{대지급금 정리액}}{\text{대지급금 지급액}} \times 100$ - 대지급금 정리액: 평가연도 말까지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대지급금 및 소멸정리(결손처분 포함)금액의 누적액으로 함 - 대지급금 지급액: 평가연도 말까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누적액으로 함 * 대지급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2) 복지연금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예 금 보 험 공 사

예금보험공사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부채/자산비율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18
	(1)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5	
	(2)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3	
	(3)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성과		3	
	(4)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2.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16
	(1)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5	
	(2) 착오송금반환지원 성과		4	
	(3)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20
	(1) 출자금용회사 정리 성과		4	
	(2) 특별계정 파산재단 자산 정리 성과		4	
	(3) 부실채권 정리 성과		3	
	(4)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4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㉔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3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자산·부채는 예금보험기금 및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적용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산출시 고려사항 • 총수익은 예금보험기금 및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결산보고서의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함(단, 영업외수익에서 지급준비금환입액, 지원자산처분 이익 및 기타 대손충당금환입액은 제외함) • 보험료율 조정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계산요소에서 조정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18점]

사업정의	선제적 보험사고 위험관리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기금 손실 최소화 및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조성과 효율적 운용을 통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 목표대실적,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를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비율 개선 실적과 재정경제부 「기금운용평가지침」 내 계량 평가지표(중장기자산의 수익률)를 준용하여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을 비교 및 평가한다.								
기 준 치	- 예금보험기금 건전성비율(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 - 자산군별 기준수익률을 연말까지 운용한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익률 <table border="1"> <thead> <tr> <th>자산군</th><th>기준수익률</th></tr> </thead> <tbody> <tr> <td>채권</td><td>- 연기금투자폴 채권(국공채형) 수익률*</td></tr> <tr> <td>예치금</td><td>- KORIBOR 1년**</td></tr> <tr> <td>MMF</td><td>- 연기금투자폴 MMF 수익률</td></tr> </tbody> </table> * 연기금투자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월간보고서상 수익률 ** 은행연합회 공시자료	자산군	기준수익률	채권	- 연기금투자폴 채권(국공채형) 수익률*	예치금	- KORIBOR 1년**	MMF	- 연기금투자폴 MMF 수익률
자산군	기준수익률								
채권	- 연기금투자폴 채권(국공채형) 수익률*								
예치금	- KORIBOR 1년**								
MMF	- 연기금투자폴 MMF 수익률								
목 표	- 예금보험기금 건전성비율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금융안정을 위한 기금건전성 제고 성과 = 예금보험기금 건전성비율 × 0.5 +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 × 0.5 ② 예금보험기금 건전성 비율 = $\frac{\text{예금보험기금 총부채}}{\text{예금보험기금 순자산}} \times 100$ ※ 산출 시 고려사항 - 산식 산정 대상은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 포함)으로 한다. - 예금보험기금 순자산과 총부채는 계정별 자본총계 및 부채총계의 합으로 산정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익률 = 100 + (운용수익률 - 기준수익률) × 15 ※ 산출 시 고려사항 •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은 재정경제부 「기금운용평가지침」상 평가지표 중 “[4] 자산운용성과의 [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 ②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 운용수익률은 평가연도 1년간 수익률로 예보 기금운용시스템에서 산출한다. • 운용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은 일백 단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2)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금융시장 내 환경변화 및 잠재적 취약 부문과 관련하여 기관이 차등모형 평가 내 신규 재무보완지표를 통해 사전에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차단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차등모형평가 적용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 \sum \left(\frac{\text{지표별 당해연도 신규 재무보완지표*의 개선율}}{\text{Max(해당 재무보완지표의 전년도 개선율, 3개년 개선율 산술평균)}} \right) \times \frac{1}{n^{**}} \times 100$ *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 대상 회계연도 차등모형평가를 위해 선정한 신규지표 ** 당해연도 도입 신규 재무보완지표의 수 ※ 산출 시 고려사항 • 신규 재무보완지표는 예금보험공사가 개별 업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장 내 중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목적으로 당해연도 차등모형 평가에 새롭게 선정한 재무보완지표를 의미한다. • 분자는 당해연도 신규 재무보완지표의 전년대비 개선율로서,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단위지표별로 산출한다. $\text{개선율} = \frac{Y_t \text{ (신규 재무보완지표의 기준년도 평균점수)}}{Y_{t-1} \text{ (신규 재무보완지표의 전년도 평균점수)}}$ • 분모(목표기준치)는 단위지표별로 해당 재무보완지표의 전년도 개선율과 전년도 포함 직전 3개년 개선율의 평균 중 큰 값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 신규 재무보완지표 도입 직전 3개 회계연도 자료가 없을 경우 2개 회계연도 자료를 이용하고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직전 회계연도 말 해당지표 평균점수를 이용한다.

(3) 취약부보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이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조사·공동검사 실시한 후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성과를 측정하여 사전에 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차단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조사·공동검사 실시 취약부보 = 조사·공동검사 실시 취약부보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성과 = 재무 건전성 개선도**의 평균값 * 전전년도 3/4분기에서 전년도 2/4분기 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취약부보금융 회사로 선정되어 전년도에 조사·공동검사를 실시(개시일 기준)한 부보금 용회사 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경영 개선권고·요구·명령)를 부과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제외) ** 재무건전성 개선도 산식 $\left[\frac{\text{취약부보금융회사 재무비율}}{\text{업권 평균 재무비율}} \right] \text{ 조사·공동검사 직전분기로부터 1년 후}$ $\left[\frac{\text{취약부보금융회사 재무비율}}{\text{업권 평균 재무비율}} \right] \text{ 조사·공동검사 직전 분기}$ ※ 산출 시 고려사항 • 업권별 주요 재무비율은 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상향), 보험은 K-ICS 비율(상향), 금융투자회사는 순자본비율(상향),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상향)을 사용
(4)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②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16점]

사업정의	예금보호 대상 확대, 선진화된 예금보험제도 및 정리체계 구축, 착오송금 반 환지원 등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통한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제공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기관의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예금자보호 노력을 측정하여 금융 계약자보호서비스를 강화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 표시제도 위반율(하향지표)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 예금자피해 예방률(하향지표)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 예금보험금 신속지급 대비율(하향지표) -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 표시제도 위반율(목표부여)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 예금자피해 예방률(목표부여) 최고목표 : 기준치×80% 최저목표 : 기준치×120% - 예금보험금 신속지급 대비율 최고목표 : 기준치 × 80% 최저목표 : 기준치 × 12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표시제도 위반율 × 0.4 + 예금자피해 예방률 × 0.2 + 예금보험금 신속지급 대비율 × 0.4 ② 표시제도 위반율 = $\frac{\text{표시제도 위반건수}^*}{\text{전체 표시제도 조사 영업점수}^{**}} \times 100$ * 당해연도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시한 표시제도 이행 여부 조사 시 발견된 위반건수로 하되, 반복 위반 기관(전년도 위반이 발생했던 금융회사 중 당해 연도에 위반이 발생한 금융회사) 위반건수의 경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반건수 계산 ** 당해연도에 표시제도 이행 여부 조사를 실시한 영업점 수로 함 ③ 예금자피해 예방률* = $\frac{\text{중점감시 저축은행 개선도}^{**}}{\text{비중점감시 저축은행 개선도}^{***}}$ * 반기별로 산출 후 산술평균함(단, '25년도 실적은 예금보호제도 상향 시점('25. 9월)을 고려하여 연말 기준으로 산출함) ** 중점감시 저축은행 개선도 = A / B (A) : 전년도 중점감시 저축은행의 1년 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초과 개인예금 비율(총액, 원금 기준) (B) : 전년도 비중점감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초과 개인예금 비율(총액, 원금 기준) *** 비중점감시 저축은행 개선도 = C / D (C) : 전년도 비중점감시 저축은행의 1년 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초과 개인예금 비율(총액, 원금 기준) (D) : 전년도 비중점감시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초과 개인예금 비율(총액, 원금 기준) ④ 예금보험금 신속지급 대비율의 당해연도 실적은 전체 점검 실시 저축은행 전산 시스템별 오류율의 평균으로 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 시 고려사항 • '25년 현재 13개 : 저축은행중앙회 전산 및 12개 개별 전산 •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의 오류율은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의 오류율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 저축은행 전산 시스템별 오류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저축은행 전산 시스템별 오류율 = $\frac{\text{오류 발생 항목 수}}{\text{점검 항목 수}}$

(2) 착오송금반환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의 대표 사업인 착오송금반환지원을 통한 금융계약자 피해 회복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성과* = $\frac{\text{착오송금 반환완료 건수}}{\text{착오송금 반환지원 가능 건수**}} \times 100$ * 해당 연도말 종결 처리건 기준 ** 전체 채권매입계약 체결건수에서 주소불명으로 양도통지서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불능, 착오송금인의 계약해제 요구, 허위·거짓 신청으로 반환 지원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건을 제외

(3) 금융계약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20점]

사업정의	출자금융회사 관리 및 출자지분 매각, 파산재단 관리 및 보유자산 매각, 부실책임추궁 등을 통해 부실금융회사 지원자금(상환기금 및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최대한 회수하고 건전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출자금융회사 정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이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지원한 출자금융회사의 관리 및 출자지분 매각 등으로 출자금융회사를 정리한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출자금용회사 정리 성과 = 출자주식 매각지분 달성률 × 0.5 + 출자주식 매각금액 달성률 × 0.5 ② 출자주식 매각지분 달성률 = $\frac{\text{출자주식 실제매각 지분율}}{\text{출자주식 매각목표 지분율}} \times 100$ * 출자주식 매각지분은 상환 우선주는 제외함 ③ 출자주식 매각금액 달성률 = $\frac{\text{출자주식 실제매각 금액}}{\text{출자주식 매각목표 금액}} \times 100$ * 출자주식 매각금액은 상환 우선주 상환금액은 제외함 ④ 공적자금 회수액은 금융위원회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함 ⑤ 공적자금 회수목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계획상 회수목표를 기준으로 함 ※ 산출시 고려사항 •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등(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실행 미결정 등)으로 당해연도 회수목표 대상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회 수목표에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2) 특별계정 파산재단 자산 정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기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파산재단에 대한 자산 정리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파산재단 자산 정리 성과 = $\frac{\text{자산정리액}}{\text{파산재단 자산 잔액}} \times 100$ ② 자산정리액(분자)은 연중 파산재단 자산매각, 시효완성, 채무조정, 채 권회수 등에 따라 정리한 자산의 합계(장부가액 기준)로 산출한다. ③ 파산재단 자산 잔액(분모)은 특별계정 파산재단이 보유한 전년도말 전체 자산 잔액(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3) 부실채권 정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실채권 정리 성과 = $\frac{\text{정리채권액}}{\text{부실채권 잔액}} \times 100$ ② 부실채권 잔액 : 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는 정리금융기관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전년도말 전체 개인 부실채권 잔액(원금 기준) ③ 정리채권액 : 연중 개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금액, 매각 금액 및 채권 회수 금액의 합계(원금 기준)
(4)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축산물품질평가사업			18
	(1) 품질평가 서비스 제고		6	
	(2) 품질평가 정보 활용성 제고		4	
	(3) 축산물품질평가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8		
	2. 축산물이력사업			17
	(1)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5	
	(2) 축산물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		5	
	(3) 축산물이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축산유통사업			19
	(1) 스마트축산 지원 노력 성과		5	
	(2) 축산 유통거래 투명성 제고		3	
	(3) 축산물 유통정보 활용도 제고		3	
	(4) 축산유통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축산물품질평가사업 [18점]

사업정의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등급판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를 고도화하여 품질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

(1) 품질평가 서비스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축산물 품질평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소, 돼지 등급판정에 대한 AI 활용률과 소, 돼지의 품질 향상, 자율 등급판정 품목(계란)의 점유율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하향지표)
기준치	(A)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B)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C)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D)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A)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B)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C)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D)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품질평가 서비스 제고=(A)평점×2점+(B)평점×1점+(C)평점×1점+(D)평점×2점 (A) 소·돼지 등급판정 AI 활용률(%) $= \left(\frac{\text{소 AI 등급판정 마릿수}}{\text{소 전체 등급판정 마릿수}} \times 100 \right) + \left(\frac{\text{돼지 AI 등급판정 마릿수}}{\text{돼지 전체 등급판정 마릿수}} \times 100 \right) \div 2$ (B) 소 AI 등급판정 농가 품질향상률(%) = $\frac{\text{소 AI 등급판정 농가 육량지수}}{\text{소 전체 농가 육량지수}} \times 100$ (C) 돼지 AI 등급판정 농가 품질향상률(%) = $\frac{\text{돼지 AI 등급판정 농가 등지방두께 표준편차}}{\text{돼지 전체 농가 등지방두께 표준편차}} \times 100$ (D) 계란 등급판정 점유율(%) = (계란 등급판정량(개))/계란 생산량(개))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소, 돼지 전체 등급판정 마릿수는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국가승인 통계)를 기준으로 함 - 소, 돼지 AI 등급판정 마릿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시스템(K-Grade)을 통해 AI 등급판정 정보가 등록된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제6조에 따른 소 등의 등급과 제12조에 따른 돼지 등의등급은 AI 등급판정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③ (B)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육량지수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측정함 - 소 AI 등급판정 농가 육량지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원패스’에 가입하여 소 신규 품질정보 등 서비스를 활용한 농가별 평균으로 함 - 소 전체 농가 육량지수는 전국 농가별 평균으로 함 - 법정전염병 발병에 따라 긴급하게 도축하는 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 ④ (C)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등지방두께 표준편차는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측정한 등지방두께를 기준으로 산출함 - 돼지 AI 등급판정 농가 등지방두께 표준편차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원패스’에 가입하여 돼지 신규 품질정보 등 서비스를 활용한 농가별 평균 등지방두께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함 - 돼지 전체 농가 등지방두께 표준편차는 전국 농가별 평균 등지방두께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함 - 법정전염병 발병에 따라 긴급하게 도축하는 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 * 법정전염병 발병에 따라 긴급하게 도축(정부수매)하는 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이동중지명령 발생 시 종료일 기준 7일간 해당 시·군 돼지농가에서 등급판정 받은 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 * 등지방두께 측정이 불가능한 통돼지(등지방두께 “0”)는 평가에서 제외함 ⑤ (D)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계란 생산량은 통계청 통계를 적용하고 계란 등급판정량은 당해연도 등급판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품질평가 정보 활용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축산물 품질평가 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소, 돼지, 가금산물(닭·오리·계란) 품질평가 정보 수요자의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활용건수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품질평가 정보 활용성 = 축산물품질평가 정보 이용 건수 ② 축산물품질평가 이용건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등급판정 결과 조회 서비스’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함

(3) 축산물품질평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축산물이력사업 [17점]

사업정의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정보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한 이력정보 검증을 통해 위해축산물 위기대응체계 구축 등 활용성을 제고하는 사업

(1)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소비단계 제도이행 수준과 생산(사육)단계 신고 정보의 정확도 향상 수준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A)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B)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C)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A)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B)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C)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 (A)평점×1점 + (B)평점×2점 + (C)평점×2점 - (A) 온라인 거래 축산물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 \left(\frac{\text{DNA동일성 검사일치건수}}{\text{온라인 거래 축산물 DNA동일성 검사건수}} \right) \times 100$ - (B) 돼지 신고정보 정확도 제고 = $\sum_{n=1}^{12} \left(\frac{n\text{월 돼지 검증일치농장수}}{n\text{월 돼지 관리대상농장수}} \times 100 \right) \div 12$ - (C) 닭·오리 신고정보 정확도 제고 = $\sum_{n=1}^{12} \left(\frac{n\text{월 닭·오리 검증일치농장수}}{n\text{월 닭·오리 관리대상농장수}} \times 100 \right) \div 12$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온라인 거래 축산물 DNA 동일성 검사 건수와 DNA 동일성 검사 일치 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기준으로 함 - 검사용 시료가 부패하는 등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 모니터링 건수에서 제외 * 검사 대상 선별은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출 및 중복업체는 제외하여 실시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B), (C)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관리대상·검증일치농장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며 법정전염병 발병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이 적용된 지역의 농가는 제외함 - 검증일치농장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정하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적용된 오류검증 산식을 적용함

(2) 축산물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산업계 및 정부·공공기관의 정보 활용도를 측정하여 축산물이력사업의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물 이력정보 활용도 제고 = (A)평균×2.5점 + (B)평균×2.5 (A) 유통단계 소·돼지 이력등록 정육물량/국내산 소·돼지 총 거래정육 생산물량 (B)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정보 이용 건수 = (모바일 앱 조회건수×0.25)+ (API 제공 건수×0.25)+(외부기관 행정시스템 연계·제공 건수×0.5)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총 정육생산물량 지수는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인 쇠고기 총 정육 생산량(도체중량의 62%)과 돼지고기 총 정육생산량을(도체중량의 64%) 동일한 비중으로 환산하여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 유통업소 이력등록 정육물량 지수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도축장으로부터 가져온 지육 매입 전산등록 물량과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판매업소로 반출 전산등록을 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동일한 비중으로 환산하여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 총 정육생산물량과 유통업소 전산 이력등록 정육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함 - 최고 목표치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최고 목표치는 100%로 한다. ③ (B)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축산물 이력정보 이용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모바일 앱, API 및 기관 행정망 연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함

(3) 축산물이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축산유통사업 [19점]

사업정의	축산유통 효율화를 위해 유통정보의 디지털 조사체계 확대,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축산유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
(1) 스마트축산 지원 노력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스마트축산 지원사업을 통해 한우·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A)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B)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스마트축산 지원 노력 성과 = (A) 2점 + (B) 3점 ② (A)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 $\frac{\text{한우(거세)평균 정육량}}{\text{한우(거세) 평균 출하개월령}}$ - 참여 한우농가는 '23년도부터 ICT 확산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하며, 신규 농가는 참여 후 익년도에 평가에 포함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 당해연도에 출하한 한우(거세) 대상을 적용하며, 정육량(도체중량×육량지수)을 측정할 수 없는 등외 등급은 제외한다. -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도체중량(kg), 육량지수 측정방식 적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출하개월령을 기준으로 함 ③ (B)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 $\frac{\Sigma(\text{참여농가당 연간 출하 두수})}{\Sigma(\text{참여농가당 월평균 모돈 두수})}$ - 참여 양돈농가는 축산물이력제도의 모든 개체별 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 신규 농가는 참여 후 익년도에 평가에 포함하며, 전년도 실적에 조정 산입 - 양돈농가 출하두수와 모돈두수 실적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함 - 양돈 농가의 출하 두수 집계는 연간 도축 두수와 판매(양도) 두수를 포함하고, 구매(양수) 두수는 제외함

측정 산식 및 변수	- 양돈 농가 모든 두수 중 새끼를 분만하지 않은 후보돈은 모든 두수에서 제외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전염병 발병 농가 또는 정부지침에 따라 살처분 대상 농가는 평가에서 제외함
(2) 축산 유통거래 투명성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축산물의 공정가격 형성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하·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거래 정보가 각각 기록·검증·공개 체계로 전환된 수준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 유통거래 투명성 제고 = (A) + (B) + (C) - (A) (출하단계) 가축 출하신청 디지털 전환율 = 전자출하 신청 건수 ÷ 전체 출하 건수 - (B) (유통단계) 전자통합증명서 발급률 = 전자통합증명서 발행 건수 ÷ 전체 발행 건수 - (C) (판매단계) 식육판매업소 가격 공개율 = 가격비교서비스 참여 업체 수 ÷ 전국 식육판매업소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전자출하 신청 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자출하시스템에서 추출하며, 전체 출하 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시스템(K-Grade)에서 집계된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함 ③ (B)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전자통합증명서 발생 건수 및 전체 발행 건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원패스에서 추출함 ④ (C)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가격비교서비스 참여 업체 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정보포털(다봄)에서 추출하며, 전국 식육판매업소 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망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함 * 가격비교서비스 참여 후 매월 1회 이상 가격을 업데이트 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함

(3) 축산물 유통정보 활용도 제고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이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 개발건수를 측정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활용도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A) 축산물 유통정보 활용도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B) 민간 서비스 개발 건수(누적)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축산물 유통정보 활용도 제고 = (A)평점×2점 + (B)평점×1점 (A) 축산물 유통정보 활용도 = (공공데이터 호출건수)/(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수)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중 축산물 유통·품질정보 이용건수 * 공공데이터 호출건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한 유통·품질정보 관련 호출건수를 기준으로 함 - 활용 신청건수 집계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제공하고 있는 유통·품질정보(등급, 가격, 축산물 검수 등) 관련 서비스 목록 기준 (B)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서비스 개발 건수(누적)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에서 개발·활용한 서비스의 누적 건수 * 서비스 건수 집계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기준으로 함

(4) 축산유통정보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고용서비스 고도화 사업			20
	(1) 일자리 매칭 성과		6	
	(2) 청년층 심층상담 서비스 성과		5	
	(3) 고용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사업			17
	(1) 국가고용정보망 품질 제고 성과		7	
	(2) 보안 무사고 달성도		3	
	(3)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사업			17
	(1) 일자리정책 저성과사업 개선 성과		5	
	(2) 고용정책 연구실적 활용도 제고 성과		5	
	(3)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고용서비스 고도화 사업 [20점]

사업정의	효율적 일자리매칭을 위한 구직자 온라인취업지원 및 구인자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기관 역량 및 품질강화 노력으로 고용서비스의 고도화 및 성과향상을 유도하는 사업

(1) 일자리 매칭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구직자의 맞춤형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경력개발서비스와 일자리 추천서비스 실적을 측정하여 디지털 고용서비스 활용에 대한 향상도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4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경력개발서비스 활용률}}{\text{활용률}} \times 0.5 + \frac{\text{일자리추천서비스 취업률}}{\text{취업률}} \times 0.5$ - 경력개발서비스 활용률 : 경력개발서비스(잡케어) 활용건수 / 구직신청건수 × 100(%) - 일자리추천서비스 취업률 : 일자리추천서비스 취업자 수 / 고용24 취업자수 × 100(%) ② 경력개발서비스(잡케어) 활용건수 :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가 경력개발서비스(잡케어)를 통해 내담자를 조회한 건수로 잡케어 접속로그 DB를 통해 집계 ③ 구직신청건수 : 온·오프라인 구직신청한 건수로 구직신청 DB를 통해 집계 ④ 일자리추천서비스 취업자 수 : 고용24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한 자 수로, 구인공고 열람 로그 데이터 및 고용보험 취득이력 DB를 이용하여 집계 ⑤ 고용24 취업자 수 : 고용24를 통해 구인공고를 열람하고 취업한 자 수로 구인공고 열람 로그 데이터 및 고용보험 취득이력 DB를 이용하여 집계

(2) 청년층 심층상담 서비스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정책안내 등 일대일 심층상담 서비스 실적을 측정하여 기관의 청년 고용서비스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청년층 심층상담 서비스 성과 = $\frac{\text{일대일심층상담 건수}}{\text{투입 예산}}$ ② 일대일심층상담 건수 = 온통청년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지원·청년정책 등 청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카카오톡 및 화상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당해연도 심층(전문)상담 건수로 산출 - 온통청년 심층상담 건수 중 일대일 심층상담 건수로 한정하여 집계 ③ 투입예산 : 해당 사업에 대한 연간 예산액으로 집계
(3) 고용서비스 고도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국가고용정보망 품질 개선 사업 [17점]

사업정의	고용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고용정보망 구축·운영, 대내외 고용·노동 데이터의 수집·활용, 정보보호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고용정보망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1) 국가고용정보망 품질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고용정보망의 보안 품질 및 서비스플랫폼의 활용성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성과를 측정하여 국가고용정보망의 종합적인 품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가고용정보망 품질 제고 성과 = (고용정보망 보안 품질 강화×0.4) + (고용서비스플랫폼 활용 수준 강화×0.3)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0.3) ② 고용정보망 보안 품질 강화 =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건수 / 정보보안 예산 *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건수 : 보안점검을 통해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해 당해연도 개선 조치를 완료한 건수의 합(중복산정 제외) * 정보보안 예산 : 정보보안 업무의 연간 예산액으로 산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고용서비스플랫폼 활용 수준 강화 = 연간 국가고용정보망 온라인 플랫폼 (고용24)을 통한 신고·신청 건수 / 연간 국가고용정보망 온라인 플랫폼 및 고용센터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한 신고·신청 건수 × 100(%) * 고용24를 통해 신고 가능한 신고·신청 서식을 대상으로 대민포털을 통한 온라인 건수와 오프라인 건수를 추출하여 산출(민원접수일자 항목 기준)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액 /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 × 100(%)

(2) 보안 무사고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보안 무사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목 표	보안 무사고 달성(사고발생 0건)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안 무사고 달성도 = 100점 - ∑사고발생점수								
	<table><tr><td>구분</td><td>개인정보유출</td><td>내부정보유출</td></tr><tr><td>사고발생점수(1건당)</td><td>70점</td><td>30점</td></tr></table>			구분	개인정보유출	내부정보유출	사고발생점수(1건당)	70점	30점
	구분	개인정보유출	내부정보유출						
사고발생점수(1건당)	70점	30점							
② 사고 건수는 상위기관 보고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 개인정보유출 : 상위기관에 신고된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내부정보유출 : 상위기관에 보고된 우리 기관의 정보유출 여부									

(3) 국가고용정보망 품질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사업 [17점]

사업정의	노동시장 분석 및 일자리사업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고용현안 해결과 일자리 사업 효율화를 지원하고, 인력수급전망 및 미래직업연구를 통해 국가 미래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1) 일자리정책 효율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정부부처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성과측정 및 집행실태 점검 정보 제공으로 고용정책 수립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일자리정책 효율화 성과 = $\frac{(\text{일자리사업 양적창출 성과} \times 0.7) + (\text{일자리사업 질적창출 성과} \times 0.3)}{\text{투입 예산}}$
	② 일자리사업 양적창출 성과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 대표지표 산술평균값)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 집행실태 점검실적)
	③ 일자리사업 질적창출 성과 =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 대표지표 산술 평균값) ×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 집행실태 점검실적)
	④ 5개 일자리사업 유형별 대표 성과지표는 아래와 같음 (직접일자리사업: 취업률 / 직업훈련사업: 취업률 / 고용서비스사업: 알선 취업률 / 고용장려금사업: 고용유지율 / 창업지원사업: 지속고용사업장비율)
	⑤ 일자리사업 집행실태 점검실적 : 당해연도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적
	⑥ 투입 예산 : 해당 사업의 연간 예산액으로 집계

(2) 고용정책 연구실적 품질 제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고용정책 연구실적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실적 측정을 통해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 수요자 대상 고품질의 고용정보 제공으로 국가 고용정책 수립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용정책 연구실적 품질제고 성과 = $\frac{\text{학술지 논문 수}}{\text{최근 3년 평균 예산}}$ ② 학술지 논문 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저자소속기관을 '한국 고용정보원'으로 설정하여 검색되는 논문의 당해연도 건수로 집계 * '우수등재',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건수로 측정 ** 논문건별 기관의 연구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공동저자인 경우 (1/N) × 100%를 적용 ③ 최근 3년 평균 예산 : 기관의 해당 사업예산으로 집계하며, 억 원 단위로 산정

(3)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국제협력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㉕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			32
	(1) 중점기여 SDGs 성장 지수		12	
	(2)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7	
	(3)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2. 개발협력 파트너 참여사업			11
	(1) 개발협력 파트너 상생 성과 달성도		6	
	(2) 개발협력 파트너 참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3. 개발협력 인재 양성사업			11
	(1) 글로벌 인재 양성 성과		6	
	(2) 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 [32점]

사업정의	개발도상국의 복합위기 대응 및 경제·사회발전 지원으로 SDGs 달성 기여 및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중점 SDGs 성장 지수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2점)

정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은 KOICA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 실적 중, 국제사회 주요 논의 사항 및 국정과제와 연계된 5개 중점 SDGs 관련 사업의 확대와 관리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상대 성장 지수 = $\frac{①}{②}$ * 지수 원년 : 2019년 ① 중점 SDGs 지수 = $\frac{\sum^k \text{중점 } SDGs_{k,t} \text{ 기여사업실적}}{\sum^n \text{중점 } SDGs_{n,2019} \text{ 기여사업실적}} \times 100$ ② 비중점 SDGs 지수 = $\frac{\sum^k \text{비중점 } SDGs_{k,t} \text{ 기여사업실적}}{\sum^n \text{비중점 } SDGs_{n,2019} \text{ 기여사업실적}} \times 100$ ③ SDGs 17개 목표별 기여는 ‘OECD DAC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별로 기여한 SDGs 목표로 구분한다. ④ SDGs 달성기여 사업 실적은 SDGs 세부목표별 마커가 부여된 사업의 당해연도 연말 기준 확정지원액의 총합으로 한다. ⑤ 중점 SDGs는 국제사회 주요 논의사항(UN SDGs Report, 사무총장 연설 등)을 반영, △ 2번(기아종식), △ 3번(건강한 삶), △ 8번(양질의 일자리), △ 9번(산업화, 혁신), △ 13번(기후행동)로 한다. ⑥ 각 사업별 총 3개의 마커를 보유할 수 있으며, 마커별 기여액 배분은 이하 표에 따른다. <table><tr><th colspan="2"></th><th colspan="3">사업 총 마커수</th></tr><tr><th colspan="2"></th><th>1</th><th>2</th><th>3</th></tr><tr><td rowspan="3">핵심 마커 수</td><td>1</td><td>핵심 100%</td><td>핵심 70%, 비핵심 30%</td><td>핵심 70%, 비핵심 각 15%</td></tr><tr><td>2</td><td>-</td><td>핵심 각 50%</td><td>핵심 각 35%, 비핵심 30%</td></tr><tr><td>3</td><td colspan="3">핵심 마커수 최대 2개 제한</td></tr></table>			사업 총 마커수					1	2	3	핵심 마커 수	1	핵심 100%	핵심 70%, 비핵심 30%	핵심 70%, 비핵심 각 15%	2	-	핵심 각 50%	핵심 각 35%, 비핵심 30%	3	핵심 마커수 최대 2개 제한		
		사업 총 마커수																						
		1	2	3																				
핵심 마커 수	1	핵심 100%	핵심 70%, 비핵심 30%	핵심 70%, 비핵심 각 15%																				
	2	-	핵심 각 50%	핵심 각 35%, 비핵심 30%																				
	3	핵심 마커수 최대 2개 제한																						

(2) 국별협력사업 성과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7점)

정 의	KOICA가 수행한 대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의 달성 성과를 국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목 표	최고목표 : 20점(득점 가능한 최고 평가점수) 최저목표 : 5점(득점 가능한 최저 평가점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별협력사업 성과달성도 = $20+80 \times \frac{\text{해당연도종료사업 수원국평가점수의 평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② 평가는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가 설정한 ODA 사업 6대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수립한 'ODA 사업 평가등급제 시행지침'의 평가항목, 평가척도에 따라 수행하며, 수원국 정부가 직접 평가함 ③ '해당연도 종료사업 수원국 평가점수의 평균'은 해당연도에 종료되는 사업당 평가점수 득점의 총합을 대상사업 수로 나눈 평균 점수임 ④ 최고목표(20점)는 획득 가능한 최고점(만점)이며, 최저목표(5점)는 획득 가능한 최저점에 해당함

(3) 개발도상국 정부 협력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3점)

② 개발협력 파트너 참여사업 [11점]

사업정의	다양한 민간파트너(기업, 시민사회, 대학)와 협업을 민간 재원을 유치하고 상생의 ODA 사업 효과성 제고

(1) 개발협력 파트너 상생 성과 달성도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및 파급성 증대를 위해 개발협력 파트너 협력을 통한 상생의 사업 효과성 창출 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세부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개발협력 파트너 상생 성과 달성도 = ① 파트너 분담금 유치 비율 × 0.5 + ② 우리기업 동반성장률 × 0.5 ① 파트너 분담금 유치 비율 = $\frac{\sum \text{파트너협력사업 참여기관 분담금}}{\sum \text{파트너협력사업 KOICA 지원금}} \times 100$ * 파트너협력사업 세부사업(시민사회협력사업, 기업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년도에 KOICA가 제공한 지원금 대비 참여기관 분담금을 평가함. ② 우리기업 동반성장률 = $\frac{\sum \text{영리법인* 파트너 당해연도 현지 매출액}}{\sum \text{영리법인 파트너의 이전 5년 현지 매출액 연평균}} \times 100$ * 영리법인 파트너 : 코이카와 사업약정을 체결한 영리법인 ** 현지매출액 성과 실적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공신력 있는 자료(부가세 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출 신고필증)로 증빙함.

(2) 개발협력 파트너 참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개발협력 인재 양성사업 [11점]

사업정의	국내외 개발협력 인재육성으로 글로벌 개발협력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달성

(1) 글로벌 인재 양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의	정부의 국민참여 ODA 확대 정책 및 청년 인재 양성 정책 이행 성과 달성 성과 협력국 봉사단 파견 협력기관의 만족도 측정을 통한 활동성과를 통합 평가하여 인재 양성 파견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 (상향지표, 세부지표)
목표	①,②=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식 : 글로벌 인재 양성 성과 = ① 글로벌 인재 파견 달성도 (5점) + ② 글로벌 인재 활동 성과 (1점) ① 글로벌 인재 파견 달성도 • 측정산식 = $[\text{일자리경험 사업 파견인원수(명)} / \text{목표인원수(명)}] \times 100$ • 일자리 경험 사업 - (대상사업) KOICA 해외봉사단, NGO 봉사단 * 우리 정부 무상원조시행계획 목표로 부여된 예산 기준 당해연도 KOICA 일반봉사단 및 KOICA NGO 봉사단 목표 인원

측정 산식 및 변수	② 글로벌 인재 활동성과 • 측정산식 = 글로벌 인재 활동기관 만족도 * 봉사단을 파견받는 협력국 기관에서 봉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2) 개발협력 인재 양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5	
	㉡ 자체수입증가율		0.5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보훈의료사업			23
	(1) 보훈의료사업 성과		13	
	(2) 보훈의료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보훈병원 공공의료 사업			20
	(1) 보훈병원 공공의료 사업 성과		12	
	(2) 보훈병원 공공의료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보훈복지사업			11
	(1) 보훈요양원 입소자 호전·유지율 상승 노력과 성과		6	
	(2) 보훈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㉞ 자체수입증가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0.5점)	
정 의	기관의 자체수입의 증가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자체수입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자체수입} - \text{전년도 자체수입})}{\text{전년도 자체수입}}$ ② 자체수입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㉟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보훈의료사업 [23점]

사업정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안전한 의료환경 제공 등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1) 보훈의료사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3점)

정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 의료서비스 질, 환자안전 향상과 수요자 중심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한다. (상·하향지표)	
목표	② (상향지표)	최고목표 : 보건복지부 고시 내 의료질 평가 1등급 부여 기준
	③ (상향지표)	최고목표 :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최상위 기관 득점 (지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내 의료질 평가 1등급 부여 기준
	④ (하향지표)	100점(무사고 달성)
	⑤ (상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기준치 : 직전년도 실적치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치 중 높은 실적)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성과 평점×40%+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평점×30%+의료사고 감소율(건수) 평점×20%+진료전달체계 활성화 평점×10%) ②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성과 = $\frac{\text{보훈병원 당해연도 의료질 평가 결과 취득 점수}}{\text{보건복지부 고시 내 의료질 평가 1등급 부여 기준}}$ ③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 $\frac{\text{보훈병원 당해연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취득 점수}}{\text{당해연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고득점}}$ * 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내 의료질 평가 1등급 부여 기준 ④ 의료사고 감소율(건수) = $100 - \Sigma \text{의료사고 발생점수}$ ⑤ 진료전달체계 활성화 : 위탁병원과 보훈병원 진료협력 건수 ※ 산출시 고려사항 •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의료질 평가 결과로 함 • 의료질 평가 항목 중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보훈병원별 병상수로 가중치를 환산함 • 단 환자안전 영역 중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의사수·경력 반영 간호사수 지표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의료사고 발생점수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된 건수의 합 •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는 응급의료센터·기관 구분하여 산출 및 설정, 최고 목표는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 구분하여 설정 • 단, 응급의료기관·센터 평가 내 전담 의료 인력의 적절성 항목,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항목 제외
(2) 보훈의료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보훈병원 공공의료 사업 [20점]

사업정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차별화된 의료·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사업

(1) 보훈병원 공공의료 사업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 가중치 : 12점)

정 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공공의료병상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공공성 제고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② (상향지표)	최고목표 : 공공보건의료평가 유사 대상군의 최상위 기관 득점 평균
	③ (상향지표)	최고목표: 기준치 × 110%, 최저목표: 기준치 × 90% (기준치: 전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가동률의 직전 3개년 평균)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평점×60% + 공공의료병상 활성화 평점×40%) ②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 $\frac{\text{당해연도 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평가 결과 평균 점수}}{\text{당해연도 공공보건의료 유사 대상군 최상위 기관 득점 평균}}$ ③ 공공의료병상 활성화 = $20\text{점} + 80\text{점} \times \frac{\text{공공의료병상가동률*}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 공공의료병상가동률 = $\frac{\text{공공의료병상 입원 연인원}}{\text{연간 가동되는 공공의료병상 수}}$ ※ 산출시 고려사항 •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특수질환, 노인병원의 평가결과는 제외함. • 공공의료병상 입원인원은 보훈병원 EMR시스템에 입력·관리되는 자료로 주무부처에 주기적으로 보고된 자료로 함 • 공공의료병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보훈요양병원의 병상은 제외함)	

(2) 보훈병원 공공의료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보훈복지사업 [11점]

사업정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선도적 요양 운영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1) 보훈요양원 입소자 호전·유지율 상승 노력과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목표대실적, 가중치: 6점)

정의	보훈요양원 입소자 장기요양등급 호전·유지율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② (상향지표)	전국 요양원 호전·유지율 3개년 평균실적 및 직전년도 실적중 최대값
목표	② (상향지표)	최고목표: 기준치×120% 최저목표: 기준치×80%
	③ (상향지표)	목표: 전국 요양원 호전·유지율 전년대비 향상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전국 호전·유지율 대비 보훈요양원 호전·유지율 평점×2/6 + 전국대비 보훈요양원 호전·유지율 향상 개선도 평점×4/6) ② 전국 호전·유지율 대비 $\frac{\text{보훈요양원 호전·유지인원} \div \text{요양원 전체 판정인원}}{\text{전국 호전·유지인원} \div \text{전국 전체 판정 인원}}$ ③ 전국대비 보훈요양원 호전·유지율 향상 개선도 $= \frac{\text{보훈요양원 호전·유지율 전년대비 향상도}}{\text{전국 요양원 호전·유지율 전년대비 향상도}}$ ※ 산출시 고려사항 • 입소 6개월 미만 입소자 평가 제외 • 과거 4개년도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요양원의 실적은 제외함	

(2) 보훈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31
	(1) 맞춤형 복지서비스(복지멤버십) 활성화 성과		6	
	(2) 사회보장 부적정 수급 예방체계 고도화 성과		6	
	(3)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6	
	(4)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13		
	2.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활성화			16
	(1)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성과		4	
	(2) 사회서비스 부적정수급 사후관리 성과		5	
	(3)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7		
	3. 지역보건·국민건강 정보화			7
	(1) 보건의료서비스 모바일지원시스템 활용 성과		4	
	(2) 지역보건·국민건강 정보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3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31점]

사업정의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로 사회복지 급여·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국민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맞춤형 복지서비스(복지멤버십)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 가중치: 6점)

정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자격, 금융(소득·재산) 정보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을 판정하고 수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복지멤버십) 제도를 활성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려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 맞춤형 복지서비스(복지멤버십) 활성화 성과 $= \frac{\text{복지멤버십 가입자 수}}{\text{전체 인구수}} \times 0.5 + \text{정밀조사 가입자 수} \times 0.5$ ※ 맞춤형 복지서비스(복지멤버십) : 개인·가구의 각종 공적자료를 토대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 복지멤버십 가입자 수 : 맞춤형 복지서비스(복지멤버십)에 가입을 신청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가입자 수 • 전체 인구수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구수(산출 기준 : 국가통계포털(kosis.kr) 공식 통계 활용, 당해 연도 1월) • 정밀조사 가입자 수 : 복지멤버십 가입 시 금융(소득·재산)정보 조사에 동의하여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가입자 수 * 기 수급자 대상 신청간주자(일괄가입)는 실적에서 제외함

(2) 사회보장 부적정 수급 예방체계 고도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6점)

정의	사회보장 서비스 전반에 걸친 데이터 분석과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부적정 수급 예방방식 개선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재정을 절감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보장 부적정 수급 예방체계 고도화 성과 = $\sum_{k=1}^n \text{사회보장 부적정 수급 예방체계 고도화 차단액 } k$ ② 사회보장 부적정 수급 예방체계 고도화 차단액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변동사항 반영, 급여내역 정비 등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를 차단한 총 금액 ※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산출시 고려사항 • 산출 기준일 : 해당년도 매월 정기지급, 수시지급 등 사회보장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차단 총 합계 * 2025년까지 목표부여 방식(최고목표: 기준치×120%, 최저목표: 기준치×80%)을 적용한다.

(3)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사회보장관련 대내외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회보장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성과 = 당해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수 -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대상자 : 사회보장 관련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한 대상자

측정 산식 및 변수	- 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 서비스 지원 대상자 : 사회취약계층 발굴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 수혜를 받은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대상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산출 시 고려사항 • 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 서비스 지원 대상자수는 최초 1회만 산정(중복제거)

(4)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3점)

②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활성화 [16점]

사업정의	돌봄 서비스 및 물품 지원 등이 필요한 국민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품질 제고,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 성과} = \frac{\text{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용액}}{\text{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② 사회서비스 생성액 : 당해 연도에 사회서비스 사용(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액 ※ 바우처 생성 :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사회서비스 사용액 : 당해 연도에 사회서비스 대한 사용(결제)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액 ※ 산출 시 고려사항 • 사회서비스 생성액과 사용액은 각 사업별 지침에 근거하여 산출 • 기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은 각각 60:4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평가함 • 신규사업의 목표치는 목표부여 방식(최고목표: 기준치×120%, 최저목표: 기준치×80%)을 예외 적용하며, 3개년 실적이 누적된 이후에는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평가 함 • 목표의 최대치는 최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사회서비스 부정정수급 사후관리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교해지는 부정정 유형에 맞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및 타 기관의 공적정보 연계 등 부정수급 결제 사후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회서비스 부정정수급 사후관리 성과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결제 사후 심사를 통해 결정된 환수 대상 건수 ②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결제 사후심사를 통해 결정된 환수 대상 건수는 사회서비스 비용지급 후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된 환수 대상 결제 건수를 말함 ※ 사후심사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데이터와 타 기관에서 발생하는 공적정보 연계를 통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결제 비용 사후 점검 업무

(3)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활성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③ 지역보건·국민건강 정보화 [7점]

사업정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서비스의 품질 향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보건의료서비스 모바일지원시스템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4점)	
정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모바일지원시스템을 통해 건강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보건의료서비스 모바일 지원시스템 활용 성과 = $\frac{\text{모바일지원시스템 활용 실적}}{\text{모바일이 지원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실적}}$ ② 모바일지원시스템 활용 실적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지원시스템(MPHIS)을 활용한 건수 ※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대상자등록,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전후 서비스기록 등록 등 모바일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건수 ③ 모바일이 지원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실적 : 모바일지원시스템(MPHIS)을 지원하는 보건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활용한 건수 ※ 모바일보건소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 어르신건강관리 지원사업,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등)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건수
(2) 지역보건·국민건강 정보화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3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35
	(1)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성과		9	
	(2)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9	
	(3) 산림복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2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2. 민간 산림복지 활성화 사업			19
	(1)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 성과		6	
	(2) 산림복지전문업 역량 향상 성과		5	
	(3) 민간 산림복지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35점]

사업정의	산림복지 프로그램의 품질 및 효과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성과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대실적, 가중치 : 9점)	

정 의	국민에게 고품질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 및 3개년 평균 실적 중 큰 값을 적용
목 표	①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 목표 100점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성과 = ① (인증 프로그램 수혜인원/투입예산) × 0.7 + ②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효익성 지수 평점 × 0.3 ② 인증 프로그램 수혜인원은 산림청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측정하며, 숲e랑(fowiad.soooperang.or.kr) 또는 인증 프로그램 수혜인원 결과 보고서로 평가함 ③ 투입예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당해연도 해당 사업의 사업비 예산 중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활동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된 내역으로 측정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①은 2024년까지 목표부여 방식(최고목표: 기준치×120%, 최저목표: 기준치×80%) 을 적용한다. ④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효익성 지수는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숲체험·교육사업) 효익성 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하며, 재정경제부 국민평가의 고객만족도 지수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함.

(2)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9점)

정 의	진흥원 소속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의 효과유의성 향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 및 3개년 평균 실적 중 큰 값을 적용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 $\frac{\text{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증된 사업 수}}{\text{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사한 사업 수}}$ ②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사 사업 수는 진흥원 소속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한 산림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개인·단체)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태 변화 측정 검사지를 활용하여 검사한 수를 측정함. ③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유의성 검증 사업 수는 심리·정서적 상태 변화 측정 검사지로 검사를 실시한 사업 중 사전·사후 효과유의성을 측정하여 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를 측정함. (유효표본 20인 이상이며, 검증결과 $P < 0.05$의 경우를 검증된 사업으로 인정) ④ 효과성 분석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평가함.

(3) 산림복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고객의 인명사고 감소성적을 평가한다.(하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 및 3개년 평균 실적 중 작은 값을 적용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인명피해율 = $\frac{\text{인명피해(명)}}{\text{산림복지시설 이용객 수}}$ ② 인명피해 유형 중 사망과 부상에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망 2, 부상 1의 비율을 기준으로 함. 자살사고는 제외함. ※ 산출 시 고려사항 평가연도 내 진흥원이 보유한 시설을 이용한 고객 중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산출함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5점)

② 민간 산림복지 활성화 사업 [19점]

사업정의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1)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산림복지전문업의 신규창업 및 창업 유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 지표)
기준치	직전년도 실적 및 3개년 평균 실적 중 큰 값을 적용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 성과 = $ \begin{aligned} & (a) \frac{\text{최근 3개년 창업 교육 수료 인원 중 당해연도 창업 성공 인원수}}{\text{최근 3개년 창업 교육 수료 인원수 합계}} \times 0.5 + \\ & (b) \frac{\text{당해연도 유지 기업 중 고용개선(유지)된 기업 수}}{\text{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년 신규창업 기업 수 합계}} \times 0.5 \end{aligned} $ ② ‘창업 교육 수료 인원수’는 최근 3개년 진흥원이 개설한 ‘창업 교육 과정’을 수료한 인원의 합계임 ※ 산출 시 고려사항 • ‘창업 교육 수료 인원’은 진흥원이 개설한 ‘창업아카데미(총 16시간)’의 80%이상(13시간) 이수한 자로 한하며,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s://forestjobs.fowi.or.kr)’을 통해 수료증이 발급된 인원으로 산정함 • 다만, ‘최근 3개년 창업 교육 수료 인원’ 산정 시 당해연도 이전 창업 성공 인원 또는 최근 3개년 이내 교육 재참여(중복) 인원은 제외함 ③ ‘당해연도 창업 성공 인원수’는 당해연도 신규 창업한 기업의 창업주(공동대표 포함)로 하며, 단순 취업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창업 성공 인원’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s://forestjobs.fowi.or.kr)’에 등록된 신규창업 기업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산출함 ④ ‘신규 창업기업 수’는 당해연도 말 기준 신규 등록된 산림복지전문업 수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신규 창업기업 수는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s://forestjobs.fowi.or.kr)’을 통해 연도별 신규로 등록된 기업으로 산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⑤ '당해연도 유지 기업 중 고용개선(유지)된 기업 수'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최근 3개년 내 ④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중 당해연도 말 고용인원이 유지 혹은 증가되어 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수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창업 유지 기업수'는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s://forestjobs.fowi.or.kr)'에 등록된 기업 중, 「산림복지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 폐업 기업을 제외한 활동 기업 수로 산출함

(2) 산림복지전문업 역량 향상 성과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5점)

정 의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 지원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직전년도 실적 및 3개년 평균 실적 중 큰 값을 적용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림복지전문업 역량 향상 성과 = $\frac{\text{인증 프로그램 보유율}}{\text{투입예산}}$ ② 인증 프로그램 보유율은 전체 전문업 수 중 1개 이상의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업 수의 비율로 측정함. ※ 산출 시 유의사항 • 인증 프로그램 보유 실적(누계)은 산림청의 '프로그램 인증 결과'에 따라 측정함 ③ 전체 전문업 수는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https://forestjobs.fowi.or.kr)'을 통해 등록된 전문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의 누계로 산출함 ④ 투입예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당해연도 해당 사업의 사업비 예산 중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활동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된 내역으로 측정함

(3) 민간 산림복지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소비자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1	
	㉔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소비생활 안전 개선			21
	(1) 안전사각지대의 선제적 시장개선 조치 성과		12	
	(2) 소비생활 안전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9		
	2. 수요자 맞춤형 분쟁해결			19
	(1) 소비자 분쟁해결 확대 성과		7	
	(2)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노력		4	
	(3) 수요자 맞춤형 분쟁해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14
	(1) 소비자지향적 제도 개선 성과		4	
	(2) 부당거래행위 개선 성과		4	
	(3)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소비생활 안전 개선 [21점]

사업정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 환경 정착을 위하여 안전사각지대 위해제품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시장주체별 사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1) 안전사각지대의 선제적 시장개선 조치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2점)

정 의	국민의 소비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사각지대 위해제품·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개선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안전사각지대의 선제적 시장개선 조치 성과 = $\frac{\text{시정권고 사업자수}}{\text{안전조사과제수}} \times 0.3 + \frac{(\text{판매차단 사업자수} \times 2) + (\text{품질개선 사업자수} \times 1) + (\text{표시개선 사업자수} \times 0.5)}{\text{시정권고 사업자수}} \times 0.7$ ② '안전조사 과제수'는 소비자안전 관련 기획·심층 조사, 시험검사 결과 안전사각지대 제품·시설 등에 대한 시정권고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한다. ③ '시정권고 사업자수'는 안전사각지대 제품·시설 등의 판매차단 및 품질·표시 개선 등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여 시정권고를 실시한 대상 사업자수를 말한다. ④ '판매차단 사업자수'는 안전사각지대 제품·시설 등의 시정권고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품 판매 중단의 조치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한 사업자수를 말한다. ⑤ '품질개선 사업자수'는 안전사각지대 제품·시설 등의 시정권고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품의 품질 개선 조치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한 사업자수를 말한다.

측정 산식 및 변수	⑥ ‘표시개선 사업자수’는 안전사각지대 제품·시설 등의 시정권고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품의 표시 개선 조치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한 사업자 수를 말한다. ※ ‘안전사각지대 제품·시설 등’이란 1) 국내 안전 관계법령에서 관리하지 않는 품목, 2) 국내 안전 관계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시정 조치와 관련된 안전기준 항목이 부재·미흡한 품목, 3) 국제표준 또는 국외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는 품목에서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제품, 시설 등을 말한다.

(2) 소비생활 안전 개선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9점)

② 수요자 맞춤형 분쟁해결 [19점]

사업정의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포착한 소비자 피해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는 사업

(1) 소비자 분쟁해결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제도 운영을 통한 소비자 분쟁의 해결 확대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상담자율 처리건수×0.2)+(피해구제 해결건수×0.5) ① 소비자 분쟁해결 확대 성과 = $\frac{+ (분쟁조정 성립건수 \times 0.3)}{\text{소비자 분쟁 접수건수}} \times 100$ ② 소비자 분쟁 접수건수는 당해연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말한다. ③ 상담자율 처리건수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지원하는 ‘통합 소비자 불만해결 시스템’에 가입된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상담 단계에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한 실적을 말한다. ④ 피해구제 해결건수는 당해연도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권고를 통해 수리보수, 교환, 환불, 계약이행, 계약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으로 피해구제가 종결된 실적을 말한다.(처리불능, 취하중지, 상담기타, 조정신청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⑤ 분쟁조정 성립건수는 당해연도 분쟁조정 처리건 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성립으로 분쟁조정이 종결된 실적을 말한다.
(2)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소비자 분쟁해결 과정에서 포착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 차단,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예방 정보제공 및 위법사실 조치 등 한국소비자원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 노력 = $\frac{(\text{피해예방 정보제공} \times 0.6) + (\text{위법사실 조치} \times 0.4)}{\text{피해구제 접수건수}} \times 100$ ② 피해예방 정보제공 실적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의 확산 차단,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건수를 말한다. ③ 위법사실 조치 실적은 피해구제 과정 중 인지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서 행정조치(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하도록 통보한 건수를 말한다. ④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당해연도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말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 피해예방 정보제공 실적은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담당 부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제공 실적으로 측정한다. • 위법사실 조치 실적은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 실적으로 측정한다.
(3) 수요자 맞춤형 분쟁해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14점]

사업정의	소비가가 중심이 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정책 및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제도를 소비자권익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시장감시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를 개선하는 사업

(1) 소비자지향적 제도 개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정부·지자체 정책에 대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대비 업무 추진 단계별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5개년 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5개년 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성과 = $\frac{\text{실무위원회 상정건수} + \text{직접개선 건의건수}}{\text{투입인력}} \times 0.5 + \frac{\text{소비자정책위원회 개선권고건수} + \text{직접개선 수용건수}}{\text{실무위원회 상정건수} + \text{직접개선 건의건수}} \times 0.5$ ② ‘실무위원회 상정건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을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정부부처 17개 참여)의 안전으로 상정된 개선과제의 건수를 말한다. ③ ‘직접개선 건의건수’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법령 등의 개정안을 관계 기관(부처, 지자체)에 직접 건의한 과제 건수를 말한다. ④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선권고 건수’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법령 등의 개선 권고를 의결한 건수를 말한다. ⑤ ‘직접개선 수용건수’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건의한 개선안에 대해 관계 기관(부처, 지자체)이 수용한 건수를 말한다. ⑥ ‘투입 인력’은 정부 정책 및 법령·제도·자치법규의 소비자 지향적 개선을 위해 개선과제 발굴 및 의견수렴, 개선권고 등을 추진 및 지원한 조직(팀)의 구성원 수를 말한다.

(2) 부당거래행위 개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의 개선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부당거래행위 개선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대비 업무 추진 단계별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4개년 표준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2×(4개년 표준편차)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당거래행위 개선 성과 = $\frac{\text{부당거래개선 사업과제 건수}}{\text{투입인력}} \times 0.5 + \frac{\text{부당거래행위 개선 건수}}{\text{부당거래개선 사업과제 건수}} \times 0.5$ ② '부당거래 개선 사업과제 건수'는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부당광고 및 약관, 서비스 품질 미흡 등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거래조사사업 수를 말한다. ③ '부당거래행위 개선 건수'는 소비자원의 거래조사의 결과로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부당광고 및 약관, 서비스 품질 미흡 등에 대한 우리원의 개선 권고를 사업자가 수용한 실적을 말한다. ④ '투입 인력'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부당광고 및 약관, 서비스 품질 미흡 등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과제를 추진한 조직(부서)의 구성원 수를 말한다. ※ 산출시 고려사항: 동일·유사한 개선 권고에 대한 수용 건은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1건의 실적으로 산정

(3)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활용 사업			27
	(1) 산림식물자원 확보 성과		10	
	(2) 기술 개발·확산 성과		6	
	(3) 산림생물다양성 보전·활용 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11		
	2. 수목원 서비스 확산 사업			11
	(1) 수목원 문화 확산 성과		4	
	(2) 산림생물다양성 주류화 교육 성과		2	
	(3) 수목원 서비스 확산 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5		
	3. 정원 진흥 사업			16
	(1) 정원소재 국산화 성과		6	
	(2) 정원 만족도 향상 성과		3	
	(3) 정원 진흥 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활용 사업[27점]

사업정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과 산림생물자원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생물의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

(1) 산림식물자원 확보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 가중치 : 10점)

정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물자원과 산림복원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자생식물 신규확보 실적×0.5+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소재 확보율×0.5 ② 자생식물 신규확보 실적은 국내·외 자생식물을 기준으로 소속 수목원의 전시원, 시드볼트, 시드뱅크 내 신규확보 실적으로 산정함(중복산정 제외) ③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소재 확보율 : 당해연도 누적 실적 / 284 구역* * 284 구역 : (94종×4개 Seed Zone) - (종별 분포 특성에 따라 92제외) ** 94종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20.9.7. 시행)」에 제시된 자생식물 복원 소재 ※ Seed Zone 기준 구역별 2,500립 이상 수집한 종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④ 실적근거 : 산림청 보고 자료

(2) 기술 개발·확산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보유한 기술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기술개발 성과×0.5+기술확산 성과×0.5 ② 기술개발 성과 :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 식물 재배·관리 매뉴얼 개발 건수) / 최근 3개년 평균예산(억원)

측정 산식 및 변수	-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 개발 건수는 지식재산권 등록증, 발간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관 수가 단수인 경우 100%, 기관 수가 복수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하여 산정함 -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간 대상사업 예산의 평균금액으로 산출함 ③ 기술확산 성과 : (기술이전 건수 + 기술보급 건수) / 당해연도 사업 투입 예산(억원) - 기술이전, 기술보급 건수는 기술이전 또는 보급 계약서 기준으로 산정함 - 예산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당해연도 대상사업의 예산으로 산출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2025년도 평가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6년도 평가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2027년도 평가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3) 산림생물다양성 보전·활용 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1점)

② 수목원 서비스 확산 사업[11점]

사업정의	국립 수목원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수목원 문화 확산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 수목원 문화 확산 성과 (평가방식 : ㉠ 목표부여,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의	국민과 사회배려계층에게 수목원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관람객 평점(㉠)×0.6+공공성 향상 평점(㉡)×0.4 ② 관람객 평점 = 당해연도 관람객 수(명) - 관람객 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의 유·무료 전체 관람객 수로 산정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공공성 향상 평점 = 사회배려계층 관람객 수(명) / 관람객 수(명) - 사회배려계층 관람객 수는 국가보훈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군포로 송환법, 의사상자법에 의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분류된 대상의 수목원 관람객 수를 실적으로 산정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2025년도 평가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6년도 평가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2027년도 평가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④ 관람객 수, 사회배려계층 관람객 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의 매표시스템 기준으로 산정함
(2) 산림생물다양성 주류화 교육 성과 (평가방식 : ④ 목표부여, ⑤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국민과 초·중·고등학생에게 수목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④ 최고목표 : 기준치의 120% 최저목표 : 기준치의 80% ⑤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수목원 교육 평점(④)×0.6+미래세대 수목원 교육 평점(⑤)×0.4 ② 수목원 교육 평점 = 당해연도 수목원 교육생 수(명) - 수목원 교육생 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의 교육관리시스템 기준 당해연도 교육생 수로 산정함 ③ 미래세대 수목원 교육 평점 = 수목원 교육참여 초·중·고 학생수(명) / 전국 초·중·고 학생수(명) - 수목원 교육참여 초·중·고 학생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수목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 수로, 소속 수목원의 교육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전국 초·중·고 학생수는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되어 있는 초·중·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2025년도 평가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6년도 평가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2027년도 평가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3) 수목원 서비스 확산 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③ 정원 진흥 사업[16점]

사업정의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진흥 사업

(1) 정원소재 국산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 의	정원식물 국산화를 통해 국내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생활정원 조성 시 자생식물 활용률의 평균값 ② 자생식물 활용률 : 생활정원 조성 시 식재한 자생식물의 종 수(종) / 생활정원 조성시 식재한 전체 식물의 종 수(종) ③ 생활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에 따라 지자체 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조성한 생활정원을 의미함 ④ 자생식물은 국가표준식물목록(산림청)의 자생식물목록에 포함된 식물종 또는 국내육성품종(국립품종관리센터,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등록 보호를 받는 식물)에 한하여 인정함 ⑤ 생활정원 조성 시 식재한 전체 식물의 종 수 및 자생식물의 종 수는 외부기관(주무부처 등)의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를 통해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산출 시 고려사항 : 2025년도 평가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6년도 평가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2027년도 평가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2) 정원 만족도 향상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국민에게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여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재정경제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별 목표치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정원 진흥 사업 효익성 지수 평점 / 목표 ② 정원 진흥 사업 효익성지수는 재정경제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중 정원 진흥 사업 효익성 지수 평가점수를 적용함

(3) 정원 진흥 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2.5	
	㉕ 부채/자산비율		0.5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23
	(1)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8	
	(2)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 지원 성과		5	
	(3)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산			16
	(1)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의무일자리 확대 실적		5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유지 성과		5	
	(3)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경쟁력 있는 미래 장애인재 양성			15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장애인재 양성 성과		8	
	(2) 경쟁력 있는 미래 장애인재 양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23점]

사업정의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의	기관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취업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성과 = $\frac{\text{기관 지원을 통한 장애인 취업건수}}{\text{전체 투입 예산}}$ ② 취업인원은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취업 후 60일 이상 고용유지자)로 함 ③ 기관지원을 통한 취업은 직접취업, 지원취업으로 함 ④ 전체 투입예산은 해당 사업 연간 총 지원액으로 집계함 ※ 산출시 고려사항 • 장애인 취업건수(취업 후 60일 이상 고용유지)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집계함 • 전체 투입예산 중 비 정기적인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은 제외함

(2)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전체 예산 투입 대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frac{\text{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성과}}{\text{전체 투입 예산}} \times 100$ ②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성과는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지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실적 개수로 함 ③ 전체 투입 예산 : 해당 사업의 연간 총 지원액으로 사업비 총액을 집계함

(3)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산 [16점]

사업정의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이행 지원을 통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산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의무일자리 확대 실적 (평가방식 : ① 목표부여(편차), ②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업의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고용의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①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② 최고목표 : 기준치 × 120%, 최저목표 : 기준치 × 80%
측정 산식 및 변수	<산식> =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일자리 확대 실적×50%) + (고용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고용저조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실적×50%) ①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일자리 확대 실적 = $\frac{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일자리 확대 실적}{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경제활동인구(15세~64세)} \times 100$ ② 고용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고용저조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실적 = $\frac{고용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고용저조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적}{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적} \times 100$ ※ 산출시 고려사항 ①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의무일자리 확대 실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전년도 말 장애인고용 실시상황보고서의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함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관련 법 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2배수 인정 ② ‘고용컨설팅을 통한 고용저조 3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7항 및 제29조3항에 따라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 장애인 고용저조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의 당해연도 장애인 신규채용 인원의 합으로 함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관련 법 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2배수 인정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 의	투입예산 대비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연말 시점 중증장애인 유지 성과를 평가한다. (목표부여(편차))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frac{\text{② 연도말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인원 수}}{\text{③ 당해연도 투입 예산 총액}} \times \text{가중치}$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② 평가년도 12월 31일자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중증장애인 고용 유지 인원 수를 산정 * 고용보험 가입 기준, 연도 내 인증 취소된 사업장은 제외 ③ 당해연도 투입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 본연의 사업비가 아닌 온라인 홍보사이트 유지보수 예산은 사업비 예산 총액에서 제외

(3)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산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경쟁력 있는 미래 장애인재 양성 [15점]

사업정의	장애인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및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장애인재 양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8점)

정 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확대 및 양성훈련 자격 취득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 (①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확대 성과)×0.5 + (② 양성훈련 자격 취득 성과)×0.5 ①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확대 성과 =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인원 / 전체 투입 예산 *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인원은 공단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양성훈련, 향상훈련, 특별과정을 수료한 인원으로 함 ② 양성훈련 자격 취득 성과 = 자격 취득 실적(점) / 전체 투입 예산 * 자격 취득 실적(점) 인정 기준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국가자격 2점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 국가자격 및 디지털관련 국제자격 1점 • 국가공인민간자격 0.5점 • 바리스타자격(발달장애인에 한함) 0.5점 * 재학기간 및 수료 후 6개월 이내(당해년도 한정) 취득한 자격으로 1인 중복 취득 인정 ③ 전체 투입 예산: 해당 사업의 연간 총 지원액으로 사업비 총액을 집계함 (단, 구축비 및 시설비 제외)
(2) 경쟁력 있는 미래 장애인재 양성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1	
	㉔ 노동생산성		1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자금대출 사업			23
	(1)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학자금대출 실질 수혜율		7	
	(2) 취약계층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노력		6	
	(3)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자금대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20
	(1)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노력		5	
	(2) 청년 취업을 위한 국가장학금 일자리 창출 성과		4	
	(3)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 성과		3	
	(4)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역량 강화 사업			11
	(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성장지원 성과		4	
	(2) 기숙사 입주생의 실질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2	
	(3)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역량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생산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1점)	
정 의	기관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평균인원}}$ ② 부가가치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자금대출 사업 [23점]

사업정의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원 및 학자금상환 부담경감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학자금대출 실질 수혜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 의	저소득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학업 부담완화를 위한 재단의 학자금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학자금대출 실질 수혜율 $= \frac{\text{저소득계층 및 다자녀가구 대출 수혜 인원}}{\text{전체 학자금대출 신청 인원}}$ ※ 실적 산출 시 고려사항 • 저소득계층 및 다자녀가구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및 다자녀가구 학부생 • 본인이 신청 취소한 경우 신청 인원에서 제외

(2) 취약계층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노력 (평가방식: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6점)

정 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취약계층 중심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기관 주도로 지자체·민간 재원으로 지원하는 이자지원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 학업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청년의 기본생활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실적 산출 산식} = \frac{\text{취약계층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지원액}}{\text{전체 학자금대출 이자발생액}} \times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 실적 산출 시 고려사항 • 취약계층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지원액 - 이자면제액: 학자금대출 관련 법령 및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이자면제 대상 중 소득수준 등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이자면제 대상 면제액(연간 이자면제 정산액)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자면제 대상(단,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는 면제대상은 제외) - 이자지원액: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비수도권 청년 대상 이자지원액 및 민간기관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청년 대상 이자지원액 • 학자금대출 이자발생액: 평가연도 회계결산서의 당기 이자수익(대출이자) • '26년은 과거 4개년 표준편차,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3) 공공성을 강화하는 학자금대출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10점)	

②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20점]

사업정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등록금 부담경감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확대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5점)	
정의	국가장학금 공정지원 및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금액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 확대 노력 = $\frac{\text{경제적취약계층지원금액}}{\text{경제적취약계층지원인원}}$ ※ 실적 산출 시 고려사항 • 경제적 취약계층: 3구간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수혜 기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경제사정곤란자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포함) • 학기별 합산 후 평균값 사용(연간 순인원 아님)

(2) 청년 취업을 위한 국가장학금 일자리 창출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4점)	
정 의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직업계고 대상 취업 성과 및 중소중견 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고졸 청년) 취업 연계 성과(2점) = $\frac{\text{당해연도 취업 인원 수}}{\text{당해연도 직업계고 재학생 수}} \times 100$ ※ 실적 산출 시 고려사항 • 당해연도 취업 인원 수: 직업계고 대상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양질의 기업 취업 인원 수* 1) 고졸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기업과 협업 및 재단이 주관하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 확인된 인원 - 평가연도 예산으로 추진한 프로그램 기준 - 채용인원은 기업 또는 행사업체의 결과 보고 기준 2) 기업이 우수인재를 추천 요구(공문)하여 재단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여 채용된 인원 - 평가대상 연도에 공문을 접수한 기업 기준 - 채용된 학생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문 및 메일을 통해 확인된 채용(예정)인원을 활용 3) 고졸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기업에 채용된 인원으로 고용보험 정보로 확인된 인원 - 평가대상 연도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 기준 4) 전국 시·도교육청에 재단이 심사한 기업을 추천하여 해당 기업에 채용된 인원으로 고용보험 정보를 통해 확인된 인원 - 심사기준: ①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중 기업등급 B등급 이상, 주요 신용정보(휴폐업 여부, 채무불이행 상태, 행정처분정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의 유해기업 현황(임금체불, 중대재해, 산재다발 등) 등에 이상이 없는 기업, ②1)~3)에 따라 재단과 채용 관련 협약 및 협업하는 기업 - 재단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자 중 채용된 인원내 한함 * 재단과 협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재단이 주관하는 협약식을 통하여 교육부와 협약한 기업 ** 1)~4) 항목간 중복 채용건 제외

측정 산식 및 변수	• 당해연도 직업계고 재학생 수: 교육통계(KESS)* 기준 * 평가대상 기간 내 발표되는 상반기 통계 사용 • '26년은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7년은 과거 4개년 표준편차,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② (대학생) 중소중견기업 취업 확대 성과(2점) $= \frac{\text{수혜자 중 당해연도 졸업한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자 수}}{\text{수혜자 중 당해연도 졸업한 총 취업 및 창업자 수}}$ ※ 실적 산출 시 고려사항 • 취업자 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한 취업자 • 창업자 수: 사업자등록증 등록자
(3)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이공계 재적생 중 학부·대학원 이공계 장학생 비율 및 이공계 대학원 장학생의 연구실적을 측정하여 재단의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이공계 우수장학금 수혜 확대 노력 $= \text{이공계 학부 재적생 중 장학생 비율} \times p + \text{이공계 대학원 재적생 중 장학생 비율} \times (1-p)$ * p는 평가연도별 이공계 우수장학사업 예산 중 학부 예산 비중임(0~1,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산출시 고려사항 • 이공계 재적생: 한국교육개발원(KEDI) 간추린 교육통계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의 재적학생 수 • 이공계 장학생: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수혜자 수 • 이공계 학과(부) 계열분류: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해당연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② 이공계 대학원 장학생 국내외 연구품질 향상 노력 $= \frac{\text{이공계 대학원 장학생 논문 및 지식재산권 건수}}{\text{최근 5개년 평균 이공계 대학원생 우수장학 사업비(억원)}}$

측정 산식 및 변수	※ 산출시 고려사항 • 논문: 제출된 장학생 논문은 당해연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지 이상과 당해연도 SCI(E)급 이상(SCI(E), SSCI, A&HCI), SCOPUS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로 산정 * SCI(E)급 이상(SCI(E), SSCI, A&HCI), SCOPUS는 3배 가중치를 적용 * 참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참여율은 연구수행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100% 반영, 연구수행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단, 공동저자가 3명 초과인 경우 $n=3$으로 산정) • 지식재산권: 제출된 장학생의 국내외 특허 중 당해연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로 산정 *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특허는 3배 가중치를 적용하며, 삼극특허는 10배 가중치를 적용 * 기여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기여율은 개인 또는 지원기관 수(N)가 단수일 경우 100% 반영, 복수기관일 경우 $(1/N) \times 100(\%)$를 적용(단, 개인 또는 기관수가 3개(명) 초과인 경우 $N=3$으로 산정) • '27년은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8년은 과거 4개년 표준편차,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 '26년도는 실적치 부족으로 ①을 적용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우수장학사업 3개년 실적치가 확보되는 '27년도부터 ②로 평가
(4)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③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역량 강화 사업 [11점]

사업정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역량 함양 및 잠재력 개발,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등 생애주기별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성장지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4점)	
정의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재단의 저소득가정 중·고·대학생 복권기금 장학금을 통한 성장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주무부처(교육부) 복권기금 꿈사다리장학사업 연도별 성과목표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저소득 복권기금장학생 성장지원 성과 : 복권기금 꿈사다리장학생 연간 종합성장지수 평가 결과

측정 산식 및 변수	※ 복권기금 꿈사다리장학생 연간 종합성장지수 ① 인지적 성장(성취목표 지향성, 학업성취도 등), ② 정의적 성장(자아존중감, 심리적 만족 등), ③ 진로 성장(진로성숙도, 진로준비 등)의 합산 지수 - 장학생선발관리위원회(교육부 및 교육청 추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를 통해 성장지수 평가 설계 및 목표 수준 설정 - 장학생선발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장학생 전수조사 통계 결과
(2) 기숙사 입주생의 실질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재단 연합 기숙사 입주생의 주거부담금 대비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입주생의 실질 주거비 부담 완화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입주생 실질 부담금 = 입주생 월평균 부담금(X) - 입주생 1인당 월평균 지원금(Y) ※ 실적 산출 시 고려사항 - 재단 연합기숙사 중 민간기부형 건립방식의 기숙사만* 산입 * 민간위탁형 연합기숙사(롯데, 마포)는 기숙사비 0원으로 제외 - 월평균 부담금(X) = 월 기숙사비+월환산 보증금 - 월 기숙사비: 기숙사에 1개월 거주하기 납부하는 월 기숙사비 - 월 환산보증금: 한 학기(6개월) 거주를 위한 보증금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한 학기 보증금 15만원 ÷ 6개월) - 입주생 1인당 월평균 지원금(Y): 연간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지원한 총 집행액 / 연평균 입주인원
(3)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역량 강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재정정보원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3	
	(3) 효율성 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충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23
	(1) 대국민 재정정보 활용 성과		7	
	(2) 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성과		6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20
	(1)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 강화 성과		12	
	(2)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11
	(1) 보안 무사고 달성 성과		6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3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100%
목 표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3) 효율성 관리 [2점]

㉠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4]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23점]

사업정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 자금 이체, 국유재산 관리, 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1) 대국민 재정정보 활용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7점)

정의	열린재정시스템(재정정보공개시스템, www.openfiscaldata.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관련 콘텐츠의 열람 건수를 통해 대국민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text{① 대국민 재정정보 활용 성과} = 20 + 80 \times \frac{(\text{실적치}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1) 대국민 재정정보 활용 성과: 열린재정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재정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한 건수 및 오픈 API를 통한 재정정보 이용 종수 * PIVOT, XLSX, XML, JSON, CSV, TXT 등 2) 산출방법: SQL을 활용한 로그데이터 산출 ※ 산출 시 고려사항 • 대국민 재정정보활용 성과의 목표는 2025년도는 과거 3개년 표준편차, 2026년도는 과거 4개년 표준편차, 이후부터는 5개년 표준편차 적용 • 재정정보 활용성과 제외처리 기준 - 정보 조회건수 하루 최대 296회 초과분 불인정

(2) 안정적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무장애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무장애 운영 노력을 평가한다. (상·하향지표)
목표	dBrain ⁺ 서비스 가동률: 100% dBrain ⁺ 장애건수: 1건 이하

측정 산식 및 변수	• dBrain⁺ 서비스 가동률×80% + dBrain⁺ 장애건수×20% ① dBrain⁺ 서비스 가동률 = $\frac{(\sum \text{서비스 가동시간(분)} - \sum \text{장애시간(분)})}{\sum \text{서비스 가동시간(분)}} \times 100$ ※ 산식에 의해 도출된 결과 값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서비스 가동시간(분): 24시간×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 가동시간 • 장애시간(분): 장애를 복구하여 서비스가 정상화된 시각 - 최초 장애가 발생한 시각 • 산출근거자료: dBrain⁺ 시스템 운영현황 보고 ② dBrain⁺ 장애건수 = $\frac{\text{dBrain}^+ \text{ 장애건수 목표}}{\sum \text{dBrain}^+ \text{ 장애건수}} \times 100$ 1) 장애건수: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상태(건수)의 합으로 산정 2) 산출근거자료: dBrain⁺ 시스템 운영현황 보고 ※ dBrain⁺ 서비스 가동률 및 장애건수에 대한 공통 제외처리 기준 • 사전계획 또는 사전공지된 비가동 •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구간에 발생한 통신 장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애로 인해 내부통제·대응이 불가능한 장애 •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장애 • 외부 연계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내부통제·대응이 불가능한 장애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10점)

②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20점]

사업정의	교부·집행·정산 등 국고보조사업 전 과정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통합·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공개로 투명성 제고
(1)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방지체계 강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중장기목표부여(상향), 가중치 : 12점)	
정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무장애 운영 노력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부정수급 탐지패턴 개선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복합)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장기 추세선상의 직전년도 목표치* * 전년도 실적이 장기추세선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기준치를 직전년도 실적치로 조정

③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11점]

사업정의		재정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와 기획재정 부문의 보안관제를 총괄하여 사이버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사전 예방	
(1) 보안 무사고 달성 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6점)			
정의	기관의 정보유출 방지 목표 달성도를 측정함으로써,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 및 달성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표	보안 무사고 달성 성과: 사고 0건(개인정보 유출, 내부정보 유출)		
측정 산식 및 변수	• 보안 무사고 달성 성과(6점) = 6점 × $\frac{100-\sum \text{정보유출 발생점수}}{100}$		
	구분	개인정보유출 ¹⁾	내부정보유출 ²⁾
	정보유출 발생점수 (1건당, 중복가능)	70점	30점
1) 개인정보유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우리 원 개인정보 유출 여부 2) 내부정보유출: 상위기관에 보고된 우리 원 정보 유출 여부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5점)			

④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한국환경공단

❖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1. 경영전략			5.5
	(1) 전략기획	2		
	(2) 윤리경영	1.5	1	
	(3) 국민소통		1	
	2. 안전 및 책임경영			15.5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	2	
	(2) 안전 및 재난관리	3	2	
	(3) 친환경·탄소중립	2	0.5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5	2	
	3. 재무성과관리			8
	(1) 재무예산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3 (1)		
	(2) 재무예산성과			
	㉔ 사업비집행률		2.5	
	㉔ 부채/자산비율		0.5	
	(3) 효율성 관리			
	㉔ 사업수행효율성		2	
	4. 조직 운영 및 관리			11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		
	(2) 노사관계	2.5		
	(3) 보수 및 복리후생	3		
	(4) 총인건비관리		3	
	경영관리 합계	23.5	16.5	40

평가범주	지 표 명	가중치		합계
		비계량	계량	
주요사업	1.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19
	(1)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		6	
	(2) 온실가스 감축성과		5	
	(3)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2. 물환경관리사업			14
	(1) 하수도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율 제고를 위한 하수도 기술 지원 확대 성과		6	
	(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성과		2	
	(3) 물환경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3. 자원순환관리사업			16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		2	
	(2)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성과		4	
	(3) 폐자원에너지 보급성과		3	
	(4) 자원순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4. 안전관리사업			5
	(1) 화학시설 안전사고 감축성과		3	
	(2) 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5.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		6
	주요사업 합계	29	31	60
	전체 합계	52.5	47.5	100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 (1) 전략기획 [2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윤리경영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국민소통 [1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② 안전 및 책임경영

-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안전 및 재난관리 [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3) 친환경·탄소중립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4)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5)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③ 재무성과관리

- (1) 재무예산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 (2) 재무예산성과 [3점]

㉠ 사업비집행률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5점)	
정 의	기관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10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비집행률 = $\frac{\text{사업비집행액}}{\text{사업비예산현액}}$ ※ 산출시 고려사항 • 낙찰차액, 기관 내부재원조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성격의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㉔ 부채/자산비율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0.5점)	
정 의	기관의 자산증대 및 타인자본 감소노력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하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부채/자산비율 = $\frac{\text{부채}}{\text{자산}}$ ② 부채와 자산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3) 효율성 관리 [2점]

㉕ 사업수행효율성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기관의 사업수행 효율성 향상 실적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최고목표 : 기준치+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사업수행효율성 = $\frac{\text{순사업비}}{\text{평균인원}}$ ② 순사업비와 평균인원의 정의는 평가기준 및 방법이 정한 바에 따름

④ 조직 운영 및 관리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노사관계 [2.5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3) 보수 및 복리후생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4) 총인건비 관리 [3점] : 「평가기준·방법」에 따름

2. 주요사업

①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19점]

사업정의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확대, 대기총량제, 굴뚝원격감시체계, 대기측정망, 자동차환경정보구축 등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 및 대기질 관리를 통한 청정대기 구현

(1)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A), (B)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저감 성과를 평가한다. (하향지표) (C)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지원 이행을 통한 오존전구물질(VOCs) 배출 저감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A), (B)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 (C)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A), (B)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C)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성과 $= (A)\text{평점} \times 0.4 + (B)\text{평점} \times 0.4 + (C)\text{평점} \times 0.2$ (A) 질소산화물(NOx) 연간 평균 배출농도(ppm) (B) 황산화물(SOx) 연간 평균 배출농도(ppm) (C)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통한 VOCs 배출 저감량(톤) ② (A), (B) 지표 산출 시 고려사항 - 실적은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중 굴뚝 원격감시체계 실시간 모니터링되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연 평균 배출농도로 하며,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의 데이터를 활용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의 수집 주기는 30분 간격임 ③ (C) 지표 산출 시 고려사항 -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지원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의 유증기 회수로 저감된 VOCs 배출량을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음

측정 산식 및 변수	- VOCs 저감량(톤) = 기술지원 “적합”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량(kl/년) × VOCs 배출계수(1.11×10^{-3}톤/kl)* × 회수율(90%)**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2023) ** 형식인증(처리효율)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자료를 적용하며, 유증기 회수 시설 기술지원 성과는 기후부에 매년 보고하는 “유증기회수설비 형식 인증 및 검사” 대행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2) 온실가스 감축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및 목표부여, 가중치 : 5점)	
정 의	(A) 배출권거래제(ETS) 참여기업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B)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A)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B) 전년도 실적과 직전 2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A)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B) 최고목표 : 기준치×120% 최저목표 : 기준치×80%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온실가스 감축성과 평점 = (A)평점×0.6+(B)평점×0.4 (A)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톤) =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 -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B)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톤) = 전기차 충전기 연간 총 충전량(kW)×평균연비×온실가스 감축계수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설비 도입 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설비 도입 후 사후관리 실적 보고 대상 연간 지원설비 운영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되, 한국환경공단이 평가연도에 적정성 검토 후 확정된 배출량을 적용함 ※ 한국환경공단은 지원업체에 대해 사업 준공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사후 관리(감축실적보고서 제출)를 실시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B)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전기차 충전기 연간 총 충전량은 공단에서 보조금 지원한 충전기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의 데이터를 활용함 - 평균연비는 평가연도 말 기준 상위 9개 전기차 차종별 복합연비에 판매대수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복합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판매대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활용 [평균연비 = $\sum(\text{복합연비} \times \text{판매대수 비중})$] - 온실가스 감축계수는 96.8g/km를 적용 (‘자동차 온실가스 Life cycle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분석’ 결과 활용)
(3) 대기·온실가스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8점)	

② 물환경관리사업 [14점]

사업정의	하수도측정망 설치·운영,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방제지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술지원 등 물산업 진흥, 하수재이용사업 등 물오염원의 저감·예방·감시를 통해 물환경 개선 및 물산업 육성

(1) 하수도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율 제고를 위한 하수도 기술 지원 확대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6점)	
정의	하수도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율 제고를 위한 하수도 기술 지원사업(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하수도 기술 지원사업 실적 = $\frac{\text{하수도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수행실적(건수)}}{\text{하수정책지원 예산(백만원)}}$ ② 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하수도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수행실적은 하수도 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물재이용관리계획 포함) 기술검토, 재원조달에 관한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개인하수도처리

측정 산식 및 변수	시설 기술검토, 지자체 기술지원 건수에 각 업무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 업무별 가중치 : 하수도정비기본계획·현장기술지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 각각 0.2, 설치인가·재원협의·총사업비 변경 각각 0.1, 개인하수·기타 각각 0.05 - 하수도정책지원 예산은 한국환경공단 직제규정세칙상 하수정책지원부정원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한국환경공단 당해연도 예산서상 직급별 평균 인건비(기본급)를 적용한 인건비 예산 총액과 하수정책지원 물건비 예산의 합계액으로 함 -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의 하수도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현황 데이터 분석 및 적용

(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2점)

정 의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수출액 증대를 통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기 준 치	(B)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 표	(A) 100% (B)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3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성과 = (A)평점×0.5 + (B)평점×0.5 (A)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임대율(%) = $\frac{\text{기업 임대시설수}}{\text{총 임대시설수}} \times 100$ (B)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지원기업 수출액(천USD)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총 임대시설(141실) 대비 기업 임대시설수로 산출하며, 평가연도 입주기업 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 ③ (B)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집적단지 기업포함)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당해연도 수출액의 합계로 산출 - 최고·최저목표 설정을 위한 표준편차 산출 시, 연간 수출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실적은 제외하며, 당해연도 실적에서도 제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기업시스템(TmyDATA)이 제공하는 수출액 데이터 활용

(3) 물환경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6점)

③ 자원순환관리사업 [16점]

사업정의	포장재 재질·구조평가, 생산자책임 재활용,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가스 보급, 사업장폐기물·의료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자원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재활용 및 에너지화 확대

(1)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 (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 : 2점)

정의	신규대상자 발굴 및 전기·제품 판매업자 회수 노력을 통해 국민 1인당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표	(A) 당해목표는 회수 의무량의 110% 달성 (B) 당해목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목표의 110%달성 · 평가년도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확정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성과=(A)평점×0.5+(B)평점×0.5 (A)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성과(kg) (B) 폐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량(kg/인) $= \frac{\text{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 합계(kg)}}{\text{대한민국 인구수(인)}}$ ② 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성과 및 폐전기·전자 제품 재활용량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시스템)에 집계된 결과를 따름 - 회수 의무량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및 제15조의 6에 따라 산정 - 대상품목은 50종으로 함 - 대한민국 인구수는 매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하는 「재활용 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인구수」에 따름

(2)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4점)

정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후 매각, 제공(교육, 실증연구목적) 등을 통해 민간에 공급한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에 따라 창출한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평가(상향지표)
기준치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높은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산식 = (재사용배터리 개수× 배터리 용량(평균 값)×재사용 온실가스감축효과) + (재활용배터리 개수×배터리 용량(평균 값)×재활용 온실가스감축효과) ※ 공익 목적 등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제공한 배터리는 재사용 배터리에 산입						
	② 세부평가기준 - 민간에 공급한 배터리 개수는 매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보고 * 배터리 kWh 당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다음 보고서 인용 : 「중대형 폐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 환경영향 분석」 (국립환경과학원, 2024년) • 재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132.81 kg CO ₂ eq/kWh) •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47.97 kg CO ₂ eq/kWh)						
	<table><tr><th>재사용 (kg CO₂ eq/kWh)</th><th>재활용 (kg CO₂ eq/kWh)</th><th>비고</th></tr><tr><td>(9,100-600) kg CO₂ eq/EA × 1EA/64kWh =132.81kg CO₂ eq/kWh</td><td>(9,100-6,030) kg CO₂ eq/EA × 1EA/64kWh =47.97kg CO₂eq/kWh</td><td>NCM622배터리 64kwh(현대 코나) 기준</td></tr></table>	재사용 (kg CO ₂ eq/kWh)	재활용 (kg CO ₂ eq/kWh)	비고	(9,100-600) kg CO ₂ eq/EA × 1EA/64kWh =132.81kg CO ₂ eq/kWh	(9,100-6,030) kg CO ₂ eq/EA × 1EA/64kWh =47.97kg CO ₂ eq/kWh	NCM622배터리 64kwh(현대 코나) 기준
	재사용 (kg CO ₂ eq/kWh)	재활용 (kg CO ₂ eq/kWh)	비고				
(9,100-600) kg CO ₂ eq/EA × 1EA/64kWh =132.81kg CO ₂ eq/kWh	(9,100-6,030) kg CO ₂ eq/EA × 1EA/64kWh =47.97kg CO ₂ eq/kWh	NCM622배터리 64kwh(현대 코나) 기준					
(3) 폐자원에너지 보급 성과 (평가방식 : 목표부여(편차), 가중치 : 3점)							
정 의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적정관리를 통한 폐자원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평가한다. (상향지표)						
목 표	(A) (B) (C) 최고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표준편차 (과거 5개년)						
측정 산식 및 변수	① 폐자원에너지 보급성과 = (A)평점×0.2 + (B)평점×0.4 + (C)평점×0.4 (A) 바이오가스 보급 성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량(톤)×100/ 유기성폐자원 발생량(톤) (B) 바이오가스화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CO ₂ 톤) = 바이오가스 생산량(Nm ₃) x 온실가스 감축계수 (C) 폐자원에너지 보급성과(TOE) = 생활·산업계 폐기물 에너지화량(TOE)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량(TOE) ② (A)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국내 유기성폐자원(음식물폐기물 등) 발생량 대비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량을 적용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12월에 고시하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에 따름 - 평가연도 실적은 평가연도에 확정된 전년도 실적을 적용함						

측정 산식 및 변수	③ (B)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이 평가연도에 설치·정기 검사를 수행한 공공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량으로 산정하며, 온실가스 감축계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도시가스 계수(38.5MJ/Nm³, 15.236tC/TJ)를 적용함 ④ (C)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폐자원에너지(폐기물에너지+바이오에너지) 보급 성과는 매년 12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름 - 평가연도 실적은 평가연도에 확정된 전년도 실적을 사용함

(4) 자원순환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7점)

④ 안전관리사업 [5점]

사업정의	화학물질 관리, 화학사고 예방, 소음·진동·석면 위해관리, 건설안전 관리 등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 속 위해요소를 감축하며,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1) 화학시설 안전사고 감축성과(평가방식 : 목표대실적, 가중치:3점)

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통한 화학시설 안전사고 감축성과를 평가한다.(상향지표)
목표	100 (무사고)
측정 산식 및 변수	화학시설 안전사고 감축성과 = $100 - \{(\text{부상없는 사고}) + (\text{부상사고} \times 3) + (\text{사망사고} \times 10)\}$ ※ 지표 산출시 고려사항 • 안전사고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를 수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평가연도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시설결함에 의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의 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 데이터를 활용함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이 검사를 수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검사 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2) 안전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평가방식 : 9등급평가, 가중치 : 2점)

⑤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합성 및 목표의 도전성 [6점]:
「평가기준·방법」에 따름